



제 1 장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제 1 장

조정사건 전체 목록

1. 서울중재부

2017서울조정 1~4	(각 정정·반론청구) 보건복지부 對 서울경제 ^(1·2) , 인터넷 서울경제 ^(3·4)
조 정 대 상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 한다며...“맞춤형 특혜 법안”미는 정부』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6년 12월 15일자 8면, 인터넷 서울경제 2016년 12월 14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보건복지부가 희귀 난치질환자를 위해 마련한 첨단재생의료법안이 대형 병원만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첨단재생의료법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7년 1월 25일자 8면,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1월 24일자 산업면)

2017서울조정 5, 6	(각 정정청구) ○○○○노동조합 對 문화일보 ⁽⁵⁾ , 인터넷 문화일보 ⁽⁶⁾
조 정 대 상	『2개월 넘긴 철도 不法파업, 단호한 대응 후퇴 없어야』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6년 12월 2일자 39면, 인터넷 문화일보 2016년 12월 2일자 오피니언사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7, 80, 155, 182~185, 376~378, 670~671, 742, 833, 924, 1106, 1117~1119, 1121~1122, 1124~1125, 1234, 1245~1247, 1491~1492, 1521, 1522, 1575~1576, 1587	(각 정정·반론청구) 권○○ 對 인터넷 스포츠경향 ^(182·183) , 온라인 중앙일보 ^(184·185, 1246·1247) , e글로벌이코노믹 ^(376·377) , 인터넷 위클리오늘 ^(670·671) , 인사이트 ^(1575·1576) (각 정정청구) 뉴시스 ⁽⁷⁾ , 민족의소리 서울의소리 ⁽⁸⁰⁾ , 투데이코리아 ⁽¹⁵⁵⁾ , 인터넷 미디어워치 ⁽³⁷⁸⁾ , 인터넷 YTN ⁽⁷⁴²⁾ , e뉴스투데이 ⁽⁸³³⁾ , 인터넷 한국일보 ⁽⁹²⁴⁾ , 동아닷컴 ⁽¹¹⁰⁶⁾ , 인터넷 내일신문 ⁽¹¹¹⁷⁾ , 뉴스웨이 ⁽¹¹¹⁸⁾ , 인터넷 뉴스토마토 ⁽¹¹¹⁹⁾ , 조선일보 ⁽¹¹²¹⁾ , 조선닷컴 ⁽¹¹²²⁾ , 중앙일보 ⁽¹¹²⁴⁾ , 온라인 중앙일보 ⁽¹¹²⁵⁾ , 뉴시스 ⁽¹²³⁴⁾ , 톱스타뉴스 ⁽¹²⁴⁵⁾ , 인터넷 The Korea Times ^(1491·1492) , 화이트페이퍼 ⁽¹⁵²¹⁾ , 데일리한국 ⁽¹⁵²²⁾ , (반론청구) 현대종교 ⁽¹⁵⁸⁷⁾
---	--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종합]박영수 특검 “사이비종교 문제도 수사 … 朴 대면조사 원칙”』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일자 정치면) • 민족의 소리 서울의 소리 : 『[한국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최순실에 가린 실세들] 최경환-최재경 최순실 빠진 빈자리 꺾치고 앉아 朴 쥐락펴락』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정치면) • 투데이 코리아 : 『‘자로 세월호’ 반정부 이어 반미 도화선 되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5일자 사회면) • 인터넷 스포츠경향 : 『겨울 극장가 현실 풍자 붓물 … 사회적 분위기 한몫』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3일자 연예면) • 온라인 중앙일보 : 『테스타로사와 라이온 … 카페 속 비밀 만남 장소』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3일자 사회면) • e글로벌이코노믹 : 『“풍문으로 들었쇼” 영화 ‘마스터’ 이병헌, 실존인물? 연예인과 사기사건! … 조희팔, 유병언, 정우성, 황신혜, 인순이 언급 (이상민, 한은정 진행)』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7일자 연예면) • 인터넷 미디어워치 : 『박○○ 회장, 종로경찰서에 손석희 신변보호 요청!』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4일자 폴리틱스워치면) 외 19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의 남편인 유병언이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이고 구원파 교주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뉴스웨이, 인터넷 뉴스토마토/내용 : 정정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불성립결정(조선일보, 조선닷컴,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¹¹²⁵⁾, 현대종교) • 각 취하 (온라인 중앙일보^(184·185)/사유 : 자진취하, 인터넷 미디어워치/사유 : 당사자 간 화해, 뉴시스, 민족의 소리 서울의 소리, 투데이코리아, 인터넷 스포츠경향, 인터넷 YTN/사유 : 기사수정, e글로벌이코노믹, 인터넷 위클리오늘, 데일리한국/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인터넷 한국일보, 동아닷컴, 인터넷 내일신문, 뉴시스, 톱스타뉴스, 온라인 중앙일보^(1246·1247), 인터넷 The Korea Times, 화이트 페이퍼, 인사이트/사유 : 정정보도)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웨이 :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8일자 카드뉴스면) • 인터넷 뉴스토마토 :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8일자 사회면) • 뉴시스 : 『[종합]박영수 특검 “사이비종교 문제도 수사 … 朴 대면조사 원칙”』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7년 1월 9일자 정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 소리 서울의 소리 : 『[한국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최순실에 가린 실세들] 최경환-최재경 최순실 빠진 빈자리 꺾치고 앉아 차 쥐락펴락』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7년 2월 2일자 정치면) • 투데이코리아 : 『‘자로 세월호’ 반정부 이어 반미 도화선 되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7년 2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스포츠경향 : 『겨울 극장가 현실 풍자 봇물 ... 사회적 분위기 한몫』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7년 2월 15일자 연예면) 외 10건
2017서울조정 8, 20~32	(각 정정청구) 이○○ 對 노컷뉴스 ⁽⁸⁾ , 동아닷컴 ⁽²⁰⁾ , 온라인 중앙일보 ⁽²¹⁾ , 인터넷 서울신문 ⁽²²⁾ , 인터넷 서울경제 ⁽²³⁾ , 인터넷 MBN ⁽²⁴⁾ , 뉴스앤뉴스 ⁽²⁵⁾ , 쿠키뉴스 ⁽²⁶⁾ , 폴리뉴스 ⁽²⁷⁾ , 인터넷 헤럴드경제 ⁽²⁸⁾ , 인터넷 에너지경제 ⁽²⁹⁾ , e뉴스투데이 ⁽³⁰⁾ , 일요신문 ⁽³¹⁾ , 인터넷 스포츠경향 ⁽³²⁾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단독] 이○○“반기문 웃긴다 ... 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6일자 정치면) • 동아닷컴 : 『‘박연차 게이트’수사 이○○, 반기문 대선출마설에 ‘웃긴다’ 했다더라』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6일자 정치면) • 온라인 중앙일보 : 『박연차 수사한 검찰, 당시 돈 받은 ‘정관계 리스트’ 갖고 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6일자 정치면) • 인터넷 서울신문 : 『이○○, 반기문 대선출마설에 “돈받은 사실 드러나면 어쩌려고”』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6일자 법원/검찰면) • 인터넷 서울경제 : 『 이○○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6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이○○, 반기문 총장에 “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6일자 정치면) • 뉴스앤뉴스 : 『이○○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6일자 정치면) 외 7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불성립결정 (노컷뉴스) • 각 조정성립 (동아닷컴, 온라인 중앙일보, 인터넷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경제, 인터넷 MBN, 뉴스앤뉴스, 쿠키뉴스, 폴리뉴스, 인터넷 헤럴드경제, 인터넷 에너지경제, e뉴스투데이, 일요신문, 인터넷 스포츠경향/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p>2017서울조정 9·10</p>	<p>(정정·반론청구) 군인공제회 對 인터넷 주간한국증권신문</p>
<p>조 정 대 상</p>	<p>『“이○○ 군인공제회 이사장, 눈먼 투자·방만 경영 심각”』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9일자 경제면)</p>
<p>신청인 주장</p>	<p>군인공제회가 방만하게 경영되고 군납비리 주가조작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이○○ 군인공제회 이사장, 눈먼 투자·방만 경영 심각”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0일자 사회면)</p>
<p>2017서울조정 11~14</p>	<p>(각 정정·손배청구) 반기문 對 시사저널^(11·12), 인터넷 시사저널^(13·14)</p>
<p>조 정 대 상</p>	<p>『[단독]“박연차, 반기문에 23만 달러 줬다”』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6년 12월 27일자 12~15면, 인터넷 시사저널 2016년 12월 24일자 정치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불성립결정</p>
<p>2017서울조정 16</p>	<p>(정정청구) ○○○ (주)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p>
<p>조 정 대 상</p>	<p>(1) 『[생생코스닥] ○○○ 주인 바뀐다... 최대주주, 특수목적법인에 지분 전량 매각』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5일자 최신기사면) (2) 『반도체장비기업‘○○○’SPC에 팔린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5일자 최신기사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회사가 제3자에게 매각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p>
<p>이 행 결 과</p>	<p>『[정정보도문]‘○○○ 최대주주 주식매각’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4일자 코스닥 섹션면)</p>

2017서울조정 17, 18	(각 손배청구) 송○○ 對 뉴스1코리아 ⁽¹⁷⁾ , 네이버 ⁽¹⁸⁾
조 정 대 상	『월급쟁이 46% ‘월 200만원’도 못 번다』 제하의 기사 (뉴스1코리아 2016년 10월 26일자 경제면, 네이버 10월 26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월 2백만 원도 못 버는 월급쟁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뉴스1코리아/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 취하 (네이버/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서울조정 19	(정정청구) 포천시 對 인터넷 포천뉴스
조 정 대 상	『포천시청 갑질, 산정호수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5일자 사회종합면)
신청인 주장	포천시가 산정호수 케이블카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외부의 청탁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산정호수 케이블카 관련 포천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9일자 사회종합면)
2017서울조정 33	(정정청구) (주)경향신문사 對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조 정 대 상	『반기문과 나○○과 記者와 烈士』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0일자 칼럼면)
신청인 주장	나○○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한 자리가 대학동문 간 친목을 위한 사사로운 자리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나○○ 망언(妄言)의 이면’ 칼럼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9일자 칼럼면)
2017서울조정 34, 44	(정정·손배청구) 김○○ 對 뉴데일리
조 정 대 상	『법원, 박원순 아들 4번째 증인소환 ... 과태료 부과는?』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중인 신청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축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p>2017서울조정 35~43</p>	<p>(각 정정청구) 하태경 對 뉴데일리⁽³⁵⁾, 뉴시스⁽³⁶⁾, 동아닷컴⁽³⁷⁾, 인터넷 국민일보^(38, 39), 인터넷 매일노동뉴스⁽⁴⁰⁾, 인터넷 일요서울⁽⁴¹⁾, 인터넷 한국스포츠통계⁽⁴²⁾, 전자신문 인터넷⁽⁴³⁾</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데일리 : 『분노한 태극기 “하태경, 아무 말이나 함부로 내뱉은 대가 치를 것”』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3일자 사회면) • 뉴시스 : 『박사모, “맞불집회 자금출처 최순실” 하태경 집단고소』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박사모 “하태경, 너 고소” vs 하태경 “가짜보수 박사모 자진 해체” 갈등고조』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3일자 정치면) • 인터넷 국민일보 : (1) 『“맞불집회 자금 출처 조사해야” 하태경에 박사모 발끈』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30일자 시사면) (2) 『박사모, 하태경에 전면전 선포 ... 집단 소송 결정』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일자 시사면) • 인터넷 매일노동뉴스 : 『“메신저로 업무지시 금지, 프랑스 부러워요”』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3일자 칼럼면) 외 3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박근혜대통령 탄핵반대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돈줄이 최순실과 정윤희에 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정정보도(뉴시스, 인터넷 매일노동뉴스/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동아닷컴, 인터넷 국민일보, 인터넷 한국스포츠통계, 전자신문 인터넷/사유 : 보도계재) • 각 취하 (뉴데일리, 인터넷 일요서울/사유 : 보도약속)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데일리 : 『하태경 의원 “최순실과 정윤희의 돈줄이 풀리면서 태극기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발언한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일자 사회면) • 뉴시스 : 『하태경 의원, “최순실 씨가 돈을 풀어 집회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0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정정보도문]하태경 의원 “박 대통령 탄핵 맞불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돈줄은 최순실과 정윤희에 있다”고 발언한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3일자 정치면) • 인터넷 국민일보 : (1) 『[정정보도문]하태경 의원, “맞불집회 자금 출처 조사해야” 라는 발언 한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2일자 정치면) (2) 『[정정보도문] 하태경 의원, “최순실의 자금이 풀려 태극기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발언한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2일자 정치면) • 인터넷 매일노동뉴스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일자 종합면) 외 3건

2017서울조정 45~64	(각 반론청구) ○○○○(주) 對 국제뉴스 ⁽⁴⁵⁾ , 인터넷 환경일보 ⁽⁴⁶⁾ , 환경법률신문 ⁽⁴⁷⁾ , 푸드투데이 ⁽⁴⁸⁾ , 폴리뉴스 ⁽⁴⁹⁾ ,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⁵⁰⁾ , 인터넷 여성소비자신문 ⁽⁵¹⁾ , 인터넷 의학신문 ⁽⁵²⁾ , 인터넷 식품신문 ⁽⁵³⁾ , 인터넷 매일일보 ⁽⁵⁴⁾ , 인터넷 의료정보 ⁽⁵⁵⁾ , 아시아경제닷컴 ⁽⁵⁶⁾ , 인터넷 식약일보 ⁽⁵⁷⁾ , 보건뉴스 ⁽⁵⁸⁾ , 인터넷 민족의학신문 ⁽⁵⁹⁾ , 메디소비자뉴스 ⁽⁶⁰⁾ , 데일리그리드 ⁽⁶¹⁾ , 대한뉴스통신 ⁽⁶²⁾ , WOW한국경제TV ⁽⁶³⁾ , 인터넷 TBS ⁽⁶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뉴스 : 『식약처, 무허가 ‘소백 홍삼농축액 제품’ 회수 조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3일자 뉴스면) • 인터넷 환경일보 : 『무허가 홍삼농축액 제품 회수 조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4일자 환경뉴스면) • 환경법률신문 : 『식약처, 무허가 홍삼농축액 판매금지』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환경면) • 푸드투데이 : 『소백인삼영농조합법인 ‘삼대인삼 브이아이피(VIP) 홍삼은 홍삼농축액’ 판매중단』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위해정보면) • 폴리뉴스 : 『식약처, 무허가 홍삼농축액 회수 조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사회문화면) •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 『식약처, ○○○○ 판매 ‘VIP 홍삼은 홍삼농축액’ 회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뉴스면) • 인터넷 여성소비자신문 : 『무허가 홍삼농축액 ‘삼대인삼 브이아이피 홍삼은’ 회수 조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소비자면) 외 13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한 홍삼제품이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국제뉴스, 인터넷 환경일보, 환경법률신문, 인터넷 여성소비자신문, 인터넷 의학신문, 인터넷 식품신문, 인터넷 의료정보, 보건뉴스, 인터넷 민족의학신문, 데일리그리드, 대한뉴스통신, WOW한국경제TV, 인터넷 TBS/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푸드투데이, 폴리뉴스,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인터넷 매일일보, 아시아경제닷컴, 인터넷 식약일보, 메디소비자뉴스/사유 : 자진취하)

<p>2017서울조정 65~67, 159~163, 259, 525</p>	<p>(각 반론청구) 이○○ 對 인터넷 국민일보⁽⁶⁵⁾, 온라인 중앙일보⁽⁶⁶⁾, 인터넷 JTBC⁽⁶⁷⁾, SBS아이앤엠⁽¹⁵⁹⁾, 뉴스1코리아⁽¹⁶⁰⁾, 동아닷컴⁽¹⁶¹⁾, 연합뉴스⁽¹⁶²⁾, 인터넷 헤럴드경제⁽¹⁶³⁾, 인쿠르트⁽²⁵⁹⁾, 인터넷 매일노동뉴스⁽⁵²⁵⁾</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국민일보 :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 아니라는 근로기준법 합헌 ... 현재 “새 입법으로 해결해야”』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4일자 사회면) • 온라인 중앙일보 : 『“골프장 캐디, 근로자 아니다”는 근로기준법 ‘합헌’... “보호 법안 따로 신설돼야”』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JTBC : 『“골프장 캐디, 근로자 아니다”는 근로기준법 ‘합헌’... “보호 법안 따로 신설돼야”』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4일자 사회면) • SBS아이앤엠 : 『현재, ‘골프장 캐디 근로자로 인정’헌법소원 각하』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4일자 스포츠면) • 뉴스1코리아 : 『골프장캐디 “근로자 인정해달라”헌법소원...현재, 부적법 각하』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4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골프장캐디 “근로자 인정해달라”헌법소원...현재, 부적법 각하』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4일자 사회면) 외 4건
<p>신청인 주장</p>	<p>캐디를 근로자로 인정 않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신청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각 기각 (사유 : 청구된 반론보도 내용이 법원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임)</p>
<p>2017서울조정 68·69</p>	<p>(정정·손배청구) (재)한국학중앙연구원 對 미디어펜 (Mediapen)</p>
<p>조 정 대 상</p>	<p>『좌파와 문화전쟁 벌인 박근혜 정부 노력은 너무도 정당』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31일자 칼럼면)</p>
<p>신청인 주장</p>	<p>국책연구기관인 신청인 연구원이 반정부 반사회적이라고 폄훼하여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p>
<p>2017서울조정 70</p>	<p>(정정청구) 박○○ 對 뉴스타파</p>
<p>조 정 대 상</p>	<p>『방통위, 국고로 가야할 100억 원대 위법 경품 과징금 덮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7일자 IT/과학면)</p>
<p>신청인 주장</p>	<p>방통위가 부당경품을 제공한 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관련 시장조사도 중단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p>

2017서울조정 71·72	(정정·손배청구) 박○○ 외 1인 對 오에스이엔(OSEN)
조 정 대 상	『[단독] ‘전원일기’ 박○○, 사기혐의 1심 징역 8월 “수감 중”』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9일자 방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전원주택 사기분양혐의로 검찰수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 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박○○ 징역 8월 선고’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6일자 연예섹션면)

2017서울조정 73	(정정청구) (사) ○○○○○협회 對 Doctors News(닥터스뉴스)
조 정 대 상	『폐경 환자들 “건강기능식품·한방 도움 안돼”』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8일자 학술학회면)
신청인 주장	폐경 환자에게 한방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폐경 환자들 “건강기능식품 도움 안돼”』 제하의 기사로 기사 제목 수정 (2017년 1월 12일자 학술학회면)

2017서울조정 74	(추후청구) 김○○ 對 SBS-TV
조 정 대 상	『Y회계법인 박 모 회장과의 관계로 한 차례 피소당한 김○○,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피소』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30일자 SBS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75	(손배청구) 황○○ 對 코람데오닷컴
조 정 대 상	『언론중재위 제소에 따른 코람데오닷컴사의 공지사항』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7일자 소식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언론조정신청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관련 비리 제보를 받는다고 게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76·77	(정정·손배청구) 유○○ 對 단지일보
조 정 대 상	(1) 『저는 영국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2: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는 ‘습관’』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3일자 사회면) (2) 『저는 영국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5: 제 식구 감싸기가 식구를 망친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주영국대사관 공사로 재직할 때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1) 『저는 영국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2: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는 ‘습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신원 익명 처리 (2017년 2월 9일자 사회면) (2) 『저는 영국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5: 제 식구 감싸기가 식구를 망친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신원 익명 처리 (2017년 2월 9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78	(반론청구) 신○○ 對 인터넷 이데일리
조 정 대 상	『[국감] ‘육군 간부, 응급환자 조치 과실 무마하려 피해 장병 협박’』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6일자 국방외교면)
신청인 주장	군부대 간부인 신청인이 장병에 대한 맹장염 응급조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장병을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국감] “육군 간부, 응급 환자 조치 과실 무마하려 피해 장병 협박”』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3일자 국방외교면)

<p>2017서울조정 79, 521·522, 759, 1585·1586, 1718~1720</p>	<p>(각 정정·반론청구) ○○○○○○침례회 對 베리타스^(521·522), 현대종교^(1585·1586) (각 정정청구) 인터넷 한국기독교공보⁽⁷⁹⁾, 비즈니스포스트⁽⁷⁵⁹⁾, 인터넷 CTS기독교 TV⁽¹⁷¹⁸⁾, 사건의내막⁽¹⁷¹⁹⁾,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¹⁷²⁰⁾</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리타스 : 『최재경 변호사, 놓쳤던 유병언의 구원과는 어떤 곳?!』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5일자 연예면) • 현대종교 :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 왜 필요한가?』 제하의 기사 (2017년 7/8월호 79~83면) • 인터넷 한국기독교공보 : 『현 시국에 대한 기독교인의 인식』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6일자 칼럼면) • 비즈니스포스트 : 『[Who Is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4일자 인물면) • 인터넷 CTS 기독교 TV : 『피플 앤 이슈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흥연호 대표』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3일자 CTS뉴스면) • 사건의 내막 : 『대한민국 슬픈 현대사 압축, '8월 정치 히스토리』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3일자 정치의 속내면) •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 『이단사이비 교주를 “총회장님”이라 부르는 목사들』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일자 칼럼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교단이 오대양 사건과 세월호 사건을 유발한 사이비종교단체이며,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고 유병언씨의 사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불성립결정(베리타스, 현대종교, 인터넷 CTS 기독교 TV) • 각 취하 (인터넷 한국기독교공보, 사건의 내막,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사유 : 보도게재, 비즈니스포스트/사유 : 기사수정)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한국기독교공보 : 『○○○○○침례회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1일자 칼럼면) • 비즈니스포스트 : 『[Who Is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7년 5월 2일자 인물면) • 사건의 내막 : 『○○○○○침례회 관련 [정정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2일자) •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 『○○○○○침례회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0일자 주요뉴스면)

2016서울조정 81~84	(각 정정·손배청구) 송○○ 對 MBC-TV ^(81·82) , iMBC ^(83·84)
조 정 대 상	『치매 엄마 15억 약국집 딸들은 왜 다투나』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10월 17일자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iMBC 2016년 10월 17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치매를 앓고 있는 친모의 재산을 두고 신청인 가족 간 불화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85·86, 366·367	(정정·손배청구) (주)○○ 외 1인 對 인터넷 시사저널 ^(85·86, 366·367)
조 정 대 상	『[단독] 반기문 둘째 동생 ‘주가조작 세력 연루 기업 사외이사’ 구설수』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7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하 (인터넷 시사저널^(85·86)/사유 : 당사자 간 화해) • 조정성립 (인터넷 시사저널^(366·367)/내용 : 반론보도,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주식회사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9일자 정치면)

<p>2017서울조정 87~116, 194~231</p>	<p>(각 추후·손배청구) 정○○ 對 SBS-TV^(87·88), MBN^(89·90), MBC-TV^(91·92), KBS-2TV^(93·94), 인터넷 헤럴드경제^(95·96), 인터넷 파이낸셜뉴스^(97·98), 아시아 투데이닷컴^(99·100), 인터넷 시민일보^(101·102), 인터넷 스포츠조선^(103·104), 인터넷 문화일보^(105·106), e머니투데이^(107·108), 뉴시스^(109·110), 뉴스1코리아^(111·112), 노컷뉴스^(113·114), 인터넷 JTBC^(115·116), 한경닷컴^(194·195), SBS아이앤엠^(196·197), 인터넷 MBN^(198·199), 줌^(200·201, 202·203), 네이버^(204·205-214·215), 다음^(216·217-230·231)</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블랙박스 악용 ... 형제보험사기단』 제하의 보도 (SBS-TV 2012년 4월 25일자 8시 뉴스 프로그램, SBS아이앤엠 4월 25일자 사회면, 네이버, 다음 4월 23일자 사회면) • MBN : 『교통사고 위장한 형제 보험사기단 검거』 제하의 보도 (MBN 2012년 4월 26일자 8시 뉴스 프로그램, 인터넷 MBN 4월 25일자 사회면) • MBC-TV : 『“형제 사기단” 고의사고 98건..“블랙박스 이용”』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5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 KBS-2TV : 『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13년간 98번 교통사고』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30일자 아침뉴스타임 프로그램) • 아시아투데이닷컴 : 『신호위반 차량에 돌진, 보험금 3억 챙긴 형제 달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사회면) • 인터넷 문화일보 : 『法위반 車 골라 고의사고 ...‘기막힌 형제’』 제하의 기사 (인터넷 문화일보 2012년 4월 25일자 사회면, 다음 2012년 4월 25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13년간 36번 교통사고 “억울한 형제” 사실은 ...』 제하의 기사 (e머니투데이 2012년 4월 25일자 사회면, 줌, 네이버, 다음 2012년 4월 25일자 사회면) 외 38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교통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로 입건됐다고 보도됐으나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됐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SBS-TV, SBS아이앤엠, MBN, MBC-TV, KBS-2TV, 아시아 투데이닷컴, 인터넷 문화일보, e머니투데이/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인터넷 헤럴드경제,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시민일보, 인터넷 스포츠조선, 뉴시스, 뉴스1코리아, 노컷뉴스, 인터넷 JTBC, 한경닷컴, 줌, 네이버, 다음/사유 : 보도개제)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교통사고 위장한 보험사기 형제’ 관련 추후 보도문』 제하의 기사 (SBS-TV 2017년 2월 11일자 8시 뉴스 프로그램, SBS아이앤엠 2017년 2월 11일자 사회면, 네이버, 다음 2017년 2월 13일자 사회면) • MBN : 『교통사고 위장한 형제 보험사기단 검거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MBN 2017년 2월 18일자 8시뉴스 프로그램, 인터넷 MBN 2017년 2월 18일자 사회면) • MBC-TV : 『교통사고 위장한 보험사기 형제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5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 KBS-2TV : 『교통사고 위장한 보험 사기 형제 관련 추후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0일자 아침뉴스타임 프로그램) • 아시아투데이닷컴 : 『교통사고 위장한 보험사기 형제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6일자 사회면) • 인터넷 문화일보 : 『교통사고 위장한 보험사기 형제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9일자 사회면, 다음 2017년 2월 9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교통사고 위장한 보험사기 형제 관련 추후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3일자 사회면, 줌, 네이버, 다음 2017년 2월 13일자 사회면)
<p>2017서울조정 117, 118</p>	<p>(각 정정청구) 국방부 對 KBS-2TV⁽¹¹⁷⁾, KBS미디어⁽¹¹⁸⁾</p>
<p>조 정 대 상</p>	<p>『군대 보낸 두 아들, 난치병 걸린 사연은?』 제하의 보도 (KBS-2TV 2017년 1월 9일자 제보자들 프로그램, KBS미디어 2017년 1월 9일자 다시보기 및 미리보기면)</p>
<p>신청인 주장</p>	<p>군의 의료조치가 미흡하고 진단이 늦어져 군인 형제가 희귀병인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함)</p>

2017서울조정 119, 120	(각 정정청구) 국방부 對 채널A ⁽¹¹⁹⁾ , 인터넷 채널A ⁽¹²⁰⁾
조 정 대 상	『軍 내부자 소행 가능성 ... 진상조사 안해』 제하의 보도 (채널A 2017년 1월 12일자 종합뉴스 프로그램, 인터넷 채널A 2017년 1월 1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국방부 영내에 살포된 북한 전단지(가) 군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軍 내부자 소행 가능성 ... 진상조사 안해」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채널A 2017년 2월 21일자 종합뉴스 프로그램, 인터넷 채널A 2월 21일자 뉴스면)
2017서울조정 121	(정정청구) 정○○ 對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조 정 대 상	『「사기 혐의 구속된 ○○○○○○○스쿨 정○○ 목사, 교비 횡령 의혹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8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비횡령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7서울조정 122·123	(추후·손배청구) 최○○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정육식당의 꿈수』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17일자 먹거리X파일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축산물판매허가를 받지 않고 고기를 판매했다고 보도됐으나 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p>2017서울조정 124~146</p>	<p>(각 반론청구) (주)○○○○ 對 연합뉴스⁽¹²⁴⁾, 뉴스1코리아⁽¹²⁵⁾, 내외뉴스통신⁽¹²⁶⁾, 뉴시스⁽¹²⁷⁾, 조선닷컴⁽¹²⁸⁾, 동아닷컴^(129, 130), 인터넷 서울신문⁽¹³¹⁾, 매경닷컴⁽¹³²⁾, 아시아경제닷컴⁽¹³³⁾, 뉴스프리존(News Free Zone)⁽¹³⁴⁾, 이코노미톡뉴스⁽¹³⁵⁾, 디오데오⁽¹³⁶⁾, 경기뉴스통신⁽¹³⁷⁾, 아트코리아방송⁽¹³⁸⁾, 데일리뉴스⁽¹³⁹⁾, 인터넷 서울 문화투데이⁽¹⁴⁰⁾, 서울문화인⁽¹⁴¹⁾, 월드투데이⁽¹⁴²⁾, 아이에스플러스닷컴(인터넷 일간 스포츠)⁽¹⁴³⁾, 한국방송뉴스⁽¹⁴⁴⁾, 한국인권⁽¹⁴⁵⁾, HKBC환경방송⁽¹⁴⁶⁾</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현대적으로 해석한 전통공예 26~29일 예올서 전시』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6일자 최신기사면) • 뉴스1코리아 : 『전통공예와 현대적 디자인의 만남 ...'격, 레(格, 禮)』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6일자 정책면) • 내외뉴스통신 : 『전통공예, 현대적으로 재탄생 되다 ...'격, 레'기획전』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6일자 문화면) • 뉴시스 : 『전통공예 기법 활용 한국형 패키지'격, 레』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4일자 생활정보면) • 조선닷컴 : 『전통공예 기법 활용 한국형 패키지'격, 레』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7일자 전시면) • 동아닷컴 : (1) 『창의적 전통공예품 전시'격 格, 레 禮'전, 26일 부터 예올서 열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2일자 문화면) (2) 『“한국 전통공예 장인들 숨씨, 세계서 통하고도 남죠”』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4일자 인사일반면) 외 16개 매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회사가 기획하여 개최한 전통공예기술에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작품 전시회를 문화재청이 기획한 행사라고 잘못 보도했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p>

2017서울조정 147~150	(정정·손배청구) 최○○ 對 매일경제 ^(147·148) (정정·손배청구) 최○○ 외 2인 對 주간경향 ⁽¹⁴⁹⁻¹⁵⁰⁾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경제 : 『獨비덱 호텔은 승마팀 숙소용 ... 최순실 현지 사업엔 관심 없어』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5일자 A18면) • 주간경향 : 『최순실 독일 은닉 재산 특검이 손댈 수 있을까』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0일자 이슈추적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에 공동대표로 등재돼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매일경제⁽¹⁴⁷⁾, 주간경향⁽¹⁴⁹⁾/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매일경제⁽¹⁴⁸⁾/내용 : 손해배상 3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동의, 주간경향⁽¹⁵⁰⁾/내용 : 손해배상 7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동의)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경제 : 『“獨비덱 호텔은 승마팀 숙소용 ... 최순실 현지 사업엔 관심 없어”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1일자 사회면) • 주간경향 : 『“최순실 독일 은닉 재산 특검이 손댈 수 있을까”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1일자 ‘시로 여는 한 주’ 면)
2017서울조정 151·152	(정정·손배청구) 주○○ 외 1인 對 Koreaboo
조 정 대 상	『○○○○ ○○○○○○ Concert Stops After organizer Lost All The Money』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5일자 K-pop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기획한 걸그룹의 해외공연 무산 이유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서 미비)
2017서울조정 153·154	(정정·반론청구) (주)○○○○○ 對 엠스플 뉴스
조 정 대 상	『[기획기사] ○○○ 지원, ‘단순 선의인가, 탐욕의 선의인가’[2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6일자 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특정 종합격투기 선수를 마케팅을 염두에 두고 후원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156	(손배청구) 이○○ 對 iMBC
조 정 대 상	『‘고객 만족도’ 설문에 쓴소리 했더니 ‘모욕죄’ 고소』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9일자 뉴스데스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피부과 병원이 서비스 만족도에 글을 올린 고객을 무리하게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157	(정정청구) ○○○○○입주자대표회의 외 1인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목포시 소재 ○○아파트 입주자 집회 시위 벌여』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9일자 호남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불법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간주
2017서울조정 158	(손배청구) 염동렬 對 브레이크뉴스
조 정 대 상	『이리 때 틀고 앉았던 평창동계올림픽 알펜시아 등지』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평창올림픽 배후도시 입법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해당 지역에 신청인과 최순실 소유의 땅이 있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이리 때 틀고 앉았던 평창동계올림픽 알펜시아 등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의혹 언급 부분 삭제 (2017년 2월 2일자 정치면)
2017서울조정 164·165	(정정·손배청구) 이○○ 외 1인 對 고발뉴스닷컴
조 정 대 상	『“황교안, 최순득 - 최순실 자매와 친분”』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6일자 정치go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부부가 최순득과 친분이 있고 법무부 고위공무원인 부인은 황교안 총리의 최측근으로 총리 인수 작업을 도와 승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황교안, 최순득 - 최순실 자매와 친분”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7일자 정치면)

2017서울조정 166~169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환경공단 對 일요서울 ^(166·167) , 인터넷 일요서울 ^(168·169)
조 정 대 상	『환경공단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및 불공정입찰 의혹』 제하의 기사 (일요서울 2017년 1월 9일자 40면, 인터넷 일요서울 2017년 1월 6일자 경제일반면)
신청인 주장	한국환경공단이 폐비닐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불공정 입찰을 통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환경공단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및 불공정입찰 의혹’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일요서울 2017년 2월 20일자 40면, 인터넷 일요서울 2017년 2월 13일자 경제일반면)
2017서울조정 170	(정정청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對 아주뉴스
조 정 대 상	(1) 『시민혈세 낭비, 세종시의원 자존심 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6일자 충청강원면) (2) 『고준일 “기자들 자극적인 기사 좋아해” 발언 구설』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8일자 충청강원면)
신청인 주장	세종시의회가 시 감사위원회의 시의회 신청사 사전 입주를 막아 혈세 3천여만원이 추가 투입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시민혈세 낭비, 세종시의원 자존심 때문?’ 및 ‘고준일 의장 발언 구설’ 관련 정정·반론보도문』 (2017년 2월 28일자 충청강원면)
2017서울조정 171, 172	(각 정정청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對 한국일보 ⁽¹⁷¹⁾ , 인터넷 한국일보 ⁽¹⁷²⁾
조 정 대 상	『이충재 행복청장 KTX세종역 시기상조론 후폭풍』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7년 1월 17일자 충청강원 지역면, 인터넷 한국일보 2017년 1월 6일자 대전충청강원면)
신청인 주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KTX 세종역 설치가 시기상조이며 설치를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7서울조정 173·174	(정정·손배청구) 최○○ 對 가평신문
조 정 대 상	『단체의 장들이나 리장은 공익의 우선을 두어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5일자 사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역 겨울 축제 주최 측에게 수천만 원을 동네기금으로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

<p>2017서울조정 175·176</p>	<p>(정정·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비마이너</p>
<p>조 정 대 상</p>	<p>『○○○에서 또 사고… 거주 장애인, 머리 다쳐 뇌수술』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3일자 장애일반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 낙상사고를 은폐 축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보도게재)</p>
<p>이 행 결 과</p>	<p>『○○○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7일자 초기화면)</p>
<p>2017서울조정 177~181</p>	<p>(각 정정청구) 장○○ 외 2인 對 인터넷 서울경제⁽¹⁷⁷⁾, 인터넷 신아일보⁽¹⁷⁸⁾, 아시아투데이닷컴⁽¹⁷⁹⁾, MBC-TV⁽¹⁸⁰⁾, iMBC⁽¹⁸¹⁾</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서울경제 : 『문경시 ○○○장터 ○○빵과 ○○○빵 관광객에 인기』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전국면) • 인터넷 신아일보 : 『“문경 가은○○○빵·○○○빵을 아시나요?”』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대구경북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문경시, 특별함을 담은 관광 먹거리 개발』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일반사회면) • MBC-TV : 『지역의 명물 ‘이색빵’ 유명세, 관광객 유치‘효자’』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11월 29일자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iMBC 2016년 11월 29일자 뉴스투데이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들이 개발한 빵 브랜드를 문경 상인들이 개발한 것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인터넷 서울경제/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MBC-TV, iMBC/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 각 취하 (인터넷 신아일보, 아시아투데이닷컴/사유 : 보도게재)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서울경제 : 『문경 ○○빵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7일자 사회일반면) • 인터넷 신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6일자 대구경북면) • 아시아경제닷컴 : 『문경 ○○빵 출처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일자 교육행정면) • iMBC : 『문경 ○○빵 출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7일자 뉴스 홈페이지 <게시판> 초기화면)

2017서울조정 186~190	(각 정정청구) (주)○○○○○○○ 對 뉴스1코리아 ⁽¹⁸⁶⁾ , 인터넷 이데일리 ⁽¹⁸⁷⁾ , 전자신문 인터넷 ⁽¹⁸⁸⁾ , 아이뉴스24(inews24) ⁽¹⁸⁹⁾ , 비즈엔터 ⁽¹⁹⁰⁾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코리아 : 『○○라디오, 멜론 상대 법적대응 벤처죽이기 막겠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9일자 연예음악면) • 인터넷 이데일리 : 『로엔 또 갑질? ... ○○라디오 “벤처죽이기 법적 대응”』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9일자 IT/인터넷면) • 전자신문 인터넷 : 『○○라디오 멜론에 강력 반발...“경쟁 사업자 출현 막겠다는 발상”』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9일자 엔터온뉴스면) • 아이뉴스24(inews24) : 『○○라디오, 멜론 상대 법적 대응...“벤처 죽이기” 주장』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9일자 연예스포츠/가요팝면) • 비즈엔터 : 『○○라디오, 로엔에 법적 대응 검토 “공정거래법 위반”』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9일자 어라운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한국음반산업협회를 압박하여 온라인 음악서비스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인터넷 이데일리/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뉴스1코리아, 전자신문 인터넷, 아이뉴스24(inews24), 비즈엔터/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코리아 : 『[○○라디오, 멜론 상대 법적대응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6일자 연예면) • 인터넷 이데일리 : 『[(주)○○○○○○○, 벤처기업 시장 진입 방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5일자 IT·과학면) • 전자신문 인터넷 : 『[정정보도문] ‘○○라디오, 멜론에 강력 반발 ... 경쟁 사업자 출현 막겠다는 발상’ 관련 정정 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6일자 엔터온뉴스면) • 아이뉴스24(inews24) : 『○○라디오, 멜론 상대 법적 대응 ...“벤처 죽이기” 주장』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6일자 가요팝면) • 비즈엔터 : 『○○○○○○○, 음산협 압박설 ‘사실 무근’』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6일자 어라운드면)

2017서울조정 191, 192	(각 정정청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외 1인 對 TV조선 ⁽¹⁹¹⁾ , 인터넷 TV조선 ⁽¹⁹²⁾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조선 : 『이대에 특혜 주려 심사에 개입』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15일자 뉴스 판 프로그램) • 인터넷 TV조선 : 『[단독] 이대 평생교육 단과대 선정...“평생교육진흥원장이 부당하게 밀어”』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평생교육 단과대학 선정 과정에서 특정 대학을 돕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 단과대학 선정 부당개입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TV조선 2017년 3월 2일자 전체면)
2017서울조정 193	(정정·손배청구) 국민의당 對 JTBC
조 정 대 상	『탄핵안 초안 개요』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29일자 JTBC뉴스현장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국민의당이 작성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제3자 뇌물죄, 세월호 7시간이 제외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7서울조정 232·233	(정정·손배청구) 민경욱 對 인터넷 JTBC
조 정 대 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5탄, 7시간 또 다른 팩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7일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 세월호 사고 브리핑 도중 웃는 장면을 악의적으로 편집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234	(반론청구) (사)○○○○○○○○협의회 對 인터넷 매일일보
조 정 대 상	『인천송도, ○○○ 선교회단체 건설위원회 발기해 공기업 협박』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2일자 전국면(인천·경기))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의회가 인천송도지역 공사업체들에게 하청을 달라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보도, 부제소)

2017서울조정 235·236, 1751~1756	(각 정정·손배청구) ○○산업(주) 對 투데이신문 ^(235·236) , CBS-R ^(1751·1752) , CBSi ^(1753·1754) , 노컷뉴스 ^(1755·1756)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데이신문 : 『[박지수 기자의 문제적 경제③] “뭘 믿고 공익제보 하겠나… 현실 답답”』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2일자 경제일반면) • CBS-R : 『“씩은 밀가루”에 고작 벌금 천만원?』 제하의 보도 (2017년 9월 18일자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 CBSi : 『“씩은 밀가루”에 고작 벌금 천만원?』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9일자 김현정의 뉴스쇼면) • 노컷뉴스 : 『“씩은 밀가루”에 고작 벌금 천만원? 내부고발 후회돼』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9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썩은 밀가루로 소맥전분을 만들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CBS-R, CBSi, 노컷뉴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취하 (투데이신문/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Si : 『[“씩은 밀가루” 소맥전분 회사, 솜방망이 처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7일자 공지사항 게시판) • 노컷뉴스 : 『“씩은 밀가루” 소맥전분 회사, 솜방망이 처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6일자 사회일반면)
2017서울조정 237·238	(정정·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미디어스
조정대상	『KBS·MBC 보도, 여전히 박근혜 확성기』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3일자 미디어뉴스면)
신청인 주장	KBS 뉴스가 박대통령 편들기 보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KBS·MBC 보도, 여전히 박근혜 확성기”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0일자 미디어뉴스면)

<p>2017서울조정 239, 240</p>	<p>(각 정정청구) 안철수 對 채널A⁽²³⁹⁾, 인터넷 채널A⁽²⁴⁰⁾</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널A : (1) 『[채널A단독] 安 대선지도에 국민경선 없다』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25일자 종합뉴스 프로그램) (2) 『호남 꺼안고, 원년멤버 쳐내고… 安, 캠프 구성』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25일자 종합뉴스 프로그램) 인터넷 채널A : (1) 『[채널A단독] 安 대선지도에 국민경선 없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5일자 뉴스면) (2) 인터넷 채널A : 『호남 끌어안고, 반대파 쳐내고… 安, 캠프 구성』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5일자 뉴스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국민경선을 배제한 대선 전략 문건을 갖고 있고 캠프구성에 5년 전 총선 당시 멤버를 제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p>
<p>이 행 결 과</p>	<p>『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채널A 2017년 2월 24일자 아침뉴스 프로그램, 인터넷 채널A 2017년 2월 24일자 뉴스면)</p>
<p>2017서울조정 241, 242</p>	<p>(각 정정청구) 교육부 對 JTBC⁽²⁴¹⁾, 인터넷 JTBC⁽²⁴²⁾</p>
<p>조 정 대 상</p>	<p>『검정교과서 제작 놓고 “이상한 거래” 시도』 제하의 보도 (JTBC 2017년 1월 13일자 뉴스룸 프로그램, 인터넷 JTBC 2017년 1월 13일자 뉴스면)</p>
<p>신청인 주장</p>	<p>교육부가 출판사 대표들로부터 검정 역사교과서 심사 수수료를 대신 부담토록 요구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검정교과서 제작 놓고 '이상한 거래'시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JTBC 2017년 3월 22일자 사회면)</p>
<p>2017서울조정 243</p>	<p>(정정청구) (주)○○○ 對 한겨레</p>
<p>조 정 대 상</p>	<p>『○○, 협력업체 일감을 자회사로… 왜?』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3일자 19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회사가 협력업체에 주던 공사물량을 자회사로 몰아줘 현 회장의 연임용 치적 쌓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7일자 경제면)</p>

2017서울조정 244	(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월간중앙
조 정 대 상	『“몇 시간만 앉아 있으면 30만원 준다더라”』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7일자 140~141면)
신청인 주장	맞선 아르바이트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초상을 무단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245~247	(정정·반론·손배청구) 김○○ 對 비마이너
조 정 대 상	(1) 『성희롱으로 사퇴했던 가해자, ○○○협회 지회장으로 ‘화려한 복귀’?』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9일자 사회면) (2) 『서울○○○협회 성북구 총회, 회원들 반발로 결국 무산』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신청인의 성희롱사건 전력과 단독 출마 부정의혹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성희롱으로 사퇴했던 가해자, ○○○협회 지회장으로 ‘화려한 복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6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248	(반론청구) 정○○ 對 비마이너
조 정 대 상	『성희롱으로 사퇴했던 가해자, ○○○협회 지회장으로 ‘화려한 복귀’?』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성희롱 전력을 두둔하고 당선을 돕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성희롱으로 사퇴했던 가해자, ○○○협회 지회장으로 ‘화려한 복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6일자 사회면)

<p>2017서울조정 249</p>	<p>(정정청구) 평창경찰서 對 민중언론 참세상</p>
<p>조 정 대 상</p>	<p>『평창 운수노동자, ‘박근혜’ 같은 평창군수 규탄』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3일자 뉴스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경찰서 소속 경찰이 평창군 버스노조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여조합원을 성추행하고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평창 운수노동자, ‘박근혜’ 같은 평창군수 규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9일자 노동면)</p>
<p>2017서울조정 250, 395, 497, 945, 947</p>	<p>(정정청구) (사)○○○○○○○○ 對 아이굿뉴스⁽³⁹⁵⁾ (각 반론청구) 인터넷 국민일보⁽²⁵⁰⁾, 뉴스앤조이^(497, 947), 교회와 신앙⁽⁹⁴⁵⁾</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국민일보 :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진솔한 간증을 보고 부활 예수님 영접 ... 구원과 교회서 벗어나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2일자 시사면) • 아이굿뉴스 : 『“캠퍼스 내 동아리, 가입 전 꼭 확인하세요”』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4일자 단체/연합면) • 뉴스앤조이 : (1) 『“○○○ 경계하라” 현수막 달았다 고소당한 송실대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7일자 사회면) (2) 『“종교의자유’ 이유로 이단·사이비 방치해선 안 돼”』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4일자 문화면) • 교회와 신앙 : 『“대선 후보들이여, 사이비 종교 비리 척결하라”』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4일자 이단&이슈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교단이 구원파나 이단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뉴스앤조이⁽⁴⁹⁷⁾/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아이굿뉴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 각 취하 (인터넷 국민일보, 교회와 신앙/사유 : 기사수정) • 취하 (뉴스앤조이⁽⁹⁴⁷⁾/사유 : 당사자 간 화해)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국민일보 :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진솔한 간증을 보고 부활 예수님 영접 ... 구원과 교회서 벗어나다』 제하의 기사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7년 2월 10일자 교계뉴스면) • 아이굿뉴스 : 『[캠퍼스 내 동아리, 가입 전 꼭 확인하세요 보도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7일자 교계종합면) • 뉴스앤조이⁽⁴⁹⁷⁾ :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0일자 교회면) • 교회와 신앙 : 『“대선 후보들이여, 사이비 종교 비리 척결하라”』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추가 기재 (2017년 4월 24일자 이단&이슈면)

2017서울조정 251, 252	(각 손해청구) 임○○ 對 KBS-1TV ⁽²⁴¹⁾ , KBS미디어 ⁽²⁴²⁾
조 정 대 상	『출근길 반짝 추위...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 제하의 보도 (KBS-TV 2017년 2월 2일자 뉴스광장 프로그램, KBS미디어 2017년 2월 2일자 뉴스광장면)
신청인 주장	기상보도에서 출근길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촬영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253, 254	(각 반론청구) (주)○○○○○○○○○○ ⁽²⁵³⁾ , 변○○ ⁽²⁵⁴⁾ 對 JTBC
조 정 대 상	『JTBC, 변○○ 등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26일자 뉴스룸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제기한 신청인을 피신청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255·256	(정정·반론청구) 엄○○ 對 인터넷 크리스찬연합신문
조 정 대 상	(1) 『사단법인 ○○○ 회원총회서 정관개정안 통과』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뉴스면) (2) 『사단법인 ○○○, 아픈만큼 성숙한 2016』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3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법리도 모른 채 ○○○○○○○○○○○연합회 총회 진행을 방해하는 소란을 피웠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반론만으로 피해구제가 어려워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음)

2017서울조정 257·258	(각 손해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한겨레21 ⁽²⁵⁷⁾ , 인터넷 한겨레21 ⁽²⁵⁸⁾
조 정 대 상	『배제와 혐오에 갇힌 정치』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7년 1월 23일자 14면, 인터넷 한겨레21 2017년 1월 23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KBS를 ‘박근혜 정권의 시녀’라고 모욕적으로 표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유감표명, 부제소)

<p>2017서울조정 260, 261</p>	<p>(각 정정청구) 인명진 對 인터넷 문화일보⁽³⁹⁵⁾, 온라인 중앙일보⁽³⁹⁵⁾</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문화일보 : 『“親朴, 태극기 집회 참석 말라” 인명진, 조원진·윤상현 경고』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6일자 정치면) • 온라인 중앙일보 : (1) 『인명진 “태극기 집회 참석 말라” 친박 조원진·윤상현 경고』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6일자 정치면) (2) 『인명진 경고에도 ...“김문수 태극기 집회 계속 나가겠다”』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6일자 정치면)
<p>신청인 주장</p>	<p>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인 신청인이 박대통령 탄핵반대집회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경고하고 차후 불참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인터넷 문화일보/사유 : 당사자 간 화해, 온라인 중앙일보/사유 : 보도계재)</p>
<p>이 행 결 과</p>	<p>온라인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인명진 경고에도... 김문수 “태극기 집회 계속 나가겠다”> 관련』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9일자 정치면)</p>
<p>2017서울조정 262·263</p>	<p>(정정·손배청구) (주)○○ 외 1인 對 인터넷 미디어워치</p>
<p>조 정 대 상</p>	<p>『[특검의실체] 조폭과 호형호제 양○○ 특검보, ‘범죄수익금’ 수수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6일자 정치/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회사 대표가 범죄수익금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불성립결정</p>
<p>2017서울조정 264</p>	<p>(정정청구) 한국감정원 외 1인 對 동아닷컴</p>
<p>조 정 대 상</p>	<p>『[단독]“넌, 中부자가 좋아할 타입”... 서○○ 한국감정원장, 여직원 성희롱』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7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한국감정원장이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자진취하)</p>

2017서울조정 265, 266	(각 정정청구) ○○○ 노동조합 對 머니투데이 ⁽²⁶⁵⁾ , e머니투데이 ⁽²⁶⁶⁾
조 정 대 상	『○○○○, 생산직 인사제도 손질... 직급연한 늘리고 자동승급 폐지』 제하의 기사 (머니투데이 2017년 1월 26일자 경제면, e머니투데이 2017년 1월 26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의 생산직 근로자 자동진급제도가 폐지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정정 문구에 만족할 수 없음)
2017서울조정 267	(정정청구) ○○○○○(주) 對 MBC-TV
조 정 대 상	『가짜를 팔아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31일자 PD수첩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허위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해 불법 홍보를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268~271, 302~309	(각 정정·손배청구) 정○○ 對 한국일보 ⁽²⁶⁸⁻²⁶⁹⁾ , 아시아경제닷컴 ⁽²⁷⁰⁻²⁷¹⁾ , 네이버 ⁽³⁰²⁻³⁰⁵⁾ , 다음 ⁽³⁰⁶⁻³⁰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일보 : (1) 『“원장 甲질 더 이상 못 참겠다” 들끓는 광주○○○○○○원 노조』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6년 12월 12일자 16D면, 네이버, 다음 2016년 12월 11일자 사회면) (2) 『“CCTV로 직원 감시” 논란』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7년 12월 13일자 14D면, 네이버, 다음 2016년 12월 12일자 사회면) (3) 『“이번엔 내부 고발자 색출”... 끝없는 갑질』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7년 12월 14일자 14D면, 네이버, 다음 2016년 12월 13일자 사회면) (4) 『광주○○○○○○원장 집무실서 CCTV 원격 조회?』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7년 12월 15일자 14D면, 네이버, 다음 2016년 12월 14일자 사회면) • 아시아경제닷컴 : (1) 『빨난 노조 “정○○ 원장 ‘전횡’ 밝혀 달라 ... 진정서

	<p>제출”』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닷컴 2016년 12월 9일자 사회면, 네이버, 다음 2016년 12월 9일자 사회면)</p> <p>(2) 『○○○○○○원, 도덕성 곤두박질』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닷컴 2016년 12월 12일자 사회면, 네이버, 다음 2016년 12월 12일자 사회면)</p> <p>(3) 『비위행위 담긴 문건 유출하지만 … 직원감시용 ‘CCTV 설치’ 논란』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닷컴 2016년 12월 13일자 사회면, 네이버, 다음 2016년 12월 13일자 사회면)</p> <p>(4) 『공익제보 누가 어떻게 가담했나?... ‘실문조사’ 파문』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닷컴 2016년 12월 14일자 사회면, 네이버, 다음 2016년 12월 14일자 사회면)</p> <p>(5) 『광주경찰청 “○○○○○○원, 납품비리 등 조사 착수”』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닷컴 2016년 12월 20일자 사회면, 네이버, 다음 2016년 12월 20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광주○○○○○○원장 재직 시 부당인사, 직원감시,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등 전횡을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불성립결정 (한국일보, 아시아경제닷컴) • 각 취하 (네이버, 다음/사유 : 자진취하)
<p>2017서울조정 272 (정정청구) (주)○○○○○○○ 對 프레시안</p>	
<p>조정 대상</p>	<p>『부산 해운대구, 지역민 수백 명 소유 호텔‘업자 영업권 비호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일자 뉴스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회사가 부적법하게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리 결과</p>	<p>조정불성립결정</p>

2017서울조정 273	(정정청구) 이천십사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對 인터넷 내일신문
조 정 대 상	『주 1~2회 출근 퇴직관료(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 청산인)에 기사·비서 제공』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대회 종료 2년이 지나도록 고의로 청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계재)
이 행 결 과	『‘인천아시안게임 청산’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9일자 지방자치면)
2017서울조정 274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이데일리
조 정 대 상	『[기자수첩] 국정교과서 오류 … 남 탓만 하는 교육부』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7일자 기자수첩면)
신청인 주장	2013년 검정 한국사교과서 수정보완사항의 61%가 신청인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발견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7서울조정 275, 276	(각 정정청구) 군포시 對 MBN ⁽²⁷⁵⁾ , 인터넷 MBN ⁽²⁷⁶⁾
조 정 대 상	(1) 『[단독]“체육계 남고 싶으면 사퇴해”… 민간 사업자 협박한 지자체』 제하의 보도 (MBN 2017년 2월 6일자 뉴스 8 프로그램, 인터넷 MBN 2017년 2월 6일자 사회면 및 다시보기면) (2) 『[단독]“체육계 남고 싶으면 사퇴해”… 민간 사업자 협박한 지자체』 제하의 보도 (MBN 2017년 2월 7일자 굿모닝 MBN 프로그램, 인터넷 MBN 2017년 2월 7일자 사회면 및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군포시가 민간법인 소유 지역스포츠클럽 운영권을 가로채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p>2017서울조정 277</p>	<p>(정정청구) 방송통신위원회 對 뉴스타파</p>
<p>조 정 대 상</p>	<p>『방통위, 국고로 가야할 100억 원대 위법 경품 과징금 덮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7일자 최신뉴스면)</p>
<p>신청인 주장</p>	<p>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업자의 부당경품 제공사실을 알고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보도가 진실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p>
<p>2017서울조정 278·279</p>	<p>(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문화일보</p>
<p>조 정 대 상</p>	<p>『경기도교육청, J고 수련회 업체·자녀 청탁 거절 교사 감사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성희롱을 당할 정황이 없었는데도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억지 주장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J고 감사 시 성희롱 발언 사실’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4일자 사회면)</p>
<p>2017서울조정 280</p>	<p>(정정청구) ○○○○○○교회 對 크로스뉴스</p>
<p>조 정 대 상</p>	<p>『○○○○○○교회 인사이드 놓고 의혹 일어』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9일자 교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교회가 특정 세력의 주도 하에 좌천 인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불성립결정</p>

<p>2017서울조정 281~295, 373</p>	<p>(각 추후청구) (주)○○○○○○○ 對 나눔뉴스⁽²⁸¹⁾, 서울시정일보⁽²⁸²⁾, 아웃도어뉴스(Outdoornews)⁽²⁸³⁾, 에코저널⁽²⁸⁴⁾, 에코타임스⁽²⁸⁵⁾, 환경방송⁽²⁸⁶⁾, 인터넷 내일신문⁽²⁸⁷⁾, e머니투데이⁽²⁸⁸⁾, 인터넷 아시아일보⁽²⁸⁹⁾, 인터넷 주간현대⁽²⁹⁰⁾, 인터넷 한성일보⁽²⁹¹⁾, 인터넷 환경매일신문⁽²⁹²⁾, 인터넷 환경법률신문⁽²⁹³⁾, 내외경제TV⁽²⁹⁴⁾, 뉴스1코리아⁽²⁹⁵⁾, 인터넷 에너지데일리⁽³⁷³⁾</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뉴스 : 『한강청, 폐수 유량계 조작업체 43곳 적발』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6일자 환경면) • 서울시정일보 : 『한강청, 폐수 유량계 조작업체 43곳 적발』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6일자 사회면) • 아웃도어뉴스(Outdoornews) : 『한강청, 폐수 유량계 조작업체 43곳 적발』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News면) • 에코저널 : 『수도권 일대 폐수 유량계 조작업체 43곳 적발』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종합뉴스면) • 에코타임스 : 『폐수 유량계 조작업체 43곳에 ‘철퇴’』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뉴스-물면) • 환경방송 : 『한강청, 폐수 유량계 조작업체 42곳 적발』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환경뉴스면) • 인터넷 내일신문 : 『한강에 폐수 불법배출 업체 적발』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6일자 환경면) 외 9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회사가 불법으로 폐수를 방류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나눔뉴스, 서울시정일보, 아웃도어뉴스(Outdoornews), 인터넷 주간현대, 인터넷 한성일보, 내외경제TV/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에코저널, 에코타임스, 환경방송, 인터넷 내일신문, e머니투데이, 인터넷 아시아일보/사유 : 기사수정, 인터넷 환경매일신문/사유 : 자진취하)</p>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저널 : 『수도권 일대 폐수 유량계 조작업체 43곳 적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부분 삭제 (2017년 2월 14일자 종합뉴스면) • 에코타임스 : 『폐수 유량계 조작업체 43곳에 ‘철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부분 삭제 (2017년 2월 16일자 뉴스-물면) • 환경방송 : 『한강청, 폐수 유량계 조작업체 42곳 적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부분 삭제 (2017년 2월 16일자 환경뉴스면) • 인터넷 내일신문 : 『한강에 폐수 불법배출 업체 적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부분 삭제 (2017년 2월 14일자 환경면) • e머니투데이 : 『수도권 공장 44.3%가 폐수배출 조작』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부분 삭제 (2017년 2월 14일자 정책면) • 인터넷 아시아일보 : 『한강청, 폐수 조작업체 43곳 적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부분 삭제 (2017년 2월 14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296·297		(정정·반론청구) ○○○문화원 對 세계일보
조 정 대 상	『○○○○○개발원 국비보조금 유용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4일자 13A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전신인 ○○○○○개발원이 국고보조금을 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개발원 위탁사업비 유용 의혹』 제하의 기사로 제목 및 내용 수정(2017년 3월 2일자 전국면)	
2017서울조정 298~301		(각 정정·손배청구) 이○○ 외 3인 對 KBS-1TV ^(298·299) , SBS-TV ^(300·301)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학교폭력 숨방망이 교육청 재심에 피해자는 불안』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7일자 KBS뉴스9 프로그램) • SBS-TV :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학교폭력 피해자의 눈물』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7일자 SBS 8시뉴스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교육청이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감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310·311		(정정·손배청구) 이○○ 對 KBS-1TV
조 정 대 상	『불안한 산후조리원』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6일자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건강이상 유무도 확인하지 않은 무자격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A 산후조리원 무자격자 채용'관련 반론보도문 >』 제하의 기사 (KBS미디어 2017년 3월 20일자 알려드립니다 게시판)	

2017서울조정 312·313	(정정·손배청구) 차○○ 對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엘시티 비리 혐의 차○○ ○○신문 사장 자택 압수수색... 4000만원 받은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부산 엘시티사업자에게 법인카드를 받아서 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서울조정 314	(정정청구) (주)○○컴퓨터 對 인터넷 아이러브PC방
조 정 대 상	『키보드 이어 모니터 불량 이슈 터진 ○○컴퓨터』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6일자 컴퓨팅카테고리 메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한 컴퓨터 키보드와 모니터에 불량이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보도로 인한 피해가 커 결정 내용에 만족할 수 없음)
2017서울조정 315	(반론청구) 인명진 對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인명진, 박대통령 대면조사에“죄인도 인권 지켜줘야”』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0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특별검사팀의 박대통령 대면조사를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서울조정 316	(정정청구) 인명진 對 인터넷 뉴스토마토
조 정 대 상	『현장 외면 인명진, 특별한 이유있나』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4일자 정치/정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현장과 민심은 외면한 채 당내 권력 장악에만 몰두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현장 외면 인명진, 특별한 이유 있나’』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9일자 정치/정책면)

<p>2017서울조정 317·318</p>	<p>(정정·손배청구) 이○○ 對 MBC-TV</p>
<p>조 정 대 상</p>	<p>『내 아내가 결혼했다?, 여교사의 두 얼굴』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7일자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이혼 경력을 숨기고 결혼 후 시부모의 돈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불성립결정</p>
<p>2017서울조정 319·320</p>	<p>(정정·손배청구) 박○○ 외 4인 對 인터넷 스포츠서울</p>
<p>조 정 대 상</p>	<p>『수영연맹 “몰카 사건 가담자, 책임 엄중히 묻겠다”』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9일자 스포츠면)</p>
<p>신청인 주장</p>	<p>국가대표 수영 코치진인 신청인들이 선수촌 여자탈의실의 몰래카메라 촬영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보도게재)</p>
<p>이 행 결 과</p>	<p>『[정정보도문] 수영연맹 “몰카 사건 가담자, 책임 엄중히 묻겠다” 관련』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6일자 스포츠면)</p>
<p>2017서울조정 321</p>	<p>(정정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對 인터넷 매일일보</p>
<p>조 정 대 상</p>	<p>(1) 『공주시 월송지구 (주)○○ APT 현장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5일자 세종·충청면) (2)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시공사 ○○와 4200여만원 뒷거래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7일자 세종·충청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아파트건설현장에 인접한 토지를 건설사에 무상임대하고도 임대료를 수수하는 불법을 저지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공주월송지구 (주)○○ APT현장 불법거래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2일자 전국면)</p>

2017서울조정 322	(정정청구) 엄○○ 對 바른민음
조 정 대 상	『교육청 징계 엄○○ 교사는 사이버 부활복음 선교사』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4일자 주의인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을 사이버 이단 선교사라고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323, 349	(각 정정청구) 김○○ 對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³²³⁾ , 월간조선 ⁽³⁴⁹⁾
조 정 대 상	『교회목사 비리 은폐·뇌물수수, 검경·청와대까지 연루의혹 / 검찰, 수원지검 현직 검사·경찰관·수사관 10명 대대적으로 조사』 제하의 기사 (월간조선 2016년 8월 1일자 179~185면,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2016년 8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담임목사로 부임한 후 신도 수가 감소하고 교회부채가 증가하는 등 목회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하 (월간조선 뉴스서비스/사유 : 자진취하) • 각하 (월간조선/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7서울조정 324~328	(각 정정청구) 이○○ 對 MBC-TV ⁽³²⁴⁾ , iMBC ⁽³²⁵⁾ , 인터넷 서울경제 ⁽³²⁶⁾ , 넥스트 데일리 ⁽³²⁷⁾ , 서울교육방송 ⁽³²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이슈투데이] 예뻐지려다‘낭패’컬러 렌즈·미용 시술 부작용 따져봐야』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11월 17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iMBC 2016년 11월 18일자 뉴스투데이 다시보기면) • 인터넷 서울경제 : 『‘○○○○ 컬러렌즈’회수 조치… 각막염 등 우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기업면) • 넥스트데일리 : 『‘멋 부리려다 눈 버린다’… ○○○○·○○○○ 등 불량 ‘컬러 콘택트렌즈’ 제조사 행정처분 ‘철폐’』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유통면) • 서울교육방송 : 『○○○○ 컬러 콘택트렌즈 각막염 발생 우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교육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컬러콘택트렌즈가 각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MBC-TV, iMBC, 인터넷 서울경제, 넥스트데일리/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서울교육방송/사유 : 보도개제)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iMBC : 『<○○○○ 컬러렌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iMBC 2017년 3월 9일자 뉴스데스크 다시보기면) • 인터넷 서울경제 : 『○○○○ 컬러렌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4일자 기업면) • 넥스트데일리 : 『[○○○○ 컬러렌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8일자 유통면) • 서울교육방송 : 『○○○○ 컬러렌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3일자 교육뉴스면)

2017서울조정 329, 330	(각 정정청구) ○○○○○○○○○○협의회 對 KBS-1TV ⁽³²⁹⁾ , KBS미디어 ⁽³³⁰⁾
조 정 대 상	『‘같은 거리 값은 2배’... 이상한 공항버스 요금』 제하의 보도 (KBS-1TV 2017년 2월 12일자 KBS 뉴스9 프로그램, KBS미디어 2017년 2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서울공항버스와 일반버스의 요금이 다른 것이 면허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같은 거리 값은 2배’... 이상한 공항버스 요금』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KBS미디어 2017년 3월 23일자 다시보기면)

2017서울조정 331	(정정청구) (주)○○ 對 포커스뉴스(focus news)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적장애인 부부에게 ○○○○○○가 이럴 수 있습니까”』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8일자 사회면) (2) 『지적장애인 요금폭탄 물의, ○○○○○○‘도덕적 논란’ 확산』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8일자 사회면) (3) 『장애인 부부 요금폭탄 ○○○○○○, “배상약속 없던 일로”』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휴대폰 대리점이 장애인 부부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가입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332	(손배청구) 박○○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그룹”박○○ 대표, ○○대 퇴학 가처분 신청‘기각’』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선고 연기됐는데도 기각됐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간주
2017서울조정 333~338	(각 반론청구) 최○○ 對 메디게이트뉴스 ⁽³³³⁾ , 헬스코리아뉴스 ⁽³³⁴⁾ , 시사메디in ⁽³³⁵⁾ , 이엠디(eMD) ⁽³³⁶⁾ , 메디칼통신 ⁽³³⁷⁾ , 메디팜스투데이 ⁽³³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디게이트뉴스 : 『박근혜 정부를 움직인 의사·한의사』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9일자 의사/진료면) • 헬스코리아뉴스 :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기고면) • 시사메디in : 『[기고]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1일자 칼럼면) • 이엠디(eMD) :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9일자 칼럼면) • 메디칼통신 :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1일자 의료/간호면) • 메디팜스투데이 :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사설칼럼·기자수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허가를 관철시키고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하는 등 한의사계 비선실세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메디게이트뉴스, 헬스코리아뉴스, 이엠디(eMD), 메디칼통신, 메디팜스투데이/사유 : 보도계재, 시사메디in/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디게이트뉴스 : 『[박근혜 정부를 움직인 의사·한의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3일자 의사/진료면) • 헬스코리아뉴스 : 『한의학계 스스로 현대화하려는 노력에 악의적으로 발 걸지 말아야』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4일자 기고면) • 이엠디(eMD) :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0일자 칼럼면) • 메디칼통신 :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3일자 의료/간호면) • 메디팜스투데이 :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1일자 오피니언면)

<p>2017서울조정 339, 340</p>	<p>(각 반론청구) (사)○○○○○협회 對 MBN⁽³³⁹⁾, 인터넷 MBN⁽³⁴⁰⁾</p>
<p>조 정 대 상</p>	<p>(1) 『[단독] 못 믿을 ‘아토피 안심마크’』 제하의 보도 (MBN 2017년 2월 14일자 MBN뉴스8 프로그램, 인터넷 MBN 2017년 2월 14일자 사회 및 다시보기면) (2) 『[단독] 못 믿을 ‘아토피 안심마크’』 제하의 보도 (MBN 2017년 2월 15일자 MBN뉴스8 프로그램, 인터넷 MBN 2017년 2월 15일자 사회 및 다시보기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협회가 추천하는 아토피 안심마크가 부착된 제품의 관련 질환 예방과 개선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p>
<p>2017서울조정 341·342</p>	<p>(정정·손배청구)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정정)과 외 2인^(손배) 對 KBS-1TV</p>
<p>조 정 대 상</p>	<p>『‘같은 거리, 가격은 두 배’... 이상한 공항버스 요금』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2일자 KBS 뉴스9 프로그램)</p>
<p>신청인 주장</p>	<p>타시도가 인천공항 운행버스의 면허형태를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것과 달리 서울시만 17년째 한정면허를 고집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하 (정정청구/사유 : 당사자 능력 없음) • 기각 (손배청구/사유 :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 부정)
<p>2017서울조정 343·344</p>	<p>(정정·손배청구) (주)○○○ 對 인터넷 국민일보</p>
<p>조 정 대 상</p>	<p>(1) 『[단독] 청와대 출입 ‘기치료 아줌마’가 쓴 단전돌은 이단·사이비 관련 제품』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4일자 시사면) (2) 『청와대 출입 ‘기치료 아줌마’ 오모씨가 사용한‘단전돌’, 이단·사이비 관련 제품』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4일자 미션라이프면) (3) 『[단독] 청와대 출입 ‘기치료 아줌마’가 쓴 단전돌은 이단·사이비 관련 제품』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4일자 시사면) (4) 『청와대 출입 ‘기치료 아줌마’ 오모씨가 사용한 ‘단전돌’ 이단·사이비 관련 제품』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4일자 미션라이프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1) 『[단독] 청와대 출입 ‘기치료 아줌마’가 쓴 단전돌은?’』 제하의 기사로 제목 및 내용 수정 (2017년 3월 2일자 시사면) (2) 『청와대 출입 ‘기치료 아줌마’오모씨가 사용한‘단전돌’은?’』 제하의 기사 로 제목 및 내용 수정 (2017년 3월 2일자 미션라이프면) (3) 『[단독] 청와대 출입 ‘기치료 아줌마’가 쓴 단전돌은?’』 제하의 기사로 제목 및 내용 수정 (2017년 3월 2일자 시사면) (4) 『청와대 출입 ‘기치료 아줌마’오모씨가 사용한‘단전돌’은?’』 제하의 기사로 제목 및 내용 수정 (2017년 3월 2일자 미션라이프면)

2017서울조정 345, 346	(각 정정청구) (사) ○○○○○협회 對 머니투데이 ⁽³⁴⁵⁾ , e머니투데이 ⁽³⁴⁶⁾
조 정 대 상	(1) 『교통사고로 허리 삐끗, 171회 한방치료 ... 차 보험료 인상 요인』 제하의 기사 (머니투데이 2017년 1월 31일자 기획면, e머니투데이 2017년 2월 8일자 금융면) (2) 『벌의 독으로 만든 주사제, 양방선 15번, 한방선 150번..이유는?』 제하의 기사 (머니투데이 2017년 1월 31일자 기획/특집면, e머니투데이 2017년 2월 8일자 금융면)
신청인 주장	한방치료가 진료기준과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과잉진료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보도개제)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머니투데이 2017년 3월 10일자 10면, e머니투데이 2017년 3월 9일자 경제면)

2017서울조정 347·348	(정정·손배청구) 추○○ 對 인터넷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1) 『[단독] 국정원 3인방, 靑 업고 인사권 무기로 전횡』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5일자 정치면) (2) 『[단독]“진급 힘들다”내부 평가 있었던 조현천, 국정원 추 前국장과 독대 후 기무사령관에』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3일자 전체기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국가정보원 국장 재직 시 주요 인사권을 장악하고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과 긴밀한 관계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350		(정정청구) 김○○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1세대 아이돌 김모씨 부친 사망 틈 타 재산 빼돌려?』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3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부친이 사망하자 재산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1세대 아이돌 김모씨 부친 사망 틈 타 재산 빼돌려?”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3일자 초기화면 및 사회면)	
2017서울조정 351·352		(정정·손배청구) (사) ○○○○○ 對 SBS-TV
조 정 대 상	『○○○○ ○가 “뺏다방” 행사』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19일자 SBS 뉴스8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끼워 파는 무료공연을 주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뺏다방 운영”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SBS아이엔엠 2017년 3월 22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353		(정정청구) 의정부시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의정부시, 도 넘은 경전철 파산 책임 전가 ‘눈살’』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의정부시에게 경전철 파산 책임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의정부시, 도 넘은 경전철 파산 책임 전가 ‘눈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5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354	(정정청구) 정○○ 對 인터넷 르몽드 디플로마티크(LeMonde Diplomatique)
조 정 대 상	(1) 『대기업 임원, 술 취해 장애인 폭행 논란…“기억 안 난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6일자 산업면) (2) 『대기업 임원 장애인 폭행 재논란…“쌍방폭행? 말도 안돼”』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7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대기업 임원인 신청인이 지체장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동의)
이 행 결 과	『대기업 임원, 술 취해 장애인 폭행 논란 …“기억 안 난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회사 익명 처리 (2017년 3월 21일자 산업면)
2017서울조정 355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베이비뉴스
조 정 대 상	『여성 유망직업 베이비 플래너, ‘짜퉁’업체 주의』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상품 끼워 팔기를 하는 가짜 업체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서울조정 356·357	(정정·손배청구) 오○○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인건비 아끼려고 입원 환자들에게 ‘빨래 시키고 기저귀 갈게 한’ 병원장』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정신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인건비 아끼려고 입원 환자들에게 ‘빨래 시키고 기저귀 갈게 한’ 병원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4일자 사회면)

<p>2017서울조정 358, 359</p>	<p>(각 손해청구) 김○○ 對 MBN⁽³⁵⁸⁾, 인터넷 MBN⁽³⁵⁹⁾</p>
<p>조 정 대 상</p>	<p>『입당하자마자 제명』 제하의 보도 (MBN 2017년 1월 28일자 MBN 뉴스8 프로그램, 인터넷 MBN 2017년 1월 28일자 정치 및 다시보기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막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손해배상 5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김○○‘위안부 막말’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MBN 2017년 3월 25일자 뉴스8 프로그램, 인터넷 MBN 2017년 3월 25일자 다시보기면)</p>
<p>2017서울조정 360·361</p>	<p>(정정·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한국스포츠경제</p>
<p>조 정 대 상</p>	<p>『포켓몬고 하다가 먹살 잡힌 여중생 “너같은 X 때문에 나라가...” 충격』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7일자 스포츠면)</p>
<p>신청인 주장</p>	<p>폭행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한 뒤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p>
<p>2017서울조정 362·363, 381</p>	<p>(정정·손배청구) ○○○○○○○○○○○운동본부 외 1인 對 JTBC^(362·363) (정정청구) 對 MBC-TV⁽³⁸¹⁾</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 『“목욕하면 5만원” 친박집회 ‘참가자 가격표’』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26일자 뉴스룸 프로그램) • MBC-TV : 『탄핵, 불붙은 여론 전쟁』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21일자 PD수첩 프로그램)
<p>신청인 주장</p>	<p>박대통령 탄핵반대집회를 주도하는 신청인 단체가 돈을 주고 참석자를 동원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불성립결정</p>

2017서울조정 364·365	(정정·반론청구) 정○○ 외 1인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이재명, ‘형수 욕설 유포’ 친형에 7700만 원 청구』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1 : 2012년 대선 당시 신청인이 안철수 후보 측에 불출마를 강요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신청인 2 : 이재명 성남시장이 형수에게 욕설을 한 것이 형수인 신청인이 시어머니 폭행과 관련됐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이재명, ‘형수 욕설 유포’ 친형에 7700만 원 청구”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5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368~371	(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한겨레 ^(368·369) , 인터넷 한겨레 ^(370·371)
조 정 대 상	『촛불집회에 중국 유학생 동원?...‘가짜뉴스’판친 탄핵반대 집회』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3일자 3면, 인터넷 한겨레 2017년 2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박대통령 탄핵반대집회에서 배포한 호외에 가짜뉴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372	(정정) 인명진 對 인터넷 미디어워치
조 정 대 상	『[변희재칼럼] 인명진 휘하의 0%대 햇불당 대권 주자들에게 고한다!』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21일자 정치/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박사학위논문이 표절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p>2017서울조정 374·375</p>	<p>(정정·손배청구) 강○○ 對 KBS-1TV</p>
<p>조 정 대 상</p>	<p>『스포츠 강사의 무차별 폭행』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21일자 7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p>
<p>신청인 주장</p>	<p>중학교 시간제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을 체벌한 이유가 인사를 하지 않아서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p>
<p>2017서울조정 379·380</p>	<p>(정정·손배청구) (사) ○○○○○○○○ 對 TV조선</p>
<p>조 정 대 상</p>	<p>『‘사실 왜곡’뉴스 심각 피해도 확산』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10일자 뉴스판 프로그램)</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단체의 방송 비평이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발췌해 왜곡한 가짜뉴스의 사례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p>
<p>이 행 결 과</p>	<p>『○○○○○○○○○ 관련 해명보도』 제하의 보도 (2017년 4월 15일자 뉴스판 프로그램)</p>
<p>2017서울조정 382</p>	<p>(반론) 인명진 對 인터넷 미디어워치</p>
<p>조 정 대 상</p>	<p>『인명진의 자유한국당‘햇불’로고, 김일성 봉화탑 표절?』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13일자 정치/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자유한국당의 햇불로고가 촛불집회를 찬양하는 의미이고 북한의 김일성 봉화탑을 본 뜬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자진취하)</p>

2017서울조정 383, 407, 916, 925, 946	(각 반론청구) 박○○ 對 노컷뉴스 ⁽³⁸³⁾ , 현대종교 뉴스서비스 ⁽⁴⁰⁷⁾ , 교회와신앙 ^(916, 925, 946)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새학기 앞두고 대학가 이단 활동 주의 경계해야”』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2일자 문화면) • 현대종교 뉴스서비스 : 『송실대, ○○○ 고소에 혐의없음 처분』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3일자 이단뉴스면) • 교회와신앙 : (1) 『5.18을 맞아 문재인 정부에 드리는 특별한 부탁』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8일자 오피니언면) (2) 『3년 전의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7일자 이단&이슈면) (3) 『법원, 기쁜소식 박○○ 벌금 2천만원 항소 기각』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3일자 이단&이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구원파이고 신청인 소속 교단이 사이비 집단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불성립결정 (노컷뉴스, 현대종교 뉴스서비스) • 취하 (교회와신앙/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와신앙 : (1) 『5.18을 맞아 문재인 정부에 드리는 특별한 부탁』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성명 삭제 (2017년 6월 1일자 오피니언면) (2) 『3년 전의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언급 수정 (2017년 5월 31일자 이단&이슈면) (3) 『법원, 기쁜소식 박○○ 벌금 2천만원 항소 기각』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수정 (2017년 5월 31일자 이단&이슈면)
2017서울조정 384·385	(정정·반론청구) 김○○ 對 SBS-TV
조 정 대 상	『블랙박스로 본 세상-움직이는 폭탄』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22일자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자동차추돌사고의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블랙박스로 본 세상-움직이는 폭탄」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7일자 SBS 홈페이지 모닝와이드 다시보기 페이지)

<p>2017서울조정 386·387</p>	<p>(정정·반론청구) 서울특별시 對 월간조선</p>
<p>조 정 대 상</p>	<p>『박원순 취임 이후 연이어 사고 터지고 사망자 발생해도 원인 개선 안 돼』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8일자 정치면)</p>
<p>신청인 주장</p>	<p>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인분석과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p>
<p>이 행 결 과</p>	<p>『‘서울특별시 안전사고 보도’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월간조선 2017년 4월 21일자 265면,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2017년 3월 24일자 정치면)</p>
<p>2017서울조정 388</p>	<p>(정정) 정○○ 對 인터넷 경향신문</p>
<p>조 정 대 상</p>	<p>『[커버스토리]대선판 흔드는 ‘음모의 떡밥’… 대권 대어들 ‘펼쩍’』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4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씨의 여자관계를 폭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커버스토리]대선판 흔드는 ‘음모의 떡밥’… 대권 대어들 ‘펼쩍’”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일자 사회면)</p>
<p>2017서울조정 389·390, 979·980</p>	<p>(정정·손배청구) (주)○○○○ 對 JTBC^(389·390), 인터넷 미디어오늘^(979·980)</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 『태블릿에 남은 ‘최순실 비선조직’ 흔적 … 어떤 일 했나?』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7일자 뉴스룸 프로그램)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자유한국당에 분노 삭힌 5.18 재단“행사 끝나면 보자”』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9일자 뉴스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언론사가 극우 성향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하 (JTBC/사유 : 신청기간 초과) • 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미디어오늘)

2017서울조정 391	(정정청구)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對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승객도 기사도 어리둥절... 서울 새‘택시안심귀가’』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서울시 택시안심귀가서비스가 신용카드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당사자 능력 없음)
2017서울조정 392·393	(반론·손배청구) ○○○○○○아파트 ○○○○○○○○○조합 외 1인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1) 『‘1900억대’ 재건축사업 조합장 뇌물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7일자 사회면) (2) 『[단독] 1900억대 ‘○○○○ 4차 재건축’조합장 피소』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장이 조합원들과 맞고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뇌물수수 피소 사실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취하 (반론청구/사유 : 보도계제) • 조정불성립결정 (손배청구)
이 행 결 과	『○○○○ 4차 재건축 조합장 “악의적 고소 맞대응”』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31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394	(정정청구) 자유한국당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단독]언론에 눈 부릅뜬 한국당』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6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자유한국당이 언론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언론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 표명)

2017서울조정 396	(손배청구) 최○○ 對 교회와신앙
조 정 대 상	『[집중분석 ①] 김상복 목사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6일자 교계·선교면)
신청인 주장	이슬람권의 테러 위협 방지를 위해 가명으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신청인의 실명이 공개돼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397	(정정청구) 최○○ 對 인터넷 포천뉴스
조 정 대 상	『최○○ 시장후보 사건 검찰 송치』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8일자 국회면)
신청인 주장	시장선거 예비후보인 신청인이 경찰수사 중인데도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최○○ 검찰송치’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9일자 정치면)
2017서울조정 398·399	(정정·손배청구) 고○○ 對 인터넷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경기도교육청, J고 수련회 업체·자녀 청탁 거절 교사 감사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고등학교 학부모회 총무인 신청인이 특정업체가 학생체험학습 진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청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2016년 12월 2일자 인터넷 기사 “경기도교육청, J고 수련회 업체·자녀 청탁 거절 교사 감사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5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400	(정정청구) ○○○○○수출협회 對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단독] 미국산 계란 남아도는데… 美선 시장개방 요구』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한국정부의 계란 관세율 인하를 요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개재)
이 행 결 과	『“[단독] 미국산 계란 남아도는데… 美선 시장개방 요구”관련 합의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6일자 경제면)

2017서울조정 401, 402	(각 정정청구) 국가정보원 對 SBS-TV ⁽⁴⁰¹⁾ , SBS아이앤엠 ⁽⁴⁰²⁾
조 정 대 상	『[단독]“탄핵 관련 내용 보고”… 국정원, 현재 불법 사찰 의혹』 제하의 보도 (SBS-TV 2017년 3월 4일자 8시 뉴스 프로그램, SBS아이앤엠 2017년 3월 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동향을 사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간주

2017서울조정 403·404	(정정·손배청구) 남○○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단독] 다단계, 월 13만원으로 한달에 3억원에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일자 경제일반면)
신청인 주장	다단계판매업체 최고직급자인 신청인의 실적을 폄하하고 사생활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405·406	(정정·손배청구) (주)○○○○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조 정 대 상	『[최후변론 전 마지막 집회] 어김없이 등장한 ‘가짜뉴스’... 법적 문제 없나?』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8일자 최신기사면)
신청인 주장	박대통령 탄핵반대집회에 배포된 신청인 언론사의 호위가 가짜뉴스이고 다른 신문의 등록번호를 도용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주)○○○○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2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408·409	(정정·손배청구) 이○○ 對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단독]“고소하겠다” 학생 협박까지?... 급식 위생 논란 ○○고』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급식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고 영양사의 급식비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3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410	(반론청구) (재) ○○○○재단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재단 김○○, 병원 몰려와 일본이 준 돈 받으라”』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재단 직원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예고 없이 찾아가고 일본의 위로금을 받으라고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거제)
이 행 결 과	『○○○○재단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3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411, 485~488, 630~645	(정정청구) 정○○ 對 뉴스1코리아 ⁽⁴¹¹⁾ (각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한국일보 ^(485·486) , 세계닷컴 ^(487·488, 644·645) , 인터넷 법 률신문(THE LAWTIMES) ^(630·631) , 인터넷 서울신문 ^(632·633) , 연합뉴스 ^(634·635) , 조 선닷컴 ^(636·637) , 온라인 중앙일보 ^(638·639) , 인터넷 한겨레 ^(640·641) , 쿠키뉴스 ^(642·643)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코리아 : 『“아들과 관계 끊겠다” 소송 낸 부모… 법원 “자격 안돼”』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5일자 법원경찰면) • 인터넷 한국일보 : 『반대 결혼한 아들과 절연소송… 의사 부모 이번에도 패해』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5일자 사회면) • 세계닷컴 : 『“며느리 인정 못해” 아들과 연 끊는 소송 낸 의사 부모』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5일자 사회면) • 인터넷 법률신문 : 『[판결] “부모 자식 관계 끊어달라” 소송냈지만』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6일자 법원면) • 인터넷 서울신문 : 『“아들과 연 끊겠다” 소송 낸 부모 패소』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5일자 법원경찰면) • 연합뉴스 : 『“아들과 연 끊겠다” 소송 낸 부모… 법원 “재판론 안 돼”』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5일자 최신기사면) • 조선닷컴 : 『반대하는 결혼한 아들과 부모-자식 인연 끊겠다는 소송낸 의사 부모』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5일자 사회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친자에게 폭언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벽보를 붙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인터넷 한국일보/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뉴스1코리아, 인터넷 법률신문(THE LAWTIMES), 인터넷 한겨레/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취하 (세계닷컴^(487·488), 인터넷 서울신문, 연합뉴스, 조선닷컴, 온라인 중앙일보, 쿠키뉴스/사유 : 보도게재, 세계닷컴^(644·645)/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코리아 : 『“아들과 관계 끊겠다” 소송 낸 부모… 법원 “자격 안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7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국일보 : 『반대 결혼한 아들과 절연소송… 의사 부모 이번에도 패해』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3일자 사회면) • 세계닷컴 : 『[정정보도문] ‘아들과 연 끊는 소송 낸 부모’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법률신문 : 『[판결] “부 자식 관계 끊어달라” 소송냈지만』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9일자 법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서울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3일자 법원검찰면) • 연합뉴스 : 『[“아들과 연 끊겠다” 소송 낸 부모 판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1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반론보도문]‘반대하는 결혼한 아들과 부모-자식 인연 끊겠다’는 소송낸 의사 부모’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4일자 사회면) 외 3건
--	--

2017서울조정 412·413	(정정·반론청구) 서울특별시 對 월간조선
조 정 대 상	『사고날 때마다 정부에 국비 지원 요구하는 서울시 박원순 치적쌓기엔 천문학적 자금 들어』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0일자 433~437면)
신청인 주장	서울시가 시장 치적쌓기용 사업에만 예산을 집중배정하고 노후 자동차 교체는 예산이유로 지연시킨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414	(정정청구) 자유한국당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답답한 범(凡)보수, 전방위‘기웃기웃’』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자유한국당이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경남지사와의 만남을 먼저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7서울조정 415~422, 447·448	(각 정정·손배청구) 흥○○○ 對 연합뉴스 ^(415·416) , 세계닷컴 ^(417·418) , 인터넷 서울경제 ^(419·420) , 네이버 ^(421·422) , 다음 ^(447·448)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한국인 대학생 등 2명에게 술병 휘두른 스리랑카인 검거』 제하의 기사 (연합뉴스 2017년 3월 3일자 사회면, 네이버 2017년 3월 3일자 사회면) • 세계닷컴 : 『“우릴 알잡아 본다”며 편의점서 술병 휘두른 스리랑카인, 잡고보니 불체자』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3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경제 : 『한국인 대학생 등에 술병 휘두른 스리랑카인 붙잡혀』 제하의 기사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3월 3일자 사회면, 다음 2017년 3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폭행사건 피해자인 신청인이 가해자 측에게 먼저 욕설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연합뉴스, 인터넷 서울경제, 네이버, 다음/사유 : 기사수정, 세계닷컴/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한국인 대학생 등 2명에게 술병 휘두른 스리랑카인 검거』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추가 (연합뉴스 2017년 3월 28일자 사회면, 네이버 2017년 3월 2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경제 : 『한국인 대학생 등에 술병 휘두른 스리랑카인 붙잡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추가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3월 28일자 사회면, 다음 2017년 3월 28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423~438	(각 반론청구) (주)○○○○○○○○○ 對 e머니투데이 ⁽⁴²³⁾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⁴²⁴⁾ , 포커스뉴스(focus news) ⁽⁴²⁵⁾ , 동아닷컴 ⁽⁴²⁶⁾ , 연합뉴스 ⁽⁴²⁷⁾ , 인터넷 여성신문 ⁽⁴²⁸⁾ , 한국금융 ⁽⁴²⁹⁾ , e글로벌이코노믹 ⁽⁴³⁰⁾ , 일요신문 ⁽⁴³¹⁾ , 컨슈머타임스 ⁽⁴³²⁾ , 아시아투데이닷컴 ⁽⁴³³⁾ , 쿠키뉴스 ⁽⁴³⁴⁾ , 전자신문 인터넷 ⁽⁴³⁵⁾ , 매경닷컴 ⁽⁴³⁶⁾ , 시사포커스신문 ⁽⁴³⁷⁾ , EBN ⁽⁴³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머니투데이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 소비자피해 주의보』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8일자 정책면)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 소비자피해 주의』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7일자 생활경제면) • 포커스뉴스(focus news)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 소비자 피해 ‘주의’...“계약해지 환급거부”』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7일자 경제일반면) • 동아닷컴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 소비자 피해 주의보』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7일자 비즈N면) • 연합뉴스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 소비자 피해 잇달아』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7일자 최신기사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여성신문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 소비자피해 주의』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7일자 경제면) • 한국금융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7일자 산업면) 외 9개 매체
신청인 주장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회원들의 회비환불 요구를 거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기각 (사유 : 요구하는 보도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함)

2017서울조정 439, 440	(각 정정청구) 이종걸 對 MBC-TV ⁽⁴³⁹⁾ , iMBC ⁽⁴⁴⁰⁾
조정 대상	『안전처리 ‘뒷전’ 탄핵공방은 ‘치열’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 제하의 보도 (MBC-TV 2017년 3월 3일자 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iMBC 2017년 3월 3일자 뉴스데스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취하 간주

2017서울조정 441·442	(반론·손배청구) 서○○ 외 2인 對 SBS-TV
조정 대상	『○○본사 압수수색.. 비자금 수사』 제하의 보도 (2017년 3월 3일자 8시뉴스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그룹 직원인 신청인들이 소속 스포츠단 선수들의 급여통장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 결과	『‘○○ 그룹 ○○○○○ 소속 직원 4명 비자금 수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SBS아이앤엠 2017년 4월 10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443~446, 797·798, 817·818	(각 정정·손배청구) (사) ○○○○○연합 對 노컷뉴스 ^(443·444) , 아이굿뉴스 ^(445·446) , 인터넷 기독교타임즈 ^(797·798) , 데일리굿뉴스(Daily Good News) ^(817·818)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새학기 앞두고 대학가 이단 활동 주의 경계해야”』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2일자 문화/종교면) • 아이굿뉴스 : 『“캠퍼스 내 동아리, 가입 전 꼭 확인하세요”』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4일자 단체/연합면) • 인터넷 기독교타임즈 : 『대학가, ○○○·○○파·○○회·○○○가 대세 이단』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3일자 바른신앙면) • 데일리굿뉴스(Daily Good News) : 『“○○파 ○○○ 주의’ 현수막으로 고소당한 ○○대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7일자 교계/교단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이단 종교단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449	(손배청구) 이○○ 對 MBC-TV
조 정 대 상	『필리핀 살인사건, 한국인은 맛있다?』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12일자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필리핀 경찰의 한국인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필리핀 교민인 신청인의 모습과 발언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2백만 원 - 동의 후 지급)
2017서울조정 450	(정정청구) (주)○○○○○ 對 데일리안
조 정 대 상	『금융투자거래 위장 사행성게임 주의보』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7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외환 및 선물 거래를 위장한 채 사행성 게임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p>2017서울조정 451</p>	<p>(정정청구) 자유한국당 對 인터넷 내일신문</p>
<p>조 정 대 상</p>	<p>『한국당 첫출발은 ‘빈껍데기’ 반성투어』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4일자 정치면)</p>
<p>신청인 주장</p>	<p>자유한국당의 버스투어에 의원들의 참석이 저조하고 당 비대위원장도 첫날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p>
<p>2017서울조정 452~457, 504~508, 655~667</p>	<p>(각 정정청구) 서○○ 對 뉴시스⁽⁴⁵²⁾, 동아닷컴⁽⁴⁵³⁾, 인터넷 서울경제⁽⁴⁵⁴⁾, 온라인 중앙일보⁽⁴⁵⁵⁾, 인터넷 JTBC⁽⁴⁵⁶⁾, SBS아이앤엠⁽⁴⁵⁷⁾, 동아일보⁽⁵⁰³⁾, 중앙일보⁽⁵⁰⁴⁾, 한국일보⁽⁵⁰⁵⁾, MBN⁽⁵⁰⁶⁾, 채널A⁽⁵⁰⁷⁾, JTBC⁽⁵⁰⁸⁾, 연합뉴스⁽⁵²⁴⁾ (각 손해청구) 한국일보⁽⁶⁵⁵⁾, 동아일보⁽⁶⁵⁶⁾, 동아닷컴⁽⁶⁵⁷⁾, 중앙일보⁽⁶⁵⁸⁾, 온라인 중앙일보⁽⁶⁵⁹⁾, JTBC⁽⁶⁶⁰⁾, 인터넷 JTBC⁽⁶⁶¹⁾, MBN⁽⁶⁶²⁾, 채널A⁽⁶⁶³⁾, 인터넷 서울경제⁽⁶⁶⁴⁾, 연합뉴스⁽⁶⁶⁵⁾, 뉴시스⁽⁶⁶⁶⁾, SBS아이앤엠⁽⁶⁶⁷⁾</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최순실·정유라, 이대교수에 학점 잘 받는법 상담”』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4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김병욱, 최순실·정유라 김경숙 확장실서 교수들에게 학점취득 상담 받아』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4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경제 : 『최순실-정유라, 1학기 이화여대 교수 ‘학점 취득’ 코치 받아 챙겨주기』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4일자 사회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정유라, 하루에 이대 총장·학장·학과장·교수 6명 만났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5일자 사회면) • 인터넷 JTBC : 『정유라, 하루에 이대 총장·학장·학과장·교수 6명 만났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5일자 사회면) • SBS아이앤엠 : 『[리포트+] 학점 잘 나와 의아한 정유라 ... 최순실과 ‘1일 6교수’ 접촉』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5일자 사회면) • 채널A : 『김병욱 의원, 이대 교수 7명 릴레이로 정유라 학점 상담』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5일자 아침뉴스 프로그램) 외 19개 매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학점 취득에 관한 상담을 해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채널A⁽⁵⁰⁷⁾/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채널A⁽⁶⁶³⁾/내용 : 손해배상 2백5십만 원) • 각 조정불성립결정 (뉴시스, 동아닷컴, 인터넷 서울경제, 온라인 중앙일보, 인터넷 JTBC, SBS아이앤엠,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MBN, JTBC, 연합뉴스)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A : 『이대 강사 최순실 모녀 학점 상담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7년 4월 21일자 굿모닝 A 프로그램)

2017서울조정 458~473	(각 정정·손배청구) 최○○ 對 인터넷 일요시사 ^(458·459) , 매경닷컴 ^(460~463) , 인터넷 이데일리 ^(464·465) , 인터넷 YTN ^(466·467) , KBS 미디어 ^(468·469) , 뉴스1코리아 ^(470·471) , 뉴시스 ^(472·473)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일요시사 : 『심○○ 국회부의장 보좌관 대낮 만취 추태 전말』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9일자 사회면) • 매경닷컴 : (1) 『[단독] 甲근성 못버린 국회의원 비서관』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4일자 사회면) (2) 『‘이 시국에...’ 의원 비서관 甲질』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4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이데일리 : 『심○○ 국회부의장 비서관 음주운전 입건... 면직 처리』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4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심○○ 국회부의장 비서관 음주 운전 입건』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4일자 사회면) • KBS 미디어 : 『심○○ 국회부의장 비서관, 음주운전 입건』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5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심○○ 국회부의장 비서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4일자 사회면) • 뉴시스 : 『심○○ 국회부의장 비서관 음주운전 입건』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국회 부의장 비서관 재직 시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인터넷 일요시사/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뉴스1코리아/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매경닷컴/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인터넷 이데일리, 인터넷 YTN, KBS미디어, 뉴시스/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일요시사 : 『‘심○○ 국회부의장 보좌관 대낮 만취 추태 전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이데일리 : 『심○○ 국회부의장 비서관 음주운전 입건... 면직 처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부분 수정 (2017년 3월 15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심○○ 국회부의장 비서관 음주 운전 입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부분 수정 (2017년 3월 15일자 사회면) • KBS 미디어 : 『심○○ 국회부의장 비서관, 음주운전 입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부분 수정 (2017년 3월 22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심○○ 국회부의장 비서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부분 수정 (2017년 3월 27일자 사회면) • 뉴시스 : 『심○○ 국회부의장 비서관 음주운전 입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부분 수정 (2017년 3월 15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474~477	(각 정정·추후청구) 조○○ 對 MBC-TV ^(474·475) , iMBC ^(476·477)
조 정 대 상	『아들 결혼자금 삼킨 ○○산 女보살』 제하의 보도 (MBC-TV 2017년 2월 2일자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iMBC 2017년 2월 2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주지승인 신청인이 보살과 공모하여 사찰내 공양주 부부에게 사기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478·479	(정정·손배청구) 김○○ 對 더 벨
조 정 대 상	『○○펀더멘털, ○○홈쇼핑에 부적격 사외이사 추천』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3일자 article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홈쇼핑의 사외이사로 부적격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정정보도 내용이 불충분하고 손해배상도 이뤄져야 함) • 기각 (손배청구/사유 :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
2017서울조정 480·481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조 정 대 상	『한국 무용계 대표들“2017 정시공모 문예진흥기금, 불공정한 심사”성명 발표』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0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주최하는 지역무용제가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불공정한 심사결과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크리티क्स 초이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0일자 문화면)

2017서울조정 482~484	(정정 · 반론청구) ○○항공조종사새노동조합 對 한겨레21
조 정 대 상	(1) 『모두가 래퍼 21. 그들만의 하늘-①』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3일자 78~79면) (2) 『모두가 래퍼 21. 그들만의 하늘-②』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0일자 78~79면)
신청인 주장	○○항공 조종사 복수노조 하나인 신청인 노조가 사측에 우호적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피신청인 ○○/유감 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항공조종사새노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7년 4월 24일자 6면, 인터넷 한겨레21 2017년 4월 19일자 카툰면)

2017서울조정 489	(반론청구) 송○○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박○○ 허위 고소하고 방송 인터뷰한 또 다른 여성 기소』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4일자 최신기사면)
신청인 주장	배우 박○○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박○○ 허위 고소하고 방송 인터뷰한 또 다른 여성 기소’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7일자 최신기사면)

2017서울조정 490	(손배청구) (주)○○○○○ 외 1인 對 인터넷 TV조선
조 정 대 상	『최순실, 강남에서 아지트 카페 운영... 정재계 인사 즐겼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최순실이 과거 아지트로 사용했다는 건물에 입주한 신청인 회사의 전경을 무단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p>2017서울조정 491, 493</p>	<p>(각 정정청구)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 對 한국경제⁽⁴⁹¹⁾, 한경닷컴⁽⁴⁹³⁾</p>
<p>조 정 대 상</p>	<p>『기껏 헌혈했더니 ... 한해 8만명분 혈액 폐기』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7년 2월 23일자 A29면 한경닷컴 2017년 2월 23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폐기되는 혈액량이 급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내용 : 정정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p>
<p>이 행 결 과</p>	<p>『기껏 헌혈했더니... 한해 8만명분 혈액 폐기』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경닷컴 2017년 5월 5일자 사회면)</p>
<p>2017서울조정 492, 499, 501, 502</p>	<p>(각 정정청구) 김○○^(492, 499), (주)○○○○^(501, 502) 對 동아일보^(492, 501), 동아닷컴^(499, 502)</p>
<p>조 정 대 상</p>	<p>『[황설수설/송평인]인공지능이 바벨탑 세우는 날』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7년 2월 23일자 A31면, 동아닷컴 2017년 2월 23일자 오피니언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들이 번역한 소설에 오역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p>
<p>이 행 결 과</p>	<p>『[황설수설/송평인]인공지능이 바벨탑 세우는 날』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신원 익명 처리 (한국경제 2017년 5월 6일자 A19면, 동아닷컴 2017년 4월 12일자 오피니언면)</p>
<p>2017서울조정 498, 500</p>	<p>(각 손해청구) 김○○ 외 1인 對 연합뉴스⁽⁴⁹⁸⁾, 인터넷 채널A⁽⁵⁰⁰⁾</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흥기 내놔” 70대 노인 30대 강도와 사투... 경찰 검거』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9일자 최신기사면) • 인터넷 채널A : 『흥기 강도를 맨손으로... 70대 노인의 사투』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0일자 채널A 아침뉴스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들이 운영하는 휴대폰판매점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의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인터넷 채널A/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손해배상 50만 원, 부제소) • 조정불성립결정 (연합뉴스)

2017서울조정 509	(정정청구) 장○○ 對 인터넷 주간현대
조 정 대 상	『[집중분석] 이우환 천경자 ... 끊이지 않는 미술계 위작 논란. Why?』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6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이우환 화백 작품 관련 위조 감정서 자료사진에 이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 이름이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집중분석] 이우환 천경자 ... 끊이지 않는 미술계 위작 논란. Why?』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사진 삭제 (2017년 3월 17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510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월요신문
조 정 대 상	『‘○○○ ○○’일본계 파견업체 직원 부당해고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9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직원을 전보한 것을 두고 해고했다고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서울조정 511·512	(정정·반론청구) (주)○○○○○○○○○○○ 외 1인 對 스카이데일리
조 정 대 상	『“46년 전통의 대림창고, 50만 찾는 명소 만들었죠”』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9일자 오피니언-피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복합문화전시공간을 다른 사람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46년 전통의 대림창고, 50만 찾는 명소 만들었죠”』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수정 (2017년 4월 26일자 오피니언-피플면)

<p>2017서울조정 513~516</p>	<p>(각 정정·손배청구) 한국항공공사 對 SBS-TV^(513·514), SBS아이앤엠^(515·516)</p>
<p>조 정 대 상</p>	<p>『공항공사, 테러 막겠다며 총기보유 ... 알고 보니 무허가』 제하의 보도 (SBS-TV 2017년 2월 23일자 8시뉴스 프로그램, SBS아이앤엠 2017년 2월 23일자 SBS뉴스면)</p>
<p>신청인 주장</p>	<p>한국항공공사가 대테러장비를 허가 없이 운용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p>
<p>2017서울조정 517</p>	<p>(정정청구) (주)○○○○ 對 채널A</p>
<p>조 정 대 상</p>	<p>『○○○○○○의 씹쓸한 귀환』 제하의 보도 (2017년 3월 12일자 먹거리X파일 프로그램)</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고 값싼 냉동육을 사용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p>
<p>2017서울조정 518~520, 998·999</p>	<p>(정정·반론·손배청구) 학교법인 ○○대학교 對 MBC-TV^(518·519·520) (추후·손배청구) 김○○ 對 MBC-TV^(998·999)</p>
<p>조 정 대 상</p>	<p>『○○ 씨의 외로운 싸움』 제하의 보도 (2016년 12월 18일자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대학교 소속 조교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추행과 협박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성추행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학교법인 ○○대학교/내용 : 반론보도,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김○○/내용 :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 씨의 외로운 싸움’방송내용 관련 추후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7년 7월 28일자 i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알립니다’게시판)</p>

2017서울조정 523	(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이데일리
조 정 대 상	『커튼콜 30분·찰떡호흡...‘막공’의 매력을 아십니까』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6일자 공연뮤지컬면)
신청인 주장	뮤지컬 관련 보도에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526, 527	(각 추후청구) 박○○ 對 인터넷 경향신문 ⁽⁵²⁶⁾ , 인터넷 한국일보 ⁽⁵²⁷⁾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향신문 : (1) 『대구지검포항지청 ‘여객선 값 뺑뺑기’ 부당대출 선사대표 구속… 다른 해운선사도 수사』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9일자 사건·사고면) (2) 『배 값 부풀려 부당대출 받은 포항-울릉 여객선사 전주 구속』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사건·사고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안전운행 위협하는 포항항 고철급 여객선』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배 값을 부풀려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인터넷 경향신문/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인터넷 한국일보/사유 : 관할변경)
2017서울조정 528~532	(각 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여성신문 ⁽⁵²⁸⁾ , 노컷뉴스 ⁽⁵²⁹⁾ , 인터넷 YTN ⁽⁵³⁰⁾ , 네이버 ^(531, 532)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여성신문 : (1) 『“성형외과=김치공장” “○대생=된장녀” 여혐 만화 그린 현직 의사』 제하의 기사 (인터넷 여성신문 2017년 3월 15일자 사회면, 네이버 2017년 3월 15일자 사회면) (2) 『성형외과의사회, 여혐 만화 그린 의사 논란에 “대신 사과”』 제하의 기사 (인터넷 여성신문 2017년 3월 17일자 사회면, 네이버 2017년 3월 15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성형외과=김치공장? 현직 의사, 여혐 만화 논란』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7년 3월 15일자 문화면, 네이버 2017년 3월 15일자 생활/문화면) • 인터넷 YTN : 『성형외과 의사 “나는 김치공장 노동자” 만화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성형외과 의사인 신청인이 과거 여성을 김치에 비유하는 내용의 만화를 그린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인터넷 여성신문, 네이버⁽⁵³¹⁾/사유 : 기사수정 약속, 노컷뉴스, 인터넷 YTN, 네이버⁽⁵³²⁾/기사수정)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여성신문 : (1) 『“성형외과=김치공장” “○대생=된장녀” 여혐 만화 그린 현직 의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익명 처리 (인터넷 여성신문 2017년 3월 27일자 사회면, 네이버 2017년 3월 27일자 사회면) (2) 『성형외과의사회, 여혐 만화 그린 의사 논란에 “대신 사과”』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익명 처리 (인터넷 여성신문 2017년 3월 27일자 사회면, 네이버 2017년 3월 27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성형외과=김치공장? 현직 의사, 여혐 만화 논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익명 처리 (노컷뉴스 2017년 3월 28일자 문화면, 네이버 2017년 3월 28일자 생활/문화면) • 인터넷 YTN : 『성형외과 의사 “나는 김치공장 노동자” 만화 논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익명 처리 (2017년 3월 28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533, 588·589, 852·853	(정정청구) 서울특별시 對 KBS-1TV ⁽⁵³³⁾ (각 정정·손배청구) KBS-1TV ^(588·589, 852·853)
조정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거리, 가격은 두 배’... 이상한 공항버스 요금』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12일자 KBS뉴스9 프로그램) (2) 『‘더 가까운데 가격은 2배’... 이상한 공항버스 요금』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13일자 뉴스광장 프로그램) (3) 『‘더 가까운데 가격은 2배’... 이상한 공항버스 요금』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13일자 뉴스12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타시도가 인천공항 운행버스의 면허형태를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것과 달리 서울시만 17년째 한정면허를 고집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KBS-1TV^(588·589)/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이 반드시 필요함) • 조정불성립결정 (KBS-1TV^(852·853)) • 취하 (KBS-1TV⁽⁵³³⁾/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534~547	(각 손해청구) 신○○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⁵³⁴⁾ , 한강타임즈 ⁽⁵³⁵⁾ , 텐아시아 ⁽⁵³⁶⁾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⁵³⁷⁾ , 이뉴스투데이 ⁽⁵³⁸⁾ , 아주뉴스(인터넷아주경제) ⁽⁵³⁹⁾ , 시크뉴스 ⁽⁵⁴⁰⁾ , 마이데일리 ⁽⁵⁴¹⁾ , 뉴스핌 ⁽⁵⁴²⁾ , 뉴스컬처 ⁽⁵⁴³⁾ , SBS아이앤엠 ⁽⁵⁴⁴⁾ , 인터넷 SBSfunE ⁽⁵⁴⁵⁾ , KBS미디어 ⁽⁵⁴⁶⁾ , KBS-2TV ⁽⁵⁴⁷⁾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온○○ VS 이○○ 논란, 결국 남녀 논쟁으로까지 번지나』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0일자 문화면) • 한강타임즈 : 『개그우먼 이○○ “다 캡처하고 있다” 배우 온○○ “부끄러운 줄 아시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9일자 TV/드라마면) • 텐아시아 : 『‘악플러 경고’이○○ VS ‘이○○ 일침’ 온○○』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9일자 핫이슈면)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 『[SW시선] 이○○ VS 온○○ 썰전, 어떻게 봐야하나』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0일자 연예면) • 이뉴스투데이 : 『온○○, 이○○ 저격수 등극 ‘빵야~’“고소 열 번은 당하고도 남을 일”』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9일자 연예면) • 아주뉴스(인터넷아주경제) : 『이○○ 성희롱 지적한 배우 온○○는?』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0일자 연예면) • 시크뉴스 : 『온○○, 이○○ 악플러 법정대응 시사에 “당신이 성희롱한 男연예인 어땠을까” 비난』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9일자 방송면) 외 7건
신청인 주장	연예인의 악플 대응을 비난한 배우를 언급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해당 배우의 사진으로 잘못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SBS아이앤엠, 인터넷 SBSfunE/내용 : 손해배상 1백만 원, 부제소, 한강타임즈,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이뉴스투데이,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마이데일리, 뉴스핌, 뉴스컬처/내용 : 손해배상 50만 원, 부제소, 텐아시아/내용 : 손해배상 30만 원, 부제소) • 각 취하 (인터넷 헤럴드경제, KBS미디어, KBS-2TV, 시크뉴스/사유 : 금전 지급)
2017서울조정 548	(정정청구) 서울특별시 對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승객도 기사도 어리둥절... 서울 새 ‘택시안심귀가’』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서울시 택시안심귀가서비스가 신용카드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PR ·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서울 택시정보시스템 · 안심귀가서비스 범죄예방 효과』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1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549·550	(정정·손배청구) 조○○ 對 비마이너
조 정 대 상	『○○○협회 지회장 선거, 잡음 끊이지 않아』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한국○○○협회 총남선거관리위원회가 자격논란이 있는 사람을 공주지회장 후보자로 받아들이는 등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 부정)

2017서울조정 551·552	(반론·손배청구) 이○○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탄핵반대 추가 사망에 탄기국 “구국장”...유가족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1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집회에 참석 중 사망한 신청인 부친의 장례식을 어떻게 할지 유족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553·554	(정정·손배청구) 국기원 對 인터넷 태권도타임즈
조 정 대 상	『성지화사업 이대로는 안 된다』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6일자 태권도시사면)
신청인 주장	국기원 명소화사업이 불투명한 행정처리와 원장의 독단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7서울조정 555·556	(정정·손배청구) ○○○○○○○○○○○○○○○○○추진위원회 對 채널A
조 정 대 상	(1) 『조폭에 로펌까지...‘청량리 588’재개발』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13일자 더 깊은 뉴스 프로그램) (2) 『‘588’재개발, 국정농단‘판박이’』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14일자 더 깊은 뉴스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조폭과 포주들로 임원을 구성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p>2017서울조정 557~584, 601~629, 678~696, 705~706, 737~740, 747~758, 862~867</p>	<p>(각 추후·손배청구) 김○○ 對 쿠키뉴스^(557·558), 인터넷 매일일보^(559·560, 680·681, 866·867), 인터넷 서울매일^(561·562), 인터넷 아시아일보^(563·564), 한국시민뉴스^(565·566), 광고없는언론 팩트올^(567·568), 뉴데일리^(569·570), 뉴스파인더^(571·572), 데일리팝^(573·574), (주)티비리포트^(575·576), 연합뉴스^(577·578), 인터넷 이데일리^(579·580), 다음^(581·582), 미디어펜^(583·584), 디스패치뉴스^(601·602), 오마이뉴스^(603·604), 월드투데이^(605·606), 세계닷컴^(607·608), 인터넷 서울신문^(609·610), 일요신문^(611·612), 인터넷 헤럴드경제^(613·614), 인터넷TheKoreaHerald^(615·616), SBS이앤엠^(617·618), 연합뉴스^(577·578, 619·620, 621·622), 인터넷 뉴스신문고^(623·624), 인터넷 일요시사^(628·629), 노컷뉴스^(678·679), 인터넷 시민일보^(682·683), 인터넷 신아일보^(684·685, 747·748), 아시아뉴스통신^(686·687, 864·865), 인터넷 내일신문^(688·689), 인터넷 일간투데이^(690·691),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692·693), 인터넷 환경일보^(694·695), 시사통신^(705·706), 뉴스데일리^(737·738), 인터넷 MBN^(739·740), 시사투데이^(749·750), 데일리인^(751·752), 민중의 소리^(753·754), 아시아투데이닷컴^(755·756), 인터넷 아시아타임즈^(757·758), 뉴시스^(862·863) (추후청구) 뉴시스⁽⁶⁹⁶⁾</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키뉴스 : 『잠든 동료 성기 촬영 김○○ ○○시의원 집행유예』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0일자 정치면) • 인터넷 매일일보 : 『김○○ 시의원, (남성)동료 의원 성추행 파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매일 : 『‘막장 드라마’ 연출 시의원 김○○ 의원, 동료의원 성추행 혐의 수사 받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아시아일보 : 『김○○ ○○시의원, 남성동료의원 ○○추행 구설수』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3일자 사회면) • 한국시민뉴스 : 『선거법 위반혐의도 ... 시민단체 “주민소환 하겠다”』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4일자 핫이슈면) • 광고없는언론 팩트올 : 『남성 해바라기 수술, 누가 더 잘됐나 보려고 바지 벗겼다 ... ○○시의원의 황당 답변』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일자 뉴스면) • 뉴데일리 : 『여의원의 음란사진, 동료 성기촬영 막장 새정치』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0일자 정치면) 외 35건
<p>신청인 주장</p>	<p>기초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동료의원의 성기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시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고 보도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과 제명처분 취소처분 판결을 받았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쿠키뉴스, 인터넷 매일일보^(559·560), 인터넷 서울매일, 인터넷 아시아일보, 한국시민뉴스, 광고없는언론 팩트올, 뉴데일리, 뉴스파인더, 데일리팝, (주)티비리포트, 연합뉴스, 인터넷 이데일리, 다음, 미디어펜, 디스패치뉴스,

	<p>오마이뉴스, 월드투데이, 세계닷컴, 인터넷 서울신문, 일요신문, 인터넷 헤럴드경제, 인터넷TheKoreaHerald, SBS아이앤엠, 연합뉴스, 인터넷 뉴스신문고, 인터넷 일요시사, 뉴스데일리, 인터넷 MBN, 인터넷 신아일보^(747·748), 시사투데이, 데일리안, 민중의 소리, 뉴시스^(892·893), 아시아뉴스통신^(864·865)/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각하 (노컷뉴스, 인터넷 매일일보^(680·681, 866·867), 인터넷 시민일보, 인터넷 신아일보^(684·685), 아시아뉴스통신^(686·687), 인터넷 내일신문, 인터넷 일간투데이, 아주뉴스(인터넷아주경제), 인터넷 환경일보, 뉴시스⁽⁶⁹⁶⁾, 시사통신, 아시아투데잇닷컴, 인터넷 아시아타임즈/사유 :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사피의자 혹은 피고인에 해당하지 않음)
--	--

2017서울조정 585	(정정청구) 이○○ 對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파크 노조 “여직원 성희롱 이○○ 원장 파면하라”』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6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파크 원장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1일자 전국면)

2017서울조정 586·587	(정정·손배청구) 김○○ 對 더벨
조 정 대 상	『‘케이프·SK證’ 단짝 눈길… ○○건설 PF딜 도맡나』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재직하던 건설사에서 특정 증권사로 이직한 사실이 해당 건설사와 증권사 사이의 금융거래 성공과 연관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서울조정 590	(정정청구) ○○○○○○○○○○○○○○○○○사업조합 외 2인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단독] 현대산업 재건축비리 의혹 수사, 잠실진주로』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특정업체를 재건축설계업체로 선정한 것에 뒷돈거래와 부정심사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591	(정정청구) 한국농어촌공사 對 투데이코리아
조 정 대 상	(1) 『[단독] 1.○○농어촌공사사장, 전임사장사업 전면취소?』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1일자 경제·금융면) (2) 『[단독 2]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전임사장 업적 지우기?』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임명되었고, 현 사장이 전임사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무산시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전임사장사업 전면취소?』 등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6일자 경제·금융면)
2017서울조정 592·593	(정정·손배청구) 오○○ 對 일요신문
조 정 대 상	『태권도계는 ‘비리백화점?’ 끝나지 않은 불법심사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태권도단증을 돈을 받고 부정 발급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1일자 사회면)

<p>2017서울조정 594·595</p>	<p>(정정·손배청구) 서울특별시 對 문화일보</p>
<p>조 정 대 상</p>	<p>(1) 『자본금 21兆 초거대 지방 공기업‘서울교통공사’5월 출범』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3일자 2면) (2) 『경영도 ‘勞使’ 합의로 … 노조 위한 통합?』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3일자 13면)</p>
<p>신청인 주장</p>	<p>서울시의 양대 지하철공사통합안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도외시하고 노조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보도계재)</p>
<p>이 행 결 과</p>	<p>『“서울메트로·서울도철 통합 年214억 비용절감”』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8일자 14면)</p>
<p>2017서울조정 596</p>	<p>(정정청구) 박○○ 對 인사이트</p>
<p>조 정 대 상</p>	<p>『장애인 선수에게 가야 할 ‘거위털 파카’를 ‘솜털’로 바꾼 감독』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2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전 장애인배구 국가대표 감독인 신청인이 장애인 선수용 물품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p>
<p>2017서울조정 597·598</p>	<p>(정정·손배청구) 이○○ 對 온라인 중앙일보</p>
<p>조 정 대 상</p>	<p>『개미 울리는 들쭉날쭉 바이오 기업 주가… 회계장부 속 연구개발비가 시한폭탄』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7일자 경제면)</p>
<p>신청인 주장</p>	<p>모 제약업체가 연구개발비의 92%를 자산으로 과다 계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p>

2017서울조정 599	(정정청구) 강남구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1) 『[단독] 신○○ 강남구청장 ‘차진돗개 선물’ 부부에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2일자 사회면) (2) 『[단독] 강남구, 신○○구청장 지시로 ‘춘향’ 조직적 지원』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2일자 사회면) (3) 『[단독] 강남구, ‘차진돗개 선물’ 노부부 딸 공연 위해 ‘관객부대’ 결성』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강남구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진돗개를 선물한 노부부의 딸이 연출하는 공연에 조직적으로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600	(정정청구) 백○○ 對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한순간에 자산이 손실로...‘두 얼굴’의 제약사 연구개발비』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8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모 제약업체가 연구개발비의 92%를 자산으로 과다 계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 부정)
2017서울조정 646	(반론청구) (주)○○○○ 對 인터넷 주간 기독교신문
조 정 대 상	『입학시즌 다가오자 이단들 활개치고 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0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발행하는 잡지가 이단 종교단체의 포교지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서울조정 647~650	(각 추후·손배청구) 이○○ 對 MBC-TV ^(647·648) , iMBC ^(649·650)
조 정 대 상	『“자리 내놔라” ○○ 자문관, 중소기업에 압력 의혹』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6월 28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iMBC 6월 28일자 뉴스데스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도청 경제자문관으로 재직 시 중소기업에 금품 및 향응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됐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자리 내놔라” ○○ 자문관, 중소기업에 압력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iMBC 2017년 4월 19일자 뉴스데스크면)
2017서울조정 651·652, 701·702	(각 반론·손배청구) 이○○ 對 뉴시스 ^(651·652) , 인터넷 국민일보 ^(701·702)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카자흐 한국문화원장 “日대사관 볼 수 있다 ‘독도’ 빼라”』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4일자 정치면) • 인터넷 국민일보 : 『“정신나간” 駐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장, 독도 홍보사업서 ‘독도’ 빼』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4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장인 신청인이 독도홍보물에서 ‘독도’ 표기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뉴시스/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인터넷 국민일보/내용 : 반론보도,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駐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장, 독도홍보사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일자 정치면) • 인터넷 국민일보 : 『[전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장, 독도홍보사업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7일자 초기화면)

2017서울조정 653, 654	(각 정정청구) 이○○ 對 뉴스1코리아 ⁽⁶⁵³⁾ , 인터넷 일요서울 ⁽⁶⁵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코리아 : (1) 『‘선물수수·카드깡 막말 교장’ 인천교육청 봐주기 감사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7일자 전국-인천면) (2) 『“감사관과 동창”... 인천교육청, 부실감사 의혹 교장 재감사』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7일자 전국-인천면) • 인터넷 일요서울 : 『인천지역 초등학교 교장들 왜 이러나... 올해만 두 명 째 징계』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장인 신청인이 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을 성추행하고 여교사에게 막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뉴스1코리아/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인터넷 일요서울/사유 : 보도개제)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코리아 : 『‘A교장 막말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5일자 전국면) • 인터넷 일요서울 :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0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668, 669	(각 손배청구) 소○○ 對 TV조선 ⁽⁶⁶⁸⁾ , 인터넷 TV조선 ⁽⁶⁶⁹⁾
조 정 대 상	『[단독]‘발기부전 대리 수술’비뇨기과 수사』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7년 4월 3일자 TV조선뉴스 판 프로그램, 인터넷 TV조선 2017년 4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발기부전 치료 수술을 치료기기업체 직원이 대신한다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비뇨기과의 전경을 무단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단독]‘발기부전 대리 수술’비뇨기과 수사』 제하의 기사 중 영상 삭제 (인터넷 TV조선 2017년 4월 17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672·673	(정정·손배청구) ○○○○(주) 對 뉴스락
조 정 대 상	『○○○○ 후계자 조○○ 사장이 캄보디아 사업에 사활을 건 까닭』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3일자 뉴스락 비하인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경영 적자가 캄보디아 사업 재무부담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p>2017서울조정 674·675</p>	<p>(추후·손배청구) 김○○ 對 오마이뉴스</p>
<p>조 정 대 상</p>	<p>(1) 『울산 ○○고→△△고, 교명 바꾸면 비리 사라지나』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일자 사회면) (2) 『울산 ○○고 전 이사장, 현 교장·행정실장 등 기소』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8일자 사회면) (3) 『○○고 전 이사장“뇌물 주고받았는데 왜 무혐의냐”』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5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보도개제)</p>
<p>이 행 결 과</p>	<p>(1) 『[추후보도]“△△고 전 재단이사장 허위 자백 탓에 행정실장 비리혐의 기소”』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9일자 사회면) (2)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9일자 사회면)</p>

<p>2017서울조정 676·677</p>	<p>(정정·손배청구) 김○○ 對 아주뉴스</p>
<p>조 정 대 상</p>	<p>『JDC 이사장 인사개입, 알고보니 최순실 ‘낙하산’』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30일자 전국-호남제주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최순실 씨의 낙하산 인사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1) 『김○○ 전 JDC 이사장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6일자 전국-호남제주면) (2) 『JDC 이사장 인사개입‘논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부분 수정 (2017년 4월 24일자 전국-호남제주면)</p>

2017서울조정 697	(정정청구) 서울특별시 對 그린포스트코리아
조 정 대 상	『서울시 대기측정기기 정확성 크게 떨어져...“오차율은 발생 때마다 교정”』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서울시 대기환경측정기구가 정확성이 떨어지고 측정지침 등도 준수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서울조정 698·699	(정정·반론청구) (주)문화방송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박근혜의 눈물’ 강조하면서 ‘복심 이정현’ 찾은 MBC』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4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칭송하는 방송만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MBC 박근혜 비호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8일자 미디어면)

2017서울조정 700	(손배청구) 강○○ 對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결국 실명까지 갈 수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병』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온라인상에 게재한 글을 동의 없이 공개해 사생활을 침해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서울조정 703·704	(정정·손배청구) (주)○○○○○○○○○○○ 對 JTBC
조 정 대 상	『‘가짜뉴스’, 신문처럼 전국에 배포... 친박 집회도 활용』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6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체의 호외판에 가짜뉴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p>2017서울조정 707·708</p>	<p>(정정·손배청구) ○○○○○○ (주) 對 인터넷 이코노믹리뷰</p>
<p>조 정 대 상</p>	<p>『○○○○ 투자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3가지 사실들』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5일자 인더스트리먼)</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회사의 특정 제품이 성공한 이유는 우연이고, 만두시장에서 1위 자리를 내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p>
<p>이 행 결 과</p>	<p>『‘○○제과’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일자 인더스트리먼)</p>
<p>2017서울조정 709, 710</p>	<p>(각 정정청구) (의)○○○○○○○ 외 1인 對 MBC-TV⁽⁷⁰⁹⁾, iMBC⁽⁷¹⁰⁾</p>
<p>조 정 대 상</p>	<p>『두통? 의사가 놓친 ‘뇌출혈’ 119대원이 살렸다』 제하의 보도 (MBC-TV 2017년 4월 4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iMBC 2017년 4월 4일자 뉴스데스크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병원 의사가 환자의 뇌출혈을 두통으로 오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 표명)</p>
<p>2017서울조정 711</p>	<p>(손배청구) 이○○ 對 온라인 중앙일보</p>
<p>조 정 대 상</p>	<p>『‘명품 메카’ 청담동이 흔들린다』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0일자 경제면)</p>
<p>신청인 주장</p>	<p>경기불황으로 청담동에 빈 상가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소유 상가건물을 무단 촬영하고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수정,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동의)</p>
<p>이 행 결 과</p>	<p>『‘명품 메카’청담동이 흔들린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소유 건물 사진 삭제 (2017년 6월 7일자 경제면)</p>

2017서울조정 712·713	(정정·손배청구) (주)○○○○ 對 인터넷 YTN
조 정 대 상	『“5·18 유공자 자녀는 금수저” 고시촌에 뿌려진 괴담』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문의 ‘2007년 7급 공무원 합격자 전원이 5·18유공 특혜자’라는 내용의 기사가 가짜뉴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결정 내용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부재하고 손해배상도 필요함)

2017서울조정 714	(정정청구) 사○○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싸이판] 안민석·최재석 첫 만남...‘최순실 은닉 재산’퍼즐을 맞추다』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2일자 종교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최순실의 독일 도피생활을 도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최순실과 ○○일보 전 사장 사○○와의 관계’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9일자 종교면)

2017서울조정 715	(정정청구) 안철수 對 JTBC
조 정 대 상	『문재인·안철수 초박빙 접전』 제하의 보도 (2017년 4월 10일자 정치부회의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7서울조정 716·717	(정정·손배청구) 강남구 외 1인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단독] 서울경찰청, 신○○ 강남구청장 ‘횡령·배임’ 의혹 내사』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강남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p>2017서울조정 718~725</p>	<p>(각 정정·손배청구) 서울특별시 對 노컷뉴스^(718·719, 720·721, 722·723), 뉴스타파^(724·725)</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1) 『[단독]“안전모 못받아서…” 맨몸으로 스크린도어 고치는 정비공』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0일자 사회면) (2) 『[단독]‘메피아’ 전면 퇴출한다더니… 슬그머니 복귀』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1일자 사회면) (3) 『안전모 없이 일하는데도 서울시 “안전우선 약속 지켰다”』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2일자 사회면) (4) 『“서울시만 믿었는데”… 머니먼 정규직과 연봉 3300의 꿈』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2일자 사회면) (5) 『하청에서 10년 일해도 1호봉… 서울시는 “차별 없다”』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3일자 사회면) • 뉴스타파 : 『구의역 사고 열달, 지하철 안전·처우개선 제자리』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5일자 노동면)
<p>신청인 주장</p>	<p>서울시가 구의역 지하철 사고 후 약속한 것과 달리 전동차 안전장비를 교체하지 않았고, 안전업무직의 노동 강도와 처우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불성립결정 (노컷뉴스) • 각 조정성립 (뉴스타파/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p>이 행 결 과</p>	<p>『서울특별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뉴스타파 2017년 5월 31일자 노동면)</p>
<p>2017서울조정 726~729</p>	<p>(각 정정·손배청구) 민○○ 對 조선일보^(726·727), 조선닷컴^(728·729)</p>
<p>조 정 대 상</p>	<p>『“성형님” 영어 조기교육에 혀 꼬인 아이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7년 4월 12일자 10면, 조선닷컴 2017년 4월 12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조기영어교육 폐해로 우리말 교정학원을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모습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손해배상 50만 원)</p>
<p>이 행 결 과</p>	<p>『“영어 조기교육” 기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7년 5월 3일자 10면, 조선닷컴 2017년 5월 3일자 바로잡습니다면)</p>

2017서울조정 730~733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조선일보 ^(730·731) , 조선닷컴 ^(732·733)
조 정 대 상	『“성생님” 영어 조기교육에 혀 꼬인 아이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7년 4월 12일자 10면, 조선닷컴 2017년 4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조기영어교육 폐해로 우리말 교정학원을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모습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영어 조기교육”기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7년 5월 3일자 10면, 조선닷컴 2017년 5월 3일자 바로잡습니다면)

2017서울조정 734·735	(정정·손배청구) 최○○ 외 3인 對 JTBC
조 정 대 상	(1) 『총학 출신 국민의당 관계자, ○○대생 동원 개입』 제하의 보도 (2017년 4월 11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2) 『○○서 광주로, 당 관계자‘개입’』 제하의 보도 (2017년 4월 12일자 JTBC NEWS 아침&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정당 대선후보 지역경선장에 대학생들이 동원됐다는 보도를 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모습을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생 국민의당 경선 동원”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JTBC 2017년 6월 16일자 뉴스룸 프로그램, 인터넷 JTBC 2017년 6월 16일자 뉴스정치면)

2017서울조정 736	(손배청구) 제○○ 對 인터넷 YTN
조 정 대 상	『낙성대 문지마 폭행 ... 피해 여성에 비난 봇물?』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문지마 폭행 사건 기사에 신청인이 올린 댓글을 무단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피신청인 주의의무 이행)

<p>2017서울조정 741</p>	<p>(정정청구) (재) ○○오페라단 외 1인 對 국제뉴스</p>
<p>조 정 대 상</p>	<p>『[단독]○○오페라단 외국인연출가에 의한 폭력 은폐정황.』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7일자 문화면)</p>
<p>신청인 주장</p>	<p>오페라단의 외국인 연출가인 신청인이 여성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불성립결정</p>
<p>2017서울조정 743~746, 869~872</p>	<p>(각 정정청구) 석○○ 對 SBS-TV⁽⁷⁴³⁾, SBS아이앤엠^(869~872) (각 반론청구) 對 SBS-TV^(744~746)</p>
<p>조 정 대 상</p>	<p>(1) 『[단독] ‘석○○ 전 검사장 수사 필요’ 보고에도… 무혐의 종결』 제하의 보도 (SBS-TV 2017년 4월 12일자 뉴스8 프로그램) (2) 『[단독] 이영복 “전직 검사장에 3억 줬다”진술에도… 무혐의 처리』 제하의 보도 (SBS-TV 2017년 4월 12일자 뉴스8 프로그램 , SBS아이앤엠 2017년 4월 12일자 사회면) (3) 『레지던스 분양받은 석○○… 이영복이 계약금 1억 내줬다』 제하의 보도 (SBS-TV 2017년 4월 13일자 뉴스8 프로그램, SBS아이앤엠 2017년 4월 13일자 사회면) (4) 『[단독] ‘이영복 은닉 정황’ CCTV 확보하고도… 무시한 검찰』 제하의 보도 (SBS-TV 2017년 4월 13일자 뉴스8 프로그램, SBS아이앤엠 2017년 4월 13일자 사회면) (5) 『[단독] ‘이영복 은닉 정황’ CCTV 확보하고도… 무시한 검찰』 제하의 기사 (SBS아이앤엠 2017년 4월 12일자 사회면) (6) 『이영복 “3억” 진술에도 사건 종결… 커지는 의혹』 제하의 기사 (SBS아이앤엠 2017년 4월 13일자 사회면) (7) 『이영복“前 검사장에 3억 줬다”진술… 검찰,‘무혐의’처리』 제하의 기사 (SBS아이앤엠 2017년 4월 13일자 사회면) 외 1건</p>
<p>신청인 주장</p>	<p>부산지검이 부산 엘시티 비리와 관련하여 전 부산지검장인 신청인을 강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대검에 보고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결정 내용이 이미 조정대상 보도에 포함돼 있음)</p>

2017서울조정 760~763	(각 정정·손배청구) ○○○○ 입주자대표회의 對 한겨레 ^(760·761) , 인터넷 한겨레 ^(762·763)
조 정 대 상	『아파트 공화국, 철거민 주거대책까지 삼키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7년 4월 11일자 14면, 인터넷 한겨레 2017년 4월 15일자 부동산면)
신청인 주장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아파트의 전경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7년 5월 13일자 뉴스분석면, 인터넷 한겨레 2017년 5월 12일자 경제면)

2017서울조정 764·765	(정정·반론청구) (주)○○○○○○○○ 對 이그린뉴스
조 정 대 상	『서울 ○○○○ 금품수수 의혹수사』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1일자 취재 현장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골프장 내 유희부지개발을 추진 중이고 이 과정에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결정 내용이 조정대상보도에 포함돼 있음)

2017서울조정 766	(손배청구) 임○○ 對 예정뉴스
조 정 대 상	『여수○○교회 정○○ 목사 안수무효건 재심개시』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1일자 14면)
신청인 주장	목사안수 무효 건을 심사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에 대한 금품수수 탄원서를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손해배상 1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여수○○교회 임○○ 장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6일자 팝업창 및 교회/노회/총회면)

2017서울조정 767	(정정청구) 홍준표 對 인터넷 JTBC
조 정 대 상	『[팩트체크] ‘안보 프레임’ 띄우는 홍준표… 근거 보니』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우리나라가 핵보유국이 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팩트체크] ‘안보 프레임’ 띄우는 홍준표… 근거 보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5일자 정치면)
2017서울조정 768	(정정청구) 김기춘 對 인터넷 채널A
조 정 대 상	『[채널A단독]김기춘 “내가 최순실 모를 리 있겠나” 한숨』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9일자 종합뉴스면)
신청인 주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 신청인이 측근 인사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인물 최순실 씨를 안다고 시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7서울조정 769~772	(각 정정·반론청구) (주)채널에이 對 CBS-R ^(769·770) , 노컷뉴스 ^(771·772)
조 정 대 상	『결국 폐업한 ○○카스테라 “고발프로, 한 맺힌다”』 제하의 보도 (CBS-R 2017년 3월 28일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노컷뉴스 2017년 3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카스테라 제조에 식용유가 과다 사용된다’고 방송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773~778, 1366·1367	(각 반론·손배청구) 학교법인 ○○학원 對 국제뉴스 ^(773·774, 1366·1367) , 뉴스1코리아 ^(775·776) , 뉴시스 ^(777·778)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뉴스 : (1) 『강원○○대 교수들 명예훼손 혐의 고소당해』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4일자 강원면) (2) 『[포토]“강원○○대에 관선이사 파견하라”』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0일자 강원면) 뉴스1코리아 : 『강원○○대 교수協, “원○○ 총장 즉각 구속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1일자 강원면) 뉴시스 : 『강원○○대 전 교수들 “총장 사퇴” vs 대학측 “비리 파면”』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1일자 강원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학사비리, 공사입찰비리, 교수인권탄압 등이 자행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조정불성립결정(국제뉴스^(773·774), 뉴시스) 각 취하 (뉴스1코리아/사유 : 자진취하, 국제뉴스^(1366·1367)/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서울조정 779, 780	(각 정정청구) 대통령경호실 외 1인 對 JTBC, 인터넷 JTBC
조정대상	『박근혜 정부‘은폐와 불통’』 제하의 기사 (JTBC 2017년 4월 9일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인터넷 JTBC 2017년 4월 9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박근혜 전대통령 비서실의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전산기록 삭제 의혹을 보도 하면서 경호실이 관련된 것처럼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781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월간저널 일렉트릭파워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풍력,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9일자 에너지면) (2) 『[단독] ○○○○○풍력, 풍황데이터 거짓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3일자 발전면) (3) 『[단독] ○○○○○풍력, 이번엔 지분참여 허위사실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7일자 에너지/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추진하는 풍력개발사업을 해당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제공받은 풍황자료도 엉터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8일자 에너지면)

<p>2017서울조정 782</p>	<p>(정정청구) ○○○○○○○○○○ 對 세계닷컴</p>
<p>조 정 대 상</p>	<p>(1) 『인천시, 무늬만‘세계○○○엑스포’ 행사에 올해도 2억 원 지원』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5일자 전국/일반면) (2) 『[단독] 인천 세계○○○엑스포 혈세 낭비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6일자 사회/일반면)</p>
<p>신청인 주장</p>	<p>인천세계○○○엑스포 주최사인 신청인 회사가 인력과 자금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불성립결정</p>
<p>2017서울조정 783·784</p>	<p>(정정·손배청구) 변○○ 對 SBS-TV</p>
<p>조 정 대 상</p>	<p>『두 개의 광장 하나의 진실- 무엇이 태극기를 움직이나』 제하의 보도 (2017년 4월 1일자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최순실씨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하는 등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불성립결정</p>
<p>2017서울조정 785</p>	<p>(손배청구) (주)○○○ 對 인터넷 비즈한국</p>
<p>조 정 대 상</p>	<p>『성추행 파문 ○○○ 전 ○○○ 대표, 형기 끝나자 경영복귀 수순 밟나』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4일자 비즈면)</p>
<p>신청인 주장</p>	<p>여직원 성추행 파문으로 물러난 신청인 회사의 전임 대표가 경영일선에 복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p>
<p>2017서울조정 786·787</p>	<p>(정정·손배청구) 서○○ 對 인터넷 법보신문</p>
<p>조 정 대 상</p>	<p>『○○ 스님과 초라한 전북봉축탑』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4일자 기자칼럼면)</p>
<p>신청인 주장</p>	<p>전북봉축위원회가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을 검소하게 제작한 것을 초라하다고 비하하고 제작결정이 신청인의 독단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자진취하)</p>

2017서울조정 788~793	(각 정정·손배청구) 염동열 對 미디어펜 ^(788·789) , 서울경제 ^(790·791) , 인터넷 서울경제 ^(792·793)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펜 : 『[속보]검찰, 염동열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4일자 정치면) • 서울경제 : 『檢 “불법 여론조사” 의혹 염동열 의원실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7년 4월 15일자 17면,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4월 17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사무실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서울경제/사유 : 보도계재, 미디어펜, 인터넷 서울경제/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7년 5월 5일자 19면)

2017서울조정 794·795	(정정·손배청구) 최○○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작업에 참여한 ○○ ○○○호』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3일자 포토면) (2) 『경로바꿔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참여한 ○○○○○호』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3일자 최신기사면)
신청인 주장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수색활동을 지원한 신청인 소속 회사 상선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796	(정정청구) (주)○○○○○○○ 對 KBS-1TV
조 정 대 상	『○○○○○○○, 공채로 뽑아놓고 자회사로 발령』 제하의 보도 (2017년 4월 20일자 7시 뉴스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공개채용한 신입사원을 자회사로 발령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p>2017서울조정 799·800</p>	<p>(정정·손배청구) (사) ○○○○○○○○협회 對 일간에너지</p>
<p>조 정 대 상</p>	<p>『[쓱덕공론] 잠에서 깨야 고양인지 사자인지 알지』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7일자 가십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협회가 설립된 지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아무 활동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p>
<p>2017서울조정 801~803</p>	<p>(정정·반론·손배청구) 강남구 외 1인 對 뉴스1코리아</p>
<p>조 정 대 상</p>	<p>『신○○ 강남구청장 ‘직무유기’정황 감사서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9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관련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한 서울시 감사 결과는 강남구청장의 조직적인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과장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결정내용이 피해회복에 충분하지 못함)</p>
<p>2017서울조정 804·805</p>	<p>(정정·손배청구) 이○○ 對 KNS뉴스통신</p>
<p>조 정 대 상</p>	<p>『이○○ 대변인 “자유한국당, 국민과 당원들에게 외면 받아”』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4일자 정치면)</p>
<p>신청인 주장</p>	<p>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신청인의 개인적 견해를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의 공식논평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자진취하)</p>

2017서울조정 806~809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MBC-TV ^(806·807) , iMBC ^(808·809)
조 정 대 상	『남편 바람 막는 곳? 아내는 진짜 13억을 날렸나』 제하의 보도 (MBC-TV 2017년 4월 24일자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iMBC 2017년 4월 19일자 동영상면)
신청인 주장	무속인인 신청인이 사기, 협박으로 곳을 하게하고 수십억 원을 갈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810, 811	(각 반론청구) 한국자유총연맹 對 JTBC ⁽⁸¹⁰⁾ , 인터넷 JTBC ⁽⁸¹¹⁾
조 정 대 상	(1) 『[단독] “이렇게 구체적 지시는 처음”… 관제데모 증언 확보』 제하의 보도 (JTBC 2017년 4월 19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인터넷 JTBC 2017년 4월 20일자 사회면) (2) 『[단독] “관제데모, 구체적 지시는 박근혜 정부가 처음”』 제하의 기사 (인터넷 JTBC 2017년 4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자유총연맹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지시로 관제데모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관제데모 지원’ 기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터넷 JTBC 2017년 5월 16일 사회면)

2017서울조정 812~814, 898	(각 정정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⁸¹²⁾ , (주)○○○○○○○○○ ⁽⁸¹³⁾ , 박○○ ⁽⁸¹⁴⁾ , 박○○ ⁽⁸¹⁵⁾ 對 뉴스타운
조 정 대 상	『안산 ○○구 ○○○○○○, 시의 ‘시정명령’ 무시 임대위 ‘무단사업자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아파트 노후시설물교체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지침을 위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서울조정 815·816	(정정·손배청구) 박○○ 對 SBS-TV
조 정 대 상	『비밀 노트와 녹취 파일 - 대한민국 경찰 인사 스캔들』 제하의 보도 (2017년 4월 8일자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경찰 인사 청탁 브로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819	(손배청구) 배○○ 對 위키트리(wiktree)
조 정 대 상	『“돼지 발정제 먹어봤습니다” 여성이 밝힌 뒷이야기』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5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경험담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820·821	(정정·손배청구) 성○○ 對 댄스포럼
조 정 대 상	『무용계의 비뚤어진 ‘성명서’ 문화』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일자 114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자체 지원금 중 일부를 부당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반론·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일자 110면)
2017서울조정 822·823	(정정·손배청구) (주)○○○○○○○○○○○ 對 JTBC
조 정 대 상	『판치는 ‘가짜뉴스’에 경찰도 나섰다 ... 전담 인력 배치』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10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가짜뉴스를 유포해 여론을 심각히 오염시킨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824~832	(각 반론청구) 이○○ 對 KBS미디어 ⁽⁸²⁴⁾ , iMBC ⁽⁸²⁵⁾ , WOW한국경제TV ⁽⁸²⁶⁾ , 연합뉴스 ⁽⁸²⁷⁾ , 뉴시스 ⁽⁸²⁸⁾ , 온라인 중앙일보 ⁽⁸²⁹⁾ , 세계닷컴 ⁽⁸³⁰⁾ , 투데이코리아 ⁽⁸³¹⁾ , OM 뉴스(옴부즈맨뉴스) ⁽⁸³²⁾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미디어 : 『○○○ 재단 여중 목사 성추행 혐의로 입건』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5일자 사회면) • iMBC : 『여중생 성추행한 ○○○재단 여중 교내 목사 입건』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6일자 사회면) • WOW한국경제TV : 『○○○재단 여중 교목, 학생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5일자 정치사회면) • 연합뉴스 : 『○○○재단 여중 교목, 학생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5일자 사회면) • 뉴시스 : 『○○○ 재단 여중 목사, 학생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6일자 사회면) • 세계닷컴 : 『○○○ 재단 여중 교목, 학생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5일자 사회면) • 투데이코리아 : 『[단독] 서울 ‘○’ 여중 교목, 여학생 ‘성추행’ 충격 ... 경찰 수사』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1일자 사회면) 외 2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연합뉴스, 투데이코리아/사유 : 보도계재, KBS미디어, iMBC, WOW 한국경제TV, 뉴시스, 온라인 중앙일보, 세계닷컴, OM뉴스(옴부즈맨뉴스)/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재단 여중 교목, 학생 성추행’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5일자 사회면) • 투데이코리아 : 『“서울 ‘○’ 여중 교목, 여학생 ‘성추행’ 충격 ... 경찰 수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7일자 사회면)

<p>2017서울조정 834~840</p>	<p>(각 정정청구) 자유한국당 對 SBS아이앤엠^(834, 835), 인터넷 이데일리⁽⁸³⁶⁾, 쿠키뉴스⁽⁸³⁷⁾, 오마이뉴스⁽⁸³⁸⁾, 프레시안⁽⁸³⁹⁾, 뉴스1코리아⁽⁸⁴⁰⁾</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아이앤엠 : (1) 『[사실은] 홍준표 “DJ·盧 정권, 북한에 70억 달러 줬다”… 확인해보니』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4일자 사회면) • (2) 『[사실은] MB 정부 대북송금이 더 많았다? … 7년 만에 뒤바뀐 진위』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5일자 정치면) • 인터넷 이데일리 : 『문재인·홍준표, DJ·盧정부 대북 송금 액수 두고 갑론을박』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7일자 정당면) • 쿠키뉴스 : 『더민주 “홍준표, 거짓말 고마해라”』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7일자 정치면) • 오마이뉴스 : 『사실 확인에 게으른 홍준표 ‘가짜뉴스’로 문재인 맹공격』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9일자 정치면) • 프레시안 : 『北에 70억 달러 퍼줬다는 홍준표 주장은 거짓』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7일자 정치면) • 뉴스1코리아 : 『민주당 “洪, 새빨간 거짓말 중단해야”…‘北지원’ 발언 비판』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7일자 정치면)
<p>신청인 주장</p>	<p>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지난 정권은 북한에 70억 달러를 줬다고 한 발언이 거짓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SBS아이앤엠/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쿠키뉴스/내용 : 반론보도, 프레시안/내용 : 기사수정) • 각 취하 (인터넷 이데일리/사유 : 보도계제, 오마이뉴스/사유 : 자진취하, 뉴스1코리아/사유 : 당사자 간 화해)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아이앤엠 : 『[사실은] 홍준표 “DJ·盧 정권, 북한에 70억 달러 줬다”… 확인해보니』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 삭제 (2017년 5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이데일리 : 『문재인·홍준표, DJ·盧정부 대북 송금 액수 두고 갑론을박』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 삭제 (2017년 5월 19일자 정당면) • 쿠키뉴스 : 『더민주 “홍준표, 거짓말 고마해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3일자 정치면) • 프레시안 : 『北에 70억 달러 퍼줬다는 홍준표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로 제목 수정 (2017년 4월 30일자 정치면)

2017서울조정 841, 848, 849	(각 정정청구) 김관진 ⁽⁸⁴¹⁾ , 국방부 ^(848, 849) 對 한국일보 ^(841, 848) , 인터넷 한국일보 ⁽⁸⁴⁹⁾
조 정 대 상	『정부, 사드 비용 작년 말 통보 받았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7년 5월 2일자 1면, 인터넷 한국일보 2017년 5월 2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사드 배치의 미국 측 비용 부담 요구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한국일보⁽⁸⁴¹⁾/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취하 (한국일보⁽⁸⁴⁸⁾, 인터넷 한국일보/사유 : 기타)
이 행 결 과	『‘사드 비용 통보’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7년 6월 2일자 2면, 인터넷 한국일보 2017년 6월 2일자 정치면)

2017서울조정 842~847, 912·913·914, 917·918·919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권○○ ^(842·843·844, 912·913·914) , ○○○○○침례회 ^(845·846·847, 917·918·919) 對 인터넷 국민일보 ^(842·843·844, 845·846·847) , 교회와신앙 ^(912·913·914, 917·918·919)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국민일보 : 『[특별기고] 세월호 참사가 던지는 교훈』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1일자 시사면) • 교회와신앙 : 『3년 전의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7일자 이단&이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남편인 고 유병언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이고 구원파 교주라는 보도와 신청인 교단이 기독교를 위장한 사교집단이라는 보도 등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불성립결정(인터넷 국민일보) • 조정성립 (교회와신앙/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교회와신앙 : 『고 유병언 전 회장 및 ○○○○○침례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6일자 이단&이슈면)

2017서울조정 850	(손배청구) 최○○ 對 인사이트
조 정 대 상	『○○, 달콤 짭조름한 ‘○○○○’ 비빔면 다음주 출시』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7일자 소비자면)
신청인 주장	가공식품 출시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신청인이 SNS에 게재한 해당 가공식품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851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MBC-TV
조 정 대 상	『장애인 단체 지원 제도 악용한‘군납비리’ 적발』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0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군복을 불법 납품한 제조업체 대표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7서울조정 854	(반론청구) (주)○○○○○○○○ 對 인터넷 메트로
조 정 대 상	『강남 승무원 학원 ‘채용 갑질’ 논란...“강의 들으면 합격 시켜준다?”』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6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외국 항공사의 채용대행을 맡은 신청인 학원이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여 수강료를 받고 잠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기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6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855·856	(정정·손배청구) 정○○ 對 기독교보
조 정 대 상	『한국기독교보, 대국민사기극 공모자 책 소개』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8일자 사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진 세모자 성폭행 사건을 진실인 것처럼 조작하고, 통합 교단 산하 교회를 신천지로 매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한국기독교보, 대국민사기극 공모자 책 소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8일자 초기화면)
2017서울조정 857	(정정청구) 나경원 對 일요신문
조 정 대 상	『얼굴이 큰 힘 - 기념사진 찍어주는 나경원 의원』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8일자 포토/TV면)
신청인 주장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지원유세중인 신청인 모습을 보도하면서 얼굴이 힘이라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서울조정 858·859	(정정·손배청구) (주)○○○○ 對 YTN
조 정 대 상	(1) 『[단독] 싹 원두로 바꾸고 커피값 올린 ○○○○… 소비자 분통』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8일자 뉴스N이슈 프로그램) (2) 『값싼 원두 쓰고 커피값 올려‘암체상술’』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8일자 뉴스출발 프로그램) (3) 『‘값싼 원두’안 쓰다던 ○○○○, 이미 곳곳에 납품했다』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9일자 뉴스N이슈 프로그램) (4) 『○○○○ 거짓 해명 논란… 검찰 수사 착수』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9일자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프로그램) (5) 『○○○○“바꾼 원두 사용 안 해… 고급 원두로 전면 교체”』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9일자 뉴스출발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인 신청인 회사가 값싼 원두로 교체하고도 커피 값은 올려 이득을 챙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관련 정정 및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YTN 2017년 8월 24일자, 인터넷 YTN 2017년 8월 24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860	(손배청구) 채○○ 對 EBS-TV
조 정 대 상	『엄마의 어깨는 왜 아픈가?』 제하의 보도 (2017년 5월 5일자 명의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익명을 조건으로 촬영에 동의했으나 무단으로 실명과 신체부위 등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7서울조정 861	(정정청구) 국토교통부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1) 『[신안산선 입찰 논란①] ○○○, 사업자심사 ‘3대17’(실격)에서 ‘15대5’(적격)로 급반전』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6일자 전국면) (2) 『[신안산선 입찰 논란②] ○○○ 적격판정 ‘보이지 않는 힘’ 작용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6일자 전국면) (3) 『[신안산선 입찰 논란③] ○○○ 우선협상자 선정, 공정성 ‘우려’』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8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입찰논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신안산선 공사업체 선정 업무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신안산선 입찰 논란』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1일자 전국면)

2017서울조정 868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포토]‘가장 행복할 때’』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1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대학 교정에서 졸업사진을 촬영 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2017서울조정 873~876	(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JTBC
조 정 대 상	(1) 『‘태블릿PC 조작설’, 보고서 형태‘가짜 뉴스’로 확산』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15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2) 『특검 겨냥한 극우매체, ‘가짜 뉴스’로 흠집내기 시도』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16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발표한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보고서 내용이 허구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877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시급’ 7100원 기자 뽑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3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시급 재택기자를 채용하는 것이 어뷰징기사를 양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시급 7100원 기자 뽑습니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9일자 뉴스면)

2017서울조정 878~890	(각 정정청구) 나경원 對 인터넷 서울신문 ⁽⁸⁷⁸⁾ , 쿠키뉴스 ⁽⁸⁷⁹⁾ , 한강타임즈 ⁽⁸⁸⁰⁾ , 인터넷 스포츠서울 ⁽⁸⁸¹⁾ , 인터넷 스포츠투데이 ⁽⁸⁸²⁾ , 인터넷 한국스포츠경제 ⁽⁸⁸³⁾ , 아주뉴스(인터넷아주경제) ⁽⁸⁸⁴⁾ , 씨앤비뉴스(CNBNEWS) ⁽⁸⁸⁵⁾ , M 이코노미 NEWS ⁽⁸⁸⁶⁾ , 인터넷 퀸(QUEEN) ⁽⁸⁸⁷⁾ , 문화저널21 ⁽⁸⁸⁸⁾ , 비주얼다이브 ⁽⁸⁸⁹⁾ , 인사이트 ⁽⁸⁹⁰⁾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서울신문 : 『나경원 부친 흥신학원 24억 미납 재조명 ... 나경원 의원실 입장보니』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2일자 정치면) • 쿠키뉴스 : 『자유한국당 ‘웅동학원’ 체납 비판에 나경원 ‘흥신학원’ 역풍 ... “전형적 몰타기”』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2일자 정치면) • 인터넷 스포츠서울 『나경원 의원 ‘법정부담금 미납’ 설명에도 네티즌 분노』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2일자 정치면) • 아주뉴스(인터넷아주경제) 『조국 민정수석 母 ‘웅동학원’ 지방세 2100만원 체납에 나경원父 ‘흥신학원’도 시끌』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3일자 사회면) • 씨앤비뉴스(CNBNEWS) : 『나경원父 법정부담금 미납 논란에 네티즌 “발끈”』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2일자 정치면) • 문화저널21 : 『웅동학원 체납 불똥 흥신학원, 나경원 “24억 낼 필요 없어” 공식입장』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2일자 정치면) • 인사이트 : 『‘웅동학원’ 세금 체납에 재논란된 나경원 ‘흥신학원’ 24억원 미납』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2일자 정치면) 외 6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에서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것을 불법으로 체납했다는 취지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한강타임즈, 인터넷 스포츠투데이, 인터넷 한국스포츠경제, 인터넷 퀸(QUEEN)/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인터넷 서울신문, 쿠키뉴스, 인터넷 스포츠서울, 아주뉴스(인터넷아주경제), 씨앤비뉴스(CNBNEWS), 인사이트/내용 : 기사수정, M 이코노미 NEWS, 문화저널21, 비주얼다이브/내용 : 보도거제)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서울신문 : 『나경원 부친 흥신학원 24억 미납 재조명 ... 나경원 의원실 입장보니』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주장 보강 (2017년 5월 23일자 정치면) • 쿠키뉴스 : 『자유한국당 ‘웅동학원’ 체납 비판에 나경원 ‘흥신학원’ 역풍...“전형적 몰타기”』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주장 보강 (2017년 5월 23일자 정치면) • 인터넷 스포츠서울 『나경원 의원 ‘법정부담금 미납’ 설명에도 네티즌 분노』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주장 보강 (2017년 6월 1일자 사회면) • 아주뉴스(인터넷아주경제) 『조국 민정수석 母 ‘웅동학원’ 지방세 2100만원 체납에 나경원父 ‘흥신학원’도 시끌』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주장 보강 (2017년 5월 23일자 사회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앤비뉴스(CNBNEWS) : 『나경원父 법정부담금 미납 논란에 네티즌 “발끈”』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9일자 정치면) • 문화저널21 : 『[정정보도문]‘나경원 부친 사학 법인부담금 체납’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6일자 정치면) • 인사이트 : 『‘웅동학원’세금 체납에 재논란된 나경원 ‘홍신학원’ 24억원 미납』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주장 보강 (2017년 5월 23일자 정치면) 외 3건
--	---

2017서울조정 891	(손배청구) 김○○ 對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아이돌 투표 모습 찍으려고 ‘대포카메라’ 들고 나타난 팬들』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0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아이돌그룹의 대선 투표 모습을 찍으려는 극성팬들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7서울조정 892~895	(각 정정·손배청구) 이○○ 외 1인 對 MBN^(892·893), 인터넷 MBN^(894·895)
조 정 대 상	『[단독] 이웃에게 이유없이 칼부림… 끊이지 않는 문지마 범죄』 제하의 기사 (MBN 2017년 5월 11일자 MBN 뉴스8 프로그램, 인터넷 MBN 2017년 5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이웃주민의 이유 없는 칼부림에 신청인들이 허겁지겁 도망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MBN/내용 : PR·후속보도, 피신청인 사과/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인터넷 MBN/내용 : 기사수정, PR·후속보도, 피신청인 사과/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단독] 이웃에게 이유 없이 칼부림… 끊이지 않는 문지마 범죄』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3일자 굿모닝MBN 프로그램) • 인터넷 MBN : 『[단독] 이웃에게 이유 없이 칼부림… 끊이지 않는 문지마 범죄』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5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896, 897	(각 손배청구) 고○○ 對 인터넷 미디어워치 ⁽⁸⁹⁶⁾ , 미래한국 Daily ⁽⁸⁹⁷⁾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미디어워치 : (1) 『인○○ 변호사, “나도 여백없는 투표용지 받았다” 주장』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4일자 정치/사회면) (2) 『민주당 고○○ 선거참관인 “투표용지 2개 맞다!” 증언』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4일자 정치/사회면) • 미래한국 Daily : 『선관위 “여백 없는 투표용지 주장은 허위” 엮포에도 가지지 않는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19대 대선 투표참관인으로 활동하면서 두 가지 투표용지 의혹을 제기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하 (인터넷 미디어워치/사유 : 피신청인 사과) • 기각 (미래한국 Daily/사유 : 공적 사안이며 진실한 보도이므로 청구 이유 없음)
2017서울조정 899	(손배청구) (주)○○○ 對 인터넷 시사저널
조정 대상	『[단독] ○○○, ‘퇴사 보복’ 위한 ‘소송 갑질’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7일자 이코노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경쟁업체로 전직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900, 907~911, 995, 1049~1064	<p>(각 정정청구) 문○○ 對 KBS미디어⁽⁹⁰⁰⁾, 연합뉴스TV⁽⁹⁰⁷⁾, 인터넷 연합뉴스TV⁽⁹⁰⁸⁾, 인터넷 YTN⁽⁹⁰⁹⁾, 인터넷 서울신문⁽⁹¹⁰⁾, 인터넷 한국일보⁽⁹¹¹⁾</p> <p>(각 정정·손배청구) 對 노컷뉴스^(1049·1050), 데일리안^(1051·1052), e머니투데이^(1053·1054), 인터넷 일요서울^(1055·1056), 온라인 중앙일보^(1057·1058), 뉴스1코리아^(1059·1060), 인터넷 헤럴드경제^(1061·1062), 연합뉴스^(1063·1064)</p>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미디어 : 『국회 직원을 차로 밀친 합참대위… 음주측정 거부로 ‘긴급체포’』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2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TV: 『국회서 역주행해 직원 친 공군 대위… 음주측정도 거부』 제하의 보도 (2017년 5월 13일자) • 인터넷 연합뉴스TV : 『국회서 역주행해 직원 친 공군 대위 … 음주측정도 거부』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2일자 사회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YTN : 『공군 대위가 역주행 제지 국회직원 차로 처』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신문 : 『국회 내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사람친 공군 대위』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2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국일보 : 『국회서 역주행해 직원 친 공군 대위 경찰에 체포』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2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국회서 역주행해 직원 친 공군 대위...음주측정도 거부』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2일자 최신기사면) 외 7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국회에서 방호원을 차로 치고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인터넷 YTN, 인터넷 한국일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신세계뉴스통신, 노컷뉴스, 데일리안, e머니투데이, 인터넷 일요서울, 온라인 중앙일보, 뉴스1코리아/내용 : 조건부보도,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인터넷 헤럴드경제/내용 : 조건부보도, 부제소) • 각 조정불성립결정 (연합뉴스TV, 인터넷 연합뉴스TV, KBS미디어, 인터넷 서울신문, 연합뉴스)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YTN : 『‘공군 대위가 역주행 제지 국회직원 차로 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국일보 : 『‘국회서 역주행해 직원 친 공군 대위 경찰에 체포’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7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901~904	(각 정정·반론청구) (주)○○○○○○○○○○○ 對 한국경제 ^(901·902) , 한경닷컴 ^(903·904)
조정대상	『[고덕·개포·과천... 상가로 번진 재건축 바람』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7년 5월 9일자 부동산면, 한경닷컴 2017년 5월 8일자 부동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관리하는 상가빌딩의 재건축 관련 재판이 6월께 종결될 것이라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행 결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7년 6월 14일자 29면, 한경닷컴 2017년 6월 14일자 뉴스면)

2017서울조정 905·906	(정정·손배청구) 차○○ 對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단독] ○○○○노조 대모-○○대의료원'검은 계약』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노조위원장 출신인 신청인이 소속병원과의 뒷거래로 일을 하지 않고도 오랜 기간 임금을 받아왔다고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915	(각 반론청구) 심○○ 對 시사프리신문
조 정 대 상	『○○구선거관리위원회, 취재기자에 막말』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7일자 9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19대 대선 개표상황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막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구선거관리위원회, 취재기자에 막말』 기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7일자 9면)

2017서울조정 920~923	(각 정정·반론청구) 진도군 對 일요시사 ^(920·921) , 인터넷 일요시사 ^(922·923)
조 정 대 상	『‘탈권위 시대’ 진도군수의 제왕적 행보 고발』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7년 5월 14일자 사회면, 인터넷 일요시사 2017년 5월 15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진도군수가 타 정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을 흠대하고 직원 근무평정 점수 조작을 지시하는 등 독단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탈권위 시대’진도군수의 제왕적 행보 고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7년 6월 19일자 사회면, 인터넷 일요시사 2017년 6월 15일자 사회면)

<p>2017서울조정 926~931</p>	<p>(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시사저널^(926·927), 인터넷 시사저널^(928·929), 시사저널e^(930·931)</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저널 : 『[단독] 해킹으로 고객 돈 빠져나가 ○○은행‘속얕이’』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7년 5월 23일자 72~73면, 인터넷 시사저널 2017년 5월 18일자 사회면) • 시사저널e : (1) 『[인터뷰] ○○은행 공익제보자“단기성과 급급해 고객 피해 방관”』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5일자 금융면) (2) 『[단독] 해킹으로 고객 돈 빠져나가 ○○은행‘속얕이’』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5일자 금융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국제 현금카드 정보유출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에만 급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p>
<p>2017서울조정 932~943, 988~993</p>	<p>(각 반론·손배청구) 박○○ 對 연합뉴스^(932·933), 온라인 중앙일보^(934·935), 인터넷 서울경제^(936·937), 인터넷 스포츠경향^(938·939), 인사이트^(940·941), 인터넷 MBN^(942·943), 조선닷컴^(988·989), 인터넷 국민일보^(990·991), 메디컬투데이^(992·993)</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의사는 합법적 살인면허 가진 사람?”... ○대의대 학생 발언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0일자 사회면) • 온라인 중앙일보 : 『○○대 의대, “의사는 합법적 살인면허증” 논란 학생 징계위 회부』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0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경제 : 『○대 의대 재학생 또 다시 구설...“의사는 합법적 살인면허증 가져”』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0일자 사회면) • 인터넷 스포츠경향 : 『○○대 의대, “의사는 합법적 살인 면허증” 발언한 학생 징계 예고』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0일자 사회면) • 인사이트 : 『“의사면허는 합법적 살인면허”라고 말한 ○대 의대생 징계한다』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0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나중에 죽고 싶음 처방해 드림”... ○대의대생 발언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0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명문 사립대 의과대학 재학생 “(의사는) 합법적 살인 면허증” 파문』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0일자 국제면) 외 2개 매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의 SNS 대화 일부만을 부각해 의사는 살인면허를 가졌다고 한 것처럼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p>

2017서울조정 944	(정정청구) 서울특별시 對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광고 안된다고... 사라져가는 버스 측면 번호판』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서울시내버스에 부착된 돌출 번호판의 운영 및 관리 주체는 서울시버스조합 인데도 서울시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7서울조정 948~949	(각 손해청구) 정○○ 외 1인 對 인터넷 이데일리⁽⁹⁴⁸⁾, 네이트⁽⁹⁴⁹⁾
조 정 대 상	『동기도 없고, 돈도 없고... 졸업앨범 대신 우정화보』 제하의 기사 (인터넷 이데일리 2017년 5월 25일자 사회면, 네이트 2017년 5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취업난에 비싼 졸업앨범 대신 기념사진으로 대체한다는 보도를 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단체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인터넷 이데일리/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 취하 (네이트/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서울조정 950~953	(각 정정·손배청구) 이○○ 외 1인 對 내일신문^(950·951), 인터넷 내일신문^(952·953)
조 정 대 상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이다”』 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7년 5월 25일자 21면, 인터넷 내일신문 2017년 5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대리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을 동물보호 단체가 진행하는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이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주장 보강 (인터넷 내일신문 2017년 6월 14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954·955	(정정·손배청구) 안○○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안○○ ○○시의원‘줄고 있다는 것 세상에 알리지 말라’』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3일자 국내사진면)
신청인 주장	기초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조례안 심사에 참석해 서류를 보고 있는 것을 줄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7서울조정 956	(정정청구) (주)○○○○○ 對 블로터
조 정 대 상	『‘캐통령’인기 비결, ‘캐리’인가 ‘언니’인가』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9일자 콘텐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유튜브 방송프로그램이 1인 방송으로 사업성이 없는 모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5일자 초기화면)
2017서울조정 957	(정정청구) (주)○○○○○ 對 미디어자몽
조 정 대 상	『1대 캐리언니, ‘지니언니’가 되어 돌아왔다!- 헤이지니 채널 오픈!』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인기 어린이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를 일방적으로 교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사과, 유감표명, 부제소)
2017서울조정 958	(정정청구) 이○○ 對 메디게이트뉴스
조 정 대 상	『한방 가슴성형의 확대 효과는 과연?』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9일자 의사/진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논문을 인용해 소개하면서 한방가슴확대성형 만족도가 3%에 불과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한방 가슴성형의 확대 효과는 과연?』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주장 보강 (2017년 6월 16일자 의사/진료면)

2017서울조정 959, 960	(각 정정청구) 경찰청 對 서울신문 ⁽⁹⁵⁹⁾ , 인터넷 서울신문 ⁽⁹⁶⁰⁾
조 정 대 상	『경찰,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기밀 접근권 靑에 건의”』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7년 5월 26일자 종합면, 인터넷 서울신문 2017년 5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양을 위해 국정원 기밀정보접근권을 청와대에 요구할 방침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7년 6월 23일자 9면, 인터넷 서울신문 2017년 6월 22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961	(손배청구) 김○○ 對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여대 건물 물탱크 터져... 학생들 대피 소동』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물탱크 파열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관련사진을 무단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여대 건물 물탱크 터져... 학생들 대피 소동』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소유 사진 삭제 (2017년 6월 5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962~978	(각 정정청구) 심○○ 對 온라인 중앙일보 ⁽⁹⁶²⁾ , 세계닷컴 ⁽⁹⁶³⁾ , 인터넷 국민일보 ⁽⁹⁶⁴⁾ , 아시아투데이닷컴 ⁽⁹⁶⁵⁾ , 인터넷 서울신문 ⁽⁹⁶⁶⁾ , 인터넷 헤럴드경제 ⁽⁹⁶⁷⁾ , 데일리안 ⁽⁹⁶⁸⁾ , 아시아경제닷컴 ⁽⁹⁶⁹⁾ , 미디어펜 ⁽⁹⁷⁰⁾ , 이슈타임 ⁽⁹⁷¹⁾ , 쿠키뉴스 ⁽⁹⁷²⁾ , 매경닷컴 ⁽⁹⁷³⁾ , 인터넷 신아일보 ⁽⁹⁷⁴⁾ , SBS아이앤엠 ⁽⁹⁷⁵⁾ , 인터넷 MBN ⁽⁹⁷⁶⁾ , 인터넷 YTN ⁽⁹⁷⁷⁾ , 연합뉴스 ⁽⁹⁷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중앙일보 : 『학생 입에 손가락 넣고 벌려... 초등교사 행동에 기겁』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0일자 사회면) • 세계닷컴 : 『초교 女교사, 피흘리는 비둘기 2시간 들고 다녀』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0일자 사회면) • 인터넷 국민일보 : 『초등여교사가 피 흘리는 비둘기 들고 혐오감 조성, 아동학대 혐의도 일부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0일자 시사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투데이닷컴 : 『○○ 초교 여교사 기이한 행동 “피 흘리는 비둘기 들고 교정 배회”... 학부모 반발』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0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신문 : 『충남 초교 여교사 기이한 행동에 학부모 반발』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0일자 사회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충남 여교사 피 흘리는 비둘기 들고 교정 배회 ... 학부모 반발(종합)』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0일자 사회면) • 데일리안 : 『초등 여교사, 피 흘리는 비둘기 들고 교정 배회... 왜?』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0일자 사회면) 외 10건
신청인 주장	교사인 신청인이 피 흘리는 비둘기를 들고 학교를 돌아다니는 등 기이한 행동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7서울조정 981·982 1069·1070	(각 정정·손배청구) 임○○ 對 경향신문 ^(981·982) , 한겨레 ^(1069·1070)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1) 『‘판사들 사법개혁 움직임 저지하라’ 대법, 지시 거부한 판사 ‘인사조치’』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6일자 1면) (2) 『판사들 ‘개혁 목소리’ 힘으로 덮으려 한 대법』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6일자 11면) • 한겨레 (1) 『‘피의자와 릉살롱’ 판사 대법, 검찰 비위통보 묵살』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5일자 1면) (2) 『‘조현오 뇌물’ 수사중에 ... 부산 향판과 건설업자 유착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5일자 3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시 검찰로부터 현직 부장판사의 비위사실을 통보받고도 아무 조치 없이 묵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불성립결정 (경향신문) • 조정성립 (한겨레/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8월 31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983	(정정청구) 한국국방연구원 對 인터넷 환경일보
조 정 대 상	『국방연구원, 1급 발암물질 ‘폐석면’ 날림처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국방연구원이 건물증축과정에서 발생한 발암물질 폐석면을 관계당국에 신고도 없이 불법 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국방연구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2일자 환경뉴스면)

2017서울조정 984~987	(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채널A ^(984·985) , 인터넷 채널A ^(986·987)
조 정 대 상	(1) 『○○ 카스텔라 그 축축함의 비밀』 제하의 보도 (채널A 2017년 3월 12일자 먹거리X파일 프로그램, 인터넷 채널A 2017년 3월 13일자 방송보기면) (2) 『○○카스텔라 논란』 제하의 보도 (채널A 2017년 3월 26일자 먹거리X파일 프로그램, 인터넷 채널A 2017년 3월 26일자 방송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카스텔라 제조에 사용되는 식용유와 계란이 불량 첨가제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994	(정정청구) (주)○○○○○ 對 WOW한국경제TV
조 정 대 상	『이제 첫 삽 떴는데... 역세권 청년주택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7일자 최신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부지 내 신축 중인 서울시 청년임대주택이 소속 학생만을 위한 학교시설 이라고 홍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이제 첫 삽 떴는데... 역세권 청년주택 논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보강 (2017년 6월 20일자 최신뉴스면)

<p>2017서울조정 996·997</p>	<p>(정정·손배청구) ○○대학교산학협력단 對 인터넷 시장경제신문</p>
<p>조 정 대 상</p>	<p>『○○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실공시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1일자 마케팅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법인이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 출연재산의 사용내역 등을 부실하게 공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피신청인 사과/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4일자 마케팅면)</p>
<p>2017서울조정 1000</p>	<p>(정정청구) 임○○ 對 뉴스타파</p>
<p>조 정 대 상</p>	<p>『민주당 도청의혹사건... KBS 전 보도국장 “우리가 한나라당에 줬다”』 제하의 보도 (2017년 6월 8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KBS 보도국장 시절 KBS가 민주당 대표회의를 불법으로 도청한 녹취록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불성립결정</p>
<p>2017서울조정 1001~1032</p>	<p>(각 정정·손배청구) 우○○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1001·1002), 아주뉴스^(1009·1010), 이뉴스투데이^(1017·1018), 블루투데이^(1025·1026), 구글^(1003·1004, 1011·1012, 1019·1020, 1027·1028), 네이버^(1005·1006, 1013·1014, 1021·1022, 1029·1030), 다음^(1007·1008, 1015·1016, 1023·1024, 1031·1032)</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세월호 침몰할 때 괴물체 찍혀”... 유언비어 확산』 제하의 기사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6년 12월 26일자 최신기사면, 구글, 네이버, 다음 2016년 12월 26일자 사회면) • 아주뉴스 : 『예비역 해군제독,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에“수리해야 해 금방 사진 공개돼 못 숨겨”』 제하의 기사 (아주뉴스 2016년 12월 26일자 사회면, 구글, 네이버, 다음 2016년 12월 26일자 사회면) • 이뉴스투데이 : 『김혁수, 세월호-잠수함 충돌설 반박“차로 세월X의 허위주장을 뒷받침 해주려 하는 의견 난무해”』 제하의 기사 (이뉴스투데이 2016년 12월 29일자 사회면, 구글, 네이버, 다음 2016년 12월 29일자 사회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루투데이 : 『전 해군 제독, ‘세월호 잠수함 충돌’음모론 추가 반박』 제하의 기사 (블루투데이 2016년 12월 29일자 사회면, 구글, 네이버, 다음 2016년 12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주장한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이 유언비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각 (인터넷 헤럴드경제, 아주뉴스, 이뉴스투데이, 블루투데이/사유 : 당사자 부적격, 구글/사유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네이버, 다음/사유 : 기사를 매개하였을 뿐이므로 독자적인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의무는 없음)

2017서울조정 1033·1034, 1160~1163	(각 정정·손배청구) 이언주 對 인터넷 경향신문 ^(1033·1034) , 인터넷 헤럴드경제 ^(1035·1036) , 인터넷 여성신문 ^(1037·1038)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향신문 : 『이언주 “외교부 장관, 국방 잘 알아야”』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6일자 정치일반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여자의 적은 여자? ... 이언주 “외교부 장관은 ‘남자’가 해야”』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7일자 최신기사면) • 인터넷 여성신문 : 『“여성할당제” 지지한 이언주 “외교부 장관은 남자가 해야” 성차별 발언』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7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여성은 외교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향신문 : 『이언주 “외교부 장관, 국방 잘 알아야”』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주장 반영해 내용 수정 (2017년 7월 6일자 정치일반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이언주 “외교부 장관은 국방을 잘 알아야”』 제하의 기사로 신청인 주장 반영해 제목과 내용 수정 (2017년 7월 24일자 정치면) • 인터넷 여성신문 : 『이언주 “이번 외교부 장관은 국방을 잘 알아야”』 제하의 기사로 신청인 주장 반영해 제목과 내용 수정 (2017년 7월 24일자 정치면)

2017서울조정 1035·1036	(정정·손배청구) 이연주 對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국회의원 여비서들 줄사직 이유가 글썄 …』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6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수행보좌관이 여성 국회의원과 불륜관계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7서울조정 1037	(손배청구) 김○○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 ○○○○, 입주자 대표회장 자격 공방 장기화』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자격논란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자격을 상실한 아파트를 보도하면서 현재 회장 직무대행인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서울조정 1038~1041	(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한겨레21 ^(1038·1039) , 인터넷 한겨레21 ^(1040·1041)
조 정 대 상	(1) 『○○주택 안에서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7년 3월 20일자 70~71면, 인터넷 한겨레21 2017년 3월 13일자 사회면) (2) 『모태펀드와 화이트리스트』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7년 4월 17일자 60~63면, 인터넷 한겨레21 2017년 4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작한 영화 ‘사선에서’가 제작 중이던 다른 영화의 제목만을 바꾼 우익 영화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한겨레21/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인터넷 한겨레21/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겨레21 : 『영화「사선에서」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4일자 특집면) 인터넷 한겨레21 : 『영화「사선에서」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1일자 사회일반면)

2017서울조정 1042, 1043, 1068	(각 손해청구) ○○○○○○(주) 외 1인 對 인터넷 일요시사 ⁽¹⁰⁴²⁾ , 인터넷 시사저널 ⁽¹⁰⁴³⁾ , 아시아경제 ⁽¹⁰⁶⁸⁾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일요시사 : 『<이슈&인물> 박근혜 집 산 홍○○ ○○○○○○ 회장,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4일자 화제의 인물면) • 인터넷 시사저널 : 『[단독] 홍○○ 회장, MB에게 명절 선물도 받았다』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6일자 정치면) • 아시아경제 : 『박근혜 삼성동 자택 홍○○ 회장이 샀다』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1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 회장이 역대 대통령 일가 및 정관계 인사에 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부정적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044	(정정청구) ○○○○○○ ○○○○○○사업조합 對 MBC-TV
조정 대상	『소송·협박 난무, 재개발 주민 갈등... 지자체는 무관심?』 제하의 보도 (2017년 6월 12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개발조합이 지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조합원을 공갈 협박하여 찬성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보도, 부제소)
2017서울조정 1045	(정정청구) 여○○○ 對 조선닷컴
조정 대상	『[사건 블랙박스] 홈쇼핑서 건강식품 광고하던 女의사 결국은...』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8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현직 의사 겸 건강식품업체 대표인 신청인이 TV홈쇼핑의 자사제품 광고에 출연한 것이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이라고 잘못 보도했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046~1048, 1099·1100	(정정·반론·손배청구) 한○○ 對 인터넷 불교신문 ^(1046~1048) (정정·손배청구) 對 인터넷 불교신문 ^(1099·1100)
조 정 대 상	(1) 『“한전부지 개발권 넘기면 500억 주겠다”』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5일자 종단면) (2) 『“종단 승인절차 거치지 않은 뒷거래 계약”』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9일자 종단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과거 봉은사 소유였던 한전부지 개발권 계약으로 개인적으로 5백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065~1067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對 뉴스앤조이
조 정 대 상	『신천지 빠진 딸에게 고소당한 아버지』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3일자 교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부모에 의해 감금 폭행당했는데도 이를 부정하는 부친의 인터뷰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071	(정정청구) ○○초등학교 對 SBS-TV
조 정 대 상	8뉴스 프로그램 『재벌 총수 손자, 연예인 아들이어서? 사라진 가해자』 제하의 보도 (2017년 6월 16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총수의 손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봐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072	(반론청구) (사) ○○○○○○○○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새학기 앞두고 대학가 이단활동 주의 경계해야”』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22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의료봉사단체가 이단 종교단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073, 1074	(각 반론청구) ○○○○농협 對 로이슈 ⁽¹⁰⁷³⁾ , 글로벌경제신문 ⁽¹⁰⁷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이슈 : 『[단독] ○○○○농협, GMP생산제품서 엄청난 세균검출에 은폐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5일자 사회면) • 글로벌경제신문 : 『○○○○농협, GMP생산제품서 세균검출 은폐 의혹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농협이 제조한 제품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이슈 : 『“○○○○농협, GMP생산제품서 엄청난 세균검출에 은폐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4일자 사회면) • 글로벌경제신문 : 『“○○○○농협, GMP생산제품서 엄청난 세균검출에 은폐 의혹”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4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075·1076, 1139·1140	(각 정정·손배청구) 권○○ ^(1075·1076) , 김○○ ^(1139·1140) 對 베타뉴스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독①] ‘인천 송도 ○○-○공구에 폐기물 산더미처럼 묻혀 있다’ 주장 파문』 제하의 보도 (2017년 6월 16일자 경기도소식면) (2) 『[단독②] 인천 송도○○-○공구, 폐기물 매립 됐다 주장에도 … 버티기 들어가』 제하의 보도 (2017년 6월 17일자 경기도소식면) (3) 『[단독③] 인천 송도○○-○공구에 대량의 폐기물 묻혔다 주장 논란 일어』 제하의 보도 (2017년 6월 17일자 경기도소식면) (4) 『[단독④] ○○중공업, 인천 송도○○-○공구 대량 슬라임 폐기물 매립 의혹』 제하의 보도 (2017년 6월 18일자 경기도소식면) (5) 『[단독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토 환경 망치는 기업 일벌백계“늑장”』 제하의 보도 (2017년 6월 19일자 경기도소식면) 외 2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관리하는 인천 송도 매립지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7서울조정 1077, 1078	(각 반론청구) ○○대학교 對 매일경제 ⁽¹⁰⁷⁷⁾ , 매경닷컴 ⁽¹⁰⁷⁸⁾
조 정 대 상	『[단독] ○○대, 올해 대입 수시 전형료 기습인상』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7년 5월 24일자 31면, 매경닷컴 2017년 5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교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2018 대입 수시전형료를 인상하는 등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 전형료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7년 7월 14일자 29면, 매경닷컴 2017년 7월 17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079	(정정청구) 윤○○ 외 1인 對 인터넷 YTN
조 정 대 상	『[단독] 고교 방학 강좌 ‘극우 성향 강사’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3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고등학교 경제 강의에 초청된 신청인들이 극우 성향의 인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움)
2017서울조정 1080	(정정청구) 정의당 對 리얼뉴스
조 정 대 상	『정의당, 반대파 당원 축출 모의… 가성비 “노회찬 공격”』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정당이 반대파 당원 탄압을 조직적으로 모의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의당 내 페미니스트 모임, 반대파 당원 축출 모의』 제하의 기사로 신청인 주장 반영하여 제목 및 내용 수정 (2017년 7월 20일자 정치면)

2017서울조정 1081	(정정청구) ○○○○○○교회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민원해소인가 특혜인가”… 대형 교회 요구 들어준 공공기관』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0일자 경기면)
신청인 주장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신청인 교회 소유 부지에 대한 갈등을 해소한 것이 부당한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1082~1092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손○○ 對 민중의 소리 ^(1082·1083·1084) , 아시아경제닷컴 ^(1085·1086·1087) , KBS 미디어 ^(1090·1091·1092) (각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스페셜경제 ^(1088·1089)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중의 소리 : 『“돼지 같은X” 알바생 상습 성희롱한 레스토랑 실장』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6일자 사회면) • 아시아경제닷컴 : 『“예쁜 엉덩이 다칠라” 알바생 성희롱 일삼은 ○○ 레스토랑 사장님』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9일자 사회면) • 인터넷 스페셜경제 : 『경기도 소재 ‘○레스토랑’ 성희롱 알바 피해자 10명 이상? … 알바노조, 국가인권위 16일 진정』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6일자 이슈포커스면) • KBS미디어 : 『‘맞대응에 속았지만’ 직장내 성희롱』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8일자 뉴스9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각하 (사유 : 신청인에게 조정기일 통지 불능)

2017서울조정 1093·1094	(정정·손배청구) 중앙경찰학교 외 1인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중앙경찰학교, 교장과 다른 의견 댓글 간부 징계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4일자 최신기사면)
신청인 주장	중앙경찰학교가 학교장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간부를 보복 징계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중앙경찰학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5일자 최신기사면)

<p>2017서울조정 1095~1098</p>	<p>(각 정정·반론청구) 해군제3함대사령부 對 YTN^(1095·1096), 인터넷 YTN^(1097·1098)</p>
<p>조 정 대 상</p>	<p>(1) 『[단독]“내부고발했더니 구속영장?”… 해군, 보복 수사 논란』 제하의 보도 (YTN 2017년 6월 8일자 뉴스N이슈 프로그램, 인터넷 YTN 2017년 6월 8일자 사회면) (2) 『[단독]“내부고발했더니 구속영장?”… 해군, 보복 수사 논란』 제하의 보도 (YTN 2017년 6월 8일자 YTN 뉴스출발 프로그램, 인터넷 YTN 2017년 6월 8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부대가 부대원의 근무태만을 군 외부로 알린 부사관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내부 고발했더니 구속영장? 해군 보복 수사 논란」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YTN 2017년 7월 19일자 사회면)</p>
<p>2017서울조정 1101~1104</p>	<p>(각 정정·손배청구) 국기원 對 한국일보^(1101·1102), 인터넷 한국일보^(1103·1104)</p>
<p>조 정 대 상</p>	<p>『비상근 이사까지 월 최대 500만원』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7년 6월 21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국일보 2017년 6월 21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국기원이 임원 및 각종 위원회의 활동비를 과다 편성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p>
<p>2017서울조정 1105</p>	<p>(정정청구) (재)○○○○재단 對 민중의 소리</p>
<p>조 정 대 상</p>	<p>『“이번 달까지 안 받으면 못 받아요” ‘위안부’ 위로금 회유하는 ○○○○재단』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1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재단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의 위로금수령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불성립결정</p>

2017서울조정 1107	(정정청구) 나○○ 對 MBC-TV
조 정 대 상	『[단독취재] 6년 과정 3년만에 ‘뚝뚝’속성 학위 따고 ‘교수’ 검증은?』 제하의 보도 (2017년 6월 7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교수 재직 이력이 허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108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여성경제신문
조 정 대 상	『○○○○ ‘일본 유명 골프브랜드 접촉’에 국내 수입 · 유통사 날벼락』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일본 골프브랜드와의 계약을 불공정하게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7서울조정 1109·1110	(반론 · 손해청구) ○○○○○○○(주) 對 뉴스타운
조 정 대 상	(1) 『성북의 최대 아파트단지 주민갈등으로 ‘폭행사건 발생’』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9일자 사건사고면) (2) 『돈암동 ○○○○아파트 주민갈등, ‘특정업체 선정 의혹’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6일자 사회일반면) (3) 『[포토]돈암동 ○○○○아파트, 엉터리 입찰에 성북구청 시정명령』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7일자 사회일반면) (4) 『돈암동 ○○○○아파트 비상대책위, 기자회견 ‘파문예상’』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3일자 사회일반면) (5) 『○○○○아파트도 담합의혹 ‘증폭’ 수사기관 개입가능성 커』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31일자 사회일반면) (6) 『돈암 ○○○○아파트 ‘잦은 소규모 화재’ 주민은 불안』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6일자 사회일반면) (7) 『돈암 ○○○○아파트, 광화문집회 ‘비리척결특별법 제정 촉구’』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0일자 사회일반면) 외 1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아파트 난방공사와 시설물 교체공사업체로 선정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111·1112	(정정·손배청구) ○○○○ (주) 對 인사이트
조 정 대 상	(1) 『“○○베이비 됐네”, 몰라보게 훌쩍해진 ○○○○ ○○보이 근황』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8일자 소비자면) (2) 『‘○○보이 기사’안 내리면‘법적조치’하겠다는 ○○○○ 사장』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2일자 소비자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특정 병과제품의 용량을 근래에 대폭 줄였고 관련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피신청인 언론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7서울조정 1113	(반론청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對 한국경제
조 정 대 상	『한노총 “文정부 탄생 주역이 누군데...”』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1일자 A01면)
신청인 주장	한국노총이 일자리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정부 측에 호통을 치고 노동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한국노총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4일자 경제면)
2017서울조정 1114	(정정청구) ○○○○○○노동조합 對 동아사이언스
조 정 대 상	『박○○ ○○○○研 소장 1년 9개월 만에 돌연 사표』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5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국가○○○○○연구소장의 돌연 사퇴 이유가 노조와의 갈등과 압박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115, 1116	(각 정정청구) ○○○○노동조합 외 1인 對 MBC-TV ⁽¹¹¹⁵⁾ , iMBC ⁽¹¹¹⁶⁾
조 정 대 상	(1) 『[현장M출동] 욱먹고 매 맞는 경찰... 늘어난 공무집행방해』 제하의 기사 (MBC-TV 2017년 5월 28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iMBC 2017년 5월 28일자 뉴스데스크면) (2) 『욕먹고 매 맞는 경찰 늘어나는데 처벌 솜방망이』 제하의 기사(MBC-TV 2017년 5월 29일자 이브닝뉴스 프로그램, iMBC 2017년 5월 29일자 이브닝뉴스면)
신청인 주장	노조 간부인 신청인이 공사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현장M출동] 욱먹고 매 맞는 경찰 ... 늘어난 공무집행방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발언 삭제 (iMBC 2017년 9월 8일자 뉴스데스크면)

2017서울조정 1120	(손배청구) 문○○ 對 인사이트
조 정 대 상	『“유부남 직장 상사와 바람난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겠어요”』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부하 여직원과 불륜 관계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서울조정 1123	(정정청구) (사) ○○○○○협회 對 헬스포커스뉴스
조 정 대 상	『의료계, 아플 땐 병원 찾는 한의사 비판』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9일자 의료면)
신청인 주장	한의사들이 한방진료를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이 아프면 양의사를 찾는다고 폄해하고 한의사를 불필요한 직종이라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의료계, 아플 땐 병원 찾는 한의사 비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5일자 의료면)

2017서울조정 1126~1129	(각 정정·손배청구) 유○○ 對 채널A ^(1126·1127) , 인터넷 채널A ^(1128·1129)
조 정 대 상	『7살 형들의 ‘몹쓸 짓’… 피해 아동 심리치료까지』 제하의 보도 (채널A 2017년 5월 30일자 종합뉴스 프로그램, 인터넷 채널A 2017년 5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6살 남아가 7살짜리 형들에게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어린이집 추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채널A 2017년 9월 15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130~1133	(각 정정·손배청구) 게임물관리위원회 對 SBS CNBC-TV ^(1130·1131) , 인터넷 SBS CNBC ^(1132·1133)
조 정 대 상	(1) 『‘19금 게임’인데… 한 달 째 12세 이용가?』 제하의 보도 (SBS CNBC-TV 2017년 6월 16일자 뉴스프리즘 프로그램, 인터넷 SBS CNBC-TV 2017년 6월 16일자 경제면) (2) 『‘12세→19세→15세’?… 게임등급 관리 허술, 왜?』 제하의 보도 (SBS CNBC-TV 2017년 6월 16일자 비즈투데이 프로그램, 인터넷 SBS CNBC-TV 2017년 6월 16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이용자등급 분류규정이 허술하며, 업체 봐주기식 행정을 펼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서울조정 1134·1135	(정정·손배청구) 게임물관리위원회 對 헝그리앱뉴스
조 정 대 상	『[취재] 게임위, 경매장 없애지 않으면… 게임업체 상대로 강압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3일자 게임업계동향면)
신청인 주장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청소년이용 게임업체의 아이템거래에 제한 조치한 것을 부당한 횡포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게임위, 경매장 없애지 않으면…」기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1일자 취재기사면)

2017서울조정 1136·1137	(반론·손배청구) 홍○○ 對 리얼뉴스
조 정 대 상	『정의당 내 ‘당정농단’, 당원게시판 폐쇄 모의』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3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정의당 전국위원인 신청인이 당원게시판 폐쇄를 모의하는 등 당정농단을 획책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138, 1174~1177	(반론청구) 정○○ 對 JTBC⁽¹¹³⁸⁾ (각 정정·반론청구) 한겨레21^(1174·1175), 인터넷 한겨레21^(1176·1177)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 『“어디 만져줄래”○○ 교수 성추행 의혹… 피해자 증언』 제하의 보도 (2017년 6월 28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 한겨레21 : 『성추행과 논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7년 7월 10일자 62~64면, 인터넷 한겨레21 2017년 7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수인 신청인이 여성 대학원생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 『‘○○대학교 교수 성추행 의혹’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7년 8월 4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 한겨레21 : 『‘성추행과 논문 보도’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4일자 54면) • 인터넷 한겨레21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8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141~1143	(정정·반론·손배청구) 고○○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당 ○○선대위 본부장 ‘마약전과’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정당 간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로 활동했고 마약 및 절도 전과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p>2017서울조정 1144, 1145</p>	<p>(각 손해청구) 윤○○ 對 프레시안⁽¹¹⁴⁴⁾, 인터넷 아시아일보⁽¹¹⁴⁵⁾</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시안 : (1) 『순천의료원, 시신 바뀐 것 합의 위해 장례지도사에게 50만 원씩 받았다』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2일자 사회면) (2) 『순천의료원, 장례물품 특정업체 단독 조달!』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아시아일보 : (1)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시신 뒤바껴… 은폐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2일자 사회면) (2) 『순천의료원, 특정업체 수의물품 단독 조달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일자 사회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근무하는 병원을 비판하면서 병원 직원인 신청인이 취재를 방해하고 은폐한다고 악의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p>
<p>2017서울조정 1146, 1147</p>	<p>(각 추후청구) 강○○ 對 문화일보⁽¹¹⁴⁶⁾, 인터넷 문화일보⁽¹¹⁴⁷⁾</p>
<p>조 정 대 상</p>	<p>『조○○과 함께 고발된 강모씨 ‘새누리당의 왕주현’ 역활했다』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6년 7월 11일자 정치면, 인터넷 문화일보 2016년 7월 11일자 정치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보도거제)</p>
<p>이 행 결 과</p>	<p>『20대총선 政資法위반 피고발인, 새누리 당직자 강 모 씨 무혐의』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7년 7월 14일자 12면, 인터넷 문화일보 2017년 7월 14일자 사회면)</p>
<p>2017서울조정 1148</p>	<p>(정정청구) (재) ○○○○○○ 對 서울경기케이블TV</p>
<p>조 정 대 상</p>	<p>『○○○○재단, 감사 중 ‘직제개편’ 논란』 제하의 보도 (2017년 6월 8일자 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프로그램)</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재단이 전문성과 상관없이 모든 직급이 팀장을 할 수 있도록 직제개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p>
<p>이 행 결 과</p>	<p>『‘○○○○재단 직제개편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7년 7월 25일자 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프로그램)</p>

2017서울조정 1149·1150, 1158·1159	(각 정정·손배청구) 소○○ 對 MBC-TV ^(1149·1150) , iMBC ^(1158·1159)
조 정 대 상	『성소수자 인권, 나중은 없다』 제하의 보도 (MBC-TV 2017년 5월 30일자 PD수첩 프로그램, iMBC 2017년 5월 30일자 PD수첩 방송보기면)
신청인 주장	남성 동성애로 AIDS가 발병한다는 신청인의 설교 내용이 허위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151, 1152	(각 정정청구) ○○대학교 ○○○○병원 對 EBS-TV ⁽¹¹⁵¹⁾ , EBS 뉴스 ⁽¹¹⁵²⁾
조 정 대 상	『3D프린팅, 상상을 출력하다』 제하의 기사 (EBS-TV 2017년 6월 15일자 과학 다큐 비욘드 프로그램, EBS 뉴스 2017년 6월 15일자 오늘의 TV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이 국내 최초로 3D 프린팅을 이용한 두개골 이식술을 시행했는데도 다른 병원이 최초로 성공했다고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7서울조정 1153	(반론청구) 김○○ 외 2인 對 SBS-TV
조 정 대 상	『전대미문의 실종사건, 그 많던 향아리는 어디로 사라졌나』 제하의 보도 (2017년 6월 23일자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마을 주민인 신청인들이 이웃집의 향아리를 훔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154~1157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SBS-TV ^(1154·1155) , SBS아이앤엠 ^(1156·1157)
조 정 대 상	(1) 『양악 수술 후 숨진 환자'차트 조작'... 들통난 간호사』 제하의 보도 (SBS-TV 2017년 7월 1일자 SBS 8뉴스 프로그램, SBS아이앤엠 2017년 7월 2일자 사회면) (2) 『[단독] 사망 환자 차트서 사라진 의사 이름 ... 수상한 흔적』 제하의 보도 (SBS-TV 2017년 7월 5일자 SBS 8뉴스 프로그램, SBS아이앤엠 2017년 7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양악수술에 따른 것이고 수술 후 처치가 미흡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p>2017서울조정 1164~1173, 1440~1442, 1428, 1429, 1443~1448</p>	<p>(각 정정청구) 최 ○ 對 동아일보⁽¹¹⁶⁴⁾, 동아닷컴⁽¹¹⁶⁵⁾, 온라인 중앙일보⁽¹¹⁶⁶⁾, 인터넷 헤럴드경제⁽¹¹⁶⁷⁾, 아시아경제닷컴⁽¹¹⁶⁸⁾, 쿠키뉴스^(1169, 1446), 투데이 코리아⁽¹¹⁷⁰⁾, MBN⁽¹¹⁷¹⁾, 인터넷 MBN⁽¹¹⁷²⁾, 네이버⁽¹¹⁷³⁾, 경향신문⁽¹¹⁴⁰⁾, 인터넷 경향신문⁽¹¹⁴¹⁾, 인터넷 스포츠경향⁽¹¹⁴²⁾, JTBC⁽¹⁴²⁸⁾, 인터넷 JTBC⁽¹⁴²⁹⁾, 인터넷 서울신문⁽¹⁴⁴³⁾, 고발 뉴스닷컴⁽¹⁴⁴⁷⁾, 뉴스앤뉴스⁽¹⁴⁴⁸⁾</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 『김소영 前비서관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4일자 12면, 동아닷컴 2017년 1월 4일자 사회면) • 온라인 중앙일보 :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한다” 진술 확보』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4일자 정치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블랙리스트에 ‘최순실 반대’ 인사 대거 포함 ... ‘축출 대상’』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4일자 뉴스속보면) • 아시아경제닷컴 :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서 작성했다는 진술 확보』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4일자 정치면) • 쿠키뉴스 : 『김소영 “靑,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 최순실 방해인사 대거 포함”』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4일자 정치면) • 투데이 코리아 : 『‘문화계 블랙리스트’ 우파 인사들도 올랐나』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4일자 정치면) • MBN : 『“청와대가 리스트 작성해 하달”』 제하의 보도 (MBN 2017년 1월 4일자뉴스와이드 프로그램, 인터넷 MBN 1월 4일자 사회면) 외 9개 매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재직 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유지 관리에 관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불성립결정 (동아일보, 동아닷컴) • 각 취하 (온라인 중앙일보, 인터넷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닷컴, 쿠키뉴스, 투데이 코리아, MBN, 인터넷 MBN, 네이버,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인터넷 스포츠경향, JTBC, 인터넷 JTBC, 인터넷 서울신문, 고발뉴스닷컴, 뉴스앤뉴스/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서울조정 1178~1185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교통연구원 對 한국일보 ^(1178·1179) , 인터넷 한국일보 ^(1180·1181) , MBN ^(1182·1183) , 인터넷 MBN ^(1184·1185)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일보 : (1) 『수요예측 또 빗나가도, 또 용역 받는 교통연구원』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7년 7월 4일자 A1~A2면, 인터넷 한국일보 2017년 7월 4일자 경제면) (2) 『[사실] 한국교통연구원의 신뢰도 추락, 이대로 두고 볼 건가』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7년 7월 4일자 A31면, 인터넷 한국일보 2017년 7월 3일자 오피니언면) • MBN : 『“세금먹는 엉터리 보고서”』 제하의 보도 (MBN 2017년 7월 4일자 뉴스8 프로그램, 인터넷 MBN 2017년 7월 4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연구원의 지자체경전철 수요 예측이 엉터리였고 기관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사유 : 반론보도, MBN, 인터넷 MBN/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7년 8월 7일자 2면, 인터넷 한국일보 2017년 8월 6일자 경제면)
2017서울조정 1186	(정정청구) (주)○○○○○○○○○ 對 시사포커스신문
조 정 대 상	『○○식스·○○식스, ‘급료’·‘협력업체 대금’ 1년 미지급 그런데 일본 이벤트 강행』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7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현지 관광청과 제휴해 진행하는 투어이벤트가 실행가능성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론보도 : 『‘○○식스, 오키나와 이벤트’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6일자 경제면) • 기사수정 : 『○○식스·○○식스, ‘급료’·‘협력업체 대금’ 1년 미지급 그런데 일본 이벤트 강행』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내용 수정 (2017년 7월 26일자 경제면)

<p>2017서울조정 1187·1188, 1235·1236, 1253·1254, 1299·1300, 1357~1360</p>	<p>(각 정정·손배청구) (주)일간○○○○ 외 1인 對 프레시안</p>
<p>조 정 대 상</p>	<p>(1) 『진주시 민원 불친절 도 넘어 ... 불법건축물 단속도 형식적』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일자 사회면) (2) 『진주 유명 맛 집 ○냉면 불법 건축물 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4일자 사회면) (3) 『경남도 내 모 언론사 회장, 진주 ○냉면과 커넥션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6일자 사회면) (4) 『이창희 진주시장, 경남도 내 모 언론사 회장과 밀월관계?』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7일자 사회면) (5) 『경남도 내 모 언론사 회장, 취업알선 미끼로 금품수수 정황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9일자 사회면) (6) 『경남도 내 모 언론사 회장, 제보자 상대 보복 및 사건 조작 정황』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0일자 사회면) (7) 『경남도 내 모 언론사, 총체적 백화점식 비리 결정판』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2일자 사회면) 외 9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언론사가 온갖 비리에 연루된 범죄 집단이고, 지역 내 유명음식점 관계자의 석방을 위해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불성립결정</p>
<p>2017서울조정 1189·1190</p>	<p>(정정·손배청구) ○○○○어린이집 외 1인 對 뉴스천지</p>
<p>조 정 대 상</p>	<p>『○○○○○○어린이집 인권유린 중단 촉구 기자회견』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0일자 전국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불법도청과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p>

2017서울조정 1191~1195	(각 정정청구) 홍준표 對 조선닷컴 ⁽¹¹⁹¹⁾ , 온라인 중앙일보 ⁽¹¹⁹²⁾ , 인터넷 한국일보 ⁽¹¹⁹³⁾ , KBS미디어 ⁽¹¹⁹⁴⁾ , 인터넷 YTN ⁽¹¹⁹⁵⁾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닷컴 : 『홍준표 “지니계수, 盧정부 때 최고로 나뻐다”』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일자 발언 · 루머면) • 온라인 중앙일보 : 『[팩트체크] 노무현 정부 때 ‘소득분배 불평등’ 최악? 반만 맞고 받은 틀려』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8일자 경제면) • 인터넷 한국일보 : 『[팩트파인더]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 최악이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8일자 경제면) • KBS미디어 : 『[팩트체크] 홍준표 “지니계수 노무현 때 가장 나뻐다”』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일자 인터넷 뉴스면) • 인터넷 YTN : 『[팩트체크] 지니계수,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높았다?』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9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노무현 정부 때 소득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가 최고치였다는 신청인의 대선 후보토론회 발언이 허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기각 (사유 : 조정대상보도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
2017서울조정 1196, 1197	(각 정정청구) 안산시 외 1인 對 한국일보 ⁽¹¹⁹⁶⁾ , 인터넷 한국일보 ⁽¹¹⁹⁷⁾
조정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독] 안산시 땅 팔면서 손해보전 ‘황당’ 협약 ... 680억 날릴 판』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2017년 4월 12일자 사회면) (2) 『[단독] 건설사와 학교부지 특혜 협약한 안산, 2000억 발전기금 탕감도 드러나』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2017년 4월 12일자 사회면) (3) 『8000억대 땅 팔면서 교육환경평가까지 해준 안산시』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2017년 4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안산시와 복합개발사업 시행사인 신청인 회사가 학교용지 매매가의 변동차액을 보전해주기로 뒷거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7서울조정 1198	(정정청구) ○○○○제약(주) 對 쿠키뉴스
조정 대상	『[단독] ○○○○제약, 의원 개설시 4000만원 현금지원 신종 리베이트』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제약사가 개업병원에 4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p>2017서울조정 1199, 1459</p>	<p>(각 정정청구) ○○○○노동조합 對 서울경제⁽¹¹⁹⁹⁾, 인터넷 서울경제⁽¹⁴⁵⁹⁾</p>
<p>조 정 대 상</p>	<p>『“일자리 연대기금은 생색내기용” 현대차 노조도 ○○노조에 반기』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7년 6월 29일자 3면,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6월 28일자 산업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제안한 일자리 연대기금조성안에 소속 지부인 현대기아차 노조가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동의)</p>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5일자 산업면) • 인터넷 서울경제 : 『[정정보도문]“일자리 연대기금은 생색내기용” 현대차 노조도 ○○노조에 반기’관련』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4일자 산업면)

<p>2017서울조정 1200·1201</p>	<p>(정정·손배청구) ○○○○○○(주) 對 NSP통신</p>
<p>조 정 대 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지역주택조합 주의보①] 업무대행사의 ‘노림수’ 바로 알아야』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8일자 사회면) (2) 『[○○ 지역주택조합 주의보②] ○○지역주택 업무대행사들 돈 맛 ‘제대로』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2일자 사회면) (3) 『[○○ 지역주택조합 주의보③] 실체없는 아파트 청사진만 제시하는 업무대행사 ‘OUT』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5일자 사회면) (4) 『[○○ 지역주택조합 주의보④]‘(가칭)○○지구’ 만들어 호갱님 속이는 간 큰 업무대행사들』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9일자 사회면) (5) 『[고양 ○○○지구 도시개발 어떻게 되나②] 토지주 조합원·업무대행사 피해자는 누구』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9일자 사회면) (6) 『[고양 ○○○지구 도시개발 어떻게 되나③] 체비지·사업비 분석통한 진실업무대행사 분별 법』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30일자 사회면) (7) 『[고양 ○○○지구 도시개발 어떻게 되나④] 토지주 조합원과 지역주택 조합원간의 상생방안』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5일자 사회면) 외 1건
<p>신청인 주장</p>	<p>지역주택조합사업 시행사인 신청인 회사가 존재하지도 않는 도시개발지구를 만들어 사기성 분양을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p>

2017서울조정 1202~1206	(각 정정청구) 홍준표 對 온라인 중앙일보 ^(1202~1204) , 인터넷 서울신문 ⁽¹²⁰⁵⁾ , 매경닷컴 ⁽¹²⁰⁶⁾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중앙일보 : (1) 『[팩트체크] 홍준표“문재인·안철수와 3강 구도 이뤘다” 사실은 …』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9일자 정치면) (2) 『[팩트체크] 지지율 뜨는 洪 “박근혜 득표의 80%만 얻으면 이긴다”… 가능성은?』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8일자 정치면) (3) 『[팩트체크] 홍준표 “태평만담 송유관 차단하면 북 경제 무너진다”?』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9일자 정치면) • 인터넷 서울신문 : 『[팩트 체크] 유승민 TK 지지율 0% vs 15%』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1일자 정치면) • 매경닷컴 : 『洪 “한국, 비정규직 더 많고, 세계에서 해고하기 가장 어려워”』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9일자 팩트체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선 때 문재인 안철수와 함께 3강 체제를 이뤘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조정대상보도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거나 사실적 주장이 아님)
2017서울조정 1207	(정정청구) 홍준표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팩트체크] 홍준표 제기한 참여정부 성완중 사면, 사실은』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고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관여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1208	(정정청구) 홍준표 對 KBS미디어
조 정 대 상	『[팩트체크] 홍준표“노무현 정부 (재벌서) 8천억 받았다”』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노무현 정부가 재벌로부터 8천억 원을 받았다는 신청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조정대상보도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

2017서울조정 1209	(정정청구) 홍준표 對 SBS아이앤엠
조 정 대 상	『[사실은] 논란된 후보들의 ‘말말말’… 사실관계 짚어보니』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9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고 유병언씨의 세모그룹이 노무현 정권의 빗 탕감으로 되살아났다는 신청인의 대선후보토론회 때 발언이 허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조정대상보도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
2017서울조정 1210	(정정청구) 홍준표 對 SBS아이앤엠
조 정 대 상	『[사실은]“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창궐” 홍준표 발언, 근거 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9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일자리 부족이 강성 귀족노조들 때문이라는 신청인의 대선 후보 토론회 때 발언이 허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조정대상보도가 사실적 주장이 아님)
2017서울조정 1211	(정정청구) 홍준표 對 인터넷 JTBC
조 정 대 상	『[팩트체크] 대선 나가도 보궐 없다? … 홍준표 발언 따져보니』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도지사 사퇴 시한 직전에 사표를 내면 보궐선거를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지방자치법과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홍준표 도지사 사퇴 시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4일자 정치면)

2017서울조정 1212	(정정청구) 최태원 對 피치원 미디어
조 정 대 상	(1) 『최태원 SK회장과 내연녀, 댓글 단 주부 50여명 무더기 고소, “내연녀가 SK그룹 전용기타고 미국 쇼핑 충격”』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7일자 뷰먼) (2) 『최태원 SK회장 · 내연녀 김씨 고소사건 로펌, 연합뉴스에 실시간 협박 댓글게재, “적반하장” 거센 반발』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8일자 뷰먼) (3) 『최태원, 내연녀가 ‘KBS기자 내연녀’로 둔갑한 이유, 최회장 · 내연녀가 주부 50여명 고소한 건 KBS때문』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7일자 뷰먼) (4) 『최태원 SK회장, 내연녀 비방댓글 주부고소사건, ○○○ 관장 배후설 집중추궁, “이혼사유 수집중?”』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2일자 뷰먼) (5) 『최태원 SK회장 · 내연녀 김씨, 50여명 댓글주부 수사기관에 ‘○○○과 관계, 조사 반복요청’, 외압의혹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9일자 뷰먼) (6) 『최태원 SK회장 내연녀 김○○씨, 댓글주부에 고소당해, 수사과정서 내연녀 출두 · 공개여부 관심』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4일자 뷰먼) (7) 『최태원 SK회장 내연녀, 직접 네이버에 피치원 기사 삭제요청, 네이버 ‘내연녀 고소당한 기사 삭제’ 조치』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6일자 뷰먼)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자신과 동거녀를 비난하는 댓글을 쓴 네티즌들을 SK그룹을 동원해 뒷조사하고 관련댓글을 삭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기사수정,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이 행 결 과	『최태원 네티즌 고소 건'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4일자 뷰먼)
2017서울조정 1213, 1214	(각 정정청구) ○○어린이집 對 서울일보 ⁽¹²¹³⁾ , 서울일보닷컴 ⁽¹²¹⁴⁾
조 정 대 상	『대구 어린이집,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었다』 제하의 기사 (서울일보 2017년 6월 28일자 7면, 서울일보닷컴 2017년 6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로 급식을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대구 어린이집,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었다’ 사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서울일보닷컴 2017년 7월 21일자 경북면)

<p>2017서울조정 1215~1220, 1226~1231</p>	<p>(각 정정·손배청구) 배○○ 對 e머니투데이^(1215·1216, 1226·1227), 네이버^(1217·1218, 1228·1229), 다음^(1219·1220, 1230·1231)</p>
<p>조 정 대 상</p>	<p>(1) 『[단독]‘정유라 특혜’이○○ 교수, 국민안전처 과제서도 외압 의혹』 제하의 기사 (e머니투데이 2017년 6월 9일자 경제면, 네이버 2017년 6월 9일자 속보면, 다음 2017년 6월 9일자 사회면) (2) 『[단독]“장관에게 왜곡 보고?” 국민안전처 과장, 도마 위 올라』 제하의 기사 (e머니투데이 2017년 7월 3일자 경제면, 네이버 2017년 7월 3일자 속보면, 다음 2017년 7월 3일자 사회면) (3) 『[단독]“해외 법률 공문도 무시?” ○○○○○○과 파행적 행동‘ 논란’』 제하의 기사 (e머니투데이 2017년 7월 11일자 경제면, 네이버 2017년 7월 11일자 속보면, 다음 2017년 7월 11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국민안전처 과장인 신청인이 소방관용 공기호흡기의 기술기준을 낮추려했고 장관에게 불량 공기호흡기 교체 건을 허위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1)“정유라 특혜 이인성 교수, 국민안전처 과제서도 외압 의혹” (2)“장관에게 왜곡 보고? 국민안전처 과장 도마 위 올라” (3)“해외 법률 공문도 무시? 소방장비항공과 파행적 행동 논란”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e머니투데이 2017년 8월 17일자 경제면, 네이버 2017년 8월 17일자 속보면, 다음 2017년 8월 17일자 사회면)</p>
<p>2017서울조정 1221</p>	<p>(정정청구) ○○○○노동조합 對 인터넷 서울경제</p>
<p>조 정 대 상</p>	<p>『[사설] 일자리 기금 안 낸다고 파업하겠다는 ○○노조』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2일자 사설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이유가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에 사측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p>
<p>이 행 결 과</p>	<p>『○○노조 파업 사실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0일자 사설면)</p>

2017서울조정 1222~1225	(각 정정·손배청구) ○○○○○○(주) 외 2인 對 인터넷 서울경제 ^(1222·1223) , 포춘코리아 ^(1224·1225)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서울경제 : 『“황금알 오리”○○○○○○ 투자주의보!』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4일자 경제금융면) • 포춘코리아 : 『“황금알 오리”○○○○○○ 투자주의보!』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4일자 경제금융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주총 의사록을 조작하고 주총 결의도 없이 사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서울조정 1232·1233	(정정·반론청구) ○○○○○○○○○○○○○ ○○ 대책추진위원회 외 1인 對 인터넷 매일일보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여군,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 89억 보조금 교부지연 의혹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3일자 세종·충청면) (2) 『부여군, 법치주의 원칙 위배 ‘무소불위’ 행정적폐 시정촉구』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일자 세종·충청면) (3) 『부여군, 가축분뇨 신재생 에너지화 보조금 사업 표류 … 주민 갈등 최고조』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5일자 세종·충청면)
신청인 주장	가축분뇨에너지사업장의 설립을 90%의 지역민이 반대하는데도 극소수만 반대한다고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부여군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 관련‘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6일자 세종·충청면)
2017서울조정 1237·1238	(정정·손배청구) ○○○○○○○○○○○교회 對 크리스천포커스
조 정 대 상	『논평/고시부의개혁의지& H목사강도사고시부정사건』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9일자 포커스VIEW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적법한 절차 없이 부적격한 교역자가 담임목사직을 수행하도록 묵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p>2017서울조정 1239~1245</p>	<p>(각 손해청구) 최○○ 외 1인 對 KBS-2TV⁽¹²³⁹⁾, KBS미디어⁽¹²⁴⁰⁾, MBC-TV⁽¹²⁴¹⁾, iMBC⁽¹²⁴²⁾, SBS-TV⁽¹²⁴³⁾, SBS아이앤엠⁽¹²⁴⁴⁾</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2TV : 『[뉴스 따라잡기] 경찰 포위망 뚫고 서울 잠입 ... 9일 만에 검거』 제하의 보도 (KBS-2TV 2017년 7월 4일자 아침뉴스타임 프로그램, KBS미디어 2017년 7월 4일자 아침뉴스타임면) • MBC-TV : 『창원 ‘○○○○장 살해’ 용의자 2명 서울 모텔서 검거』 제하의 보도 (MBC-TV 2017년 7월 3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iMBC 2017년 7월 3일자 뉴스데스크면) • SBS-TV : (1) 『신고자의 예리한 눈썰미 ... ‘○○장 살해’ 용의자 검거』 제하의 보도 (SBS-TV 2017년 7월 3일자 8시 뉴스 프로그램, SBS아이앤엠 2017년 7월 3일자 사회면) (2)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장 살해범’ 검거 ... 도주 중에 웃으며 일상생활』 제하의 보도 (SBS-TV 2017년 7월 3일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프로그램, SBS아이앤엠 2017년 7월 3일자 사회면)
<p>신청인 주장</p>	<p>주부납치살해사건의 피의자 검거 과정을 보도하면서, 제보자인 신청인들과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내부 모습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KBS-2TV, KBS미디어/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MBC-TV, iMBC/내용 : 피신청인 사과,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 각 조정불성립결정 (SBS-TV, SBS아이앤엠)

<p>2017서울조정 1248</p>	<p>(손해청구) 장○○ 對 허핑턴포스트코리아</p>
<p>조 정 대 상</p>	<p>『68장의 사진으로 보는 ‘퀴어 문화축제’』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5일자 뉴스면)</p>
<p>신청인 주장</p>	<p>퀴어 축제에 참가한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각하 (사유 : 조정기일 통지 불가)</p>

<p>2017서울조정 1249</p>	<p>(정정청구) 신○○ 對 SBS-TV</p>
<p>조 정 대 상</p>	<p>『재벌 총수 손자, 연예인 아들이어서? 사라진 가해자』 제하의 보도 (2017년 6월 16일자 8뉴스 프로그램)</p>
<p>신청인 주장</p>	<p>모 초등학교 폭행사건 관련자인 신청인이 피해 학생에게 바나나 모양 물비누를 우유라며 마시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불성립결정</p>

2017서울조정 1250·1251	(정정·손배청구) 송○○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1) 『‘응급실 난동’으로 경찰 간 자유한국당 도당위원장』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2일자 대전총청면) (2) 『“너같은 x에 진료 안 받아” 한국당 도당위원장, 간호사 비하 욕설 의혹까지』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3일자 대전총청면)
신청인 주장	자유한국당 지역도당위원장인 신청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자유한국당 응급실 난동’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1일자 정치면)
2017서울조정 1252	(정정청구) ○○대학교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1) 『[단독]기숙사비 왜 비싼가 봤더니 ... 14년 동안 백억 챙긴 ○○대』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7일자 사회면) (2) 『14년간 100억 챙긴 ○○대, 기숙사‘편법’운영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4일자 사회면) (3) 『“기숙사로 돈벌이? 이게 학교냐?”... ○○대 학생들 ‘배신감’』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가 기숙사 위탁운영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등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 기숙사비 과다 및 편법 운영’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8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255~1258	(각 정정청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對 인터넷 경향신문 ⁽¹²⁵⁵⁾ , 뉴스1코리아 ⁽¹²⁵⁶⁾ , 아시아뉴스통신 ⁽¹²⁵⁷⁾ , 연합뉴스 ⁽¹²⁵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향신문 : 『작년 인천 교통위반 106만건 적발 ... 과태료·범칙금 ‘폭탄’』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2일자 서울수도권면) • 뉴스1코리아 : 『인천 기초단체, 민선6기 들어 과태료 부과 폭증』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0일자 인천면) • 아시아뉴스통신 : 『인천시 민선6기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폭증』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0일자 정치일반면) • 연합뉴스 : 『인천 남동구 과속·신호위반 ‘최다’ 지역』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4일자 최신기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구청이 인천 내 지자체 중 교통위반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향신문 : 『[정정보도문]’작년 인천 교통위반 106만건 적발 ... 과태료·범칙금 폭탄’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4일자 서울수도권면) • 뉴스1코리아 : 『‘인천 기초단체, 민선6기 들어 과태료 부과 폭증’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7일자 인천면) • 아시아뉴스통신 : 『인천시 민선6기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폭증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5일자 사회일반면) • 연합뉴스 : 『[‘인천 남동구 교통단속 과태료 부과 급증’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7일자 최신기사면)

2017서울조정 1259·1260	(정정·손배청구) 박○○ 對 일간에너지
조정대상	『도시가스밸브 성적서 조작, 허위사실로 판결』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의 취지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취하 (내용 : 정정보도)
이행 결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1일자 뉴스면)

2017서울조정 1261·1262	(정정·손배청구) ○○○○교회 對 현대종교
조정대상	『북한이탈주민 미혹하는 이단들』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8일자 18~30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북한이탈주민 신자들에게 지각이나 결석을 하면 지원금을 끊고 헌금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263, 1264	(각 손해청구) 김○○ 對 인터넷 국민일보 ⁽¹²⁶³⁾ , 국민일보 ⁽¹²⁶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국민일보 : 『“임보라 목사, 잘못된 신론 구원론 갖고 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1일자 미션면) • 국민일보 : 『“임보라 목사, 반성경적 주장 … 정통교회와 신학 공격”』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4일자 기독교뉴스면)
신청인 주장	서울광장 쿠퍼축제 현장에서 신청인이 촬영한 사진을 무단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50만 원 지급,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공익에 기초한 보도로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음)
2017서울조정 1265	(정정청구) 최○○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대 교수 또 다시 ‘표지갈이’』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0일자 경기북부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과거 저서를 표지만 교체하는 일명 ‘표지갈이’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대 교수 또 다시 ‘표지갈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부분 삭제 (2017년 8월 8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266	(정정청구) (사) ○○○○○ 對 인터넷 매일노동뉴스
조 정 대 상	『○○○○○○, 해고자 복직 뒤 CCTV 설치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1일자 노동이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시민단체가 해고 후 복직판정으로 복직한 근로자들을 CCTV로 감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8일자 종합면)
2017서울조정 1267	(정정청구) 이언주 對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이언주 “알바비 떼여도 신고 않는 게 공동체 의식”』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5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임금을 체불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이언주 “알바비 떼여도 고발 않았다 … 공동체 의식 필요”』 제하의 기사로 제목 수정 (2017년 8월 23일자 뉴스면)

<p>2017서울조정 1268</p>	<p>(정정청구) 학교법인 ○○학원 외 1인 對 뉴스타파</p>
<p>조 정 대 상</p>	<p>『사학적폐추적 ① 박근혜법이 양산한 세습왕국들』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1일자 적폐청산 프로젝트 교육개혁면)</p>
<p>신청인 주장</p>	<p>○○대학교가 총장 관사와 각종 부지를 부당하게 구입했고 교수를 부당 해고하는 등 사학 적폐가 심각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p>
<p>이 행 결 과</p>	<p>『사학적폐추적 ① 박근혜법이 양산한 세습왕국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사실 관계 수정 (2017년 9월 6일자 적폐청산 프로젝트 교육개혁면)</p>
<p>2017서울조정 1269, 1270</p>	<p>(각 반론청구) (사) ○○○○○○○○○○협의회 對 경향신문⁽¹²⁶⁹⁾, 인터넷 경향신문⁽¹²⁷⁰⁾</p>
<p>조 정 대 상</p>	<p>(1) 『[단독] 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선거 동원’ 문건 나왔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7년 7월 20일자 2면, 인터넷 경향신문 2017년 7월 20일자 정치면) (2) 『[사설] 박근혜 정무수석실, 선거에 보수단체 동원했다니』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7년 7월 20일자 사실면, 인터넷 경향신문 2017년 7월 21일자 사실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단체가 박근혜 정부에서 4·13총선과 관제데모 등에 동원된 보수단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p>
<p>2017서울조정 1271·1272, 1297·1298</p>	<p>(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뉴스1코리아^(1271·1272), 인터넷 스페셜경제^(1297·1298)</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코리아 : (1) 『[단독]“수십억 털렸다”... ○○ 피해자 100여명 단체소송 ‘채비’』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일자 산업면) (2) 『[단독] 개인정보 유출한 ○○“피해액 전액보상 의무없다”발뺏』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3일자 산업면) (3) 『[단독]“정상계좌라는데 털렸다” ○○, 피해규모 축소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4일자 산업면) 외 3건 • 인터넷 스페셜경제 : 『개인정보 유출에도 오리발 ○○? ...‘고객 과실일 수 있어’』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1일자 산업면)
<p>신청인 주장</p>	<p>가상화폐거래소인 신청인 회사의 회원정보가 해킹당해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뉴스1코리아/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인터넷 스페셜경제/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코리아 : 『‘○○ 회원 개인정보 유출’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5일자 산업면) • 인터넷 스페셜경제 : 『“개인정보 유출에도 오리발 ○○? ...‘고객 과실일 수 있어’”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8일자 산업면)

2017서울조정 1273, 1274	(각 정정청구) (사) ○○○○협회 對 한국경제 ⁽¹²⁷³⁾ , 한경닷컴 ⁽¹²⁷⁴⁾
조 정 대 상	『[한경에세이] 우리 밀 살리기와 건강한 먹을거리』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7년 7월 11일자 A32면, 한경닷컴 2017년 7월 10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밀가루가 유전공학적으로 변형된 것이고 표백제 방부제가 과다 사용돼 비만이나 당뇨의 주된 원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1275~1285, 1294~1296, 1332~1343, 1789~1795	<p>(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아시아경제닷컴^(1275·1276), 인터넷 국민일보^(1277·1278), 조선닷컴^(1279·1280), SBS아이앤엠^(1282·1283), 인터넷 MBN^(1284·1285), 온라인 중앙일보^(1294·1295), 인터넷 TheKoreaHerald^(1334·1335), 노컷뉴스^(1336·1337), 소다^(1338·1339), 인사이트^(1340·1341), 세계닷컴^(1342·1343)</p> <p>(각 정정청구) 對 연합뉴스⁽¹²⁸¹⁾</p> <p>(각 손배청구) 對 연합뉴스⁽¹²⁹⁶⁾, TV조선⁽¹³³²⁾, MBN⁽¹³³³⁾, 인터넷 한국스포츠허브⁽¹⁷⁸⁹⁾, 동아닷컴⁽¹⁷⁹⁰⁾, 매경닷컴⁽¹⁷⁹¹⁾, 디스패치뉴스⁽¹⁷⁹²⁾, 인터넷 스포츠조선⁽¹⁷⁹³⁾, 위키트리⁽¹⁷⁹⁴⁾, 피처링⁽¹⁷⁹⁵⁾</p>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경제닷컴 : (1)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초인종 누르며 문 열리는 여장 남자, ‘섬뜩’』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1일자 사회면) (2) 『물카 찍고 초인종 누르고 ...‘여장 남자’ 잤은 출현, 취향과 범죄 사이』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5일자 사회면) • 인터넷 국민일보 : 『독신女 오피스텔 찾아가 초인종 누른 ‘여장 남자’... 경찰 “경위 파악 중”』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1일자 시사면) • 조선닷컴 : 『새벽에 혼자 사는 집 초인종 누르는 ‘여장 남자’의 정체는 ... 경찰, 소셜미디어글 진위 확인 나서』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1일자 사회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인천 오피스텔레 여장남자 활보’ SNS 유포 … 경찰, 확인 중』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1일자 최신기사면) • SBS아이앤엠 : 『[뉴스pick]‘땡땡’새벽에 여자 혼자 사는 집 두드리는 ‘여장남자’』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1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인천서 여장남자 활보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3일자 사회면) 외 2건 • 온라인 중앙일보 : 『‘여성 혼자 사는 집’찾아 문 열게 만드는 인천‘여장남자’』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3일자 사회면) 외 14개 매체
<p>신청인 주장</p>	<p>여자 혼자 사는 집의 초인종을 누르는 여장남자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p>
<p>처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정정청구/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 각 조정성립 (손배청구/아시아경제닷컴/내용 : 손해배상 1,000만 원 지급, 부제소, 이행강제금, MBN/내용 : 손해배상 500만 원 지급, 부제소, 이행강제금, TV조선/내용 : 손해배상 400만 원 지급, 부제소, 이행강제금, SBS아이앤엠/내용 : 손해배상 200만 원 지급, 부제소, 이행강제금, 인터넷 국민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인사이트/내용 : 각 손해배상 100만 원 지급, 부제소, 이행강제금, 세계닷컴/내용 : 손해배상 80만 원 지급,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손배청구/조선닷컴, 연합뉴스/내용 : 각 손해배상 80만 원 지급, 부제소, 이행강제금, 인터넷 한국스포츠키경제/내용 : 손해배상 70만 원 지급,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동의) • 각 취하 (손배청구/매경닷컴, 디스패치뉴스, 인터넷 스포츠조선, 위키트리(wikitree), 피처링/사유 : 각 금전 지급) • 조정불성립결정 (동아닷컴)
<p>2017서울조정 1286</p>	<p>(정정청구) 이○○ 對 KBS-2TV</p>
<p>조정 대상</p>	<p>『검찰과 권력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제하의 보도 (2017년 7월 26일자 추적60분 프로그램)</p>
<p>신청인 주장</p>	<p>전직 대통령의 아들인 신청인이 마약을 투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리 결과</p>	<p>조정불성립결정</p>

2017서울조정 1287~1290	(각 정정·손배청구) 정○○ 對 JTBC ^(1287·1288) , 인터넷 JTBC ^(1289·1290)
조정대상	『아파트에 들어선 ‘경찰 학원’… 주민들, 소음 고통 호소』 제하의 보도 (JTBC 2017년 7월 28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인터넷 JTBC 2017년 7월 28일자 다시보기 및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공무원수험생을 위한 기숙형 스터디클럽이 학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아파트에 들어선 경찰 학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JTBC 2017년 9월 19일자 다시보기 및 사회면)

2017서울조정 1291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스페셜경제
조정대상	『[단독] 곰인형의 대명사 ‘○○○○’상표권 문제 송사 … 진짜 저작권은 어디에?』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4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소유한 상표권이 소송 중에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7서울조정 1292, 1293, 1368, 1369	(각 손배청구) 박○○ 외 3인 ^(1292, 1293) , 고○○ ^(1368, 1369) 對 뉴시스 ^(1292, 1369) , 인사이트 ^(1293·1368)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송영길·손혜원, 위안부 할머니 빈소서 ‘엄지 척’ 기념촬영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5일자 정치면) • 인사이트 : 『위안부 피해 故 김군자 할머니 빈소서 ‘엄지 척’ 기념사진 찍은 국회의원』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5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위안부 할머니 빈소 기념촬영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들을 보도하면서 함께 촬영한 신청인들의 초상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사과보도,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위안부 할머니 빈소 보도사진 관련 사과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30일자 정치면) • 인사이트 : 『위안부 할머니 빈소 보도사진 관련 사과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8일자 정치면)

<p>2017서울조정 1301·1302</p>	<p>(정정·반론청구) 김○○ 對 한경닷컴</p>
<p>조 정 대 상</p>	<p>『○○○○, 이동식 전차선 개발』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1일자 산업면)</p>
<p>신청인 주장</p>	<p>전동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의 신기술을 신청인이 개발했는데도 다른 업체가 개발했다고 잘못 보도했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자진취하)</p>
<p>2017서울조정 1303·1304, 1361</p>	<p>(정정·손배청구) 한○○^(1303·1304) 對 서울시정일보 (손배청구) 김○○⁽¹³⁶¹⁾ 對 서울시정일보</p>
<p>조 정 대 상</p>	<p>『“뽀뽀해 버린다”○○고 성추행 교사 2명 구속영장 발부』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8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여고생 성추행사건을 보도하면서 학교명을 잘못 표기해 신청인들이 추행범인 것처럼 오인케 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각 100만 원 지급, 부제소, 이행강제금)</p>
<p>2017서울조정 1305·1306</p>	<p>(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1307·1306)</p>
<p>조 정 대 상</p>	<p>『[단독] ○○ 비상임이사 PC 해킹 정황 드러나 ...“직원 PC 해킹” 설명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4일자 산업면)</p>
<p>신청인 주장</p>	<p>가상화폐거래소인 신청인 회사의 해킹사고에 내부직원이 개입됐다고 보도하고 해킹당한 문서에 접근하는 방법을 상세히 묘사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 [단독] ○○ 비상임이사 PC 해킹 정황 드러나 ...“직원 PC 해킹” 설명과 달라’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8일자 산업면)</p>

2017서울조정 1307	(반론청구) ○○○○ ○○○위원회 외 1인 對 KNS뉴스통신
조 정 대 상	『○○쇼핑 재건축 원점에서 시작한다 ... 법원, 재건축 결의 무효 판결』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3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위원회가 추진 중인 상가재건축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도 무효 판결난 1심만을 거론하고 위원장이 전기료를 횡령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쇼핑 재건축 원점에서 시작한다 ... 법원, 재건축 결의 무효 판결”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4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308~1321	(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인터넷 뉴스토마토
조 정 대 상	(1) 『(단독)○○○케미칼, ‘노조 파괴’ 공작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2일자 산업면) (2) 『치밀한 전략으로 노조 무력화 ...“유성기업과 판박이”』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2일자 산업면) (3) 『국회, ○○○케미칼 ‘노조파괴’진상조사 착수 ... 특별근로감독도 실시』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2일자 산업면) (4) 『복수노조 도입 6년째 ... 노조 탄압에 악용 빈번』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3일자 산업면) (5) 『고용부 울산지청, ○○○케미칼 노조 파괴 의혹 조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3일자 산업면) (6) 『국회 환노위, ○○○케미칼 특별근로감독 요구』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4일자 산업면) (7) 『고용부, ‘노조 파괴’ 의혹 ○○○케미칼 특별근로감독 착수』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4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복수노조설립 허용, 성과급 차등지급 등으로 노조파괴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조건부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 : 사유/정정보도 필요)

<p>2017서울조정 1322·1323</p>	<p>(정정·반론청구) 권○○ 對 디스패치뉴스</p>
<p>조 정 대 상</p>	<p>『[스브스타]‘○○○’ 윤○○ ‘군 미필’ 소식에 … 안티팬들 병무청에 민원까지』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9일자 뉴스면)</p>
<p>신청인 주장</p>	<p>모가수의 군 입대 연기에 의혹이 있다는 일부 안티 팬의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p>
<p>2017서울조정 1324~1331, 1523, 1552</p>	<p>(각 정정청구) 박○○ 對 KBS미디어⁽¹³²⁴⁾, SBS아이앤엠⁽¹³²⁵⁾, 인터넷 MBN⁽¹³²⁶⁾, 인터넷 서울신문⁽¹³²⁷⁾, 아시아투데이닷컴⁽¹³²⁸⁾, 한강타임즈⁽¹³²⁹⁾, 연합뉴스⁽¹³³⁰⁾, 뉴시스⁽¹³³¹⁾ (각 손배청구) 對 KBS미디어⁽¹⁵²³⁾, 연합뉴스⁽¹⁵⁵²⁾</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미디어 : 『볼링장서 몸싸움 벌인 일가족·취객 입건』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일자 사회면) • SBS아이앤엠 : 『“매너 없다”… 볼링장서 일가족·취객 서로 주먹질』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왜 먼저 굴러?”… 볼링장서 일가족과 취객 주먹다짐』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신문 : 『취객 볼링장서 “매너 없다”며 일가족에게 시비 … 결국 서로 주먹질』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일자 사회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볼링장서 “매너 왜 안 지켜”… 일가족 vs 취객 몸싸움』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일자 사회면) • 한강타임즈 : 『볼링장서 주먹다짐 벌인 취객 및 일가족 입건』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매너가 없다”… 볼링장서 손님들 간 먹살잡이』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일자 사회면) 외 1건
<p>신청인 주장</p>	<p>볼링장에서 벌어진 취객과의 몸싸움에서 신청인 가족이 폭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취지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KBS미디어^(1324, 1523)/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 각 취하 (SBS아이앤엠, 인터넷MBN, 인터넷 서울신문, 아시아투데이닷컴, 한강타임즈, 뉴시스/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 각 기각 (연합뉴스^(1330, 1552)/사유 : 신청인 당사자 부적격)

2017서울조정 1344·1345	(정정·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KBS미디어
조 정 대 상	『차량 안에서 3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의 아들 사망원인이 자살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346·1347	(정정·손배청구) (사) ○○ 對 SBS-TV
조 정 대 상	『어린이집 동영상 파문』 제하의 보도 (2017년 7월 21일자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장애아보육시설에서 봉사활동 온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 반대 동영상 시청을 강요해 물의를 빚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348	(손배청구) 김○○ 對 CBS뉴스
조 정 대 상	(1) 『[스타] 세카이노 오와리 2월 20일 김포국제공항 출국 현장』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0일자 스타ting면) (2) 『[포토] 세카이노 오와리 후카세 사토시, 눈빛이 너무 달콤해~』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0일자 포토면)
신청인 주장	외국 가수의 공항출국 모습 사진을 게재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같이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금전지급)

2017서울조정 1349	(정정청구) 김○○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집값 떨어뜨린다면 군 임대 아파트 성토 위례신도시 넘비』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4일자 A11면)
신청인 주장	모 초등학교의 학교설명회가 신도시 군 임대아파트 자녀들의 입학에 반대하는 성토장이 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p>2017서울조정 1350·1351</p>	<p>(정정·손배청구) (주)○○○○ 對 국제뉴스</p>
<p>조 정 대 상</p>	<p>(1) 『대형 여행사의 도 넘은 갑질횡포를 고발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4일자 사회면) (2) 『대형 여행사의 도 넘은 갑질횡포를 고발합니다2』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4일자 사회면) (3) 『○○○○, 가이드 목에 빨대 꽂는 수퍼 갑질』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6일자 사회면) (4) 『○○○○, 탐욕의 끝은 어디까지? (2)』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8일자 사회면) (5) 『[기자수첩] ○○○○ 사태, 사지로 내몰린 그들의 절규』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31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여행사가 해외 현지가이드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p>

<p>2017서울조정 1352~1354</p>	<p>(정정·반론·손배청구) 김○○ 對 엠스플뉴스</p>
<p>조 정 대 상</p>	<p>『[엠스플 기획] 야구소년들의 절규 “계속 그라운드에서 뛰고 싶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6일자 KBO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야구부 학생들의 위장전입을 지나치게 단속해 야구부가 해체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p>
<p>이 행 결 과</p>	<p>『○○초 야구부 갈등 사태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7일자 KBO면)</p>

2017서울조정 1355, 1356	(각 손해청구) 홍○○ 외 1인 對 YTN ⁽¹³⁵⁵⁾ , 인터넷 YTN ⁽¹³⁵⁶⁾
조 정 대 상	(1) 『서울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타살 가능성”』 제하의 보도 (YTN 2017년 7월 29일자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프로그램, 인터넷 YTN 2017년 7월 29일자 사회면) (2) 『서울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타살 가능성”』 제하의 보도 (YTN 2017년 7월 30일자 자정뉴스 프로그램, 인터넷 YTN 2017년 7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의 친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7서울조정 1362, 1363, 1379, 1380	(각 정정청구) 경찰청 외 1인 對 한국일보 ⁽¹³⁶³⁾ , 인터넷 한국일보 ⁽¹³⁶²⁾ (각 반론청구) 경찰청 對 한국일보 ⁽¹³⁷⁹⁾ , 인터넷 한국일보 ⁽¹³⁸⁰⁾
조 정 대 상	(1) 『SNS에 ‘민주화의 성지’ 썼다고 경찰청장, 광주청장에 격노했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7년 8월 7일자 10면, 인터넷 한국일보 2017년 8월 7일자 사회면) (2) 『경찰청, 前 광주청장 신상털기식 감찰 의혹』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7년 8월 8일자 10면, 인터넷 한국일보 2017년 8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청장이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표현한 광주지방경찰청의 SNS 글에 격분하여 해당 경찰청장에게 막말을 하고 좌천성 인사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국일보 2017년 9월 22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364, 1365	(각 손해청구) 김○○ 對 연합뉴스TV ⁽¹³⁶⁴⁾ , 인터넷 연합뉴스TV ⁽¹³⁶⁵⁾
조 정 대 상	『“여혐 범죄 없는 곳서 살고 싶다… 강남역서 시위』 제하의 보도 (연합뉴스TV 2017년 8월 6일자 뉴스18 프로그램, 인터넷 연합뉴스TV 2017년 8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여성혐오 범죄 근절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공공장소의 집회 현장을 촬영한 것이므로 면책)

<p>2017서울조정 1370·1371, 1630~1637</p>	<p>(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인사이트^(1370·1371), YTN^(1630·1631), 인터넷 YTN^(1632·1633), 동아닷컴^(1634·1635), 인터넷 스페셜경제^(1636·1637)</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이트 : 『연인들의 여행지‘남이섬’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진실』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9일자 이슈면) • YTN : 『[단독]‘친일파’ 민○○ 무덤 관리 가옥이 지방문화재로 ...』 제하의 보도 (YTN 2017년 6월 7일자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프로그램, 인터넷 YTN 2017년 6월 7일자 전국면) • 동아닷컴 : 『친일파 민○○ 묘 관리 가옥 ‘문화재’ 지정 파문 ... 후손은 ‘남이섬’ 소유』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7일자 사회면) • 인터넷 스페셜경제 : 『친일파 무덤 관리 가옥, ‘수십년’ 지방문화재 등록·운영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7일자 사회면)
<p>신청인 주장</p>	<p>남이섬의 매입과 개발이 설립자 조부의 친일 재산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인사이트, 인터넷 YTN, 인터넷 스페셜경제/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동아닷컴/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 취하 (YTN/사유 : 기사수정)
<p>이 행 결 과</p>	<p>『[단독] ‘친일파’ 민○○ 무덤 관리 가옥이 지방문화재로 ...』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삭제 (인터넷 YTN 2017년 10월 11일자 전국면)</p>
<p>2017서울조정 1372</p>	<p>(손배청구) 김○○ 對 SBS-TV</p>
<p>조 정 대 상</p>	<p>『팬영업의 기술』 제하의 보도 (2017년 8월 1일자 본격 연예 한밤 프로그램)</p>
<p>신청인 주장</p>	<p>팬클럽의 기부 행위에 대한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을 동의한 것과 다른 취지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0만 원 지급, 부제소)</p>

2017서울조정 1373~1376, 1387~1390	(각 정정·손배청구) ○○○○교회^(1373~1376), 정○○^(1387~1390) 對 기독교공보^(1373·1374, 1387·1388), 예장뉴스^(1375·1376, 1389·1390)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독교공보 : (1) 『○○○○교회, 신도의 헌금이 부목사들의 밥값으로』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4일자 초기화면) (2) 『○○○○교회건, 정○○ 목사 화해조정결렬』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7일자 초기화면) (3) 『재심재판국, 여수성광교회건 오판』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31일자 초기화면) • 예장뉴스 : (1) 『○○○○교회 정○○ 목사 안수무효건 재심 개시』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1일자 초기화면) (2) 『교회 분쟁, 판결만이 능사인가?』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6일자 초기화면) (3) 『○○○○교회 정○○ 목사의 목사 안수는 무효다』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9일자 초기화면) (4) 『목사안수 3번이면 만사형통인가?』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4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가 자격미달임에도 목사안수를 3번이나 받고 목회활동도 파행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독교공보 : 『“○○○○교회, 정○○ 목사”기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6일자 초기화면) • 예장뉴스 : 『“○○○○교회, 정○○ 목사”기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4일자 초기화면)
2017서울조정 1377·1378	(반론·손배청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對 뉴스타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북의 최대 아파트단지 주민갈등으로 ‘폭행사건 발생’』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9일자 사회/환경면) (2) 『돈암동 ○○○○아파트 주민갈등, ‘특정업체 선정 의혹’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6일자 사회/환경면) (3) 『[포토] 돈암동 ○○○○아파트, 엉터리 입찰에 성북구청 시정명령』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7일자 사회/환경면) (4) 『돈암동 ○○○○아파트 비상대책위, 기자회견 ‘파문예상’』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3일자 사회/환경면) (5) 『돈암 ○○○○아파트 ‘잦은 소규모 화재’ 주민은 불안』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6일자 사회/환경면)

	(6) 『돈암 ○○○○아파트, 광화문집회 ‘비리척결 특별법 제정 촉구’』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0일자 사회/환경면) (7) 『공사입찰 비리 경찰은 안 잡나? 못 잡나?』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8일자 사회/환경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아파트가 노후배관시설교체공사 입찰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하고 수십억 원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돈암 ○○○○아파트 공사입찰 특정업체 선정 의혹』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7일자 사회/환경면)

2017서울조정 1381~1384	(각 정정·손배청구) ○○○○○병원 對 스포츠서울 ^(1381·1382) , 인터넷 스포츠서울 ^(1383·1384)
조 정 대 상	『전국서 슈퍼박테리아 감염 확산… ○○○병원 감염 관리 ‘부실’』 제하의 기사 (스포츠서울 2017년 8월 1일자 19면, 인터넷 스포츠서울 2017년 7월 31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이 슈퍼박테리아 감염환자 속출 사실을 은폐했고 환자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7서울조정 1385·1386	(정정·손배청구) 강○○ 對 인터넷 스포츠조선
조 정 대 상	『강○○ ○○○○○ 회장, 리베이트 혐의로 구속 … 이복형과의 경영권 분쟁이 사달?』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검찰에 제보했기 때문에 모 제약회사 회장이 구속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서울조정 1391·1392	(정정·손배청구) (주)○○○○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단독] 전국체전 익산종합운동장 개·보수공사 공무원 담합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일자 전북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위장취업 및 하도급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7서울조정 1393, 1394	(각 정정청구) (주)○○○ 對 한국경제 ⁽¹³⁹³⁾ , 한경닷컴 ⁽¹³⁹⁴⁾
조 정 대 상	『뮤지컬 무료 생중계… 약될까, 독될까』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7년 8월 8일자 A27면, 한경닷컴 2017년 8월 7일자 생활/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기획사가 뮤지컬의 흥행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무료인터넷생중계와 관람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반론 보도문]‘뮤지컬 무료 생중계 … 약될까, 독될까’ 관련』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7년 9월 13일자 문화면, 한경닷컴 2017년 9월 13일자 생활/ 문화면)

2017서울조정 1395~1403, 1451, 1501~1504	(각 정정청구) 최 ○ 對 문화일보 ⁽¹³⁹⁵⁾ , 인터넷 문화일보 ⁽¹³⁹⁶⁾ , 동아일보 ^(1397, 1501·1502) , 동아닷컴 ^(1398, 1503·1504) , YTN ^(1399, 1401) , 인터넷 YTN ^(1400, 1402) , 인터넷 한국일보 ⁽¹⁴⁰³⁾ , 인터넷 이데일리 ⁽¹⁴⁵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일보 : 『‘빵 터지면 다 우리 것… 최순실 사태 ‘고영태 농단’?』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0일자 8면, 인터넷 문화일보 2017년 2월 10일자 사회면) • 동아일보 : (1) 『고영태 측근들 “최순실 이용해 36억 나눠먹자”』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7년 2월 10일자 사회 12면, 동아닷컴 2017년 2월 10일자 사회면) (2) 『“‘崔, 독일로 돈 빼내고 싶은 것”“재단 우리가 다 먹어버리자”』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7년 2월 21일자 12면, 동아닷컴 2017년 2월 21일자 정치면) • YTN : (1) 『‘고영태 녹취’ 파문 … 탄핵심판 변수될까?』 제하의 보도 (YTN 2017년 2월 10일자 뉴스 통 프로그램, 인터넷 YTN 2017년 2월 10일자 사회면)

	<p>(2) 『고영태 녹취'파문 ... 탄핵심판 변수될까?』 제하의 보도 (YTN 2017년 2월 10일자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프로그램 인터넷 YTN 2017년 2월 10일자 사회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한국일보 : 『朴 대통령 측, 고영태 녹취록 들고 반격 나서』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0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이데일리 : 『朴, 최순실 없으면 웃도 못입어』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관련자인 고영태 등과 연구비 36억 원을 빼돌리기 위해 회담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동아일보, 동아닷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인터넷 이데일리/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YTN(1399, 1401), 인터넷 YTN(1400, 1402)/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결정 내용이 신청인 청구 취지를 충족하지 못함) • 각 취하 (문화일보, 인터넷 문화일보, 인터넷 한국일보/사유 : 기사수정)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문화일보 : 『“뺑 터지면 다 우리 것... 최순실 사태'고영태 농단'? 』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7년 8월 30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4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국일보 : 『朴 대통령 측, 고영태 녹취록 들고 반격 나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발언 삭제 (2017년 2월 10일자 사회면)

<p>2017서울조정 1404~1427, 1525~1532</p>	<p>(각 손배청구) 홍○○ 對 인터넷 스포츠조선⁽¹⁴⁰⁴⁾, 스타뉴스⁽¹⁴⁰⁵⁾,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¹⁴⁰⁶⁾, 인터넷 스포츠투데이⁽¹⁴⁰⁷⁾, 엑스포츠뉴스⁽¹⁴⁰⁸⁾, 이뉴스투데이⁽¹⁴⁰⁹⁾, 데일리안⁽¹⁴¹⁰⁾, 마이데일리⁽¹⁴¹¹⁾, 스타투데이⁽¹⁴¹²⁾, e머니투데이⁽¹⁴¹³⁾, 인터넷 서울경제⁽¹⁴¹⁴⁾, 인터넷 서울신문⁽¹⁴¹⁵⁾, 인터넷 MBN⁽¹⁴¹⁶⁾, 인터넷 엠티엔(MTN)⁽¹⁴¹⁷⁾, 인터넷 SBSfunE⁽¹⁴¹⁸⁾, (췌)티비리포트⁽¹⁴¹⁹⁾, 뉴스1코리아⁽¹⁴²⁰⁾, 뉴스엔⁽¹⁴²¹⁾, 인터넷 이데일리⁽¹⁴²²⁾, 조이뉴스24⁽¹⁴²³⁾, 뉴스천지⁽¹⁴²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¹⁴²⁵⁾, 한경닷컴^(1426, 1528), 헤럴드POP⁽¹⁴²⁷⁾, 아시아경제닷컴⁽¹⁵²⁵⁾, 이투데이⁽¹⁵²⁶⁾, 아이에스플러스닷컴(인터넷 일간스포츠)⁽¹⁵²⁷⁾, 오에스이엔(OSEN)⁽¹⁵²⁹⁾, 노컷뉴스⁽¹⁵³⁰⁾, 비즈엔터⁽¹⁵³¹⁾, 인터넷 스포츠경향⁽¹⁵³²⁾</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스포츠조선 : 『“스태프=폭행 방조”... 김○○ 사건, 현장PD 증언‘새 국면’』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4일자 뉴스/연예면) • 스타뉴스 : 『“○○○○’PD, 김○○ 감독 피소 심경 ...“가해자 만드는 쉬운 세상”』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4일자 엔터테인먼트/영화면)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 『“○○○○’ PD의 일침 ...‘김○○ 사건’ 새 국면』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4일자 영화면) • 인터넷 스포츠투데이 : 『“○○○○’ PD “김○○ 폭언? 가해자 만들기 쉬워 ... 막 가지 말자”』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4일자 연예가화제면) • 엑스포츠뉴스 : 『“○○○○’ PD “당했다고만 하면 가해자 되는 쉬운 세상” 심경 고백』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4일자 영화면) • 이뉴스투데이 : 『○○○○ PD “말만 꺼내면 피해자 되는 세상”... 네티즌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4일자 연예스포츠면) • 데일리안 : 『“○○○○’ PD, 여배우 A씨 주장 반박 “막 가지 말자”』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4일자 연예면) 외 25건
<p>신청인 주장</p>	<p>영화감독의 여배우 폭행사건과 관련해 신청인이 SNS에 올린 해당 감독 관련 글을 동의 없이 실명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스포츠조선/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손해배상 200만 원 지급,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결정 내용을 수용할 수 없음) • 각 취하 (스타뉴스 외 28건/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 각 취하 (한경닷컴⁽¹⁵²⁸⁾, 노컷뉴스/사유 : 기사수정)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경닷컴 : 『여배우 A “김○○에게 폭언 들었다” 영화노초 측과 기자회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삭제 (2017년 8월 30일자 연예면) • 노컷뉴스 : 『김○○ 감독 VS A 배우, 폭행·베드신·차차 쟁점 ‘셋’』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삭제 (2017년 8월 30일자 연예면)

<p>2017서울조정 1430~1433</p>	<p>(각 정정청구) 산업통상자원부 對 한국경제^(1430, 1432), 한경닷컴^(1431, 1433)</p>
<p>조 정 대 상</p>	<p>(1) 『전력 남아돈다는 정부, 기업 전기사용 줄여라』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7년 8월 7일자 A1면, 한경닷컴 2017년 8월 7일자 정치면) (2) 『정부, 전력예비율 맞추려 기업에 전기감축 요구 공장 멈추란 말인가』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7년 8월 7일자 A3면, 한경닷컴 2017년 8월 7일자 정치면) (3) 『“정부 또 ‘전기 줄여라’ 기업 3000여 곳에 지시”』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7년 8월 8일자 A1면, 한경닷컴 2017년 8월 8일자 정치면) (4) 『공장 가동 막는 것도 모자라 ... 정부 ‘가정용까지 전력감축 검토’』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7년 8월 8일자 A9면) (5) 『전력수요 안는다더니 ... 빛나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7년 8월 8일자 A9면, 한경닷컴 2017년 8월 8일자 정치면)</p>
<p>신청인 주장</p>	<p>산업자원부가 전력예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체에 전력사용량을 낮추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산업통상자원부 급전(急電) 지시’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7년 9월 15일자 A02면, 한경닷컴 2017년 9월 14일자 산업면)</p>

<p>2017서울조정 1434, 1435, 1444, 1445, 1468~1471, 1477, 1478, 1481, 1505~1514,</p>	<p>(각 정정청구) 최 ○ 對 JTBC^(1434, 1468, 1470), 인터넷 JTBC^(1435, 1469, 1471), 중앙일보⁽¹⁴⁴⁴⁾, 온라인 중앙일보⁽¹⁴⁴⁵⁾, 인터넷 헤럴드경제^(1477, 1478), e머니투데이⁽¹⁴⁸¹⁾ (각 정정·손배청구) 서울경제^(1505·1506), 인터넷 서울경제^(1507·1508), 파이낸셜뉴스^(1509·1510), 인터넷 파이낸셜뉴스^(1511·1512, 1513·1514)</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 (1) 『어론전 이어 ‘2000여개 녹음파일’… 대통령측 의도는?』 제하의 보도 (JTBC 2017년 2월 11일자 뉴스룸 프로그램, 인터넷 JTBC 2017년 2월 11일자 사회면) (2) 『고영태 녹취, “영화 같아” 스스로 ‘도박 집단’에 빚댄 그들』 제하의 보도 (JTBC 2017년 2월 15일자 뉴스룸 프로그램, 인터넷 JTBC 2017년 2월 15일자 사회면) (3) 『“영화 속 도박단” 빚댄 최순실 측근들 … 적나라한 대화』 제하의 보도 (JTBC 2017년 2월 16일자 아침& 프로그램, 인터넷 JTBC 2017년 2월 16일자 사회면) • 중앙일보 : 『고영태 녹음파일, 탄핵심판 일정 변수되나』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7년 2월 13일자 3면, 온라인 중앙일보 2017년 2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차대통령측 증인·자료 … ‘탄핵증거’로 부메랑 되다』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5일자 오늘의 포토 및 최신기사면) • e머니투데이 : 『고영태 녹취록 일부 공개 … “VIP는 최순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4일자 사회면) • 서울경제 : 『고영태 ‘최순실 씨 이용’ 사익 추구』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1일자 A31면) • 인터넷 서울경제 : 『고영태 일당 최순실 등에 업고 사익 편취 정황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0일자 사회면) • 파이낸셜뉴스 : 『고영태 측근, 사익 추구 시도』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1일자 5면) 외 2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관련자들과 36억 원짜리 관급공사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JTBC, 인터넷 JTBC, 인터넷 헤럴드경제, 서울경제, 인터넷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파이낸셜뉴스/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e머니투데이/사유 : 기사수정)</p>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중앙일보 : 『고영태 녹음파일, 탄핵심판 일정 변수되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내용 삭제 (2017년 9월 15일자 정치면) • e머니투데이 : 『고영태 녹취록 일부 공개 … “VIP는 최순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내용 삭제 (2017년 8월 24일자 사회면)

<p>2017서울조정 1436~1438, 1449, 1450</p>	<p>(각 정정청구) 최 ○ 對 JTBC^(1436, 1438), 인터넷 JTBC^(1437, 1439), 뉴데일리⁽¹⁴⁴⁹⁾, 인터넷 시민일보⁽¹⁴⁵⁰⁾</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 (1) 『고영태 녹취 문체부 장관 보좌관 “최씨 위에는 아무도 없다”』 제하의 보도 (JTBC 2017년 2월 12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인터넷 JTBC 2017년 2월 12일자 사회면) (2) 『“최씨 위 아무도 없다”... 사실상 정부사업 결정권자』 제하의 보도 (JTBC 2017년 2월 13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인터넷 JTBC 2017년 2월 13일자 사회면) • 뉴데일리 : 『禹鍾昌 기자의 특종 제2탄! ‘김수현 녹음파일’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3일자 정치면) • 인터넷 시민일보 : 『‘고영태 집단’음모 드러낸 ‘김수현 녹음파일’ 형성 배경은?』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3일자 사회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고영태 등과 최순실의 미얀마 이권사업 및 아부다비문화원 인사를 논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p>

<p>2017서울조정 1452</p>	<p>(정정청구) 주○○ 對 엠스플 뉴스</p>
<p>조 정 대 상</p>	<p>『‘또 햄스트링’한화, 가을 야구 이대로 끝인가?』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3일자 KBO면)</p>
<p>신청인 주장</p>	<p>프로야구 선수들의 햄스트링 부상과 상관없는 신청인의 과거 발언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p>
<p>이 행 결 과</p>	<p>『‘또 햄스트링’한화, 가을 야구 이대로 끝인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삭제 (2017년 9월 8일자 KBO면)</p>

2017서울조정 1453~1455, 1596·1597	(정정·반론·손배청구) 이○○ 對 뉴시스 ^(1453·1454·1455) (정정·손배청구) 對 뉴시스 ^(1596·1597)
조 정 대 상	(1) 『“공무원”출신 경기도 산하기관 간부의 “역갑질”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0일자 사회면) (2) 『“역갑질” 경기도 산하기관 “관피아”, 보복성 신고도』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3일자 사회면) (3) 『경기도○○○○연구원, “역갑질 관피아” 징계 절차 착수』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기도 공무원 출신으로 산하기관 간부가 된 신청인이 재직 당시 해당 산하기관의 지도 감독 업무를 담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공무원 출신 경기도 산하기관 간부의 역갑질” 등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6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456~1458	(정정·반론·손배청구) 조○○ 對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단독]“학생 진술 증거 안 된다”...‘학생 성희롱’교사 1년 만에 복직』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신청인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고 복직했는데도 가해자인 것처럼 편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단독]“학생 진술 증거 안 된다”...‘성희롱’ 의혹 교사 1년 만에 복직』 제하의 기사로 제목 수정 및 신청인 익명 처리 (2017년 10월 13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460	(정정청구) 더불어민주당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기자수첩] 쓸모없는 ‘당 대표’』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7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정당의 대표가 여야 협치의 핵방편이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강제이행금)
이 행 결 과	『[기자수첩] 존재 이유가 불투명한 ‘당 대표’』 제하의 기사로 제목 등 수정 (2017년 9월 4일자 정치면)

<p>2017서울조정 1462~1467, 1476, 1479, 1480, 1485~1490,</p>	<p>(각 정정청구) 최 ○ 對 JTBC^(1462, 1464, 1466), 인터넷 JTBC^(1463, 1465, 1467), YTN^(1472, 1474), 인터넷 YTN^(1473, 1475), 인터넷 헤럴드경제⁽¹⁴⁷⁶⁾, 인터넷 서울신문⁽¹⁴⁷⁹⁾, 인터넷 국민일보⁽¹⁴⁸⁰⁾, 오마이뉴스⁽¹⁴⁸²⁾, 뉴스앤뉴스⁽¹⁴⁸⁵⁾, 인터넷 스포셜경제⁽¹⁴⁸⁶⁾, 고발뉴스닷컴⁽¹⁴⁸⁷⁾, 뉴스핌⁽¹⁴⁸⁸⁾, 연합뉴스⁽¹⁴⁸⁹⁾, 네이버⁽¹⁴⁹⁰⁾</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 (1) 『고영태 녹취, '세월호 상처'안산에도 "뽕아먹을 것 없나"』 제하의 보도 (JTBC 2017년 2월 14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인터넷 JTBC 2017년 2월 14일자 사회면) (2) 『'안산 좌빨' 표현까지... 고영태 녹취 속 '막말했던 그들'』 제하의 보도 (JTBC 2017년 2월 14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인터넷 JTBC 2017년 2월 14일자 사회면) (3) 『안산까지 손 뻗쳐 예산 착복 ... 고영태 파일 속 대화들』 제하의 보도 (JTBC 2017년 2월 15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인터넷 JTBC 2017년 2월 15일자 사회면) • YTN : (1) 『"안산에 좌빨들 널렸어" 최순실 측근들의 '막말'』 제하의 보도 (YTN 2017년 2월 15일자 뉴스N이슈 프로그램, 인터넷 YTN 2017년 2월 15일자 사회면) (2) 『"영태는 왕의 남자 ... 뽕는 그를 남자로"』 제하의 보도 (YTN 2017년 2월 15일자 뉴스N이슈 프로그램, 인터넷 YTN 2017년 2월 15일자 사회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세월호 아픔 안산에도 "뽕아 먹자"... 최순실 '패륜 크러시'』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5일자 최신기사면) • 인터넷 서울신문 : 『세월호 아픔 안산에도 ... "뽕아 먹을 것 없나" 녹취록』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5일자 사회면) • 인터넷 국민일보 : 『"안산에 뽕아 먹을 거 없나 보자" 기막힌 녹취록에 네티즌 '분통'』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5일자 사회면) • 오마이뉴스 : 『"김정남 피살설 세계 특종"? TV조선의 민망한 자화자찬』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6일자 미디어면) • 뉴스앤뉴스 : 『최순실 측 "세월호 안산에서 뽕아 먹을 거 없나"』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5일자 정치면) 외 5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세월호 유가족을 좌빨이라고 표현했고, 정부 예산을 착복할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YTN, 인터넷 YTN/ 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JTBC, 인터넷 JTBC, 인터넷 헤럴드경제, 인터넷 서울신문, 인터넷 국민일보, 뉴스앤뉴스, 인터넷 스포셜경제, 고발뉴스닷컴, 뉴스핌, 네이버/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오마이뉴스, 연합뉴스/사유 : 기사수정)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마이뉴스 : 『"김정남 피살설 세계 특종"? TV조선의 민망한 자화자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내용 삭제 (2017년 9월 13일자 미디어면) • 연합뉴스 : 『고영태와 지인들, 이해관계 따라 이합집산 ... 서로 의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내용 삭제 (2017년 8월 29일자 최신기사면)

2017서울조정 1461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한국아파트신문
조 정 대 상	『저수조 청소 한 것처럼 속인 관리과장 사기죄로 ‘벌금형’ 선고』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6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파트 관리과장으로 재직 시 사기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7서울조정 1483, 1484	(각 정정청구) 최 ○ 對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¹⁴⁸³⁾ , 뉴스타운 ⁽¹⁴⁸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 『김수현 녹음파일 특종 우종창 기자, “이현정 녹음 파일 보도 MBC, 정말 고맙다.”』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5일자 칼럼정치면) • 뉴스타운 : 『고영태派(국회義人?) 국정사기단에 놀아난 탄핵굿판』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5일자 정치기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고영태 일당에게 국가비밀문서를 넘겼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서울조정 1493, 1494	(각 반론청구) 오○○ 對 JTBC ⁽¹⁴⁹³⁾ , 인터넷 JTBC ⁽¹⁴⁹⁴⁾
조 정 대 상	『“접대에만 1000만원 이상” 해외 사범들도 ‘국기원장 폭로’』 제하의 기사 (JTBC 2017년 8월 10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인터넷 JTBC 2017년 8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국기원장인 신청인이 해외출장 때마다 현지 사범들에게 접대와 선물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접대에만 1000만원 이상” 해외 사범들도 ‘국기원장 폭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JTBC 2017년 9월 11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495·1496	(정정·손배청구) 강○○ 對 월간미술
조 정 대 상	(1) 『6월의 단상』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3일자 56면) (2) 『폭풍전야!』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31일자 54면) (3) 『“서는 곳이 달라지니 풍경도 달라지는 구나”』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31일자 60면)
신청인 주장	미대교수이자 평론가인 신청인이 이미 발표한 글을 모아 신간으로 출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497·1498	(반론·손배청구) (주)○○○ 對 골프다이제스트
조 정 대 상	『KOREA'S BEST COURSES』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5일자 112~114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충분한 근거 없이 국내 베스트 코스 18위로 선정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1499·1500, 1538·1539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세이프투데이
조 정 대 상	(1) 『소방청 차장 등 후속 인사는?』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8일자 인물면) (2) 『심○○ 전 소방본부장 ‘소송 반격’』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7일자 정부/공공면)
신청인 주장	승진 후보자인 신청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1515·1516, 1542·1543, 1570·1571, 1666~1669	(각 정정·손배청구) 최 ○ 對 미디어펜 ^(1515·1516) , 미래한국 Daily ^(1542·1543) , 투데이코리아 ^(1570·1571) , 디지털타임스 ^(1666·1667) ,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1668·1669)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펜 : 『MBC 폭로, 고영태 녹음파일이 스모킹 건이다』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9일자 칼럼면) • 미래한국 Daily : 『드러나는 탄핵농단의 배후』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2일자 정치면) • 투데이코리아 : 『‘고영태 녹음파일’ 20일 공개분, 음모 고스란히 드러나』 2017년 2월 23일자 뉴스면) • 디지털타임스 : 『현재 판단, 승복해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8일자 시론면,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2017년 3월 7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문화체육부 근무 시 장관보고서를 고영태에게 전달하였고 문건 유출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미디어펜, 미래한국 Daily, 디지털타임스, 인터넷 디지털타임스/사유 : 기사수정, 투데이코리아/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펜 : 『MBC 폭로, 고영태 녹음파일이 스모킹 건이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내용 삭제 (2017년 8월 23일자 칼럼면) • 미래한국 Daily : 『드러나는 탄핵농단의 배후』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성명 삭제 (2017년 9월 15일자 정치면) •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 『현재 판단, 승복해야 한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성명 삭제 (2017년 9월 13일자 오피니언면)
2017서울조정 1517, 1518	(각 정정청구) 식품의약품안전처 對 국민일보 ⁽¹⁵¹⁷⁾ , 인터넷 국민일보 ⁽¹⁵¹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일보 : 『네덜란드産 계란 올 2월 수입·유통』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8일자 1면) • 인터넷 국민일보 : 『[단독]‘살충제 계란’ 진원지 네덜란드産 올 2월 수입·유통 ... 수입된 것 없다더니』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7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살충제 계란 파동의 진원지인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식용란은 없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살충제 계란’ 진원지 네덜란드産 올 2월 수입 의혹 ... 식약처, “수입신고 없었다”』 제하의 기사로 제목 수정 및 신청인 반론 추가 (인터넷 국민일보 2017년 8월 29일자 시사면)

<p>2017서울조정 1519, 1520</p>	<p>(정정청구) ○○○○○○복지관⁽¹⁵¹⁹⁾, 홍○○⁽¹⁵²⁰⁾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p>
<p>조 정 대 상</p>	<p>『“가임기 여성 다 잘라버려야겠다”는 말, 사과 받고 싶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3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복지관이 가임여성은 해고하겠다는 상사의 폭언에 사과를 요구하는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보도개재)</p>
<p>이 행 결 과</p>	<p>『○○○○○○○복지관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7일자 사회면)</p>

<p>2017서울조정 1524</p>	<p>(손배청구) 권○○ 對 온라인 중앙일보</p>
<p>조 정 대 상</p>	<p>『[월간중앙] 탈북 방송인 임모 씨 재입북 사건 진상은? 10명 탈북하면 1명 기획입북? 탈북 브로커들의 ‘죽음의 거래’』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1일자 정치면)</p>
<p>신청인 주장</p>	<p>탈북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기사수정)</p>
<p>이 행 결 과</p>	<p>『[월간중앙] 탈북 방송인 임모 씨 재입북 사건 진상은? 10명 탈북하면 1명 기획입북? 탈북 브로커들의 ‘죽음의 거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성명 삭제 (2017년 8월 30일자 정치면)</p>

2017서울조정 1533~1536	(각 정정청구) (주)○○○○ 對 엑스포츠뉴스 ⁽¹⁵³³⁾ , 뉴스엔 ⁽¹⁵³⁴⁾ , 팩트TV ⁽¹⁵³⁵⁾ , 쿠키뉴스 ⁽¹⁵³⁶⁾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엑스포츠뉴스 : 『○○○○ 측, 방탄소년단 편애·형평성 논란 사과 “문제 직원 징계”』(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8일자 가요면) • 뉴스엔 : 『엑소 中 팬들 “○○○○ 인종차별 했나” 분노한 사연』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8일자 뮤직와치면) • 팩트TV : 『○○○○, 무능력한 대처에 신뢰성 무너지나?』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8일자 문화면) • 쿠키뉴스 : 『[새우젓의 시선] ‘아직도 주먹구구’ ○○○○, 스스로 증명한 공신력 부재』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음반 판매량을 집계하는 신청인 회사가 집계기준 개편과 관련하여 특정 아이들에게 특혜를 주고 중국 팬들은 폄하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엑스포츠뉴스, 팩트TV, 쿠키뉴스/사유 : 정정보도, 뉴스엔/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엑스포츠뉴스 : 『[‘○○○○’관련 정정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8일자 국내연예면) • 뉴스엔 : 『○○○○, 중국 팬덤 논란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8일자 뮤직와치면) • 팩트TV : 『[○○○○ 관련 정정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9일자 뉴스면) • 쿠키뉴스 : 『○○○○ 관련 정정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31일자 뉴스면)
2017서울조정 1537	(정정청구) 박○○ 對 일요신문
조 정 대 상	『박○○ 전 감독 부인, 동생과 법정 싸움 왜?』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9일자 전국뉴스면)
신청인 주장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인 신청인이 처가 재산을 놓고 처남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계재)
이 행 결 과	『오랜 침묵 후 박○○ 감독 말하다』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8일자 뉴스면)

<p>2017서울조정 1540, 1541, 1612</p>	<p>(각 정정청구) 의정부시○○○○공단 對 인터넷 경기북부시민신문</p>
<p>조 정 대 상</p>	<p>(1) 『의정부○○공단 ‘알박기 인사’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8일자 정치/행정면) (2) 『의정부○○공단, 성과급 받으려 근태조작?』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1일자 사회/교육면) (3)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제2의 낙하산 부대’』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5일자 정치/행정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공단이 지도층 인사들의 친인척과 자녀들을 직원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불성립결정</p>
<p>2017서울조정 1544~1551, 1578~1581</p>	<p>(각 정정·손배청구) 최 ○ 對 MBC-TV^(1544·1545, 1548·1549), iMBC^(1546·1547, 1550·1551), 일요신문^(1578·1579), 일요신문^(1580·1581)</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1) 『최○ “장관 보고서도 고영태에게 실시간 보고”』 제하의 보도 (MBC-TV 2017년 2월 22일자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iMBC 2017년 2월 22일자 뉴스투데이면) (2) 『최○ “장관 보고서도 고영태에게 실시간 보고”』 제하의 보도 (MBC-TV 2017년 2월 22일자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iMBC 2017년 2월 22일자 뉴스투데이면) • 일요신문 : 『이게 농담? 차은택 처내자 속닥...』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5일자 10면) • 일요신문i : 『이게 농담이라고? 고영태 녹음파일 2391개 분석해보니 ...』 2017년 2월 27일자 사회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문화체육관광부 근무 시 장관보고서를 고영태 씨에게 전달하였고 문건 유출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MBC-TV, iMBC/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일요신문, 일요신문/i/사유 : 기사수정)</p>
<p>이 행 결 과</p>	<p>일요신문i : 『이게 농담이라고? 고영태 녹음파일 2391개 분석해보니...』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내용 삭제 (2017년 9월 1일자 사회면)</p>

2017서울조정 1553~1558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교회 對 연합뉴스TV ^(1553~1555) , 인터넷 연합뉴스TV ^(1556~1558)
조정대상	『초등학교 뒷산 파헤쳐 시설 수목장… 주민들 반발』 제하의 기사 (연합뉴스TV 2017년 8월 22일자 뉴스12 프로그램, 인터넷 연합뉴스TV 2017년 8월 22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수목장 시설을 조성하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았고, 국유림을 사용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초등학교 뒷산 파헤쳐 시설 수목장 … 주민들 반발”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연합뉴스TV 2017년 10월 18일자 뉴스12 프로그램, 인터넷 연합뉴스TV 2017년 10월 18일자 전국면)

2017서울조정 1559~1562	(각 정정·손배청구) (주)○○○○ 외 1인 對 시사저널 ^(1559·1560) , 인터넷 시사저널 ^(1561·1562)
조정대상	(1) 『[단독] 이인규 前중수부장, 법무법인 바른 6월 퇴사 후 출국』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7년 8월 22일자 24~25면) (2) 『[단독] 강○○ ○○○○대표의 수행기사‘갑질’논란』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7년 8월 22일자 26~27면, 인터넷 시사저널 2017년 8월 14일자 경제면) (3) 『[단독]‘노무현 수사’이인규 전 중수부장, 갑작스런 출국 왜?』 제하의 기사 (인터넷 시사저널 2017년 8월 10일자 정치면) (4) 『[단독] 이인규 출국, 단순 외유인가 도피성인가』 제하의 기사 (인터넷 시사저널 2017년 8월 16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사옥신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각종 의혹이 있고, 신청인 회사가 회장 운전기사를 부당 해고하는 갑질 횡포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강○○ ○○○○ 대표의 수행기사‘갑질’논란 등 의혹」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7년 10월 30일자 인사이드 뉴스면, 인터넷 시사저널 2017년 10월 31일자 경제면)

2017서울조정 1563·1564	(정정·손배청구) 국기원 외 2인 對 월드태권도뉴스
조 정 대 상	『국기원 집행부 “막장 넘어 끝장”』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8일자 포커스 이슈면)
신청인 주장	국기원이 노조위원장을 징계할 목적으로 성추행 사건을 날조하는 등 막장으로 치달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 취하)
2017서울조정 1565	(반론청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對 뉴스타운
조 정 대 상	『○○○○아파트도 담합의혹 ‘증폭’ 수사기관 개입가능성 커』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31일자 사회/환경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아파트가 지역난방전환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사전담합을 통해 특정업체를 선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아파트도 담합의혹 ‘증폭’ 수사기관 개입가능성 커” 보도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5일자 사회/환경면)
2017서울조정 1566, 1567	(각 정정청구) 홍준표 對 인터넷 YTN ⁽¹⁵⁶⁶⁾ , 인터넷 JTBC ⁽¹⁵⁶⁷⁾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YTN : 『[팩트체크] 녹조현상 급증은 4대강 사업 때문?』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3일자 정치면) • 인터넷 JTBC : 『[팩트체크] 녹조, ‘4대강’ 아닌 ‘폐수’ 때문에 늘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녹조현상 급증의 원인이 이상고온과 하수유입 때문이라는 신청인의 대선 후보 토론회 때 발언이 허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1568·1569	(반론·손배청구) 오○○ 對 월드태권도뉴스
조 정 대 상	『오 원장, 공식 해외출장 중 ‘부적절 행위’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3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과거 국기원 연수원장 시절 해외출장 중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1572	(정정청구) ○○○○○○○○○○○교회 對 예장뉴스
조 정 대 상	(1) 『“셀프 청빙” 하고도 위임식 할 수 있나?』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9일자 뉴스와보도면) (2) 『대리 당회장 이○○ 목사 계속 구설수』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4일자 뉴스와보도면) (3) 『○○교회 김○○ 목사 위임식 강행』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일자 뉴스와보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 연임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교회를 이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교회 담임목사 위임 청빙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3일자 정정보도면)

2017서울조정 1573, 1574	(각 정정청구) (사) ○○○○○○○○○ 對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1) 『“국론 분열코자 시위?”… 예비군 당황케하는 안보교육 누가 하나 봤더니』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8일자 정치면) (2) 『촛불시민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예비군 안보교육』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 소속 안보교육 강사들이 예비군훈련에서 시민들의 시위를 국론분열의 획책이라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이 행 결 과	『8년째 이어진 예비군 안보교육 누가 하나 봤더니 …』 제하의 기사로 제목 및 내용 수정 (2017년 9월 15일자 정치면)

2017서울조정 1577	(정정청구) 울진군 對 NSP통신
조 정 대 상	『인구5만 울진군, 돈 주고 상(賞) 사오기 ‘경북도내 1위’ 영광』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3일자 정치/사회면)
신청인 주장	울진군수가 치적홍보를 위해 돈을 주고 CEO대상 등을 수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인구 5만 울진군, 돈 주고 상(賞) 사오기 ‘경북도내 1위’ 영광』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1일자 지자체/정당면)
2017서울조정 1582·1583	(반론·손배청구) 이○○ 외 1인 對 인터넷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단독] 전직 국정원장도 당한 목사와 전직 신부의 사기 사건』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전직 신부와 사회복지사인 신청인들이 장애인단체를 내세워 장애인 기부금을 가로채는 등 각종 추문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584	(손배청구) 임○○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생리컵 쓰라고요? ... 마음의 준비 안됐는데』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생리대 안전성 논란을 보도하면서 가게에서 생리대를 고르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7서울조정 1588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단독] 1400여년 고찰에서도 ‘갑질’ 주장 나와』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7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사찰 경비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7서울조정 1589~1591	(각 손해청구) 노○○ 對 온라인 중앙일보 ⁽¹⁵⁸⁹⁾ , 인터넷 국민일보 ⁽¹⁵⁹⁰⁾ , 매경닷컴 ⁽¹⁵⁹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중앙일보 : (1) 『제주 카페 알바생 ‘손님 도촬’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8일자 사회면) (2) 『[카드뉴스] 손님들 도촬한 제주 카페 알바생』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8일자 사회면) • 인터넷 국민일보 : 『“제주 커피숍 알바가 몰카범이네요” 트위터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8일자 시사면) • 매경닷컴 : 『“하얀 살들 · 어깨 · 다리...” 女손님 도촬하고 품평까지 한 카페 알바생』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손님들을 몰래 촬영하고 SNS에 올린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인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인터넷 국민일보, 매경닷컴/사유 : 기사수정) • 취하 (온라인 중앙일보/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국민일보 : 『“제주 커피숍 알바가 몰카범이네요”트위터 논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사진 삭제 (2017년 9월 19일자 시사면) • 매경닷컴 : 『“하얀 살들 · 어깨 · 다리...” 女손님 도촬하고 품평까지 한 카페 알바생』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사진 삭제 (2017년 9월 19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592	(정정청구) 전○○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경찰 간부가 욕설에 빵 셔틀까지’... 아내 분식집 이용 강요』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6일자 TV조선 종합뉴스 9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경찰 간부인 신청인이 부하 직원들에게 아내가 운영하는 분식집을 이용하도록 하고 식사배달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7서울조정 1593·1594	(정정·손배청구) 이○○ 對 데일리한국
조 정 대 상	『[르포] 한국 해상풍력의“굴기”○○해상풍력 현장을 가다』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9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해상풍력과 관련해 대규모 어민 보상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5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르포] 한국 해상풍력의‘굴기’○○해상풍력 현장을 가다”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8일자 경제면)

<p>2017서울조정 1595, 1600, 1601, 1645~1647, 1657~1664, 1761~1773</p>	<p>(각 정정청구) 허○○ 對 연합뉴스⁽¹⁵⁹⁵⁾, 아시아경제닷컴⁽¹⁶⁰⁰⁾, 노컷뉴스⁽¹⁶⁰¹⁾, 인터넷 서울신문⁽¹⁶⁴⁵⁾, 인터넷 한국일보⁽¹⁶⁴⁶⁾, 뉴스천지⁽¹⁶⁴⁷⁾, KBS미디어⁽¹⁶⁵⁷⁾, 인터넷 MBN⁽¹⁶⁵⁸⁾, 전자신문인터넷⁽¹⁶⁵⁹⁾, 뉴스에듀⁽¹⁶⁶⁰⁾, 허핑턴포스트코리아⁽¹⁶⁶¹⁾, JTBC⁽¹⁶⁶²⁾, 인터넷 JTBC⁽¹⁶⁶³⁾, 인터넷 국민일보⁽¹⁶⁶⁴⁾ (각 손해청구) 對 JTBC⁽¹⁷⁶¹⁾, 인터넷 JTBC⁽¹⁷⁶²⁾, 인터넷 서울신문⁽¹⁷⁶³⁾, 인터넷 한국일보⁽¹⁷⁶⁴⁾, 전자신문인터넷⁽¹⁷⁶⁵⁾, 인터넷 국민일보⁽¹⁷⁶⁶⁾, 아시아경제닷컴⁽¹⁷⁶⁷⁾, 노컷뉴스⁽¹⁷⁶⁸⁾, 뉴스천지⁽¹⁷⁶⁹⁾, 뉴스에듀⁽¹⁷⁷⁰⁾, 허핑턴포스트코리아⁽¹⁷⁷¹⁾, 연합뉴스⁽¹⁷⁷²⁾, KBS미디어⁽¹⁷⁷³⁾</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학교 대령이 여군 소령에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1일자 최신기사면) • 아시아경제닷컴 : 『여군 소령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 거부하자 ...』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1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육군 대령, 부하 여군에 “‘몰카’ 성범죄 대리합의하라”』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신문 : 『○○○○학교 대령, 부하 여군에 ‘몰카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국일보 : 『○○○학교 교수, 여군소령에 몰카 대리합의 지시』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1일자 사회면) • 뉴스천지 : 『○○○학교, 女소령에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1일자 노동·인권·여성면) • KBS미디어 : 『○○○학교 교수, 여군소령에 몰카 대리합의 지시』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2일자 사회면) 외 7건
<p>신청인 주장</p>	<p>육군 대령인 신청인이 신청인의 지시가 부당하다며 거부한 여군 소령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연합뉴스/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 각 취하 (아시아경제닷컴 외 11개 매체/사유 : 자진 취하, 인터넷 MBN/사유 : 보도거제)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학교 대령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 관련 정정·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4일자 최신기사면) • 인터넷 MBN : 『<정정보도문> ‘○○○학교 대령, 女 소령에 성범죄사건 대리합의 지시 ... 거부하자 보복성 조치까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0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598·1599, 1643·1644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1) 『[단독] 강남구청 간부 ‘신○○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4일자 사회면) (2) 『[단독] 신○○ 강남구청장, 증거인멸 직접 지시하고 서명까지』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602~1611	(각 반론·손배청구) 송○○ 對 한국NGO ^(1602·1603) , KJT뉴스 ^(16041·605) , 인터넷 내외신문 ^(1606·1607) , JMB방송 ^(1608·1609) , KPANEWS ^(1610·1611)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NGO : 『“멍드는 민초들” ○○○○○○○○, “오진 ... 의사의 권한이다?”』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4일자 사회문화면) • KJT뉴스 : 『○○○○○ 황당한 오진으로 어린이 고통 받아 “장염을 감기로”』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내외신문 : 『“의사가 기가 막혀” 오진한 의사 감싸는 원장 오진도 의사의 권한?』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4일자 뉴스 보도자료면) • JMB방송 : 『○○○○○ 공중보건 의사 오진에 주민불만 늘고 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4일자 사회면) • KPANEWS : 『○○○○○ 공중보건 의사 오진에 주민불만 늘고 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7일자 경제/사회면)
신청인 주장	지역 보건 의료원의 공중보건 의사인 신청인이 장염 환자를 감기로 오진하고 관련 취재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NGO : 『<지역 보건 의료원의 갑질 “멍드는 민초들”>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1일자 사회문화면) • KJT뉴스 : 『“○○○○○ 황당한 오진으로 어린이 고통 받아” “장염을 감기로”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1일자 사회면) • 인터넷 내외신문 : 『“의사가 기가 막혀” 오진한 의사 감싸는 원장 오진도 의사의 권한?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9일자 사회면) • JMB방송 : 『[○○○○○ 공중보건 의사 오진에 주민불만 늘고 있다.]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8일자 사회면) • KPANEWS : 『“○○○○○ 공중보건 의사 오진에 주민불만 늘고 있다.”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7일자 경제/사회면)

<p>2017서울조정 1613·1614, 2122·2123</p>	<p>(각 정정·손배청구) (유)○○○○○○○○○ 對 연합뉴스^(1613·1614), 인터넷 한국일보^(2122·2123)</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담양 ○○○○○○○○ ‘불법건축물 철거·토지반환’ 소송 파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1일자 최신기사면) • 인터넷 한국일보 : 『담양 ○○○○○○○○ ‘건물 철거·토지 반환 소송』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1일자 뉴스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회사가 추진 중인 관광지 조성사업이 대법원에서 인가취소판결을 받은 이유가 공익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연합뉴스/사유 : 보도게재, 인터넷 한국일보/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p>
<p>이 행 결 과</p>	<p>『대법원“○○○○○○○ 사업자 능력 없다고 볼 근거 없어”』 제하의 기사 (연합뉴스 2017년 9월 5일자 최신기사면)</p>
<p>2017서울조정 1615~1618</p>	<p>(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ciobiz+^(1615·1616), 전자신문인터넷^(1617·1618)</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obiz+ : 『○○, 고객정보외에 기업 기밀도 유출‘협박당했나?’』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6일자 ciobiz+면) • 전자신문인터넷 : 『○○, 고객정보외에 기업 기밀도 유출‘협박당했나?’』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6일자 뉴스면)
<p>신청인 주장</p>	<p>해킹사고로 유출된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 및 회원정보 등에 접근하는 방법을 상세히 묘사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보도게재)</p>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obiz+ : 『○○, 고객정보외에 기업 기밀도 유출‘협박당했나?’기사 정정』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3일자 ciobiz+면) • 전자신문인터넷 : 『○○, 고객정보외에 기업 기밀도 유출‘협박당했나?’기사 정정』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3일자 뉴스면)

2017서울조정 1619	(정정청구) 권영진 對 인터넷 일요서울
조 정 대 상	『권영진 대구 시장, ‘사전선거운동 의혹’ 대두』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5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대구시장인 신청인이 내년 선거를 위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노조원들의 자유한국당 입당을 권유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620·1621	(정정·손배청구) 최교일 對 KBS-2TV
조 정 대 상	추적 60분 프로그램 『검찰과 권력 2부작 - 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제하의 보도 (2017년 7월 26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과거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사건 변론 인연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검찰과 권력 2부작 - 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관련 알림 보도』 (2017년 7월 26일자 추적 60분 프로그램)
2017서울조정 1622, 1623	(각 손배청구) 이 ○ 對 KBS-1TV⁽¹⁶²²⁾, KBS미디어⁽¹⁶²³⁾
조 정 대 상	『민간 파수꾼 ‘블랙박스’ 제보 급증』 제하의 보도 (KBS-1TV 2017년 7월 8일자 뉴스 9 프로그램, KBS미디어 2017년 7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제보 급증의 부작용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서울시에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민간 파수꾼 ‘블랙박스’ 제보 급증』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제공 영상 및 신청인 음성 삭제 (KBS미디어 2017년 10월 12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624	(반론청구) 박○○ 對 KBS-1TV
조 정 대 상	『회식에 해외관광 ... 사립재단 학교 예산 평평』 제하의 보도 (2017년 8월 25일자 뉴스 9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교장인 신청인이 학생 취업지원 예산으로 교장실 가구를 교체하고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625	(손배청구) 김○○ 對 네이버
조 정 대 상	『100억 자산가에서 24시간 식당 종업원으로』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100억대 자산가에서 사업 몰락으로 식당일을 하는 사연을 담은 방송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당사자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1626·1627	(정정·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주간레저신문
조 정 대 상	『○○○○○○ 회원들 회원권 소멸 총력 저지 투쟁』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30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골프장 신임 대표이사인 신청인이 골프장을 사유화하고 회원들에게 회원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서울조정 1628·1629	(정정·손배청구) (주)○○ 외 2인 對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1) 『교수와 변호사 낀 시행업체, 포항에 폐기물 위 상가 지어 분양‘파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2일자 뉴스면) (2) 『<속보> 경북 포항 폐기물 위 상가, 포항시 형사고발 등 검토』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5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폐기물 매립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관할변경)
2017서울조정 1638, 1639	(각 정정청구) 광주시청 對 아시아일보 ⁽¹⁶³⁸⁾ , 인터넷 아시아일보 ⁽¹⁶³⁹⁾
조 정 대 상	『광주시엔 아직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제하의 기사 (아시아일보 2017년 8월 28일자 7면, 인터넷 아시아일보 2017년 8월 27일자 기자수첩면)
신청인 주장	경기 광주시가 입맛에 맞는 특정 언론사만을 상대로 시정광고를 집행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광주시엔 아직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아시아일보 2017년 9월 18일자 9면, 인터넷 아시아일보 2017년 9월 18일자 경기면)
2017서울조정 1640	(정정청구) 허○○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4·19는 이승만 덕”발언자가 민주화운동 공모전 심사』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사학 교수인 신청인이 일제 강점과 이승만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성향을 가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p>2017서울조정 1641, 1642</p>	<p>(각 정정청구) 조○○ 對 한겨레⁽¹⁶⁴¹⁾, 인터넷 한겨레⁽¹⁶⁴²⁾</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 : 『한글학자 이극로의 독일어판 일제 규탄문 첫 발굴』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5일자 문화면) • 인터넷 한겨레 : 『[단독] 한글학자 이극로, 독일어로 된 ‘독립운동 출판물’ 첫 발굴』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7일자 학술면)
<p>신청인 주장</p>	<p>독립운동가 이극로의 일제규탄 자료들의 독일어판 원본 최초 발굴자는 신청인인데도 다른 사람이 최초로 발굴했다고 잘못 보도했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이극로의 독일어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7년 9월 29일자 18면, 인터넷 한겨레 2017년 9월 28일자 문화면)</p>

<p>2017서울조정 1648</p>	<p>(정정청구) 장○○ 對 뉴스1코리아</p>
<p>조 정 대 상</p>	<p>『○○ 종합병원 의사, 회식 중 여직원 성추행 혐의 경찰조사』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5일자 경기면)</p>
<p>신청인 주장</p>	<p>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인 신청인의 신원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기사수정)</p>
<p>이 행 결 과</p>	<p>『○○ 종합병원 의사, 회식 중 여직원 성추행 혐의 경찰조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익명 처리 (2017년 9월 29일자 경기면)</p>

<p>2017서울조정 1649·1650</p>	<p>(정정·손배청구) 지○○ 對 서대문신문</p>
<p>조 정 대 상</p>	<p>『6개월, 어느 老父의 안타까운 하소연』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6일자 1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억지주장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PR·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2017서울조정 1651·1652	(정정·반론청구) 김○○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시진핑 지시로 만든 안중근 동상, 의정부역에 선다』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9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의정부역 광장의 안중근 의사 동상 설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신청인 당사자 부적격)

2017서울조정 1653~1656	(각 정정·반론청구) 왕○○ 對 SBS-TV ^(1653·1654) , SBS아이앤엠 ^(1655·1656)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4년 동안 꼭 참았다 ... 교수님의 추행』 제하의 보도 (2017년 8월 30일자 SBS 8뉴스 프로그램) • SBS아이앤엠 : 『‘4년간의 악몽’대자보 폭로 ... 대학교수의 상습 성추행』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3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학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4년간의 악몽’대자보 폭로 ... 대학교수의 성추행』 제하의 기사로 제목 수정 및 신청인 반론 추가 (SBS아이앤엠 2017년 9월 27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665	(정정청구) (재) ○○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전북의 민족종교를 찾아서』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7일자 전북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단의 명칭과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분쟁을 일삼는 종교단체 교주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p>2017서울조정 1670·1671</p>	<p>(정정·손배청구) (주)○○○ 對 인터넷전업농신문</p>
<p>조 정 대 상</p>	<p>(1) 『○○ 이번엔 모바일 해킹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0일자 산업면) (2) 『식품업계 해킹 무방비!○○』에 이어 이번엔『○○유업』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31일자 식품/유통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회사의 모바일웹 홈페이지가 해킹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5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양 당사자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 손해배상 결정액 미흡, (피신청인) 조정대상보도내용이 허위가 아님)</p>
<p>2017서울조정 1672·1673, 1712·1713</p>	<p>(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미디어스^(1672·1673), 시사저널e^(1712·1713)</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스 : 『‘1조 사기’ ○○○홀딩스, 이번엔‘가짜 변제안’』 제하의 보도 (2017년 8월 14일자 미디어뉴스면) • 시사저널e : 『○○○홀딩스‘1조 금융사기’... 6000억 피해변제는 묘연』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4일자 기업면)
<p>신청인 주장</p>	<p>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청인 회사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제안한 변제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미디어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시사저널e/사유 : 보도거제)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스 : 『○○○홀딩스 변제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7년 9월 27일자 미디어뉴스면) • 시사저널e : 『[○○○홀딩스‘ 1조 금융사기’... 6000억 피해변제는 묘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2일자 기업면)
<p>2017서울조정 1674, 1675</p>	<p>(각 정정청구) ○○○○○○(주) 對 세계일보⁽¹⁶⁷⁴⁾, 세계닷컴⁽¹⁶⁷⁵⁾</p>
<p>조 정 대 상</p>	<p>『○○○○○ 생리대서 발암물질 최다 검출』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7년 9월 4일자 A1면, 세계닷컴 2017년 9월 3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회사가 생산한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검출됐다는 신뢰성 없는 실험결과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p>

2017서울조정 1676~1679	(각 정정·손배청구) 하○○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1676·1677) , 노컷뉴스 ^(1678·1679)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미디어오늘 : (1) 『고대영, KBS 시청자위원회에 박근혜 변호인·전경련 전무 선임』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4일자 뉴스면) (2) 『“박근혜 변호인이 KBS 시청자위원? 다시 뽑아야”』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8일자 뉴스면) • 노컷뉴스 : (1) 『“박근혜 변호사까지 … KBS 시청자위원들 충격적”』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7일자 미디어면) (2) 『KBS시청자위원 자질 논란 …“언론적폐”VS“엄정심사”』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7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서울시의원 시절 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인터넷 미디어오늘/사유 : 기사수정, 노컷뉴스/사유 : 정정보도)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미디어오늘 : (1) 『고대영, KBS 시청자위원회에 박근혜 변호인·전경련 전무 선임』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정보 수정 (2017년 10월 12일자 뉴스면) (2) 『“박근혜 변호인이 KBS 시청자위원? 다시 뽑아야”』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정보 수정 (2017년 10월 12일자 뉴스면) • 노컷뉴스 : 『[정정보도문]“KBS시청자위원회 자질 논란 …“언론적폐” VS “엄정심사”, “박근혜 변호사까지 … KBS 시청자위원들 충격적”관련』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5일자 문화면)
2017서울조정 1680	(정정청구) 정○○ 對 노컷뉴스
조정대상	『[단독] 방산비리 의혹에 靑 국방개혁비서관 인선 “진통”』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0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대통령 비서실 국방개혁비서관으로 거론됐던 신청인이 과거 방위산업체로부터 거래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결과	『방산비리 의혹에 靑 국방개혁비서관 인선 “진통”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1일자 정치면)

<p>2017서울조정 1681·1682</p>	<p>(정정·손배청구) 권○○ 외 2인 對 TV조선</p>
<p>조 정 대 상</p>	<p>『[단독] 망보고 구경꾼 행세 ... 부산 여중생 폭행 CCTV 추가발견』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7일자 9시 뉴스 프로그램)</p>
<p>신청인 주장</p>	<p>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담당 경찰서 및 소속 경찰인 신청인들이 가해학생 2명을 조사대상에서 누락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정정보도)</p>
<p>이 행 결 과</p>	<p>『[바로잡습니다]‘망 보고 구경꾼 행세’... 부산 여중생 폭행 CCTV 추가 발견』 제하의 기사 (인터넷 TV조선 2017년 10월 12일자 사회면)</p>

<p>2017서울조정 1683~1686</p>	<p>(각 정정청구) ○○○○○입주자대표회의 對 YTN⁽¹⁶⁸³⁾, 인터넷 YTN⁽¹⁶⁸⁴⁾, 중앙일보⁽¹⁶⁸⁵⁾, 온라인 중앙일보⁽¹⁶⁸⁶⁾</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단독]“교도소 독방만도 못해요”... 화장실서 숙식 해결하는 경비원들』 제하의 보도 (YTN 2017년 8월 24일자 이슈오늘 프로그램, 인터넷 YTN 2017년 8월 24일자 사회면) • 중앙일보 : 『변기 위에서 밥 짓고 잠자는 13억짜리 아파트 경비원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7년 8월 25일자 사회면, 온라인 중앙일보 2017년 8월 24일자 사회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아파트가 경비원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고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게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화장실에서 숙식 해결하는 경비원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YTN 2017년 10월 28일자 뉴스나이트 프로그램, 인터넷 YTN 2017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7년 10월 28일자 2면, 온라인 중앙일보 2017년 10월 24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687	(정정청구) ○○○○고등학교 對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기획] 학생 투신했는데 ... 실태 확인도 안 되는 평생교육시설』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가 교육청의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7서울조정 1688~1691, 1962~1965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조선일보 ^(1688·1689) , 조선닷컴 ^(1690·1691) , 노컷뉴스 ^(1962·1963) , CBS-R ^(1964·1965)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일보 : 『“재판이 곧 정치” 법원 들쭉신 현직 판사의 글』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7년 9월 1일자 A12면, 조선닷컴 2017년 9월 1일자 사회면) 노컷뉴스 : 『주광덕 “김명수 후보 ... 다른 법관들은 공포 느끼고 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2일자 정치면) CBS-R : 『주광덕 “김명수 후보 ... 다른 법관들은 공포 느끼고 있다”』 제하의 보도 (2017년 9월 12일자 시사자키 정광용입니다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판사 재직 시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렸고, 정치편향적인 판사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조정성립 (조선일보, 조선닷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각 취하 (노컷뉴스, CBS-R/사유 : 당사자 간 화해)
이 행 결 과	『“재판이 곧 정치” 법원 들쭉신 현직 판사의 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조선닷컴 2017년 11월 2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692~1694	(각 정정청구) 윤○○ 외 1인 對 SBS-TV ⁽¹⁶⁹²⁾ , SBS아이앤엠 ⁽¹⁶⁹³⁾ , MBC-TV ⁽¹⁶⁹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SBS-TV : 『“험담한다고 ... ” 옆 매장 직원 흥기 살해 뒤 떨어져 중태』 제하의 보도 (2017년 9월 2일자 8시 뉴스 프로그램) SBS아이앤엠 : 『“험담한다고 ... ” 옆 매장 직원 흥기 살해 뒤 떨어져 중태』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일자 사회면) MBC-TV : 『“내 험담했다고?” 소핑몰 흥기 난동 사건』 제하의 보도 (2017년 9월 4일자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의 어머니가 가해자를 험담해 피살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오히려 가해자가 험담”... 피해자 유가족 억울함 호소』 제하의 보도 (SBS-TV 2017년 10월 14일자 SBS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SBS아이앤엠 2017년 10월 14일자 SBS 모닝와이드 다시보기면) • iMBC : 『“내 험담했다고?” 쇼핑몰 흥기 난동 사건』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3일자 생방송 오늘 아침 다시보기면)

2017서울조정 1695	(반론청구) 임○○ 對 SBS아이앤엠
조 정 대 상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학교로 전학을 왔다』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학우 간 쌍방폭행인데도 신청인이 먼저 폭행을 했고 피해학생의 학교로 의도적으로 전학을 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학교로 전학을 왔다」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5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696	(정정청구) (사)○○○○○○○○○○협회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中 “폐지 싹쓸이” 재현? ... 시름 깊은 제지업계』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7일자 중기면)
신청인 주장	폐지의 중국 수출량이 증가하여 국내 폐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고 수급 불안을 야기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中 폐지 “싹쓸이” 재현? ... 시름 깊은 제지업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30일자 중기면)

2017서울조정 1697·1698	(정정·손배청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외 2인 對 스카이데일리
조 정 대 상	『자리걱정 논란 김○○, 현금·부동산 백억대 재력』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5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사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했고, 사장이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이며, 사장 부부의 재산이 108억 원에 육박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개제)
이 행 결 과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3일자 산업면)

2017서울조정 1699	(손배청구) 정○○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오늘은 ‘초록 학교’ 가는 날 나무·벌레가 내 친구』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2일자 함께하는 교육 섹션 1면)
신청인 주장	숲 체험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간주

2017서울조정 1700·1701	(정정·손배청구) ○○○교회 對 KBS-2TV
조 정 대 상	『사이비종교의 덫』 제하의 보도 (2017년 8월 16일자 생방송 아침이 좋다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폭행과 살해 암매장을 자행하는 사이비종교집단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기타)
이 행 결 과	『‘사이비종교의 덫’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KBS-2TV 2017년 10월 27일자 생방송 아침이 좋다 프로그램, KBS미디어 2017년 10월 27일자 시청자 게시판)

2017서울조정 1702·1703	(정정·손배청구) (주)○○일보사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일보와 국정원의 특별한 관계』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3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신문사가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관련 국정원과의 특별한 관계를 바탕으로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704·1705	(정정·손배청구) ○○○○○○복지관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기부 강요·티켓 할당 ... 인천 모 종합사회복지관의 ‘갑질’』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일자 최신기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관이 직원에게 기부를 강요하고 후원금 마련을 위한 행사 티켓을 팔도록 강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인천 모 종합사회복지관의‘갑질’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2일자 최신기사면)
2017서울조정 1706·1707	(정정·손배청구) ○○○○고등학교 외 1인 對 뉴스타파
조 정 대 상	(1) 『교육개혁 1부 : 사교육 몸통은 영재고다』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1일자 목격자들면) (2) 『교육개혁 2부: 누가 영재학교에 진학하나』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5일자 목격자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가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을 유발하는 사교육비의 몸통이고 교육부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입학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1708·1709	(정정·손배청구) 유○○ 對 인터넷 일요서울
조 정 대 상	『[단독] 유○○ ○○항우회 중앙회 총재,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3일자 경기북부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통령 후보등록 기탁금명목으로 지인에게 1억 원의 사기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710	(정정청구) (사) ○○○○○○ 對 비즈트리분
조 정 대 상	『[단독] ○○○○○○ 또 하나의 “거짓말”』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일자 서울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유해물질 검출 논란이 일고 있는 생리대 생산회사 상무가 신청인 단체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기간을 허위로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단독] ○○○○○○ 또 하나의 ‘거짓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30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711	(반론청구) 박○○ 對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악몽 시달린 여학생 그림엔 ‘피범벅’』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같은 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중재전환, 중재결과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2017서울중재1 참조))

2017서울조정 1714	(정정청구) 김○○ 對 SBS-TV
조 정 대 상	『교도소에 넘쳐나는 불법 동영상』 제하의 보도 (2017년 8월 21일자 8시 뉴스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을 포함한 특정 교도소 재소자들이 반입이 금지된 포르노 동영상을 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7서울조정 1715	(정정청구) 이○○ 對 인터넷 이데일리
조 정 대 상	『[종교인과세 논란 2막] ②‘과세해도 좋다 ... 단 세무조사는 결사반대’』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8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국제 무기중개업을 하는 신청인이 8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와 관련해 교회 장로가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결정 내용 중 부제소 조항을 수용할 수 없음)

2017서울조정 1716	(정정청구) ○○○○○○○○○○○○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매관매직’ 수사·소송전 휩싸인 ○○○○○○회』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3일자 시민과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에 매관매직이 성행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6일자 시민과 사회면)

2017서울조정 1717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이데일리
조 정 대 상	『임○○ ○○○ 사장 연임 시도에 전사업계 반발』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0일자 중소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리는 등 중소기업체들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합의간주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임○○ ○○○ 사장 연임시도에 전사업계 반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8일자 기업면)

2017서울조정 1721~1726, 1736·1737	(각 정정·손배청구) 최 ○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1721·1722) , 인터넷 국민일보 ^(1723·1724) , 민중의소리 ^(1725·1726) , 데일리환경 ^(1736·1737)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헤럴드경제 : 『김기춘 “전쟁 임하는 자세로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 지시·관리한 왕실장』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6일자 법원면) 인터넷 국민일보 : 『CJ 싫어한 최순실, “CJ 이미경은 XXX”... 블랙리스트에도 관여』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5일자 시사면) 민중의소리 : 『최순실 한 마디로 시작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 CJ 이미경에 “XX년” 욕설도』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5일자 사회면) 데일리환경 : 『블랙리스트 3인방 첫 정식재판서 드러난 최순실 개입 정황』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5일자 국토교통/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문체부 재직 시 최순실로부터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을 알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인터넷 헤럴드경제, 인터넷 국민일보, 민중의 소리/사유 : 기사수정, 데일리환경/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헤럴드경제 : 『김기춘 “전쟁 임하는 자세로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 지시·관리한 왕실장』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내용 삭제 (2017년 10월 10일자 법원면) 인터넷 국민일보 : 『CJ 싫어한 최순실, “CJ 이미경은 XXX”... 블랙리스트에도 관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내용 삭제 (2017년 10월 10일자 시사면) 민중의소리 : 『최순실 한 마디로 시작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 CJ 이미경에 “XX년” 욕설도』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내용 삭제 (2017년 10월 19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727~1735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사)○○○○○○연맹 對 주간경향 ^(1727~1729) , 인터넷 주간경향 ^(1730~1732) , 인터넷 경향신문 ^(1733~1735)
조 정 대 상	『○○무료급식소, 그 후 1년 ‘의혹’은 아직 그대로』 제하의 기사 (주간경향 2017년 9월 12일자 32~34면, 인터넷 주간경향 2017년 9월 12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향신문 2017년 9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신청인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과 운용이 불투명하고 무료급식 노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수정, 조건부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경향 : 『‘○○○○급식소’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주간경향 2017년 11월 14일자 7면, 인터넷 주간경향 2017년 11월 13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향신문 : 『○○○○급식소, 그 후 1년 … 여전한 ‘의혹’』 제하의 기사 중 (사) ○○○○○연맹 전 이사장 사진 삭제(2017년 11월 11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738~1741	(각 정정·손배청구) 김○○ 외 3인 對 동아일보 ^(1738·1739) , 조선일보 ^(1740·1741)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일보 : 『헌재소장 첫 인준 부결, 文정부 검허하라는民意 경고다』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2일자 35면) 조선일보 : 『헌재소장 인준 부결, 사법부 코드 인사 멈추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2일자 39면)
신청인 주장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직원들로 지목된 신청인들이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하고 주요시설 타격을 모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742~1745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엽다운뉴스 ^(1742·1743) , 네이버 ^(1744·1745)
조 정 대 상	『신임 도로공사 하마평 이○○ … 7억 뇌물 의혹에 노무현 비난까지 과연』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8일자 정치면, 네이버 2017년 9월 1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물망에 오른 신청인이 과거에 7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 취하)

2017서울조정 1746	(반론청구) ○○○○○ ○○○○ 對 SBS-TV
조 정 대 상	『어머니가 남긴 역대 빛, 알고 보니 ...』 제하의 보도 (2017년 9월 13일자 8시 뉴스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단이 신도를 협박하여 빛을 내게 하고 그 돈을 현금으로 갈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1747~1750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1747·1748) , 미디어스 ^(1749·1750)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미디어오늘 : 『고○○ “도청 의혹 진실 드러나면 핵탄두급” 발언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1일자 뉴스면) • 미디어스 : 『KBS 민주당 도청 사건, 고○○은 “진실 드러나면 핵탄두급” 발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1일자 미디어뉴스면)
신청인 주장	KBS 기자의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관련 KBS 내부 인사가 지시한 증거와 발언들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757·1758, 1782·1783	(각 정정·손배청구) 송○○ 對 한겨레 ^(1757·1758) , 인터넷 한겨레 ^(1782·1783)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 : 『지역○○○ 사장은 “본사 아바타”... 부임 막아야』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7년 9월 11일자 9면) • 인터넷 한겨레 : 『퇴진 외치는 직원에 매롱 한 사장의 “낙하산”은요 ...』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겨레 2017년 9월 10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모 지역방송국 사장인 신청인이 노조원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7년 11월 30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겨레 : 『[‘퇴진 외치는 ○○○직원에 매롱한 사장의 ‘낙하산’은요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겨레 2017년 11월 30일자 미디어면)

<p>2017서울조정 1759, 1760</p>	<p>(각 정정청구) 식품의약품안전처 對 TV조선⁽¹⁷⁵⁹⁾, 인터넷 TV조선⁽¹⁷⁶⁰⁾</p>
<p>조 정 대 상</p>	<p>『식약처장, 휴일에 직원 빵심부름 갑질?』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7년 9월 12일자 TV조선 종합뉴스 9 프로그램, 인터넷 TV조선 2017년 9월 12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여직원에게 개인 간식용 빵을 서울에서 구입해 오송으로 가져오게 심부름 시킨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식약처장, 빵심부름 갑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TV조선 2017년 11월 7일자 TV조선 종합뉴스 9 프로그램, 인터넷 TV조선 2017년 11월 7일자 뉴스면)</p>
<p>2017서울조정 1774~1779</p>	<p>(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주)○○○○ 對 매일경제^(1774~1776), 매경닷컴^(1777~1779)</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경제 : 『잘나가던 ○○○○ 스타트업의 눈물』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30일자 A18면) • 매경닷컴 : 『유망 ○○○○ 스타트업의 눈물』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9일자 기업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회사의 간편식 제품이 신생기업 제품의 포장과 내용물을 그대로 베낀 제품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반론보도)</p>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경제 : 『“○○○○ 스타트업의 눈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6일자 20면) • 매경닷컴 : 『“○○○○ 스타트업의 눈물”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5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780·1781	(정정·손배청구) 한○○ 對 한경닷컴	
조 정 대 상	『故김광석 부인 서해순 인터뷰 화제 ...“오빠에 의문 제기”』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6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가수 고 김광석 부인의 언론사 인터뷰가 사망 의혹 논란에 부채질했다는 신청인의 평론을 네티즌 의견으로 둔갑시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한○○ 사회문화평론가 논평의 무단 인용 관련』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일자 연예면)	
2017서울조정 1784, 1785	(각 반론청구) (주)○○ 對 JTBC ⁽¹⁷⁸⁴⁾ , 인터넷 JTBC ⁽¹⁷⁸⁵⁾	
조 정 대 상	『못 믿을 생수업체, 80%가 기준 위반 ... 처벌 강화 목소리』 제하의 기사 (JTBC 2017년 9월 25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인터넷 JTBC 2017년 9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생수업체의 80%가 위생기준을 위반한다고 보도하면서 과거에 기준 위반 전력이 있는 신청인 회사의 모습을 집중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보도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	
2017서울조정 1786~1788	(각 추후청구) 박○○ 외 2인 對 이슈타임 ⁽¹⁷⁸⁶⁾ , 뉴스파인더 ⁽¹⁷⁸⁷⁾ , 세계닷컴 ⁽¹⁷⁸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슈타임 : 『‘볼링 매너’때문에 성인 6명 패싸움 벌어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일자 사회면) 뉴스파인더 : 『“매너가 없다며” 볼링장서 일가족·취객 뒤엉켜 주먹질 싸움』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일자 사건/사고면) 세계닷컴 : 『“매너가 없다며” 볼링장서 주먹다짐 벌인 일가족·취객 입건』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4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볼링장에서 취객들과 몸싸움으로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서울조정 1802	(정정청구) 김○○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1) 『수도권매립지 3-1공구 기반공사, ‘부정입찰’ 파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1일자 사회면) (2) 『수도권매립지공사, ‘3매립장 부실 의혹’ 공개검증 취소』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수도권쓰레기매립사업을 낙찰 받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부적격업체로 부정입찰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계재)
이 행 결 과	『[‘수도권매립지 부정입찰 및 부실자재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1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803~1806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시사저널 ^(1803·1804) , 인터넷 시사저널 ^(1805·1806)
조 정 대 상	『○○○○, 왜 180억 더 비싸게 신사옥 지었나』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7년 9월 26일자 44~45면, 인터넷 시사저널 2017년 9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신사옥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부당하게 제외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807·1808	(정정·손배청구) 이○○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해운조합·한국선급, 선박 출항 전 점검하며 뒷돈 챙겼다”』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8일자 인천면)
신청인 주장	선박 출항 전 안전점검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해운조합 관계자들이 뒷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p>2017서울조정 1809</p>	<p>(정정청구) 송영길 對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p>
<p>조 정 대 상</p>	<p>『“내란죄 이석기 등을 양심수라며 석방하라니 …”』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4일자 교계교단면)</p>
<p>신청인 주장</p>	<p>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내란죄로 복역 중인 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요청하는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정정보도)</p>
<p>이 행 결 과</p>	<p>『송영길 의원, 이석기 전 의원은 양심수가 아니며 이석기의 석방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6일자 교계교단면)</p>
<p>2017서울조정 1810·1811</p>	<p>(정정·손배청구) 정○○ 對 인터넷 경향신문</p>
<p>조 정 대 상</p>	<p>『“비교되네 … 전, 현직 ○○○○ 경찰청장의 카톡 에티켓”』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4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지방 경찰청장 재직 시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부하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전달해 괴롭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p>
<p>2017서울조정 1812, 1813, 2085~2088</p>	<p>(각 정정청구) 강○○외 1인 對 한겨레21⁽¹⁸¹²⁾, 인터넷 한겨레21⁽¹⁸¹³⁾ (각 정정·손배청구) 프레스인^(2085·2086), 네이버^(2087·2088)</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21 : 『[단독] 경찰, ‘GPS 간첩 사건’증인에게 뒷돈』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7년 9월 25일자 14~15면, 인터넷 한겨레21 2017년 9월 18일자 사회면) • 프레스인 : 『경찰은 왜 ‘간첩사건’ 증인에게 뒷돈을 줬나?』 제하의 기사 (프레스인 2017년 11월 14일자 속보면, 네이버 2017년 11월 14일자 속보면)
<p>신청인 주장</p>	<p>현직 경찰인 신청인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매수하고 증거를 날조하기 위해 증인과 돈거래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한겨레21, 인터넷 한겨레21, 프레스인/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네이버/사유 : 보도거제)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21 : 『경찰‘GPS 간첩사건’증인에게 뒷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7년 11월 23일자 이슈추적면, 인터넷 한겨레21 2017년 11월 23일자 사회면) • 프레스인 : 『“경찰은 왜 ‘간첩사건’증인에게 뒷돈을 줬나?”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5일자 사회면, 네이버 2017년 12월 15일자 속보면)

2017서울조정 1814, 1815, 1915, 1916	(각 정정청구) 한국도로공사 對 한국일보 ^(1814, 1915) , 인터넷 한국일보 ^(1815, 1916)
조 정 대 상	(1) 『서울~세종 고속도로, 방음벽 도배』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7년 9월 26일자 A14면, 인터넷 한국일보 2017년 9월 26일자 사회면) (2) 『도로공사 개발한 저소음 포장 ‘이유 있는’ 하자』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7년 10월 11일자 A12면, 인터넷 한국일보 2017년 10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사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설계하는 데 환경부가 인정한 저소음포장 기술 대신 자체개발 기술을 적용한 것은 자사 기술 우선주의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한국도로공사 Q-pave 및 방음벽 설치]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국일보 2017년 11월 1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816	(정정청구) 정○○ 對 민중의소리
조 정 대 상	『국민의당 이○○, ‘한화·김대중 정부 비난 댓글’ 논란에 “보좌진 실수” 변명』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4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 보좌관인 신청인이 세계불꽃축제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렸음에도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817·1818	(정정·손배청구) 김○○ 對 JTBC
조 정 대 상	『단독 발굴, “스타” 퇴출 작전!』 제하의 보도 (2017년 9월 28일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방송국 라디오제작부장으로 근무 당시 특정 방송인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 중단을 종용해 승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국정원 조작 비화』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7년 12월 7일자)

2017서울조정 1819·1820	(정정·반론청구) 서울특별시 對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조 정 대 상	(1) 『[기자수첩] ‘불법 주식 거래 의혹’ 이○○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 출신?』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일자 정치면) (2) 『박원순 서울시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한 ‘이○○ 변호사’에게 무슨 사건 맡겼을까?』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서울시가 헌법재판관 후보에서 자진사퇴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대량으로 맡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결정 내용에 만족할 수 없음)

2017서울조정 1821	(정정청구) (주)○○○○○○○ 對 ECONOMY TODAY(이코노미 투데이)
조 정 대 상	(1)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모임 ‘○○회’의 출자사 ○○○○○○ 불법운영의 온상』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5일자 사회면) (2) 『○○○○○○○의 외국인 불법노동자 적발 ‘행정 명령’ 받아』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21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822	(손배청구) 유○○ 對 tvN
조 정 대 상	『골목대장들 모이다』 제하의 보도 (2017년 10월 2일자 골목대장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연예인의 초등학교 졸업앨범사진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금전 지급)

2017서울조정 1823~1825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서울특별시 對 월간조선
조 정 대 상	『박원순은 정말 ‘원전 하나 줄이기’에 성공했나 … 서울시, “2015년까지 317만 TOE 대체 생산·절감 완료!”… 국가 통계로는 39만 TOE 뿐』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8일자 156~167면)
신청인 주장	서울시의 에너지 절약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성과가 국가통계보다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박원순은 정말 ‘원전 하나 줄이기’에 성공했나』 보도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월간조선 2018년 1월 2일자 264면,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2018년 1월 2일자 정치면)

2017서울조정 1826~1829	(각 정정 · 손해청구) 우○○ 對 채널A ^(1826 · 1827) , 인터넷 채널A ^(1828 · 1829)
조 정 대 상	『관용차 타고 마사지숍 간 소장』 제하의 보도 (채널A 2017년 7월 14일자 뉴스A 프로그램, 인터넷 채널A 2017년 7월 1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공공기관장인 신청인이 사적인 일에 관용차를 사용하고 문제가 되자 운행내역을 조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관용차 타고 마사지숍 간 소장]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인터넷 채널A 2017년 11월 3일자 정치면)

2017서울조정 1830~1877, 2158~2175	(각 정정 · 손해청구) 김○○ 對 MBN ^(1830 · 1831) , 인터넷 MBN ^(1832 · 1833) , 채널A ^(1838 · 1839) , 인터넷 채널A ^(1840 · 1841) , 연합뉴스TV ^(1846 · 1847) , 인터넷 연합뉴스TV ^(1848 · 1849) , 연합뉴스 ^(1854 · 1855) , SBS아이앤엠 ^(1860 · 1861) , 세계닷컴 ^(1866 · 1867) , 온라인 중앙일보 ^(1872 · 1873) , 노컷뉴스 ^(2158 · 2159) , e머니투데이 ^(2160 · 2161) , 인사이트 ^(2162 · 2163) , 줌 ^(2164 · 2165) , iMBC ^(2166 · 2167) , MBC-TV ^(2172 · 2173) , VODA ^(2174 · 2175) , 네이버 ^(1834 · 1835, 1842 · 1843, 1850 · 1851, 1856 · 1857, 1862 · 1863, 1868 · 1869, 1874 · 1875) , 다음 ^(1836 · 1837, 1844 · 1845, 1852 · 1853, 1858 · 1859, 1864 · 1865, 1870 · 1871, 1876 · 1877)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아내 녹음한 남편 ‘선처’ 왜?』 제하의 기사 (MBN 2017년 8월 9일자 MBN 뉴스파이터 프로그램, 인터넷 MBN 2017년 8월 9일자 다시보기면, 네이버, 다음 2017년 8월 9일자 사회면) • 채널A : 『‘외도 아내 통화’ 녹취한 남편은 유죄』 제하의 기사 (채널A 2017년 8월 9일자 종합뉴스 프로그램, 인터넷 채널A, 네이버, 다음 2017년 8월 9일자 사회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TV :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제하의 기사 (연합뉴스TV 2017년 8월 9일자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인터넷 연합뉴스TV, 네이버, 다음 2017년 8월 9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제하의 기사 (연합뉴스 2017년 8월 8일자 최신기사면, 네이버, 다음 2017년 8월 8일자 사회면) • SBS아이앤엠 : 『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제하의 기사 (SBS아이앤엠 2017년 8월 8일자 사회면, 네이버, 다음 2017년 8월 8일자 사회면) • 세계닷컴 : 『‘15년 외도’ 아내 몰래 증거 녹음한 60대 남편, 法·배심원 ‘집유’로 선처』 제하의 기사 (세계닷컴 2017년 8월 8일자 사회면, 네이버, 다음 2017년 2017년 8월 8일자 사회면) 외 13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다는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MBN, 인터넷 MBN, 채널A, 인터넷 채널A, 연합뉴스TV, 인터넷 연합뉴스TV, 연합뉴스, SBS아이앤엠, 세계닷컴, 온라인 중앙일보, MBC-TV/사유 : 보도게재, 노컷뉴스, e머니투데이, 인사이트, 줌, iMBC, VODA/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p>이행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아내 녹음한 남편 ‘선처’...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MBN 2017년 11월 6일자 MBN 뉴스파이터 프로그램, 인터넷 MBN 2017년 11월 6일자 다시보기면, 네이버, 다음 2017년 11월 8일자 사회면) • 채널A : 『‘외도 아내 통화’ 녹취한 남편은 유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채널A 2017년 11월 16일자 종합뉴스 프로그램, 인터넷 채널A, 네이버, 다음 2017년 11월 16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TV : 『‘15년 외도 아내 통화 몰래 녹음 남편 선처’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연합뉴스TV 2017년 11월 13일자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인터넷 연합뉴스TV, 네이버, 다음 2017년 11월 13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연합뉴스 2017년 11월 8일자 최신기사면, 네이버, 다음 2017년 11월 8일자 사회면) • SBS아이앤엠 : 『<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SBS아이앤엠 2017년 11월 10일자 사회면, 네이버, 다음 2017년 11월 10일자 사회면) 외 7건

2017서울조정 1878	(정정청구) ○○○○(주) 對 KBS-2TV
조 정 대 상	『검찰과 권력 2부작 - 1편. ○○○○ 6년 잔혹사의 비밀』 제하의 보도 (2017년 7월 12일자 추적 60분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노조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노사분규가 시작됐고 야간근무로 직원이 사망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검찰과 권력 2부작 - 1편. ○○○○ 6년 잔혹사의 비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8년 3월 28일자 추적 60분 프로그램)
2017서울조정 1879~1882	(각 정정·손배청구) (주)○○○○신문 對 SP투데이 ^(1879·1880) , 인터넷 SP투데이 ^(1881·1882)
조 정 대 상	『법정 교육장에 ○○○○신문 광고책자 무더기 살포』 제하의 기사 (SP투데이 2017년 8월 14일자 10면, 인터넷 SP투데이 2017년 8월 1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신문사가 옥외광고사업자 교육장에 자사 광고책자를 배포하여 광고영업활동을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883~1886	(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SP투데이 ^(1883·1884) , 인터넷 SP투데이 ^(1885·1886)
조 정 대 상	『법정 교육장에 소상공인신문 광고책자 무더기 살포』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4일자 10면, 인터넷 SP투데이 2017년 8월 1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옥외광고협회 직원을 사칭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887	(반론청구) ○○대학교 對 CBS-R
조 정 대 상	『○○대 사태』 제하의 보도 (2017년 9월 13일자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이 특정교수의 책임용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프로그램 클로징 전 신청인 반론 보도 (2017년 11월 3일자)

<p>2017서울조정 1888~1899</p>	<p>(각 정정·손배청구) 백○○ 對 동아일보^(1888·1889), 동아닷컴^(1890·1891), 인터넷 MBN^(1892·1893), 전자신문인터넷^(1894·1895), 온라인 중앙일보^(1896·1897), 쿠키뉴스^(1898·1899)</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 『“측량도 3500장 뽑아 와라” 신의 직장 올린 갑질 공무원』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7년 8월 14일자 사회면, 동아닷컴 2017년 8월 14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국토부 ‘갑질’ 의혹 공무원 “본부를 떠나게 할 것” 막말 ... 조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4일자 사회면) • 전자신문인터넷 : 『국토부 ‘갑질’ 의혹 ...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본부 떠나는 인사조치 할 것” 협박』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4일자 사회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측량도 3500장 프린트해와” 국토부공무원 갑질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4일자 사회면) • 쿠키뉴스 : 『국토부 공무원 부당 업무지시 ‘갑질’ 의혹 ... 조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4일자 사회면)
<p>신청인 주장</p>	<p>국토부 공무원인 신청인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거나 인사조치하겠다는 등 협박을 해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동아일보, 동아닷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인터넷 MBN, 전자신문인터넷, 온라인 중앙일보, 쿠키뉴스/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30일자 투데이면) • 동아닷컴 : 『[알려드립니다] “측량도 3500장 뽑아 와라” 신의 직장 올린 갑질 공무원』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30일자 사회면)
<p>2017서울조정 1900~1903</p>	<p>(각 정정·손배청구) ○○중학교 對 일요신문^(1902·1903), 일요신문^(1900·1901)</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요신문 : 『“학폭위도 못 믿겠다”... ○○구 중학교 “학폭 은폐” 폴스토리』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1일자 사회면) • 일요신문 : 『“왕따 당할 짓 했겠지”... 학폭위도 못 믿겠다』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30일자 사회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학교가 교내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학폭위도 못 믿겠다”... ○○구 중학교 “학폭 은폐” 폴스토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7년 12월 4일자 정치면, 일요신문 2017년 12월 1일자 사회면)</p>

2017서울조정 1904	(반론청구) 게임물관리위원회 對 데일리게임
조 정 대 상	『[기자석] 게임위 고무줄 심의에 멧드는 게임사들』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일자 칼럼면)
신청인 주장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명확하고 공정한 게임물 등급심사기준이 없으며 등급 재분류 처분 이후 가이드라인도 부재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게임위 고무줄 심의’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4일자 핫이슈면)
2017서울조정 1905~1914	(각 정정·손배청구) 최○○ 對 세계닷컴 ^(1905·1906) , 연합뉴스 ^(1907·1908) , 뉴스1코리아 ^(1909·1910) , 뉴시스 ^(1911·1912) , 국제뉴스 ^(1913·1914)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닷컴 : 『“회비 안내면 영업 못하게 신고” 협박해 돈받은 ○○○○○회 지부 직원들』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9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회비 안내면 신고합니다” ○○○○○회 직원이 업주 협박』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9일자 최신기사면) • 뉴스1코리아 : 『“가입 왜 안해!”… 상습 민원 제기한 ○○○회 간부』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9일자 대구경북면) • 뉴시스 : 『“회비안내면 신고”… 수성경찰, ○○○○○회 대구지부 직원 4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9일자 대구경북면) • 국제뉴스 : 『음식점 상대 가입비 갈취한 ○○○○○회 직원 검거』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회 직원인 신청인이 개업 음식점을 다니며 협회 가입을 강요하고 가입비를 뜯어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세계닷컴/사유 : 자진취하, 연합뉴스, 뉴스1코리아, 뉴시스, 국제뉴스/사유 : 관할변경)
2017서울조정 1917~1920	(각 정정·반론청구) 거제시 외 1인 對 시사저널 ^(1917·1918) , 인터넷 시사저널 ^(1919·1920)
조 정 대 상	『자신도, 동생도, 측근도 챙긴 거제시장』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7년 10월 3일자 18~19면, 인터넷 시사저널 2017년 9월 2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거제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동생 및 측근들이 보상금 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1921, 1922	(각 반론청구) (재)○○○○○○○○연구원 對 문화일보 ⁽¹⁹²¹⁾ , 인터넷 문화일보 ⁽¹⁹²²⁾
조 정 대 상	『기관평가 업체에 ‘연구용역 몰아주기’』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7년 9월 25일자 16면, 인터넷 문화일보 2017년 9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연구원 소속 직원에 대한 경기도의 징계요구 사유가 업무소홀인데도 경영평가 업체에 편법으로 용역수행을 맡겨서라고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7서울조정 1923, 1924	(각 정정청구) ○○○○○○○○연맹 對 세계일보 ⁽¹⁹²³⁾ , 세계닷컴 ⁽¹⁹²⁴⁾
조 정 대 상	(1) 『[단독]‘등급 조작’ 장애인 사이클 국제 망신』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7년 8월 31일자 10면, 세계닷컴 2017년 8월 30일자 사회면) (2) 『[줍업] 힘 모아도 어려운데 ... 장애인 사이클 또 내홍』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7년 9월 27일자 사회면, 세계닷컴 2017년 9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연맹이 장애인 선수 등급을 속이다 적발돼 국제적 망신을 당했고, 회장 등 연맹관계자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내용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1) 『[단독] 최소 장애 등급 미달, 월드컵 출전도 못한 한국 장애인 사이클』 제하의 기사로 제목 및 내용 수정 (세계닷컴 2017년 12월 8일자 사회면) (2) 『[줍업] 힘 모아도 어려운데 ... 장애인 사이클 또 내홍』 제하의 기사 중 내용 수정 (세계닷컴 2017년 12월 8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925~1927	(각 정정청구) 이○○ 對 노컷뉴스 ⁽¹⁹²⁵⁾ , 뉴시스 ⁽¹⁹²⁶⁾ , 연합뉴스 ⁽¹⁹²⁷⁾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광주시교육청, 비정규직 343명 정규직 전환』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7일자 광주면) • 뉴시스 : 『광주시교육청 기간제근로자 343명 무기직 전환』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7일자 광주전남면) • 연합뉴스 : 『광주시교육청, 공채 기간제 근로자 343명 정규직 전환』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7일자 최신기사면)
신청인 주장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한 인원이 343명이라고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7서울조정 1928·1929	(정정·손배청구) (사)○○○○○○○○○○○○○○○○협회 對 NSP통신
조 정 대 상	『[기고] 공○○ ○○○○○ 회장, 김영문 신임 관세청장에게 거는 기대』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7일자 광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고, 협회 회원사 수입업자들에게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7서울조정 1930	(반론청구) 흥○○ 對 월간중앙
조 정 대 상	『취업 갑질로 드러난 ‘적피아(적십자사+마피아)의 실체』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3일자 142~145면)
신청인 주장	대한적십자사 간부 출신인 신청인이 대한적십자사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회사에 자녀를 불법으로 취업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7서울조정 1931~1934	(각 정정·손배청구) 신○○ 對 TV조선 ^(1931·1932) , 인터넷 TV조선 ^(1933·1934)
조 정 대 상	『‘물폭탄’ 와중에 옛 지역구 찾아 “대학 유치” 약속한 靑 농어업비서관』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7년 7월 19일자 종합뉴스 9 프로그램, 인터넷 TV조선 2017년 7월 19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인 신청인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를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신○○ 비서관, 선거운동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TV조선 2017년 11월 28일자 정치면)
2017서울조정 1935	(손배청구) (주)○○○○○ 외 1인 對 인터넷 비즈한국
조 정 대 상	(1) 『[단독]“아XX 찢어 ... ” ○○○○○ 대표 막말, 납품업체에 ‘갑질’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2일자 비즈면) (2) 『○○○○○ 포장 작품 무형문화재 작가 “저작권 위반 소송 준비 중”』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9일자 비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전 납품업체에게 갑질을 하였고 특허기술을 빼돌렸으며, 상품 디자인으로 무형문화재 작가의 작품을 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p>2017서울조정 1936</p>	<p>(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베이비뉴스</p>
<p>조 정 대 상</p>	<p>『[단독] 유명 브랜드 유모차, 부품 없어 AS 못해준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3일자 사회정책면)</p>
<p>신청인 주장</p>	<p>유모차를 판매하는 신청인 회사가 제품이 단종돼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AS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기사수정)</p>
<p>이 행 결 과</p>	<p>『[단독] 유명 브랜드 유모차, 부품 없어 AS 못해준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익명 처리 (2017년 10월 25일자 사회정책면)</p>
<p>2017서울조정 1937</p>	<p>(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파이낸셜뉴스</p>
<p>조 정 대 상</p>	<p>『[포토] 빅스 라비, ‘앞머리 내려도 살아있는 포스’』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7일자 연예면)</p>
<p>신청인 주장</p>	<p>아이돌 사진을 게재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p>
<p>2017서울조정 1938~1942</p>	<p>(각 정정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SBS-TV⁽¹⁹³⁸⁾, SBS아이엔엠⁽¹⁹³⁹⁾, 국민일보⁽¹⁹⁴⁰⁾, 인터넷 국민일보⁽¹⁹⁴¹⁾, 오마이뉴스⁽¹⁹⁴²⁾</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노무현 불구속 수사하고 망신 줘라”』 제하의 보도 (2017년 10월 23일자 SBS 8뉴스 프로그램) • SBS아이엔엠 : 『“노무현 불구속 수사하고 망신 줘라” 여론 조작 요구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3일자 뉴스면) • 국민일보 : 『검찰에 수사 지침 하달 ... ‘보도 통제’ 언론 플레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4일자 5면) • 인터넷 국민일보 : 『“언론에 흘러 망신 줘라” 논두렁 시계사건 배후는 MB 국정원』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3일자 시사면) • 오마이뉴스 : 『MB국정원 검찰에 ““노무현 시계’ 언론에 흘러 망신 줘라” 지침 확인』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3일자 정치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방송사 사장이 보도국장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국정원 수사 개입설에 대한 보도를 무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아이엔엠 : 『※ 한국방송공사(KBS)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7일자 뉴스면) • 국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9일자 5면) • 인터넷 국민일보 : 『한국방송공사(KBS)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8일자 시사면) • 오마이뉴스 : 『[한국방송공사(KBS)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8일자 정치면)

2017서울조정 1943·1944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일요신문
조 정 대 상	『[단독공개] 남의 가방 훔친 의사, 방조한 변호사 친구 생생 동영상 ... 경찰은‘대총 수사’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변호사인 신청인이 강남의 한 술집에서 의사인 친구가 가방을 훔치는 것을 방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의사, 변호사 절도사건’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4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945·1946	(정정·손배청구) 박○○ 對 일요신문
조 정 대 상	『[단독공개] 남의 가방 훔친 의사, 방조한 변호사 친구 생생 동영상 ... 경찰은‘대총 수사’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의사인 신청인이 강남의 한 술집에서 가방을 계획적으로 훔친 것처럼 보도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의사, 변호사 절도사건’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4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947	(정정청구) ○○○○○○○○○○○○○○○○○연합회 對 인터넷 이데일리
조 정 대 상	『○○○○○, 노조방해·산재은폐·성추행무마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3일자 정당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했으며, 성폭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노조방해·산재은폐·성추행무마 의혹』 제하의 기사로 제목 및 내용 수정 (2017년 11월 2일자 정당면)
2017서울조정 1948·1949	(정정·반론청구) 김○○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단독] 통일교의 수상한‘통일론’...“평화 중심은 참부모”우상화 준비』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4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통일교가 준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대회가 실상은 교주 부부를 우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p>2017서울조정 1950, 1951</p>	<p>(각 손배청구) 김○○ 對 하우징헤럴드⁽¹⁹⁵⁰⁾, 인터넷 하우징헤럴드⁽¹⁹⁵¹⁾</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우징헤럴드 : 『H건설사의 안하무인‘갑질 횡포’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7일자 1면 및 2면) • 인터넷 하우징헤럴드 : 『강남아파트 재건축, H건설사의 안하무인 ‘갑질 횡포’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8일자 이슈면)
<p>신청인 주장</p>	<p>건설사 홍보업체 대표인 신청인이 재건축 수주 질서를 교란시키는 부적절한 홍보활동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p>
<p>2017서울조정 1952</p>	<p>(손배청구) 윤○○ 對 뉴스1코리아</p>
<p>조 정 대 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려동물 안전하게 데리고 다녀요』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3일자 사회면) (2) 『반려동물 안전관리 제도 강화된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3일자 사회면) (3) 『반려견과 함께할 땐 목줄과 입마개를』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3일자 사회면) (4) 『‘반려견 목줄 꼭 하세요’』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3일자 사회면) (5) 『반려견 목줄 꼭~』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3일자 사회면)
<p>신청인 주장</p>	<p>맹견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는 기사에 반려견과 산책 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p>
<p>2017서울조정 1953, 1954</p>	<p>(각 손배청구) 홍○○ 對 TV조선⁽¹⁹⁵³⁾, 인터넷 TV조선⁽¹⁹⁵⁴⁾</p>
<p>조 정 대 상</p>	<p>『충격! 유해 환경호르몬 검출』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7년 10월 18일자 탐사보도 세븐 프로그램, 인터넷 TV조선 2017년 10월 18일자 다시보도면)</p>
<p>신청인 주장</p>	<p>생리대 환경호르몬 문제를 보도하면서 해당 물품을 판매 중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 없이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p>

2017서울조정 1955, 1956	(각 정정청구) ○○○○○○○○○○○○시간선택제본부 對 KBS-R ⁽¹⁹⁵⁵⁾ , KBS 미디어 ⁽¹⁹⁵⁶⁾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R : 『신분과 임금체계를 별개로 정규직 전환 ... 소요 재정 언급 없어』 제하의 보도 (2017년 10월 26일자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프로그램) • KBS미디어 : 『[인터뷰] 김○○ 교수(○○대 ○○학과)“신분과 임금체계를 별개로 정규직 전환 ... 소요 재정 언급 없어”②』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6일자 단신뉴스면)
신청인 주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필기시험 없이 채용하는 비정규직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정규직 전환, 커지는 勞勞갈등 혼란』 제하의 보도 (KBS-R 2017년 11월 17일자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프로그램)
2017서울조정 1957~1960	(정정·손배청구) 광○○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1957·1958) (각 정정청구) 네이버 ⁽¹⁹⁵⁹⁾ , 다음 ⁽¹⁹⁶⁰⁾
조 정 대 상	『채동욱 혼외아들 개인정보 유출, 검찰이 눈감아 줬다』 제하의 기사 (인터넷 미디어오늘 2017년 10월 27일자 레드면, 네이버 2017년 10월 27일자 속보면, 다음 2017년 10월 27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조선일보에 유출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채동욱 혼외아들 개인정보 유출, 검찰이 눈감아 줬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내용 수정 (인터넷 미디어오늘 2017년 11월 23일자 레드면, 네이버 2017년 11월 23일자 속보면, 다음 2017년 11월 23일자 정치면)
2017서울조정 1961	(정정청구) 이○○ 對 MBN
조 정 대 상	『마지막 목수일 나서다 ‘참변’... 노인 친 20대 뺑소니범 검거』 제하의 보도 (2017년 6월 2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보정명령 불이행)

<p>2017서울조정 1966~1973</p>	<p>(각 추후·손배청구) 최○○ 對 채널A^(1966·1967), 뉴시스^(1968·1969), 뉴스1코리아^(1970·1971), 시사위크^(1972·1973)</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A : (1) 『역무원이 치마 속 ‘찰칵’』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8일자 뉴스 TOP 10 프로그램) (2) 『지하철 역무원이 치마 속 ‘찰칵’』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9일자 뉴스 TOP 10 프로그램) • 뉴시스 : 『여성 치마 속 ‘찰칵’... 지하철 역무원 檢 송치』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8일자 사회일반면) • 뉴스1코리아 : 『警, 휴대전화 분실 수사하기 위해 CCTV보다 적발』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8일자 사건사고면) • 시사위크 : 『길 묻는 여성 치마속 ‘몰카’ 찍은 지하철 역무원 그냥 넘어갈 뻔』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8일자 사회면)
<p>신청인 주장</p>	<p>지하철 역무원인 신청인이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채널A/내용 : 추후보도, 손해배상 1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뉴시스, 뉴스1코리아, 시사위크/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지하철 역무원 여대생에게 몰카 혐의’ 무죄로 밝혀져』 제하의 보도 (채널A 2017년 11월 22일자 뉴스A 프로그램 , 인터넷 채널A 2017년 11월 22일자 사회면)</p>
<p>2017서울조정 1974·1975</p>	<p>(정정·손배청구) 반○○ 對 디스패치뉴스</p>
<p>조 정 대 상</p>	<p>(1) 『[단독]“디렉션 : 미친놈처럼”... 조○○ 사건, 메이킹 영상 입수』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5일자 초기화면)</p> <p>(2) 『[D-eye] 조○○ 사건, 부정하는 것과 외면하는 것들』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일자 초기화면)</p>
<p>신청인 주장</p>	<p>성추행으로 상대배우를 고소한 신청인이 추행 부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불성립결정</p>
<p>2017서울조정 1976</p>	<p>(정정청구) ○○○○○○○(○○○○) 對 인터넷 채널A</p>
<p>조 정 대 상</p>	<p>『[더깊은뉴스]“실제론 5만 명 ... 에이즈 환자, 하루 10명씩 증가”』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30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국내 AIDS 환자가 5만 명에 달하고 감염자가 무분별한 성매매로 사회를 망가뜨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p>

2017서울조정 1977~1985, 2081~2082	(각 정정·손배청구) 정○○ 對 시사저널 ^(1977·1978) , 인터넷 시사저널 ^(1979·1980, 2080·2081) , 인터넷 헤럴드경제 ^(1981·1982) , 연합뉴스 ^(1983·1984) (각 정정청구) 對 인터넷 채널A ⁽¹⁹⁸⁵⁾ , 다음 ⁽²⁰⁸²⁾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저널 : (1) 『단독, 원로 서예가 정○○, 후배들 작품 표절 의혹』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7년 6월 14일자 24 및 25면, 인터넷 시사저널, 다음 2017년 6월 14일자 사회면) (2) 『정○○ 서예 작가 표절 의혹 파문』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7년 6월 27일자 56면, 인터넷 시사저널, 다음 6월 27일자 사회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선배지위 이용 후배작품 베껴”… 서예가 정○○ 표절 논란 가열』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6일자 미술면) • 연합뉴스 : (1) 『서예가 정○○ 표절 논란 … 작가, 공개토론서 “다른 작품” 부인』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1일자 최신기사면) (2) 『서예가 정○○ 표절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1일자 포토면) • 인터넷 채널A : 『승례문 서예가 표절 논란 … 정○○ 전면 부인』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1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서예가인 신청인이 후배 작가들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각하 (시사저널, 인터넷 시사저널(1979·1980)/사유 : 신청기간 초과) • 각 조정성립 (인터넷 헤럴드경제, 인터넷 채널A/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연합뉴스/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기타) • 각 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시사저널(2080·2081), 다음)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선배지위 이용 후배작품 베껴”… 서예가 정○○ 표절 논란 가열』 제하의 기사 중 부제목 등 부분 삭제 (2017년 11월 24일자 미술면) • 연합뉴스 : (1) 『서예가 정○○ 표절 논란 … 작가, 공개토론서 “다른 작품” 부인』 제하의 기사 중 이미지 등 일부 수정 (2017년 11월 24일자 최신기사면) (2) 『서예가 정○○ 표절 논란』 제하의 기사 삭제 (2017년 11월 24일자 포토면) • 인터넷 채널A : 『승례문 서예가 표절 논란 … 정○○ 전면 부인』 제하의 기사 중 일부 표현 수정 (2017년 11월 20일자 문화면)
2017서울조정 1986~1988	(정정·반론·손배청구) 중앙경찰학교 외 1인 對 월간중앙 뉴스서비스
조정대상	『[심층취재] 경찰청장 vs 중앙경찰학교장 갈등 전말』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7일자 특종심층취재면)
신청인 주장	중앙경찰학교장이 수 천만 원을 들여 관용차를 불법으로 개조했고, 광주청장 시절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심층취재] 강○○ 치안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8일자 특종취재면)

2017서울조정 1989·1990	(정정·손배청구) 중앙경찰학교 외 1인 對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조 정 대 상	『강○○ 치안감, 부속실 의경 상대로 ‘갑질’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중앙경찰학교장이 부속실 의경에게 집안청소를 시키고, 부인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강○○ 치안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3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991·1992	(반론·손배청구) 중앙경찰학교 외 1인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단독] 현직 경찰 중간간부, “경찰학교장이 갑질” 주장 ... 수사 요구』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8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중앙경찰학교장이 세미나에 참석한 간부에게 막말을 한 뒤 무마하려 회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강○○ 중앙경찰학교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9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1993·1994	(정정·반론청구) ○○대학교 對 뉴스타파
조 정 대 상	『사학적폐추적③ ○○대, 5억 원어치 생일케이크의 비밀』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3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이 총장 부친의 장례비용으로 교비를 사용하는 등 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1995, 1996	(각 정정청구) 국방부 對 아시아경제 ⁽¹⁹⁹⁵⁾ , 아시아경제닷컴 ⁽¹⁹⁹⁶⁾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경제 : (1) 『여군 병사 43년 만에 부활』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일자 1면) (2) 『男軍과 동일하게 21개월 복무 ... 월급은 특별수당 포함 3배』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일자 2면) (3) 『한국여군 시초는 교련교사, 1994년 32명 양성 ... 여군병사는 1953년 첫 모집』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일자 2면) • 아시아경제닷컴 : (1) 『[단독] 여군병사모집제도 43년 만에 부활』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일자 정치면) (2) 『[양낙규의 Defence Club] 여군병사 43년만에 모집 ... 복무기간 · 월급은』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일자 정치면) (3) 『43년 전 우리군도 여군병사 있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방부가 여군병사 모집제도를 부활시킨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여군 병사 43년 만에 부활”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 2017년 12월 1일자 종합면, 아시아경제닷컴 2017년 12월 1일자 정치면)
2017서울조정 1997	(정정청구) ○○○○○○○○○○ 추진위원회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명의 무단 도용해 홍보, 정체불명 세계평화 행사‘주의보’』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7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정체불명의 사이버종교행사인데다 유력인사가 참여한다고 속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명의 무단 도용해 홍보, 정체불명 세계평화 행사 ‘주의보’』 제하의 기사 중 부제목 삭제 (2017년 11월 28일자 지역면)
2017서울조정 1998	(정정청구) ○○○○○○(주)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p>(1) 『[단독] ○○○○○○ J사장, 인사절차 무시 채용 · 갑질 인사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1일자 사회일반면)</p> <p>(2) 『[단독] ○○ J사장, 감사 · 감사실 직원에 갑질 ... 감사업무 마비』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5일자 사회일반면)</p>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인사제도를 무시한 특혜채용을 일삼고 사장독단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p>2017서울조정 1999</p>	<p>(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여성신문</p>
<p>조 정 대 상</p>	<p>『주식투자정보서비스‘○○○○○○○○○’ 환급 거부·지연 ... 피해 주의』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일자 경제면)</p>
<p>신청인 주장</p>	<p>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계약해지 회원들에게 환급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p>
<p>2017서울조정 2000~2003</p>	<p>(각 정정·반론청구) (사)○○○○○○○○엑스포 對 데일리환경^(2000·2001), 시사ON^(2002·2003)</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일리환경 : 『국제○○○○○○엑스포 조직위, 대행사 잔금 아직도 미지급 ... 현 상황에서 5회 운운?』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1일자 제주권면) • 시사ON : 『‘일하고 돈 못받은 ’○○○엑스포 대행사, 조직위 상대 법적소송 예고』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0일자 산업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단체가 엑스포 행사를 진행한 대행사에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데일리환경/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시사ON/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일리환경 : 『‘국제○○○○○○엑스포 조직위, 대행사 잔금 아직도 미지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4일자 전국뉴스면) • 시사ON : 『‘국제○○○○○○엑스포 조직위, 대행사 잔금 아직도 미지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4일자 산업면)
<p>2017서울조정 2004, 2005</p>	<p>(각 정정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한겨레⁽²⁰⁰⁴⁾, 인터넷 한겨레⁽²⁰⁰⁵⁾</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 : 『‘민주당 도청 의혹’ 당시 KBS 정치부장 외교부 산하 민간위원으로 위촉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5일자 8면) • 인터넷 한겨레 : 『KBS‘도청 의혹’ 핵심 간부, 전직 외교관 자녀 ‘인턴 특혜’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4일자 사회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방송사 간부가 전직 외교부 간부의 딸을 아무런 절차 없이 인턴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p>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7일자 문화면) • 인터넷 한겨레 : 『[반론보도문] KBS ‘도청 의혹’ 핵심 간부, 전직 외교관 자녀‘인턴 특혜’논란 관련』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6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2006~2008	(정정·반론·손배청구) ○○교회 외 1인 對 인터넷 기독교헤럴드
조 정 대 상	(1) 『[단독·속보] ○○교회, 증거문서 법원 제출 거부』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6일자 목회면) (2) 『○○○○교회 담임목사, 경찰서 조사 받아』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6일자 목회면) (3) 『○○○○교회 내분 원인과 수습방향 제시』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8일자 목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가 교인들의 동의 없이 건물을 불법 매각했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2009·2010	(정정·반론청구) 박○○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단독] 사냥개와 20분 혈투 끝 중상 ... 견주는 '나몰라라'』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견주인 신청인이 개에게 물린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사냥개와 20분 혈투 끝 중상 ... 견주는 ‘나 몰라라’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9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2011, 2012	(각 정정청구) 안○○ 對 한겨레⁽²⁰¹¹⁾, 인터넷 한겨레⁽²⁰¹²⁾
조 정 대 상	• 한겨레 : 『국정화 찬반 따라 ◎, ○, 빈칸 분류해 지원기준 삼아』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31일자 8면) • 인터넷 한겨레 : 『[단독] ‘국정교과서 반대 김 교수’는 왜 연구비 지원 배제됐나』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31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교수인 신청인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적극 협력한 연구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보도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7년 12월 14일자 시민과 사회면, 인터넷 한겨레 2017년 12월 14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2013~2016	(각 정정·손배청구) 최○○ 對 한겨레21 ^(2013·2014) , 인터넷 한겨레21 ^(2015·2016)
조 정 대 상	『벼룩의 간 빼먹는 ○○○』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7년 8월 7일자 34~35면, 인터넷 한겨레21 2017년 7월 31일자 특집면)
신청인 주장	방송국 외주제작 편성책임자인 신청인이 고인이 된 외주제작사 PD에게 편성을 취소하겠다고 압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GN QHEH)
이 행 결 과	『「벼룩의 간 빼먹는 ○○○」보도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7년 12월 11일자32면, 인터넷 한겨레21 2017년 12월 13일자 32면)
2017서울조정 2017	(정정청구) 박대출 對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민보동] 대정부질문 출석 이낙연 총리 ‘돌직구는 이렇게’』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의 답변에 신청인이 말문이 막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개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박대출 의원 대정부질문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일자 정치면)
2017서울조정 2018·2019	(정정·손배청구) 자유한국당 對 인터넷 YTN
조 정 대 상	『[팔팔영상] 한국당 “우린 적폐였어요, 따라 하지 마세요!”』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6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적폐세력이라고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2020	(정정청구) 박○○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독서실, 전국단위 공사체계를 꾸린 체계적인 시공시스템‘주목’』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7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특정 독서실의 시설 및 집기들이 업계최고수준이고 가맹점주와의 신뢰가 두텁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7서울조정 2021·2022	(정정·손배청구) 정○○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친아들과 인연 끊겠다” 기막힌 母子 무슨 사연?』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들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2023~2032, 2113~2119	(각 정정청구) 황○○ 對 메디파나뉴스 ^(2023, 2024) , 인터넷 약사공론 ⁽²⁰²⁵⁾ , 인터넷 스페셜경제 ⁽²⁰²⁶⁾ , 데일리팜 ⁽²⁰²⁷⁾ , 메디컬투데이 ⁽²⁰²⁸⁾ , 인터넷 내일신문 ⁽²⁰²⁹⁾ , 쿠키뉴스 ⁽²⁰³⁰⁾ , 로이슈 ⁽²⁰³¹⁾ , 약업닷컴 ⁽²⁰³²⁾ , 동양방송 ⁽²¹¹³⁾ , 인터넷 식약일보 ⁽²¹¹⁴⁾ , 헬스포커스뉴스 ⁽²¹¹⁵⁾ , 데일리시사닷컴 ⁽²¹¹⁶⁾ , 왓치데일리 ⁽²¹¹⁷⁾ , Korea Justice Times(KJT뉴스) ⁽²¹¹⁸⁾ , 너스케이 ⁽²¹¹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디파나뉴스 : (1) 『국립중앙의료원 인사비리 심각..복지부 감사 누락』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4일자 전체기사면) (2) 『중재원 ‘해체’ 위기 … 거짓답변 논란 NMC 안○○ 원장』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4일자 전체기사면) • 인터넷약사공론 : 『“안○○ 원장, 인사전횡·비리 심각 … 제대로된 감사 필요”』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5일자 뉴스면) • 인터넷 스페셜경제 : 『국립의료원 안○○ 원장, 차 전 대통령 ‘길라임 간호사’ 특별채용?』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6일자 정치면) • 데일리팜 : 『NMC 인사특혜? … 원장, 동생-운전사·전 비서관-실장』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4일자 정책과 법률면) • 인터넷 내일신문 : 『[국감 이사람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 보건복지산하기관의 적폐, ‘핀셋’ 검증』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6일자 정치면) • 쿠키뉴스 : 『국립중앙의료원 ‘길라임 간호사’ 안○○ 원장이 특별채용?』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4일자 뉴스면) • 로이슈 : 『‘길라임 간호사’ 채용한 국립중앙의료원 안○○ 원장 논란 증폭』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4일자 정치면) 외 8개 매체
신청인 주장	국립의료원 의사인 신청인이 책임용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원장 남편과의 개인적 인연 때문에 책임용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p>각 취하 (메디파나뉴스, 인터넷 약사공론, 인터넷 스페셜경제, 데일리팜, 인터넷 내일신문, 쿠키뉴스, 로이슈, 약업닷컴, 동양방송, 인터넷 식약일보, 헬스포커스 뉴스, 데일리시사닷컴, 왓치데일리, Korea Justice Times(KJT뉴스)/사유 : 기사수정, 메디컬투데이, 너스케어/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p>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디파나뉴스 : 『국립중앙의료원 인사비리 심각 ... 복지부 감사 누락』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삭제 (2017년 11월 23일자 전체기사면) (2) 『중재원 ‘해체’ 위기 ... 거짓답변 논란 NMC 안○○ 원장』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삭제 (2017년 11월 23일자 전체기사면) • 인터넷약사공론 : 『“안○○ 원장, 인사전횡·비리 심각 ... 제대로된 감사 필요”』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삭제 (2017년 11월 16일자 뉴스면) • 인터넷 스페셜경제 : 『국립의료원 안○○ 원장, 박 전 대통령 ‘길라임 간호사’ 특별채용?』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삭제 (2017년 11월 30일자 정치면) • 데일리팜 : 『NMC 인사특혜? ... 원장, 동생-운전사·전 비서관-실장』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삭제 (2017년 11월 30일자 정책과 법률면) • 인터넷 내일신문 : 『[국감 이사람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 보건복지산하기관의 적폐, ‘핀셋’ 검증』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삭제 (2017년 11월 21일자 정치면) • 쿠키뉴스 : 『국립중앙의료원 ‘길라임 간호사’ 안○○ 원장이 특별채용?』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삭제 (2017년 11월 23일자 뉴스면) • 로이슈 : 『“길라임 간호사” 채용한 국립중앙의료원 안○○ 원장 논란 증폭』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언급 삭제(2017년 11월 23일자 정치면) 외 7건

2017서울조정 2033	(정정청구) ○○고등학교 對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고3 수능 떡값 1·2학년에게 반강제로 걷은 학생회』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고등학교가 3학년 수험생들의 선물을 위해 1, 2학년생들에게 강제로 돈을 걷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계제)
이 행 결 과	『[수능 보는 고등학교 3학년 선물값 모금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7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2034·2035	(정정·손배청구) (주)○○○ 외 1인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임○○ ○○○ 사장 연임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1일자 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 사장이 과거 뇌물수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 사장 연임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26일자 경제면)
2017서울조정 2036	(정정청구) 국민의당 對 다산저널
조 정 대 상	『충격, 경악』 제하의 보도 (2017년 10월 25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민의당 원외위원장 120명의 일괄사퇴가 조작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2037	(정정청구) 진주시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돈만 주고 책임은 묻지 않는 진주시, 업체와 유착”』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7일자 경남면)
신청인 주장	진주시가 음식폐기물 자원화사업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계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1일자 지역면)
2017서울조정 2038·2039	(정정·손배청구) 김○○ 對 비즈니스포스트
조 정 대 상	『[Who Is ?] 한○○ 에어부산 사장』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0일자 Wh○ Is?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보직이 개인 비리 때문에 변경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계재)
이 행 결 과	『○○시 김○○ 전 ○○○본부장 보도 관련 알림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3일자 Who Is?면)

<p>2017서울조정 2040</p>	<p>(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스페셜경제</p>
<p>조 정 대 상</p>	<p>『[단독] 국군사이버사령부 ‘부적합 판정’ 내린 녹음방지기(BUNKER) 버젓이 유통』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31일자 정치면)</p>
<p>신청인 주장</p>	<p>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부적합판정을 받은 신청인 회사의 녹음방지장비가 아직도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p>
<p>2017서울조정 2041~2046</p>	<p>(각 정정·반론청구) 최 ○ 對 한국경제TV^(2041·2042), wow한국경제TV^(2043·2044), 네이버^(2045·2046)</p>
<p>조 정 대 상</p>	<p>『“무서워서 못 살겠다”... 입주민 보호 ‘구멍’』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TV 2017년 11월 7일자 뉴스포커스 프로그램, WOW한국경제TV 2017년 11월 7일자 최신뉴스면, 네이버 2017년 11월 7일자 뉴스홈면)</p>
<p>신청인 주장</p>	<p>오피스텔 관리인인 신청인이 기존 관리인과 다름을 벌이고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의 구조요청을 무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한국경제TV, WOW한국경제TV/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 취하 (네이버/사유 : 보도계재)
<p>이 행 결 과</p>	<p>『[송파구 오피스텔 새 관리인 측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WOW한국경제TV 2017년 12월 6일자 최신뉴스면, 네이버 2017년 12월 6일자 경제면)</p>
<p>2017서울조정 2047~2049</p>	<p>(정정·반론·손배청구) 김○○ 對 YTN</p>
<p>조 정 대 상</p>	<p>YTN24 프로그램 『끓는 라면 붓고 감금당해도 ... 경찰은 “쌍방폭행”』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7일자)</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대장으로 근무하는 지구대가 일방 폭행 사건을 가해자 진술에만 의존해 쌍방 폭행으로 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자진취하)</p>

2017서울조정 2050·2051	(정정·손배청구) 전병헌 對 SBS-TV
조 정 대 상	『전병헌 직접 개입 정황 … 소환 후 영장 청구할 듯』 제하의 기사 (SBS 2017년 11월 13일자 8시 뉴스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 시절 흡소핑 재승인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청인에 대해 검찰이 구속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2052	(정정청구) 이○○ 對 채널A
조 정 대 상	(1) 『목조르기에 기절 ‘악몽’ 캠프』 제하의 보도 (2017년 9월 9일자 뉴스A 프로그램) (2) 『폭행으로 기절 악몽의 해외 캠프』 제하의 보도 (2017년 9월 10일자 뉴스뱅크 프로그램) (3) 『“참교육” 목조르기에 기절 … 초등생 해외서 ‘악몽 캠프’』 제하의 보도 (2017년 9월 10일자 선데이 모닝쇼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해외 스키캠프에서 다른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2017서울조정 2053~2056	(각 반론청구) 류○○ 對 더팩트 ⁽²⁰⁵³⁾ , 뉴스엔 ⁽²⁰⁵⁴⁾ , 비즈엔터 ⁽²⁰⁵⁵⁾ , 스포티비뉴스 ⁽²⁰⁵⁶⁾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팩트 : 『정○○, 전 소속사 대표 해임 무효확인소송 오늘(30일) 첫 변론기일』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30일자 연예면) • 뉴스엔 : 『정○○, 前 소속사 前 대표와 법정싸움 … 오늘(30일) 첫 변론기일』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30일자 연예면) • 비즈엔터 : 『[BZ출격] 정○○ 5억 소송, 첫 공판 … 당사자 불참석‘팽팽’대립』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30일자 어려운드면) • 스포티비뉴스 : 『정○○, 오늘(30일) 부당해임 소송 첫 변론 … “절차대로” VS “손해배상”』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30일자 TV연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기획사의 공동대표 재임 시 주주총회록을 조작해 보수를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팩트 : 『정○○ 전 소속사 대표 류 씨, 입장 표명 “불법행위 없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일자 연예면) • 뉴스엔 : 『(반론보도)‘정○○, 前소속사 前대표와 법정싸움 … 오늘(30일) 첫 변론기일’ 관련』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4일자 연예면) • 비즈엔터 : 『정○○ 5억 소송 상대 측 “불법 행위 없었다” 입장 밝혀』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3일자 어라운드면) • 스포티비뉴스 : 『○○○○○○ 전 대표, 정○○ 측 “절차대로 해임” 주장 정면 반박』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9일자 TV연예면)

2017서울조정 2057·2058	(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SBS-TV
조 정 대 상	『자카르타 한인 연쇄 추락사 -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나?』 제하의 보도 (2017년 11월 11일자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자카르타 한인 연쇄의문사의 배후로 지목된 사람이 신청인 회사 경영에 관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구) 주식회사 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SBS아이앤엠 2018년 1월 10일자 시청자게시판)

2017서울조정 2059~2063	(각 손배청구) 이○○ 對 뉴스1코리아 ⁽²⁰⁵⁹⁾ , 네이버 ⁽²⁰⁶⁰⁾ , 다음 ⁽²⁰⁶¹⁾ , 줌 ⁽²⁰⁶²⁾ , 디오데오 ⁽²⁰⁶³⁾
조 정 대 상	『쓴 웃음 짓는 권선택』 제하의 기사 (뉴스1코리아 2017년 11월 14일자 대전충남면, 네이버, 다음 2017년 11월 14일자 정치면, 줌 2017년 11월 14일자 사회면, 디오데오 2017년 11월 1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대전 시장 초상을 게재하면서 옆에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같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뉴스1코리아/사유 : 당사자 간 화해, 네이버, 다음, 줌, 디오데오/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2064·2065	(정정·손배청구) 전병헌 對 MBN
조 정 대 상	『전병헌, 롯데홈쇼핑에 3억 요구』 제하의 보도 (2017년 11월 15일자 뉴스8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국회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홈쇼핑 재승인 지원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2066·2067	(정정·손배청구) 권○○ 對 교회와신앙
조 정 대 상	『5·18을 맞아 문재인 정부에 드리는 특별한 부탁』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8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남편인 고 유병언씨가 전두환 정권과 유착해 정치자금을 바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반론] 고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만 보도해 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8일자 오피니언면)
2017서울조정 2068~2070	(정정·반론·손배청구) ○○○○○○○회 對 교회와신앙
조 정 대 상	『5·18을 맞아 문재인 정부에 드리는 특별한 부탁』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8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단이 전두환 정권과 유착해 정치자금을 바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이제 그만 구원파에 대한 허위비방을 멈추세요!』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19일자 오피니언면)
2017서울조정 2071	(정정청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對 시사ON
조 정 대 상	『코트라“소재 다 파악했다더니”... 연락 끊긴 ‘K-MOVE’ 취업자 부실해명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5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사가 해외에 취업시킨 청년들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할뿐더러 해명도 석연치 않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7서울조정 2072·2073	(각 정정청구) 김○○ 對 SBS-TV ⁽²⁰⁷²⁾ , SBS아이앤엠 ⁽²⁰⁷³⁾
조 정 대 상	『안아키 사태의 진실 - 엄마는 왜 병원에 가지 않았나?』 제하의 기사 (SBS-TV(2017년 11월 18일자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SBS아이앤엠 2017년 11월 18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주도하는 육아 발육 방법이 과학적 근거와 효능이 없다고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2074~2077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연합뉴스TV ^(2074·2075) , 인터넷 연합뉴스TV ^(2076·2077)
조 정 대 상	『[단독] 성희롱 피해 신입 여경 ... 되레 곤혹스런 처지, 왜?』 제하의 기사 (연합뉴스TV 2017년 8월 23일자 출발640 프로그램, 인터넷 연합뉴스TV 2017년 8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후배 여경을 순찰차 안에서 성추행 해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2078	(반론청구) 김○○ 對 KBS-1TV
조 정 대 상	『일부 쌀에서 ‘발암’ 살충제 검출 ... 허용치 14배 초과』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4일자 KBS뉴스9 프로그램, 2017년 11월 6일자 KBS뉴스광장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보도해 쌀농사를 짓는 신청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농민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7서울조정 2079	(반론청구) 이○○ 對 인터넷 여성신문
조 정 대 상	『[세상읽기] 피해자와 피해의식 사이』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6일자 W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해 고소를 일삼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피해자와 피해의식 사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9일자 W오피니언면)

2017서울조정 2083·2084	(정정·반론청구) (주)○○○○○○○○ 외 1인 對 YTN
조 정 대 상	뉴스인 프로그램 『“폐점시켜!”… ○○○ 회장 폭언에 욕설 갑질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 회장이 가맹점을 방문해 폐점시키겠다고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2089~2092	(각 반론청구) ○○○○○대학교 對 전자신문인터넷 ⁽²⁰⁸⁹⁾ , 네이버 ⁽²⁰⁹⁰⁾ , 다음 ⁽²⁰⁹¹⁾ , 줌 ⁽²⁰⁹²⁾
조 정 대 상	『○○○○○○○①, 교육 커리큘럼 부실 논란 … 정원 늘리기 꿈수?』 제하의 기사 (전자신문인터넷 2017년 11월 20일자 뉴스면, 네이버, 다음, 줌 2017년 11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이 교육과정은 부실하면서 학생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학과수를 늘리는 꿈수행정을 펼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전자신문인터넷/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네이버, 다음, 줌/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①, 교육 커리큘럼 부실 논란 … 정원 늘리기 꿈수?”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전자신문인터넷, 네이버, 다음, 줌 2017년 12월 13일자 조정대상기사 하단)
2017서울조정 2093, 2094	(각 정정청구) ○○○○(주) 對 위키트리(wikitree) ⁽²⁰⁹³⁾ , 인터넷 청년의사 ⁽²⁰⁹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키트리(wikitree) : 『“내 입 속이 이렇게 더러워?” 불안감 조성하는 ‘찌꺼기 가글’에 의사 의견』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일자 산업면) • 인터넷 청년의사 : (1) 『아마브러쉬와 찌꺼기 가글』 제하의 보도 (2017년 9월 13일자 청년의사 라디오면) (2) 『아마브러쉬와 찌꺼기 가글』 제하의 보도 (2017년 9월 13일자 팟캐스트‘나는 의사다’ 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 제품이 효과를 부풀린 사기제품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위키트리/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 조정성립 (인터넷 청년의사/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키트리(wikitree) : 『“내 입 속이 이렇게 더러워?” 불안감 조성하는 ‘찌꺼기 가글’에 의사 의견』 제하의 기사에 신청인 반론 추가 (2018년 1월 4일자 산업면) • 인터넷 청년의사 : 『‘찌꺼기 가글’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8년 1월 3일자 청년의사 라디오면)

2017서울조정 2095	(정정청구) 김○○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소심한 소년을 노래하다, 청춘핑크밴드 ‘○○○○소녀단’』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5일자 음악면)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언론사 기자였던 신청인이 과거 작성한 기사를 삭제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정정보도 청구 요건에 부적합)
2017서울조정 2096·2097	(정정·반론청구) ○○○○○○(주) 對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조 정 대 상	『○○공항공사 용역업체, 정규직 대상자 타지 발령내 기회 박탈』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공항공사 용역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앞둔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타 지역으로 발령을 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결정 내용을 수용할 수 없음)
2017서울조정 2098	(정정청구) 육군인사사령부 對 SBS-TV
조 정 대 상	『용산역 앞에 30층 육군 호텔을? ... 용산 재개발 좌초위기?』 제하의 보도 (2017년 11월 11일자 뉴스토리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용사의집 재건립 사업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포함되고 토지분할도 협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용산의 집 재건립사업 관련 보도』 제하의 보도 (SBS-TV 2018년 2월 10일자 뉴스토리 프로그램, SBS아이앤엠 2017년 2월 10일자 다시보기면)

2017서울조정 2099~2102	(각 정정·반론청구) (사) ○○○○○○○○ 가족협의회 對 문화일보 ^(2099·2100) , 인터넷 문화일보 ^(2101·2102)
조 정 대 상	『세월호 또 조사하자는 ‘사회적 참사법’立法 단념해야』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7년 11월 17일자 39면, 인터넷 문화일보 2017년 11월 17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끝나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7서울조정 2103, 2104	(추후청구) 신○○ 對 뉴시스 ⁽²¹⁰³⁾ , 네이버 ⁽²¹⁰⁴⁾
조 정 대 상	『[단독] 의정부 ○○고에서 전 교장이 흥기 휘둘러 ... 행정실장 전치 4주 부상』 제하의 기사 (뉴시스 2017년 2월 8일자 경기북부면, 네이버 2017년 2월 8일자 속보면)
신청인 주장	전직 고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학교 행정실장을 흥기로 폭행해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의정부 ○○고 특수상해 혐의』 보도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뉴시스 2017년 12월 26일자 전국면, 네이버 2017년 12월 26일자 뉴스면)

2017서울조정 2105~2108	(각 정정·손배청구) 서○○ 對 매일일보 ^(2105·2106) , 인터넷 매일일보 ^(2107·2108)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일보 : 『인천 ○○구청 난입 의원 경찰조사 받아』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0일자 15면) • 인터넷 매일일보 : (1) 『제7대 ○○구의회 후반기 신임의장 임○○ 당선』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4일자 인천경기면) (2) 『인천○○구의회, 일부의원 질 떨어진 진정질의 비난』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2일자 인천경기면) (3) 『윤○○ 국회의원, ○○구의회 사업 좌초 압력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4일자 인천경기면)

	(4) 『인천 ○○구, 기초의원 막가파 행동 물의』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2일자 인천경기면) (5) 『인천 ○○구의회, 발의 1건도 없는 의원도 ...“월급이 아깝다”』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9일자 인천경기면) (6) 『인천 ○○구의회, ‘실추된 명예’ 언제 회복될까?』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7일자 인천경기면) 외 10건
신청인 주장	기초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의회기물을 파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2109·2110	(정정·손배청구) 서○○ 對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조 정 대 상	(1) 『인천 ○○구의회, ○○구청 공무원에게 이상한 ‘갑질’』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9일자 지역사회면) (2) 『윤○○ 의원, ○○구의회 의원들에 예산안 부결 압력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5일자 지역사회면)
신청인 주장	기초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공무원들에게 강압적 호통을 치고 회의 중 잠을 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7서울조정 2111, 2112	(정정·손배청구) ○○○○(주) 對 일요신문
조 정 대 상	『○○종합운동장 야간조명 공사업체, 실적 전무 “시공능력 의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0일자 경기면)
신청인 주장	○○군 종합운동장 야간조명 공사업체로 선정된 신청인 회사가 시공 실적이 전무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종합운동장 야간조명 공사업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16일자 전국면)

2017서울조정 2120, 2121	(각 정정청구) (주)○○○ 對 코스메틱매니아뉴스(Cosmetic Mania News) ⁽²¹²⁰⁾ , 인터넷 주간코스메틱(제니파크) ⁽²¹²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메틱매니아뉴스 (Cosmetic Mania News): 『○○○○○, ‘○○○○○’ 상표권 최종 승소』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4일자 뉴스면) • 인터넷주간코스메틱(제니파크): 『‘○○○○○’상표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경쟁사와 상표권 소송에서 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메틱매니아뉴스 (Cosmetic Mania News): 『 『○○○○○, ‘○○○○○’ 상표권 최종 승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5일자 뉴스면) • 인터넷주간코스메틱(제니파크) : 『“‘○○○○○’ 상표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5일자 종합면)
2017서울조정 2124·2125	(정정·손배청구) 이○○ 외 1인 對 MBN
조 정 대 상	현장르포특종세상 프로그램 『위기의 모녀』 제하의 보도 (2017년 8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모녀관계인 신청인들의 불화로 딸인 신청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금전 지급)
2017서울조정 2126~2129	(각 반론청구) 윤○○ 對 인터넷 국민일보 ⁽²¹²⁶⁾ , 인터넷 한국일보 ⁽²¹²⁷⁾ , 인터넷 미디어오늘 ⁽²¹²⁸⁾ , 뉴스1코리아 ⁽²¹²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국민일보 : 『휴대전화 파쇄기에 갈아버린 김장겸 등 MBC임원진 ...‘증거인멸’정황』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8일자 시사면) • 인터넷 한국일보 : 『MBC노조“김장겸 전 사장 등 수사 전 스마트폰 파쇄”』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8일자 문화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김장겸 등 MBC 임원들, 조직적으로 휴대폰 파쇄』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8일자 레드면) • 뉴스1코리아 : 『MBC노조“경영진, 수사 앞두고 업무용 휴대전화 파쇄”』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MBC 간부인 신청인이 MBC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파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국민일보 : 『‘휴대전화 파쇄기에 갈아버린 MBC임원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1일자 시사면) • 인터넷 한국일보 : 『‘MBC노조 “김장겸 전 사장 등 수사 전 스마트폰 파쇄”’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5일자 문화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MBC 임원들, 조직적으로 휴대폰 파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4일자 블랙면) • 뉴스1코리아 : 『‘MBC노조“경영진, 수사 앞두고 업무용 휴대전화 파쇄”’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5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2130, 2131	(각 정정청구) (주)○○○○○○○○○ 對 연합뉴스TV ⁽²¹³⁰⁾ , 인터넷 연합뉴스TV ⁽²¹³¹⁾
조정 대상	『[단독] 친환경 제품이라더니... 유아 매트서 유해물질 검출』 제하의 보도 (연합뉴스TV 2017년 11월 20일자 news 20 프로그램, 인터넷 연합뉴스TV 2017년 11월 20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유아용 매트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 결과	『‘친환경 제품이라더니 ... 유아 매트서 유해물질 검출’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연합뉴스TV 2017년 12월 23일자 news 20 프로그램 , 인터넷 연합뉴스TV 2018년 12월 23일자 경제면)

2017서울조정 2132~2135	(각 정정청구) 부산광역시 對 JTBC ⁽²¹³²⁾ , 인터넷 JTBC ⁽²¹³³⁾ , 네이버 ⁽²¹³⁴⁾ , 다음 ⁽²¹³⁵⁾
조 정 대 상	(1) 『원전담수화 바닷물 식수 제공, 2년간 40만병 ... 시각장애인 행사에 많이 공급』 제하의 보도 (JTBC 2017년 11월 14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인터넷 JTBC, 네이버, 다음 2017년 11월 14일자 사회면) (2) 『사전고지도 없이 ... 시각장애인 행사에 '문제의 생수' 공급』 제하의 보도 (JTBC 2017년 11월 14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인터넷 JTBC, 네이버, 다음 2017년 11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부산시가 원전인근 해수를 담수화해 취약계층 행사에 고지도 없이 식수로 공급하고 법원에서도 담수화사업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보도거제)
이 행 결 과	(1) 『원전담수화 바닷물 식수 제공, 2년간 40만병... 시각장애인 행사에 많이 공급』 제하의 기사 하단에 신청인 반론 추가 (인터넷 JTBC, 네이버, 다음 2017년 12월 8일자 사회면) (2) 『사전고지도 없이 ... 시각장애인 행사에 '문제의 생수' 공급』 제하의 기사 하단에 신청인 반론 추가 (인터넷 JTBC, 네이버, 다음 2017년 12월 8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2136	(반론청구) ○○○○○○○(주) 對 트리니티메디컬뉴스
조 정 대 상	(1) 『○○○○ 소액주주모임, ○○○○○○○ 사옥에서 피켓시위』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8일자 미래첨단의료면) (2) 『○○○○ 주주모임, ○○○○○○○에 2차 항의 시위』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1일자 미래첨단의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경쟁사의 줄기세포 기술을 불법탈취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양 당사자 이의신청/사유 : 결정 내용을 수용할 수 없음)

<p>2017서울조정 2137~2157</p>	<p>(각 정정·추후·손배청구) 이○○ 對 SBS-TV^(2137~2139), SBS아이앤엠^(2140~2142), YTN^(2143~2145), 인터넷 YTN^(2146~2148), JTBC^(2149~2151), 인터넷 JTBC^(2152~2154), 네이버^(2155~2157)</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성폭행 피해 신고 여중생, ‘미안하다’ 문자 남기고 옥상서 …』 제하의 보도 (SBS-TV 2017년 8월 26일자 SBS 8시 뉴스 프로그램, SBS아이앤엠 2017년 8월 26일자 사회면) • YTN : 『“동영상 협박까지”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제하의 보도 (YTN 2017년 8월 26일자 뉴스이슈 프로그램, 인터넷 YTN 2017년 8월 26일자 사회면) • JTBC : (1) 『가족에 “미안하다” 문자 남기고 옥상에서 …』 제하의 보도 (JTBC 2017년 8월 26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인터넷 JTBC, 네이버 2017년 8월 26일자 사회면) (2) 『[사회현장]‘성폭행 피해’ 여중생 … 자살로 몰고 간 사회』 제하의 보도 (JTBC 2017년 8월 29일자 뉴스현장 프로그램, 인터넷 JTBC 2017년 8월 29일자 사회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친구가 성폭행당하는 현장에서 가해자를 도와 범죄 행각을 촬영한 공범이라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SBS-TV, SBS아이앤엠, YTN, 인터넷 YTN, 네이버/사유 : 보도거제)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JTBC, 인터넷 JTBC/내용 : 반론 및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성범죄 공범 지목됐던 여중생, 뒤늦게 무혐의 드러나』 제하의 보도 (SBS-TV 2018년 1월 17일자 SBS 나이트라인 프로그램, SBS아이앤엠 2017년 1월 17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6일자 사회면) • 인터넷 JTBC :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관련 추후·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터넷 JTBC 2018년 1월 8일자 사회면, 네이버 2018년 1월 8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2168·2169	(정정·손배청구) 이○○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제주, 카지노업 종사자 250여명 대상 교육 실시』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9일자 제주면)
신청인 주장	지자체 공익감사단 위원인 신청인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잘못 표기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간주

2017서울조정 2170·2171	(정정·손배청구) (의) ○○의료재단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시립요양병원 전 위탁사업자, 환자 인계 어떻게?』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8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의료 법인이 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입원환자에게 환자 유치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관할변경)

2017서울조정 2176	(정정청구) 이○○ 對 SBS-TV
조 정 대 상	(1) 『“차명 36억 돌려달라”... 롯데 신○○ 前 사위 소송』 제하의 보도 (2017년 11월 28일자 SBS 8시 뉴스 프로그램) (2) 『“주인 몰래 계좌 열고 거래까지”... 롯데家 비자금?』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8일자 SBS 8시 뉴스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체결로 타인의 계좌에 보관돼있던 신청인 소유의 주식 등을 롯데그룹의 비자금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p>2017서울조정 2177, 2178</p>	<p>(각 정정청구)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對 서울경제⁽²¹⁷⁷⁾, 인터넷 서울경제⁽²¹⁷⁸⁾</p>
<p>조 정 대 상</p>	<p>(1) 『[S-Report 종교단체‘그들만의 회계장부’<상> 사찰] 수백억대 자금도 쉬쉬 ... 종교단체 ‘구멍가게’ 회계』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7년 11월 28일자 1면, 인터넷 서울경제2017년 11월 27일자 사회일반면)</p> <p>(2) 『[종교단체 ‘그들만의 회계장부’ <상> 사찰재정] 화장실 신축이 문화재 보수정비?』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7년 11월 28일자 5면,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11월 27일자 사회일반면)</p> <p>(3) 『[종교단체 ‘그들만의 회계장부’ <상>사찰재정] 연 1,300억이상 나랏돈 지원에도 ... 자금집행 ‘감시의 눈’은 실종』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7년 11월 28일자 5면, 인터넷 서울경제2017년 11월 27일자 사회일반면)</p> <p>(4) 『[종교단체 ‘그들만의 회계장부’ <상>사찰 재정] "재정공개" 60곳중 55곳 약속 안 지켜 ... 주지가 땅 팔아도 몰라』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7년 11월 28일자 4면,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11월 27일자 사회일반면)</p> <p>(5) 『[종교단체‘그들만의 회계장부’ <상>사찰 재정] 금권선거·미흡한 승려복지가 투명한 회계운용 부추긴다』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7년 11월 28일자 4면,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11월 27일자 사회일반면)</p> <p>(6) 『[종교단체‘그들만의 회계장부’ <상>사찰 재정] 명진 스님 “승려가 직접 돈 만져선 안돼 ... 신도회에 맡겨야”』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7년 11월 28일자 4면,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11월 27일자 사회일반면)</p> <p>(7) 『[종교단체‘그들만의 회계장부’<상>사찰재정] 400억~500억 추산 문화재 관람료, 정부통제도 사용처 공개도 안돼』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7년 11월 28일자 5면,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11월 27일자 사회일반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종단이 문화재 관련 국고보조금을 유용하고 회계장부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찰의 재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보도계재)</p>
<p>이 행 결 과</p>	<p>『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7년 12월 13일자 6면,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12월 12일자 사회면)</p>

2017서울조정 2179~2181	(정정·반론·손배청구) (주)○○○○ 對 인터넷 이코노믹리뷰
조 정 대 상	(1) 『김○○회장, ○○금융그룹 투자사 동원 아들 지원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4일자 포커스면) (2) 『[단독] ○○○, 前 ○○은행 출신 ‘감사’ 전격 교체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8일자 금융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설립되자마자 각종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총판을 떠난 것이 설립자와 모 금융그룹간의 인맥을 활용한 일감 몰아주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김○○회장, ○○금융그룹 투자사 동원 아들 지원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26일자 인베스트> 금융면)
2017서울조정 2182, 2204, 2205, 2210~2215	(각 정정청구) 의정부시 對 인터넷 서울매일 ⁽²¹⁸²⁾ , 투데이코리아 ⁽²²⁰⁴⁾ , 이그린뉴스 ⁽²¹⁰⁵⁾ (각 정정·반론청구) ○○○○○○○○○○○(유) 對 인터넷 서울매일 ^(2210·2211) , 투데이 코리아 ^(2212·2213) , 이그린뉴스 ^(2215·2216)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서울매일 : 『의정부 ○○○○○ ○○○○아파트건설, 시행사 선정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일자 사회면) • 투데이코리아 : 『의정부시 ○○○○ ○○○○○ 시행사 선정에 특혜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4일자 사회면) • 이그린뉴스 : 『의정부 ○○○○아파트건설, 시행사 선정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일자 취재현장면)
신청인 주장	의정부시가 공원 내 아파트건설 시행사 선정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인터넷 서울매일/내용 : 정정보도,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투데이코리아/내용 : 정정보도) • 각 조정불성립결정 (이그린뉴스)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서울매일 : 『[“의정부 ○○○○○ ○○○○아파트건설, 시행사 선정 특혜의혹”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28일자 사회면) • 투데이코리아 : 『[“의정부 ○○○○○ 아파트건설, 시행사 선정 특혜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2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2183·2184	(정정·손배청구) 이○○ 외 1인 對 MBC-TV
조 정 대 상	『5살 아이 사고로 한쪽 시력 잃었는데, 가해자는 없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3일자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유아가 시력을 상실했고 신청인 측은 치료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강원도 ○○군 소재 유치원 어린이 시력상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iMBC 2018년 1월 19일자 시청자 의견면)
2017서울조정 2185·2186	(정정·반론청구) 서울특별시 對 뉴데일리
조 정 대 상	『[단독] 서울시 ‘태양광발전’ 성과 부풀려 ... 전력 생산‘뺑튀기’』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서울시가 태양광발전사업의 발전량과 수익금을 부풀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서울시 태양광 발전사업’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9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2187·2188	(정정·손배청구) ○○○○○○(주) 對 푸드투데이
조 정 대 상	(1) 『[업계는 지금] 뒷방 노인 된 ‘○○○○칩’포장 바뀐 매출 상승 노리나』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4일자 식품면) (2) 『○○○○칩 이어 ○○만두도‘부진의 늪’... 내리막길 걷는 ○○○○』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5일자 식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대표 제품들이 매출부진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서울조정 2189~2192	(각 정정·손배청구) 정○○ 對 세계일보 ^(2189·2190) , 세계닷컴 ^(2191·2192)
조 정 대 상	『[단독] 외교부 국장“여자는 열등”』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외교부 고위 간부인 신청인이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2193~2196, 2324	(각 정정·손배청구) 심재철 對 SBS-R ^(2193·2194) , SBS아이앤엠 ^(2195·2196) (정정청구) 인터넷 국민일보 ⁽²³²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R : 『김홍걸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위원회 의장 “2014년 10월 북측 대표단, 박 전 대통령 예방 계획 …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전혀 연락 안돼”』 제하의 보도 (SBS-R 2017년 12월 4일자 LOVE FM SBS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프로그램, SBS아이앤엠 2017년 12월 4일자 다시듣기면) • 인터넷 국민일보 : 『“문 대통령 내란죄” 주장한 심재철 의원의 과거』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피의자였던 신청인이 허위자백을 하고 전향한 대가로 방송국에 입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2197~2200	(각 정정·반론청구) (주)○○○○○ 對 에스티브이(STV) ^(2197·2198) , e상조뉴스 ^(2199·2200)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스티브이(STV) : (1) 『자본금 1천만원 ○○○○○, 국가대표 장례토털 서비스업체?』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2일자 상조장례뉴스면) (2) 『○○○○○ 고○○ 대표 ‘황당한 기사삭제 주장’ 요청』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8일자 상조장례뉴스면) • e상조뉴스 : (1) 『자본금1 천만원 ○○○○○, 국가대표 장례토털 서비스업체?』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1일자 상조종합면) (2) 『○○○○○ 고○○ 대표 ‘황당한 기사삭제 주장’ 요청』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1일자 상조종합면)
신청인 주장	장례서비스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자본금도 부족하고 허위 과장홍보를 하고 있다고 음해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2201, 2202	(각 정정청구) 임○○ 對 조선일보 ⁽²²⁰¹⁾ , 조선비즈닷컴 ⁽²²⁰²⁾
조 정 대 상	『국제경제 弱者되면 살점 또 뜯겨 … 이대론 그 길 간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0일자 A4면, 조선비즈닷컴 2017년 11월 20일자 피플면)
신청인 주장	IMF 구제금융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신청인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우려하고 비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7서울조정 2203	(반론청구) ○○○(주) 對 인터넷 이데일리
조 정 대 상	『○○○ 항암바이러스약 ‘○○○’을 둘러싼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3일자 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 항암바이러스 치료제의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항암바이러스약 ‘○○○’을 둘러싼 논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추가 (2017년 12월 13일자 기업면)
2017서울조정 2206~2209	(정정·손배청구) (사)○○○○○○협회 對 세미나비즈 ^(2206·2207) , 인터넷 세미나 비즈 ^(2208·2209)
조 정 대 상	『협회 회원돈은“눈먼 돈”(?)』 제하의 기사 (세미나비즈 2017년 10월 16일자 1면 및 7면, 인터넷 세미나비즈 2017년 10월 16일자 커버스토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적법절차 없이 전임 회장의 법률 비용 등으로 수억 원을 지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협회 회원돈은‘눈먼 돈’(?)”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세미나비즈 2018년 1월 29일자 커버스토리면, 인터넷 세미나비즈 2018년 1월 29일자 커버스토리면)
2017서울조정 2216·2217	(정정·손배청구) ○○○ ○○ 對 한국NGO
조 정 대 상	『양면의 탈을 쓴 ○○○ ○○의 정체를 밝혀라!』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1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독도 지킴이로 알려진 신청인이 실제로는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 동의)

2017서울조정 2218~2223	(각 정정청구) 조○○ 對 SBS아이앤엠 ⁽²²¹⁸⁾ , 뉴스프리존(News Free Zone) ⁽²²¹⁹⁾ , 인터넷 경향신문 ⁽²²²⁰⁾ , 인터넷 서울경제 ⁽²²²¹⁾ , 인터넷 서울신문 ⁽²²²²⁾ , 인터넷 한겨레 ⁽²²²³⁾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아이앤엠 : 『‘30분 지각에 1만 원 삭감’... 알바생에게 욕설·폭언한 업주』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9일자 사회면) • 뉴스프리존(News Free Zone) : 『Hits집사장, 30분 지각에 벌금 1만원 ... 알바생에게 욕설, 하루 결근 20만원』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9일자 사람들이야기면) • 인터넷 경향신문 : 『‘결근시 급여서 20만원 공제’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여전히 사각지대』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9일자 전국면) • 인터넷 서울경제 : 『알바생에 욕설·폭언 하고 지각하면 급여 삭감한 악덕 업주』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9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신문 : 『30분 지각에 벌금 1만원 ... 청소년 알바에 폭언 일삼은 식당 주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9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겨레 : 『“지각 7만원, 결근 20만원”청소년 노동자 울린 사장 ... 협박까지』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식당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아르바이트생이 지각하면 급여를 삭감하고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SBS아이앤엠, 뉴스프리존(News Free Zone), 인터넷 경향신문, 인터넷 서울경제/사유 : 보도거제) • 각 조정성립 (인터넷 서울신문/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인터넷 한겨레/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아이앤엠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28일자 사회면) • 뉴스프리존(News Free Zone) : 『“Hits집사장, 30분 지각에 벌금 1만원 ... 알바생에게 욕설, 하루 결근 20만원”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5일자 뉴스면) • 인터넷 경향신문 : 『“결근 시 급여서 20만원 공제”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여전히 사각지대”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3일자 전국면) • 인터넷 서울경제 : 『[바로잡습니다]‘알바생에게 욕설·폭언 하고 지각하면 급여 삭감한 악덕 업주’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9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신문 : 『“30분 지각에 벌금 1만원 ... 청소년 알바에 폭언 일삼은 식당 주인”관련 정정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9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겨레 : 『[반론보도문]“지각 7만원, 결근 20만원”청소년 노동자 울린 사장 ... 협박까지’관련』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8일자 사회면)

<p>2017서울조정 2224~2233, 2236·2237</p>	<p>(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중도일보^(2224·2225),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2226·2227), 한국경제TV^(2228·2229), WOW한국경제TV^(2230·2231), 네이버^(2232·2233), 다음^(2236·2237)</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중도일보 : 『서울 송파 P 집합건물, 전임 관리소장 관리비 실태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5일자 경기면) •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 『집합건물 정상화 위한 법적 관리인 선정』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7일자 서울수도권면) • 한국경제TV : 『“무서워서 못 살겠다”... 입주민 보호‘구멍’』 제하의 보도 (한국경제TV 2017년 11월 7일자 뉴스포커스 프로그램, WOW한국경제TV 2017년 11월 7일자 최신뉴스면, 네이버, 다음 2017년 11월 7일자 경제면)
<p>신청인 주장</p>	<p>오피스텔의 관리인인 신청인이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의혹이 있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인터넷 중도일보,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사유 : 자진취하, 네이버, 다음/사유 : 기사수정)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한국경제TV, WOW한국경제TV/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지급,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p>이 행 결 과</p>	<p>『“무서워서 못 살겠다”... 입주민 보호‘구멍’』 제하의 보도 중 신청인 이름 등장 화면 블러 처리(네이버, 다음 2017년 12월 20일자 경제면)</p>
<p>2017서울조정 2234</p>	<p>(정정청구) ○○○○○○○○협의회 외 1인 對 뉴시스</p>
<p>조 정 대 상</p>	<p>『사립대 방패막이로 나선 교육부 고위관료들』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8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협의회 회장이 임기 후 대학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 입학금 폐지에 반대하는 등 전문대 입장을 옹호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사립대 방패막이로 나선 교육부 고위관료들”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21일자 사회면)</p>

2017서울조정 2235	(정정청구) 이○○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시총 500억 회사 하루 아침에 폭삭 ...'꾼'에 걸렸나』 제하의 보도 (2017년 12월 5일자 종합뉴스9 추적취재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회사를 인수한 후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매출도 급감하는 등 회사에 손해만 끼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7서울조정 2238·2239	(정정·손배청구) 유○○ 對 인터넷 이지경제
조 정 대 상	『[단독] ○○○○, 성추행 파문 ... 해당 인사 자진 사퇴 유도'은폐·축소?』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9일자 이슈면)
신청인 주장	게임회사 팀장인 신청인이 여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회사는 이를 은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계재)
이 행 결 과	『'중견 게임사 ○○○○의 팀장급 인사 Y씨 성추행 파문'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17일자 사고면)
2017서울조정 2240~2243	(각 반론·손배청구) (주)○○○ 對 The Scoop(더스쿠프) ^(2240·2241) , 인터넷 The Scoop ^(2242·2243)
조 정 대 상	『[단독인터뷰] ○○○과 법정다툼 중인 ○○○씨 “그들의 소송은 퇴사자 겁박용”』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0일자 26면, 2017년 11월 22일자 커버스토리면) 『○○○,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 했나』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4일자 28면, 2017년 12월 4일자 커런트이코노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퇴사 직원을 상대로 보복성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p>2017서울조정 2244·2245</p>	<p>(정정·반론청구) (주)○○○○ 외 1인 對 일요신문</p>
<p>조 정 대 상</p>	<p>『500억대 제주도 투자형 호텔서 벌어진‘투자자 농단’풀스토리』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3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호텔의 위탁 운영자가 호텔 매출을 빼돌려 투자자들을 농단하고 수십억 원의 피해를 끼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p>
<p>이 행 결 과</p>	<p>『500억대 제주도 투자형 호텔서 벌어진‘운영권 분쟁’풀스토리』 제하의 기사로 제목 및 내용 수정 (2018년 1월 3일자 사회면)</p>

<p>2017서울조정 2246·2247</p>	<p>(정정·손배청구) (주)○○○○○○○○○○○ 對 JTBC</p>
<p>조 정 대 상</p>	<p>『‘다이빙벨 비판 기사’뒤엔 ... 박 청와대, 보수매체 동원 정황』 제하의 보도 (2017년 12월 8일자 JTBC 뉴그림 프로그램)</p>
<p>신청인 주장</p>	<p>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다이빙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인 언론사를 이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p>
<p>이 행 결 과</p>	<p>『「‘다이빙벨 비판 기사’뒤엔 ... 박 청와대, 보수매체 동원 정황」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터넷 JTBC 2018년 1월 31일자 뉴스면)</p>

<p>2017서울조정 2248·2249</p>	<p>(정정·손배청구) 변○○ 對 JTBC</p>
<p>조 정 대 상</p>	<p>『“문제없다”발표에도‘자의적 해석’... 계속된 억지 주장』 제하의 보도 (2017년 11월 27일자 JTBC 뉴그림 프로그램)</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제기한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이 근거 없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불성립결정</p>

2017서울조정 2250, 2251	(각 정정청구) ○○초등학교 對 경향신문 ⁽²²⁵⁰⁾ , 인터넷 경향신문 ⁽²²⁵¹⁾
조 정 대 상	『여수 섬마을 초등학교‘수상한 학폭 처리’』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7일자 14면, 인터넷 경향신문 2017년 12월 6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가 폭력행위 축소를 중용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붙이는 등 학교폭력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2252~2254	(정정·반론·손배청구) 김○○ 對 민중의소리
조 정 대 상	(1) 『[단독] ○○○병원 교수, 고령환자에“그냥 죽어”막말 …‘자해’소동까지』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4일자 사회면) (2) 『[단독] ○○○병원 교수, 환자 폭언·직원 갑질은 왜 방치됐나』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고령의 환자에게 막말을 하고 자해소동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병원 교수 환자 폭언 및 직원 갑질’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8년 2월 13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2255~2258	(각 정정·손배청구) ○○○○○○○○○○의사회 對 한국일보 ^(2257·2258) , 인터넷 한국일보 ^(2255·2256)
조 정 대 상	『동네병원 과잉 진료, 호갱 된 환자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7년 12월 13일자 1면 및 5면, 인터넷 한국일보 2017년 12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동네 병원이 환자와 건강보험에 부담을 지우는 과잉 진료를 일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소아과 과잉진료사례를 언급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p>2017서울조정 2259</p>	<p>(정정청구) 이○○ 對 인터넷 시사저널</p>
<p>조 정 대 상</p>	<p>『[단독] 삼천포에서 벌어진 내부 고발자 제보“의심받는 이유”』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8일자 지역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회사 내규를 어긴 채 내부 고발 동영상을 촬영한 뒤 회사에 금전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삼천포에서 벌어진 내부고발자 제보‘의심받는 이유’》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15일자 지역면)</p>
<p>2017서울조정 2260, 2261</p>	<p>(각 정정청구) (주)○○○○○○○ 외 1인 對 일요신문⁽²²⁶⁰⁾, 일요신문⁽²²⁶¹⁾</p>
<p>조 정 대 상</p>	<p>『경쟁자들 중도 포기 이유가 ...‘MB정부’산물 ○○○○ 설립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8일자 40~41면, 일요신문 2017년 12월 8일자 rudwp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회사 회장이 채용비리와 관련이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회사 설립에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p>
<p>2017서울조정 2262~2267</p>	<p>(각 정정·손배청구) 광상도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2262·2263), 네이버^(2264·2265), 다음^(2266·2267)</p>
<p>조 정 대 상</p>	<p>『‘채동욱 찍어내기’ 박근혜 청와대·국정원 윗선 드러날까』 제하의 기사 (인터넷 미디어오늘 2017년 12월 13일자 레드면, 네이버, 다음 2017년 12월 13일자 정치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국정원과 합작하여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p>
<p>이 행 결 과</p>	<p>『‘채동욱 찍어내기’ 박근혜 청와대·국정원 윗선 드러날까』 제하의 기사 중 부제목 등 수정 (인터넷 미디어오늘 2018년 1월 4일자 레드면, 네이버, 다음 2018년 1월 4일자 정치면)</p>

2017서울조정 2268~2273	(각 정정·반론청구) (사) ○○○○○○○○○○ 외 2인 對 JTBC ^(2268·2269) , 인터넷 JTBC ^(2270·2271) , 온라인 중앙일보 ^(2272·2273)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 (1) 『[단독] 한 학교서 학생 3명‘의문의 혈액질환’... 조사 착수』 제하의 보도 (JTBC 2017년 9월 27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인터넷 JTBC 2017년 9월 27일자 사회면) (2) 『한 중학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잇따라 ... 조사 착수』 제하의 보도 (JTBC 2017년 9월 27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인터넷 JTBC 2017년 9월 27일자 사회면) • 온라인 중앙일보 : (1) 『해남 중학교서 백혈병 3명 발병 ... 학교 주변 공기·수질 검사』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1일자 사회면) (2) 『같은 중학교 학생 연달아‘혈액암’... 범인은‘우레탄 트랙?’』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백혈병 환자가 발생한 원인이 운동장의 인조 잔디 및 우레탄 트랙에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불성립결정 (JTBC, 인터넷 JTBC) • 조정성립 (온라인 중앙일보/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 온라인 중앙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27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2274	(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靑 블라인드 채용 합격자 모두 여성“관행 깬 결과 나왔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채용 면접을 보기 위해 대기 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80만 원 지급,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2017서울조정 2275~2278	(정정·손배청구) 김○○ 對 세계닷컴 ^(2275·2276) (각 손배청구) 네이버 ⁽²²⁷⁷⁾ , 다음 ⁽²²⁷⁸⁾
조 정 대 상	『[단독] ○○ 이장사건 취재기자, 항의하는 주민과 고성 오가』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5일자 사회면, 네이버, 다음 2017년 12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인 신청인이 기사에 항의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p>2017서울조정 2279·2280</p>	<p>(정정·손배청구) 김○○ 對 뉴스타파</p>
<p>조 정 대 상</p>	<p>『2017 검열의 재구성』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일자 목격자들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2017대구청년미술프로젝트 출판작을 사전에 검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불성립결정</p>
<p>2017서울조정 2281~2283, 2310~2314, 2368</p>	<p>(각 손배청구) 배○○ 對 인터넷 일요주간⁽²²⁸¹⁾, 네이버⁽²²⁸²⁾, 다음⁽²²⁸³⁾, 인터넷 주간 한국증권신문⁽²³¹⁰⁾, 인터넷 아시아일보⁽²³¹¹⁾, e머니투데이⁽²³¹²⁾, 국제타임스⁽²³¹³⁾, 인사이트⁽²³¹⁴⁾, 뉴시스⁽²³⁶⁸⁾</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일요주간 : 『○○○ 세무서장, 음주 운전에 음주측정 버티기까지』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9일자 포토면) • 인터넷 주간 한국증권신문 : 『배○○ ○○○ 세무서장, 관용차 음주운전 사고 … 측정 거부 입건』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9일자 종합면) • 인터넷 아시아일보 : 『○○○ 세무서장, 관용차로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하다 입건』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9일자 사회일반면) • e머니투데이 : 『○○○ 세무서장, 경찰 음주측정 거부해 현장 체포』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8일자 사회면, 네이버 2017년 6월 28일자 속보면) • 국제타임스 : 『서울 ○○○ 세무서장 ○○○ 씨, 관용차 음주운전 사고 … 측정 거부 입건』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9일자 수도권면) • 인사이트 : 『현직 세무서장, 음주운전하고 측정 거부해 현장서 체포』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8일자 사건사고면) • 뉴시스 : 『서울 ○○○ 세무서장, 교통사고 내고 경찰 음주측정 거부해 체포』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9일자 사회면, 다음 2017년 6월 29일자 사회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됐다고 보도하면서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국제타임스/내용 : 피신청인 사과, 부제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사이트, 뉴시스/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손해배상 2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지급) • 각 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주간 한국증권신문, 인터넷 아시아일보, e머니투데이, 네이버, 다음) • 취하 (인터넷 일요주간/사유 : 자진취하)

2017서울조정 2284·2285	(정정·손배청구) 김○○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新남비시대]①“영화관 사절합니다”… 강남에선 편의시설도‘퇴짜’』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6일자 부동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지하철역 옆 영화관 입점을 반대하는 이유가 보상금을 노리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7서울조정 2286·2287, 2296·2297, 2339~2367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연합뉴스 ^(2286·2287) , SBS아이앤엠 ^(2296·2297) , 뉴스웍스 ^(2339·2340) , 인터넷 서울신문 ^(2342·2343) , 인터넷 한국일보 ^(2344·2345) , 인터넷 MBN ^(2346·2347) , 조선닷컴 ^(2348·2349) , 인터넷 이데일리 ^(2350·2351) , 인터넷 서울경제 ^(2352·2353) , 세계닷컴 ^(2354·2355) , 노컷뉴스 ^(2356·2357) , 네이버 ^(2358·2359, 2360·2361, 2364·2365) , 다음 ^(2362·2363, 2366·2367) (정정청구) 인터넷 경향신문 ⁽²³⁴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1) 『경기교육청, ‘전교 여학생 1/3 추행’ 고교 교사 2명 징계 요구』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0일자 최신기사면) (2) 『경기교육청, ‘전교 여학생 1/3 추행’ 고교 교사 2명 징계 요구』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0일자 최신기사면) • SBS아이앤엠 : 『경기교육청, ‘전교 여학생 1/3 추행’ 고교 교사 2명 징계 요구』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0일자 사회면) • 뉴스웍스 : 『경기교육청, ‘○○ 여학생 72명 성추행’ 교사 2명 징계 요구』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0일자 경기남부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여학생 70여명 성추행 ○○ 고교 교사 2명 파면』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신문 : 『여고생 72명 성추행한 교사 2명 교단서 퇴출』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전체 여학생 1/3 추행한 ○○ 고교 교사 2명 파면』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전교 여학생의 1/3 성추행 ○○ 고교 교사 2명 ‘파면’』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1일자 사회면) 외 7개 매체
신청인 주장	교감인 신청인이 교사들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경찰 수사 전에 알고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연합뉴스, SBS아이앤엠/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뉴스웍스/사유 : 관할변경, 인터넷 경향신문/사유 : 정정보도, 인터넷

	<p>서울신문, 인터넷 한국일보, 조선닷컴, 노컷뉴스, 네이버, 다음/사유 : 기사수정, 인터넷 MBN, 인터넷 이데일리, 인터넷 서울경제/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p>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1) 『경기교육청, '전교 여학생 1/3 추행' 고교 교사 2명 징계 요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내용 수정 (2018년 1월 11일자 최신기사면, 네이버, 다음 2018년 1월 11일자 사회면) (2) 『경기교육청, '전교 여학생 1/3 추행' 고교 교사 2명 징계 요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내용 수정 (2018년 1월 11일자 최신기사면) • SBS아이앤엠 : 『경기교육청, '전교 여학생 1/3 추행' 고교 교사 2명 징계 요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내용 수정 (SBS아이앤엠 2018년 1월 11일자 사회면, 네이버, 다음 2018년 1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정정보도문] '○○ 고교 L씨 교사 성추행 사실'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1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신문 : 『여고생 72명 성추행한 교사 2명 교단서 퇴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내용 수정 (2018년 1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전체 여학생 1/3 추행한 ○○ 고교 교사 2명 파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내용 수정 (2018년 1월 11일자 사회면) 외 4건

<p>2017서울조정 2288·2289</p>	<p>(정정·손배청구) (주)○○○○○○○○ 외 1인 對 인터넷 문화일보</p>
<p>조 정 대 상</p>	<p>『'휴지 조각' 위기에 몰린 한 골프장 회원권』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2일자 골프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골프장의 회원권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p>

<p>2017서울조정 2290, 2291</p>	<p>(각 정정청구) (사) ○○○○○○○○○ 對 한겨레⁽²²⁹⁰⁾, 인터넷 한겨레⁽²²⁹¹⁾</p>
<p>조 정 대 상</p>	<p>『○○○○ "접대부 영어" 직원 성희롱 ... 내부고발자만 해고』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20일자 10면, 인터넷 한겨레 2017년 12월 20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단체 간부가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이를 고발한 직원을 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p>

2017서울조정 2292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조 정 대 상	『인천도시철도 2호선 미검증 자재 사용 ... 감독기관·시공사는 ‘나몰라라’』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1일자 건설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에 납품한 부품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량자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지하철 자재 사용’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25일자 건설산업면)

2017서울조정 2293·2294	(정정·손배청구) 김○○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몰락, 7년의 기록』 제하의 보도 (2017년 12월 12일자 PD수첩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방송사 국장 재직 시 국정원과 공모해 시사 프로그램 작가들을 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서울조정 2295	(정정청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철거왕 업체에 흘러간 176억‘수상한 공사’』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0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기반시설공사 비용을 4배나 부풀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철거왕 업체에 흘러간 167억원‘수상한 공사’”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15일자 사회면)

<p>2017서울조정 2298~2309</p>	<p>(각 정정·손배청구) 송○○ 對 KBS-1TV^(2298·2299), KBS미디어^(2300·2301), MBC-TV^(2302·2303), iMBC^(2304·2305), JTBC^(2306·2307), 인터넷 JTBC^(2308·2309)</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 송○○ 감독, 택시기사에 취중 욕설 피소』 제하의 보도 (KBS-1TV 2017년 9월 25일자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KBS미디어 2017년 9월 25일자 뉴스광장면) • MBC-TV : 『<○○○○> 송○○ 감독, 女 택시기사에 욕설 ‘피소’』 제하의 보도 (MBC-TV 2017년 9월 25일자 MBC 이브닝뉴스 프로그램, iMBC 2017년 9월 25일자 다시보기면) • JTBC : 『영화감독 송○○, 장애인 택시기사 비하 의혹』 제하의 보도 (JTBC 2017년 9월 23일자 JTBC 뉴스룸 프로그램, 인터넷 JTBC 2017년 9월 23일자 사회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장애인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p>

<p>2017서울조정 2315~2321</p>	<p>(각 정정청구) (주)○○○○○ 對 공감신문^(2315, 2316), Green Daily⁽²³¹⁷⁾, 넥스트데일리⁽²³¹⁸⁾, 데이터넷⁽²³¹⁹⁾, 문화뉴스⁽²³²⁰⁾, 아이(i)-이투뉴스⁽²³²¹⁾</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신문 : (1) 『한국○○○○ 헬스케어타운 인근 ‘○○○○○○’ 1+1분양』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1일자 생활문화면) • (2) 『한국○○○○ ‘○○○○○○’ 헬스케어타운 인근에 1+1분양』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8일자 생활문화면) • Green Daily : 『한국○○○○, 레지던스 오피스텔 ‘○○○○○○’ 1+1분양』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0일자 라이프면) • 넥스트데일리 : 『한국○○○○ ‘○○○○○○’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인근 1+1분양』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3일자 라이프면) • 데이터넷 : 『한국○○○○,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인근 ‘○○○○○○’ 1+1분양』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일자 경제교육면) • 문화뉴스 : 『한국○○○○ ‘○○○○○○’ 헬스케어타운 인근에 1+1 선착순분양』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4일자 뉴스면) • 아이(i)-이투뉴스 : 『한국○○○○, ‘○○○○○○’ 헬스케어타운 인근에 1+1분양』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8일자 경제종합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회사의 오피스텔 분양 방식을 잘못 보도했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 차단)</p>

2017서울조정 2322·2323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남편은 자살, 아내는 부당해고’사건의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1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자살한 남편과 불화로 별거 중이었다는 등의 악의적인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남편은 자살, 아내는 부당해고’사건의 진실은] 보도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22일자 초기화면)
2017서울조정 2325, 2326	(각 반론청구) ○○○○○○ ○○○○ ○○ 선거운동본부 對 동아일보 ⁽²³²⁵⁾ , 동아닷컴 ⁽²³²⁶⁾
조 정 대 상	『민노총 與당사 점거는 위원장 선거 겨냥?』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7년 12월 22일자 종합면, 동아닷컴 2017년 12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차기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판세를 뒤집기 위해 민주당 대표실 점거능성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29일자 피플&투데이면) • 동아닷컴 : 『“민노총 與당사 점거는 위원장 선거 겨냥?”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25일자 사회면)
2017서울조정 2327~2338	(각 정정청구) 오○○ 對 e글로벌이코노믹 ⁽²³²⁷⁾ , 뉴스데일리 ⁽²³²⁸⁾ , 뉴스프리존 ⁽²³²⁹⁾ , 민중의소리 ⁽²³³⁰⁾ , 인터넷 서울시정일보 ⁽²³³¹⁾ , 스카이데일리 ⁽²³³²⁾ , 인터넷 스포츠경향 ⁽²³³³⁾ , 축제뉴스 ⁽²³³⁴⁾ ,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²³³⁵⁾ , 인터넷 주간한국증권신문 ⁽²³³⁶⁾ , 인터넷 MBN ⁽²³³⁷⁾ , WOW한국경제TV ⁽²³³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글로벌이코노믹 : 『심재철 “법치파괴 본질 왜곡 말라”... 시민단체 명예훼손 혐의 고발 파문 확산』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9일자 뉴스면) • 뉴스데일리 : 『오○○ ○○○○운동대연합 대표, “문재인은 내란죄” 심재철 국회부의장 명예훼손 고발』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9일자 종합뉴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프리존 : 『심재철, 文정권 핵심인사에 거둬 내란죄 …‘내란죄 발언’, 면책특권에 해당될까』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9일자 정치면) • 민중의소리 : 『“문재인 내란죄” 연일 맹공퍼던 심재철,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9일자 정치면) • 인터넷 서울시정일보 : 『심재철 “文 내란죄, 자료공개시 의장 사퇴”- 노회찬 “심 부의장 정신착란죄”』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9일자 정치면) • 스카이드aily : 『심재철, ‘文 대통령 내란죄’ 명예훼손 고발 당해』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9일자 사회면) 외 6개 매체
<p>신청인 주장</p>	<p>시민단체 대표인 신청인이 문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심재철 의원을 고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e글로벌이코노믹, 뉴스데일리, 인터넷 스포츠경향,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인터넷 MBN, WOW한국경제TV/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민중의소리, 스카이드aily, 축재뉴스, 인터넷 주간한국증권신문/사유 : 기사수정, 뉴스프리존, 인터넷 서울시정일보/사유 : 보도게재)</p>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프리존 : 『[정정합니다] 오○○가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인 박○○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발한 것으로 밝혀져 …』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28일자 정치면) • 인터넷 서울시정일보 : 『[심재철 “文 내란죄, 자료공개시 의장 사퇴”- 노회찬 “심 부의장 정신착란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28일자 정치면) • 민중의소리 : 『“문재인 내란죄” 연일 맹공퍼던 심재철,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신원 익명 처리 (2017년 12월 28일자 정치면) • 스카이드aily : 『심재철, ‘文 대통령 내란죄’ 명예훼손 고발 당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신원 익명 처리 (2017년 12월 28일자 사회면) • 축재뉴스 : 『“문재인 내란죄” 언급 심재철, 명예훼손죄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신원 익명 처리 (2017년 12월 28일자 정치면) • 인터넷 주간한국증권신문 :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 심재철 의원,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신원 익명 처리 (2017년 12월 28일자 정치면)

2017서울조정 2369	(손배청구) 권○○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1) 『서울시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2900여 명 무기계약직 전환』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일자 사회면) (2) 『학교 비정규직 관련 정책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일자 사회면) (3) 『서울시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보도하면서 근무 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7서울조정 2370·2371	(정정·손배청구) 이명박 對 MBC-TV
조 정 대 상	(1) 『이례적 중동 특사 파견 ... MB 비리 관련?』 제하의 보도 (2017년 12월 11일자 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 『“MB, 다스 미국 법인 왔었다”... 퇴임 후 방문』 제하의 보도 (2017년 12월 26일자 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대통령 재임 시절 비리로 인해 현 대통령 특사가 UAE에 파견됐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 부산중재부

2017부산조정 1	(정정청구) 이○○ 對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이○○, 반기문 대선출마 소식 접하고 “돈 받은 사실 드러날텐데 어찌려고 …』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6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7부산조정 2·3	(정정·손배청구) (의) ○○의료재단 ○○○병원 對 KNN
조 정 대 상	『수면마취 중 숨진 50대, 병원과실 아닌 것으로 드러나』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23일자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수면내시경 도중 환자가 숨진 사고는 담당의사의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인 병원의 과실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전반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
2017부산조정 4	(반론청구) 인명진 對 인터넷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인명진, 박근혜 대통령 옹호하려다 ‘죄인’에 비유 … 주진우 “헌금 빼고는 다 인권 침해?”』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특별검사팀의 박대통령 대면 조사를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인명진, 박근혜 대통령 옹호하려다 ‘죄인’에 비유 … 주진우 “헌금 빼고는 다 인권 침해?”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7일자 정치면)

2017부산조정 5·6	(정정·손배청구) 박○○ 외 4인 對 인터넷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 국가대표‘몰카’파문 …“지난 4월부터 소문 돌았다”』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8일자 스포츠·연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여자 탈의실의 몰래카메라 촬영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일자 스포츠·연예면)
2017부산조정 7~10	(각 정정·손배청구) 손○○ 對 부산일보^(7·8), 인터넷 부산일보^(9·10)
조 정 대 상	『○○대 학생 커뮤니티, 순수성 잃고 광고 돈벌이?』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7년 2월 21일자 9면, 인터넷 부산일보 2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 커뮤니티사이트가 대학가 주변 업체들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돈벌이에만 치중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5일자 10면) 인터넷 부산일보 : 『바로잡습니다 - ○○대 학생 커뮤니티 관련』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4일자 사회면)
2017부산조정 11·12, 15·16	(각 추후·손배청구) 김○○ 對 일간리더스경제신문^(11·12), 인터넷 국제신문^(15·16)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시 의원, 동료 의원 위증죄로 고소했다가 이번엔 ‘무고’ 기소』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5일자 정치면) 인터넷 국제신문 : 『동료 의원 성기 촬영한 시의원, “동료 의원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6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기초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동료 의원의 성기를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7부산조정 13·14	(추후·손배청구) 김○○ 對 시사울산
조 정 대 상	(1) 『○○○○고 → ○○고, 교명 바꾸면 비리 사라지나 ; 전·현직 이사장·교장·교감·행정실장 비리 혐의 검찰 수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일자 사회면) (2) 『○○○○고 전 이사장, 현 교장·행정실장 등 기소 ; 검찰 수사 통해 전 이사장 폭로 대부분 확인 …‘관선이사 파견을’』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8일자 사회면) (3) 『○○고 전 이사장 “뇌물 주고 받았는데 왜 무혐의냐”; 대검에 재조사 요구 … 울산교육청 “행정절차 진행중”』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고등학교 행정실장인 신청인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계재)
이 행 결 과	『[추후보도]“○○고 (전 ○○고) 전 재단 이사장 이 모씨의 허위 자백 때문에 행정실장 비리 혐의 기소”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9일자 사회면)
2017부산조정 17, 18	(각 정정청구) 울산광역시 對 울산저널 ⁽¹⁷⁾ , 울산저널 ⁽¹⁸⁾
조 정 대 상	『김기현 시장 일정 흥준표 후보 유세와 겹쳐』 제하의 기사 (울산저널 2017년 4월 19일자 1면, 울산저널i 4월 20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울산광역시장의 지역 내 행사 일정이 흥준표 대신 후보의 일정과 겹쳐 흥 후보에 대한 간접 지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부산조정 19	(정정청구) 나경원 對 인터넷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조국 민정수석‘母 운영법인 ○○학원 체납’논란에 나경원 사학 비리부터』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것에 대해 불법 체납했다고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7부산조정 20	(반론청구) 해양수산부 對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해양수산부 수술이 시급하다』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3일자 31면)
신청인 주장	해양수산부내에 특정 계파가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해수부 수술이 필요하다』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4일자 20면)

2017부산조정 21~24	(각 정정·손배청구) ○○여객자동차(주) 對 부산일보 ^(21·22) , 인터넷 부산일보 ^(23·24)
조 정 대 상	『사측, 연장 근로 수당 소송 취하 협박』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6년 6월 1일자 10면, 인터넷 부산일보 6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버스기사들에게 소송을 취하하라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부산여객”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7년 7월 24일자 10면, 인터넷 부산일보 7월 23일자 사회면)

2017부산조정 25	(정정청구) 권○○ 對 인터넷 경상일보
조 정 대 상	(1) 『돌아온 세월호, 아직 돌아오지 않은 유병언 일가 ... 유○○와 유○○는 대체 어디?』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3일자 연예/시사면) (2) 『신동욱 “유병언 장녀 유○○ 강제 소환, 세월호 의혹 점화 끈”』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일자 연예/시사면) (3) 『“유병언 장녀” 유○○ 강제 송환‘6일 입국예정’...“범죄인 인도 결정 최종 확정”』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일자 연예/시사면) (4) 『정유라 ○○빌딩에서 칩거 ... 빌딩에서 아들 물품 택배로 받아』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7일자 연예/시사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남편인 고 유병언씨가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0일자 연예/시사면)

<p>2017부산조정 26~29</p>	<p>(각 정정·손배청구) ○○○○노동조합○○○○○지부 對 울산신문^(26·27), 인터넷 울산신문^(28·29)</p>
<p>조 정 대 상</p>	<p>『비난 받는 ○○노조 일자리 연대기금 / 노동계“실체 없고 조합원 동의 없는 결정”』 제하의 기사 (울산신문 2017년 6월 29일자 1면, 인터넷 울산신문 2017년 6월 26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노조의 5천억원 규모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안이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진행됐으며, 실현가능성도 희박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p>
<p>이 행 결 과</p>	<p>『정정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울산신문 2017년 7월 17일자 1면, 인터넷 울산신문 2017년 7월 16일자 사회면)</p>
<p>2017부산조정 30</p>	<p>(반론청구) 박○○ 對 인터넷 한국기독교신문</p>
<p>조 정 대 상</p>	<p>『이단‘월드문화 캠프’고착화되나?』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2일자 뉴스종합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이단 계열의 목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보도게재)</p>
<p>이 행 결 과</p>	<p>『박○○ 목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3일자 뉴스종합면)</p>
<p>2017부산조정 31</p>	<p>(정정청구) ○○○○요양센터 對 포커스데일리</p>
<p>조 정 대 상</p>	<p>『부산 ○구 ○○요양원, 편법으로 국고 9억원대 지원 받아』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9일자 부산경남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요양원이 설립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에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설립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불성립결정</p>

2017부산조정 32	(정정청구) 김○○ 對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1) 『○○군 의장 동생 땅 5배 값에 사라』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3일자 1면) (2) 『시행사엔 거액 요구, 주민들 앞에선 ‘개발 반대’』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4일자 8면)
신청인 주장	기초의회 의장인 신청인이 동생 소유의 땅을 산업단지에 편입시켜주고 감정가의 5배에 달하는 토지보상비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군 의회 김○○ 의장 시행사 거액 요구’에 대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8일자 15면)
2017부산조정 33	(손배청구) 송○○ 對 KNN
조 정 대 상	(1) 『대형 크레인 마을버스 추돌, 하마터면 ...』 제하의 보도 (2017년 8월 12일자 뉴스아이 프로그램) (2) 『마을버스 또 사고, 승객은 ‘불안’』 제하의 보도 (2017년 8월 14일자 뉴스아이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교통사고를 목격한 신청인을 동의없이 몰래 녹음 촬영하고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7부산조정 34	(정정청구) 조○○ 對 울산저널
조 정 대 상	『아, 내가 합의서를 썼구나』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5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의료사고 피해로 병원과 분쟁중인 신청인이 분쟁 전에 병원 측과 합의서를 썼다고 실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p>2017부산조정 35·36</p>	<p>(정정·손배청구) 김○○ 對 노컷뉴스</p>
<p>조 정 대 상</p>	<p>(1) 『무대에는 없는데 명단에는 있다 ... 젊은 무용인의 눈물』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0일자 사회면) (2) 『“내가 만든 무대인데 ... ”공연 뺏긴 젊은 무용가의 몸짓』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1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무용단장인 신청인이 출연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고 공연 연출자를 본인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황포를 부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p>
<p>이 행 결 과</p>	<p>『“지역 무용계 갑질 기획”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1일자 사회면)</p>
<p>2017부산조정 37~40</p>	<p>(각 정정·손배청구) ○○일보(주) 對 일간리더스경제신문^(37·38), 인터넷 일간리더스경제신문^(39·40)</p>
<p>조 정 대 상</p>	<p>(1) 『북항 난개발 ... 부동산 투기사업 전략』 제하의 기사 (일간리더스경제신문 2017년 9월 18일자 1면, 인터넷 일간리더스경제신문 9월 17일자 향만면) (2) 『북항은 우리땅, 우리가 알아서 한다. 독선적인 BPA』 제하의 기사 (일간리더스경제신문 2017년 9월 20일자 1면, 인터넷 일간리더스경제신문 9월 19일자 향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언론사가 신사옥 부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 특혜와 투기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불성립결정</p>
<p>2017부산조정 41</p>	<p>(정정청구) (주)○○○○ 對 부산일보</p>
<p>조 정 대 상</p>	<p>『'부산 수영구 건물 기우뚱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7일자 11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소유한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건물은 이미 정밀검사를 거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보도계재)</p>
<p>이 행 결 과</p>	<p>『수영구 기우뚱 건물 ‘얼빠진 행정’』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3일자 8면)</p>

2017부산조정 42·43	(정정·반론청구) 조○○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훈련비 뜯어가고 보조금 횡령 ... 부산 ○○협회 관계자 6명 검거』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0일자 부산경남면)
신청인 주장	모 협회 이사인 신청인이 선수훈련 보조금을 횡령해 검거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부산 ○○협회 관계자 6명 검거’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7일자 부산경남면)
2017부산조정 44~47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KNN^(44·45), KNN미디어플러스^(46·47)
조 정 대 상	『○○사단 추가 폭로 잇따라 ... 내부 감시기능 마비』 제하의 보도 (KNN 2017년 8월 15일자 뉴스아이 프로그램, KNN미디어플러스 8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중대장인 신청인이 부하 장병을 폭행하고 폭행 사실을 담은 병사들의 편지를 가로채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부산조정 48·49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경상일보
조 정 대 상	『법원, 15 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 남편‘선처’』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외도를 했다는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7부산조정 50·51	(정정·손배청구) 박○○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조폭과 결탁한 상인회장 노점상에 역대 자릿세 챙겨』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30일자 최신기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노점상 상인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챘으며, 이 때문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조폭이 노점상에 역대 자릿세 챙겨 ... 상인회장은 방치』 제하의 기사로 제목 및 신청인 관련 보도 내용 일부 수정 (2017년 11월 30일자 최신기사면)

2017부산조정 52	(정정청구) 이○○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구의원이 레미콘 공장 설명회 주선 ... 학부모 대표는 건립 동의서 작성』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4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레미콘 공장 승인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부산조정 53, 54	(각 정정청구) 오○○ 對 인터넷 부산일보 ⁽⁵³⁾ , 인터넷 국제신문 ⁽⁵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부산일보 : 『어제는 나, 오늘은 심재철 고발...오○○, 설마 고발공장?』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9일자 정치면) • 인터넷 국제신문 : 『‘문재인 내란죄’ 주장 심재철, 명예훼손 고발...‘고발한 오천도 대표 누구?’』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9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문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심재철 의원을 시민단체 대표인 신청인이 고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3. 대구중재부

2017대구조정 1	(반론청구) ○○홍삼 (주) 對 국제저널
조 정 대 상	『무허가 홍삼 농축액 제품 회수 조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한 홍삼 제품이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대구조정 2·3	(추후 · 손배청구) 정○○ 對 인터넷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12년간 위장 교통사고 보험사기 형제 검거』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교통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로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됐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거제)
이 행 결 과	『“위장 교통사고 보험사기 형제 검거”무혐의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5일자 사회면)
2017대구조정 4	(반론청구) (주)○○○○ 對 서울디지털신문
조 정 대 상	『국립무형유산원, ‘격, 레(格, 禮)’ 기획전 개최』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6일자 행사 · 전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기획하고 개최한 전통공예기술에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작품 전시회를 문화재청이 기획한 행사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거제)
이 행 결 과	『2016 ‘격, 레’ 전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31일자 미디어면)

<p>2017대구조정 5, 6</p>	<p>(각 정정청구) (주)○○○○○○○○○⁽⁵⁾, (유) ○○○○개발⁽⁶⁾ 對 대구MBC-TV</p>
<p>조 정 대 상</p>	<p>『○○대병원 노조 ... 불법 도급 계약 해지 촉구』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19일자 8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p>
<p>신청인 주장</p>	<p>모 대학병원 주차와 청소 용역을 맡고 있는 신청인 회사들이 주차 요원을 해고하고 청소원들에게 식비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대병원 용역업체 도급 계약’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8일자 8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p>
<p>2017대구조정 7~9</p>	<p>(각 정정청구) 장○○ 외 2인 對 안동MBC-TV⁽⁷⁾, 대구MBC-TV⁽⁸⁾, 인터넷 경북도민일보⁽⁹⁾</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MBC-TV : 『문경 ○○○빵, ○○빵 인기』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1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 대구MBC-TV : 『○○·○○○빵 문경 관광 먹거리로』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2일자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 인터넷 경북도민일보 : 『문경 ○○○, ○○빵 아시나요?』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일자 라이프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들이 개발한 빵 브랜드를 문경 상인들이 개발한 것으로 잘 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보도게재)</p>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MBC-TV : 『○○○빵 관련 보도 정정』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10일자 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 대구MBC-TV : 『문경 ○○○시장 단순 재포장·판매로 밝혀져』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13일자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 인터넷 경북도민일보 : 『문경 ○○○, ○○빵 아시나요? <정정>』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3일자 지역뉴스면)

2017대구조정 10	(반론청구) 김○○ 對 인터넷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어금니 한 개 치료하러 치과 갔다가 ... 수 백만원“치료비 폭탄”』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치과 의사인 신청인이 환자에게 터무니없는 진료비를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치과의원‘치료비 폭탄’”기사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8일자 사회면)

2017대구조정 11~13	(정정·반론·손배청구) (주)○○○○ 對 대구MBC-TV
조 정 대 상	(1) 『○○○○○○파크 유사수산업체 입주』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11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1) 『○○○○○○파크 유사수산업체 입주, 다단계 판매』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12일자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다단계 판매업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간주

2017대구조정 14·15	(정정·손배청구) 최○○ 對 대경일보
조 정 대 상	『○○군 간부 공무원 자질 문제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지자체 홍보과장인 신청인의 홍보 미숙 및 능력 부족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군 한국○○○대회’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일자 3면)

2017대구조정 16	(반론청구) 한국도로공사 對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1) 『낮은 가드레일, 승용차 창문 높이에도 못 미쳐』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7일자 1면) (2) 『갓길 없는 교량, 고객 대피소 가려면 가드레일 뛰어 넘어야』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7일자 3면) (3) 『만원 폭발 상주 ~ 영덕 고속도로 의혹은 없나』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9일자 35면)
신청인 주장	상주-영덕고속도로의 시설물들이 위험하고 불편하다고 보도했으나 모두 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상주~영덕 고속도로’ 관련 한국도로공사의 알림』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7일자 2면, 인터넷 매일신문 2월 27일자 사회면)
2017대구조정 17·18	(정정·손배청구) 박○○ 對 TBC-TV
조 정 대 상	『잠입 취재 정신병원에서 무슨 일이?』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4일자 8시 뉴스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의사인 신청인이 환자 진료를 게을리 한다는 환자의 허위 진술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잠입 취재 정신병원에서 무슨 일이?』 제하의 영상 중 자막 일부 삭제 (TBC 홈페이지 2017년 3월 8일자 다시보기면)
2017대구조정 19	(정정청구) 울진군 對 경북투데이
조 정 대 상	『울진군 마을업무 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이장 해임 거부』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7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울진군이 모 이장을 공급횡령 누명을 씌워 사퇴시키고 비리로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현재 이장을 두둔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울진군 마을업무 방해 이장 해임 거부’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9일자 뉴스면)

2017대구조정 20~23	(정정·손배청구) 박○○ 對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20·21) , 인터넷 경북일일신문 ^(22·23)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 『○○ Y금고 이사장 여직원 성추행‘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5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북일일신문 : (1) 『MG새마을금고 ○○ Y지점 이사장, ‘직원 성추행 후, 즐거우면 演戲(?)’』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5일자 경북면) (2) 『○○ 새마을 금고 이사장들 ‘왜 이렇지’ 여직원 성노리개(?)』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9일자 경북면)
신청인 주장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신청인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 『<반론> “○○ Y새마을금고 이사장 여직원 성추행 사실무근” 주장』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9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북일일신문 : 『“MG금고 ○○ Y지점 이사장, 여직원 성추행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30일자 문화면)
2017대구조정 24~36	(각 추후청구) 박○○ 對 연합뉴스 ⁽²⁴⁾ , 뉴시스 ⁽²⁵⁾ , 뉴스1코리아 ⁽²⁶⁾ , 노컷뉴스 ⁽²⁷⁾ , 인터넷 영남일보 ⁽²⁸⁾ , 인터넷 대구일보 ⁽²⁹⁾ , 인터넷 대경일보 ⁽³⁰⁾ , 인터넷 경안일보 ⁽³¹⁾ , 인터넷 경북일보 ⁽³²⁾ , 인터넷 경북매일 ⁽³³⁾ , 인터넷 경북도민일보 ⁽³⁴⁾ , 인터넷 매일신문 ⁽³⁵⁾ , 인터넷 한국일보 ⁽³⁶⁾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합뉴스 : 『포항 검찰, 배값 부풀려 부당 대출 선주 구속』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속보면) (2) 뉴시스 : 『포항 검찰, 배값 부풀려 부당 대출 선주 구속』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대구경북면) (3) 뉴스1코리아 : 『포항~울릉 여객선 부당 대출, 선주 구속』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9일자 사회면) 외 2건 (4) 노컷뉴스 : 『포항 검찰, 배값 부풀려 부당 대출 받은 선주 구속』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지역면) (5) 인터넷 영남일보 : 『포항~울릉 여객선 배값 부풀려 거액 대출』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3일자 사회면) 외 8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배 값을 부풀려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p>2017대구조정 37~40</p>	<p>(각 정정·손배청구) ○○터미널(주) 對 한국일보^(37·38), 인터넷 한국일보^(39·40)</p>
<p>조 정 대 상</p>	<p>(1) 『경북도, 이전대상 터미널을 복합 환승센터로 ...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7년 3월 24일자 18B면, 인터넷 한국일보 3월 23일자 사회면) (2) 『취재파일, ○○시 복합 환승센터, 순서가 틀렸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7년 4월 4일자 12B면, 인터넷 한국일보 4월 3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회사가 추진하는 ○○복합 환승센터 개발사업이 도시개발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당국으로부터 반려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 복합 환승센터』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7년 4월 28일자 13B면, 인터넷 한국일보 4월 27일자 사회면)</p>
<p>2017대구조정 41~43</p>	<p>(정정·반론·손배청구) 김○○ 對 대구MBC-TV</p>
<p>조 정 대 상</p>	<p>(1) 『수성구청, 인쇄물 몰아주기 의혹』 제하의 보도 (2017년 4월 21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 『수성구청 인쇄물, 이상한 수의계약』 제하의 보도 (2017년 4월 24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구청의 인쇄물을 도맡아 제작하는 것이 특혜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p>
<p>2017대구조정 44·45</p>	<p>(정정·손배청구) 이○○ 對 포항MBC-TV</p>
<p>조 정 대 상</p>	<p>(1) 『택배수수료 착취 논란 ... 기준 없어』 제하의 보도 (2017년 4월 4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 『택배기사 처우 열악』 제하의 보도(2017년 4월 5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3) 『“갑질해고”, 택배업계 갈등 증폭』 제하의 보도 (2017년 4월 14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p>
<p>신청인 주장</p>	<p>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택배 기사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택배수수료 ... 기준 없어』 제하의 보도 및 『택배업계 갈등 증폭』 제하의 보도 중 기사 제목과 내용 일부 수정 (인터넷 포항MBC 2017년 5월 12일자 다시보기면)</p>

2017대구조정 46·47	(정정·손배청구) ○○○○○○○○○ 코리아(주) 對 인터넷 경북신문
조 정 대 상	『경주, 실직 근로자 호소‘나몰라라’』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7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하청업체의 각종 계약 위반으로 신청인 회사가 계약해지한 것을 두고 부당한 횡포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경주 ○○○○ 실업사태 원인, 사실과 다르다”』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일자 초기화면)
2017대구조정 48·49	(정정·반론청구) 나경원 對 인터넷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조국 민정수석 모친 체납 공격하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부친 사학 ○○학원은 ○○학원의 100배 체납‘깜짝’』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의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해, 세금을 체납한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나경원 의원 부친 사학 100배 체납”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9일자 정치면)
2017대구조정 50·51	(정정·손배청구) 문경시 對 문경시민신문
조 정 대 상	『문경 관광개발과 문경시 체육회 사태』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8일자 1면)
신청인 주장	문경시가 산하 기관장의 사퇴를 강요하고 신임 기관장 선출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문경 관광개발 및 문경 체육회 사태’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인터넷 문경시민신문 2017년 6월 15일자 초기화면)

2017대구조정 52~55	(각 정정·손배청구) 김재원 對 대구신문 ^(52·53) , 인터넷 대구신문 ^(54·55)
조 정 대 상	『친박 재건? 최경환 내년 경북도지사 출마설』 제하의 기사 (대구신문 2017년 6월 26일자 4면, 인터넷 대구신문 2017년 6월 25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최경환 의원의 막후 조종으로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에 출마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선출』관련 김재원 의원의 반론』 제하의 기사 (대구신문 2017년 7월 10일자 4면, 인터넷 대구신문 2017년 7월 9일자 정치면)
2017대구조정 56	(정정청구) 김성제 對 타임뉴스
조 정 대 상	(1) 『김성제 의왕시장 배우자 사적모임에 관용차량 사용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5일자 정치면) (2) 『의왕시장 배우자의 관용차 사용을 둘러싼 '비선세력'의 개입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9일자 정치면) (3) 『김성제 의왕시장 배우자와 관용차량 '비선세력'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일자 정치면) 외 1건
신청인 주장	의왕시장인 신청인의 아내가 사적모임에 시 소유 관용차량을 이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대구조정 57·58	(정정·손배청구) 남○○ 對 안동MBC-TV
조 정 대 상	『안동 ○○○에서 전통 혼례』 제하의 보도 (2017년 6월 22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전통 혼례 장면을 보도하면서 다른 부부의 이름과 사연을 언급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전통 혼례』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7년 7월 24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17대구조정 59	(정정청구) 최○○ 외 1인 對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교수 2명 짜고 특정 수험생 2명 밀기?』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31일자 9면)
신청인 주장	교수인 신청인들이 편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학생들을 부정 합격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구 모 대학 편입 부정 의혹’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2017년 7월 22일자 8면, 인터넷 매일신문 2017년 7월 27일자 사회면)

2017대구조정 60·61	(반론·손배청구) 문○○ 對 경북투데이
조 정 대 상	『○○군 공무원 공공근로자 머슴처럼 부려 먹고도 큰소리』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공공근로자들을 사적인 일에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공공근로자에게 사적 잡무 시킨 적 없다”○○군 공무원 해명』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30일자 사회면)

2017대구조정 62~65	(각 정정·반론청구) 여○○ 對 대가야신문^(62·63), 인터넷 대가야신문^(64·65)
조 정 대 상	『기자 협회 너거 내 돈 안 쳐 먹은 놈이 어디 있냐』 제하의 기사 (대가야신문 2017년 7월 18일자 3면, 인터넷 대가야신문 2017년 7월 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기자인 신청인들이 지역 업체에 금품과 향응을 요구해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보도거제)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대가야신문 2017년 8월 29일자 5면)

<p>2017대구조정 66~77</p>	<p>(각 정정·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대구MBC-TV</p>
<p>조 정 대 상</p>	<p>(1) 『혐오 영상 노출에 초등생 집단‘충격’』 제하의 보도 (2017년 6월 29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 『혐오 영상이 교육용?』 제하의 보도 (2017년 6월 29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3) 『혐오 영상 노출에 초등생 집단‘충격’』 제하의 보도 (2017년 6월 30일자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4) 『규제 없는 성 소수자 혐오 표현』 제하의 보도 (2017년 7월 7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5) 『충격적 영상으로 성교육 … 2차 피해 호소』 제하의 보도 (2017년 7월 20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외 2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시설이 봉사활동 온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 반대 동영상 시청을 강요해 물의를 빚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초등학생에 혐오 영상 교육’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7년 12월 28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p>

<p>2017대구조정 78, 79</p>	<p>(각 정정청구) 울진군 對 대경일보⁽⁷⁸⁾,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⁷⁹⁾</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경일보 : 『단체장 상도 돈거래, 혈세 반납해야』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6일자 19면) •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 『임광원 울진군수 치적 쌓기에 혈세‘핑핑’』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4일자 지역뉴스면)
<p>신청인 주장</p>	<p>울진군수가 치적 홍보를 위해 돈을 주고 CEO 대상 등을 수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경일보 : 『“군수 치적 홍보 위해 예산 쓴 게 아니다”울진군 해명』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4일자 2면, 인터넷 대경일보 2017년 9월 13일자 사설면) •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 『“군수 치적 홍보 위해 예산 쓴 게 아니다”울진군 해명』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4일자 지역뉴스면)

2017대구조정 80·81	(정정·손배청구) (주)○○ 외 2인 對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1) 『교수와 변호사 깐 시행업체, 포항에 폐기물 위 상가 지어 분양 파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2일자 대구경북면) (2) 『경북 포항 폐기물 위 상가, 포항시 형사 고발 등 검토』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2일자 대구경북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폐기물 매립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포항, 건설 폐기물 위 지어진 상가 분양”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5일자 대구경북면)

2017대구조정 82·83	(정정·반론청구) 임○○ 對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1) 『“새벽에 불러 페인트칠 시켜”○○○○대 교수 갑질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9일자 9면) (2) 『갑질 논란 ○○○○대 교수 이번엔 수강신청 압박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0일자 9면)
신청인 주장	교수인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막말을 일삼고 고가의 사진 장비 구매를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 교수 갑질 논란’관련 담당 교수의 반론』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2017년 10월 13일자 8면, 인터넷 영남일보 10월 13일자 사회면)

2017대구조정 84·85	(정정·손배청구) 문○○ 對 경북투데이
조 정 대 상	『○○군 공공 근로사업 개인정보 보호 내세워 정보 공개 거부』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공공 근로 담당 공무원인 신청인이 근로자들에게 부당 노동과 무단 벌목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p>2017대구조정 86·87</p>	<p>(정정·손배청구) 박○○ 對 대구신문</p>
<p>조 정 대 상</p>	<p>『자금 세탁·성추행에도 상근 감사 눈 질끈』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2일자 11면)</p>
<p>신청인 주장</p>	<p>감사인 신청인이 소속 은행 내부 비자금 사건과 여직원 성추행 사건 등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은행 상근 감사 무용론’기사에 대한 박○○ 감사의 반론』 제하의 기사 (대구신문 2017년 10월 27일자 11면, 인터넷 대구신문 10월 26일자 경제면)</p>
<p>2017대구조정 88~97, 99~106</p>	<p>(각 정정·손배청구) 최○○ 對 대구MBC-TV⁽⁸⁸⁻⁸⁹⁾, 매일신문⁽⁹⁰⁻⁹¹⁾, 영남일보⁽⁹²⁻⁹³⁾, 경북도민일보⁽⁹⁴⁻⁹⁵⁾,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⁹⁶⁻⁹⁷⁾, 연합뉴스⁽⁹⁹⁻¹⁰⁰⁾, 뉴스1코리아⁽¹⁰¹⁻¹⁰²⁾, 뉴시스⁽¹⁰³⁻¹⁰⁴⁾, 국제 뉴스⁽¹⁰⁵⁻¹⁰⁶⁾</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MBC-TV : 『○○○중앙회 ○○ 지부 직원 4명 입건』 제하의 보도 (2017년 4월 19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 매일신문 : 『‘갑질’○○○중앙회 직원 4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0일자 8면) • 영남일보 : 『공갈로 외식 업주들 돈 뜯던 남자 구속영장 기각 ... 또 찾아온 공포』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0일자 8면) • 경북도민일보 : 『“회비 안내면 신고”... ○○○중앙회 직원 4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0일자 사회면) •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 『수성경찰서, 음식점 상대 가입비 갈취범 검거』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0일자 사회면) 외 4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개업 음식점을 다니며 ○○○ 협회 가입을 강요하고 가입비를 뜯어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불성립결정</p>
<p>2017대구조정 107</p>	<p>(정정·손배청구) ○○○○○중앙회 ○○지회 ○○○○지부 對 경북매일</p>
<p>조 정 대 상</p>	<p>『훈탁했던 지부장 선거 법정 다툼‘마무리’』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8일자 5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단체의 단체장 선거 결과에 대해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데도 단체장이 확정됐다고 잘못 보도했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 ○○ 전임 지부장 항소』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북매일 2017년 11월 17일자 사회면)</p>

2017대구조정 108·109	(정정·손배청구) 김석기 對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경주 선출직 탈원전 침묵, 여론에 못매』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0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산자부 장관과 경주 시민간의 원전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신청인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이슈 인터뷰]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4일자 4면)

2017대구조정 110	(정정청구) ○○○○○○(주) 對 경북매일
조 정 대 상	(1) 『중국산 주철 뚜껑 납품 비리 의혹 철저 규명을』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6일자 19면) (2) 『중국산 저가 주철 뚜껑 앞뒷면에는‘KOREA’』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0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저가의 중국산 주철 뚜껑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중국산 주철 뚜껑 납품 사실 없다”P사 해명』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북매일 2017년 11월 17일자 경제면)

2017대구조정 111·112	(정정·손배청구) ○○개발(주) 對 경북일보
조 정 대 상	(1) 『남의 땅 갖고 분양 홍보하는 서울 건설업체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1일자 사회면) (2) 『대구 광장○○ 복합시설 사기 분양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9일자 사회면) (3) 『광장○○ & 불법 묵인하는 대구 서구청』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2일자 사회면) (4) 『광장○○ & 사전 분양 의혹 내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진행 중인 상가 사전 청약자 모집을 불법 사기 분양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광장○○ 사기분양’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경북일보 2017년 12월 1일자 5면, 인터넷 경북일보 2017년 11월 30일자 사회면)

2017대구조정 113, 114	(각 정정청구) (주)○○○○○○○ 對 대구일보 ⁽¹¹³⁾ , 대구신문 ⁽¹¹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일보 : (1) 『○○오거리 ○○프라자 공사 재개 진통』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8일자 5면) (2) 『○○오거리 ○○프라자 분쟁 일단락』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4일자 13면) • 대구신문 : 『○○동 ○○프라자 분쟁 마침내 일단락』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9일자 1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소유권 분쟁중인 건물을 법적 권리도 없이 불법 점유해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일보 : 『‘○○오거리 ○○프라자’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대구일보 2017년 12월 5일자 13면, 인터넷 대구일보 2017년 12월 4일자 경제면) • 대구신문 : 『‘○○오거리 ○○프라자’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대구신문 2017년 12월 1일자 11면, 인터넷 대구신문 2017년 12월 1일자 경제면)

4. 광주증재부

2017광주조정 1	(반론청구) ○○홍삼(주) 對 전남인터넷신문
조 정 대 상	『무허가 홍삼 농축액 제품 회수 조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한 홍삼 제품이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광주조정 2·3	(추후·손배청구) 정○○ 對 한국매일
조 정 대 상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노린 형제 보험 사기단 검거』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칼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교통사고로 위장한 보험 사기로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됐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형제 위장 교통사고 보험 사기”무혐의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4일자 사회면)
2017광주조정 4~7	(각 정정·손배청구) 전○○ 對 KBC-TV ^(4·5) , 인터넷 KBC ^(6·7)
조 정 대 상	『연회비만 수백 만 원. 결혼 정보업체 피해 속출』 제하의 보도 (KBC-TV 2016년 12월 23일자 8시뉴스 프로그램, 인터넷 KBC 2016년 12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결혼 정보업체가 고객과 계약을 부실하게 작성하고 정당한 환불요구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연회비 수백 만 원, 결혼 정보업체 피해 속출”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KBC-TV 2017년 2월 24일자 저녁뉴스 프로그램, 인터넷 KBC 2017년 2월 24일자 저녁뉴스면)

<p>2017광주조정 8~11</p>	<p>(각 정정·손배청구) 정○○ 對 광주MBC-TV^(8·9), 인터넷 광주MBC^(10·11)</p>
<p>조 정 대 상</p>	<p>『광주시 산하 기관도 납품 비리, 전비서관 체포』 제하의 보도 (광주MBC-TV 2016년 12월 1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17년 12월 2일자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인터넷 광주MBC 2017년 12월 1일자, 2017년 12월 2일자 각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광주시 산하 기관장 재직 시 가구 구매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불성립결정</p>
<p>2017광주조정 12, 13</p>	<p>(각 정정청구) 장성군 對 장성군민신문⁽¹²⁾, 인터넷 장성군민신문⁽¹³⁾</p>
<p>조 정 대 상</p>	<p>『평동 포사격장 장성 이전 현실 되나? 장성군, 물밑 협상』의혹에도 깜깜이 행정』 제하의 기사 (장성군민신문 2017년 3월 6일자 1면, 인터넷 장성군민신문 2017년 3월 6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장성군이 포사격장의 장성 이전을 관계 부처와 협상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포 사격장 장성 이전?’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장성군민신문 2017년 4월 24일자 1면, 인터넷 장성군민신문 2017년 4월 24일자 사회종합면)</p>
<p>2017광주조정 14~17</p>	<p>(각 정정·손배청구) 배○○ 對 새목포일보^(14·15), 인터넷 새목포일보^(16·17)</p>
<p>조 정 대 상</p>	<p>『아파트 허가 두번 반려 허가 승인 두번 설계 변경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새목포일보 2017년 3월 22일자 1면, 인터넷 새목포일보 2017년 3월 22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시장 권한 대행 시절 두 번씩이나 반려되었던 아파트 건축을 허가하고 설계 변경을 승인하는 등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불성립결정</p>

2017광주조정 18, 19	(각 정정청구) 담양군 對 광주타임즈 ⁽¹⁸⁾ , 인터넷 광주타임즈 ⁽¹⁹⁾
조 정 대 상	(1) 『담양군, 불법 전원주택 단지 조성 목인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광주타임즈 2017년 1월 4일자 1면, 인터넷 광주타임즈 2017년 1월 3일자 뉴스면) (2) 『담양 전원주택 단지 불편법 의혹 투성』 제하의 기사 (광주타임즈 2017년 1월 9일자 1면, 인터넷 광주타임즈 2017년 1월 8일자 뉴스면) (3) 『담양군, 불법 전원주택단지 조성 강 건너 불구경』 제하의 기사 (광주타임즈 2017년 1월 16일자 1면, 인터넷 광주타임즈 2017년 1월 15일자 뉴스면) (4) 『담양군, 불법 전원주택 단지 조성 수수방관』 제하의 기사 (광주타임즈 2017년 3월 30일자 1면, 인터넷 광주타임즈 2017년 3월 2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담양군이 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을 목인하고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담양군, 불법 전원주택 단지 조성 목인‘특혜 의혹’”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광주타임즈 2017년 4월 24일자 1면, 인터넷 광주타임즈 4월 23일자 단독뉴스면)
2017광주조정 20·21	(정정·손배청구) 김○○ 對 지자체닷컴
조 정 대 상	『제 1회 빛고을 ○○ 빛 축제 18일 전야제』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빛고을 ○○ 빛 축제”관련 기사에 행사와 무관한 신청인이 주재하는 회의 사진을 무단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광주조정 22, 25	(각 정정청구) (주)○○건설 對 인터넷 투데이영광
조 정 대 상	『회사 빛 대신 값아야 등기 이전 가능?』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1일자 자치행정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등기 이전과 하자보수 문제 등으로 주택 사기분양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7광주조정 23·24	(정정·손배청구) ○○○○○○○○○축제조직위원회 외 1인 對 지자체닷컴
조 정 대 상	『시민 한마당 축제 되도록 하겠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6일자 문화생활면)
신청인 주장	모 축제를 행사 주최 측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사실은 신청인들이 기획해 저작권 등록을 마친 행사계획서를 표절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광주조정 26	(정정청구) 나경원 對 인터넷 전남일보
조 정 대 상	『文 대통령 숙전 속결 처리에 깜짝』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5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에서 법정 부담금을 미납한 것이 불법 체납이라는 취지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나경원 부친 운영 사학재단 법정 부담금 체납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6일자 정치면)
2017광주조정 27	(정정청구) 광주광역시 동구 對 일등방송
조 정 대 상	『제 14회 추억의 총장 축제 준비 단계부터 삐걱』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5일자 시사/인권면)
신청인 주장	지역축제 대행사 선정을 위한 광주 동구청의 평가위원 선정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제14회 추억의 총장 축제 준비 단계부터 삐걱』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7년 5월 27일자 시사/인권면)

2017광주조정 28·29, 34·35	(각 정정·손배청구) 정○○ 對 인터넷 광주타임즈 ^(28·29) , 광주타임즈 ^(34·35)
조 정 대 상	『○○군 전원주택 단지‘논란의 연속’』 제하의 기사 (광주타임즈 2017년 5월 30일자 1면, 인터넷 광주타임즈 5월 29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다세대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해 분양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타임즈 : 『“○○군 전원주택 단지‘논란의 연속’”관련 정정보도문 ○○면 ○○리 주택단지, 50세대 분양과 무관』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6일자 1면) 인터넷 광주타임즈 : 『○○군 전원주택 단지‘논란의 연속’○○골·○○리 단지 감사원 감사 … 道 감사서도 지적』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일부 삭제(2017년 5월 29일자 담양면)
2017광주조정 30, 31	(각 정정청구) 순천시의회 對 시사21 ⁽³⁰⁾ , 더한국타임즈 ⁽³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사21 : 『순천시의회 내분 … 갈등 폭발 5분 전』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30일자 정치/행정면) 더한국타임즈 : 『순천시의회 내분 격화 … 갈등 폭발 5분 전』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30일자 정치/행정면)
신청인 주장	순천시의회 규정상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거치면 상임 위원장의 본회의 심사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보도개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사21 : 『“순천시의회 내분, 갈등 폭발 5분 전”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5일자 정치면) 더한국타임즈 : 『“순천시의회 내분 격화 … 갈등 폭발 5분 전”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4일자 정치/경제면)
2017광주조정 32, 33	(각 정정청구) 여수시 對 한국일보 ⁽³²⁾ , 인터넷 한국일보 ⁽³³⁾
조 정 대 상	『여수 상포매립지 개발 정관계 로비 자금 정황』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7년 6월 5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2017년 6월 4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 공무원들이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광주조정 36	(정정청구) 최 ○ 對 이데이뉴스
조 정 대 상	『국정농단 사태 2017 브리핑』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재직 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유지 관리에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광주조정 37	(정정청구) 한○○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8세 여아, 유치원 교사에게 폭행당한 후 스트레스성 발작』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2일자 최신기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교사가 아동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7광주조정 38·39	(정정·손배청구) 오○○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경찰 여성 간부, 남성과 1박 2일 여행 갔다가“뇌물 수수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 간부인 신청인이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광주조정 40	(정정청구) 강○○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광주 지역 A 경찰서장, 전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와 수 십 차례 골프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서장인 신청인이 경찰 출신 변호사와 수십 차례에 걸쳐 골프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광주 지역 A 경찰서장, 전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와 수 십 차례 골프 논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일자 사회면)

2017광주조정 41	(반론청구) ○○○○영농조합법인 對 목포KBS-1TV
조 정 대 상	『음식물 폐수도 무단 방류“괘괘”병아리도 처리』 제하의 보도 (2017년 8월 1일자 뉴스9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채소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사실보도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음)
2017광주조정 42	(정정청구) 장성군 對 장성닷컴
조 정 대 상	『공공 실버주택 기공식, 내·외빈 100명 넘게 소개 ‘짜증’』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장성군에서 전국 최초로 공공 실버주택 기공식을 가졌다는 장성군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장성군 공공 실버주택 기공식’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5일자 정치면)
2017광주조정 43~46	(각 정정·손배청구) 문○○ 對 목포MBC-TV ^(43·44) , 여수MBC-TV ^(45·46)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포MBC-TV : 『이번엔 초교 수영부 ... 또 운동부 폭행』 제하의 보도 (2017년 8월 18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여수MBC-TV : 『이번엔 초교 수영부 ... 또 운동부 폭행』 제하의 보도 (2017년 8월 19일자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수영 코치인 신청인이 어린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포MBC-TV : 『‘초교 수영부 폭행 의혹’ 진실 공방으로 이어져』 제하의 보도 (2017년 9월 2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여수MBC-TV : 『‘초교 수영부 폭행 의혹’ 진실 공방으로 이어져』 제하의 보도 (2017년 9월 2일자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17광주조정 47		(추후청구) 손○○ 對 KBC-TV
조 정 대 상	『[탐사-in]신용장 사기... 기업들 잇단 피해』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28일자 8시뉴스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신용장 사기를 벌였다고 보도됐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추후보도] ○○○○홀딩스 신용장 사기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7년 9월 13일자 저녁뉴스 프로그램)	
2017광주조정 48·49		(정정·손배청구) (주)○○ 對 CMB광주방송
조 정 대 상	『거래처 끊기, 영업 방해 ... 소규모 프랜차이즈 갑질』 제하의 보도 (2017년 8월 31일자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비슷한 가게를 운영하는 청년 업주의 영업을 방해하는 횡포를 부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거래처 끊기, 영업 방해 ... 소규모 프랜차이즈 갑질”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7년 9월 14일자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2017광주조정 50~54		(정정·반론·손배청구) 담양군 對 KBS-1TV ⁽⁵⁰⁻⁵²⁾ (정정·반론청구) 광주KBS-1TV ⁽⁵³⁻⁵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담양군 메타길 입장료 ‘위법’』 제하의 보도 (2017년 8월 19일자 9시뉴스 프로그램) • 광주KBS-1TV : 『담양 메타길 입장료 조례 ...“알고보니 아예 무효?”』 제하의 보도 (2017년 8월 28일자 9시뉴스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담양군이 법령 근거도 없이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 입장료를 징수하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광주조정 55	(정정청구) (학)○○학원 對 광주일보
조 정 대 상	『사립 중학교 징계 폭탄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4일자 6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법인이 소속 중학교 교사에게 여러 건의 징계를 한 것이 해당 교사가 학교법인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사립 중학교 징계 폭탄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6일자 6면)
2017광주조정 56·57	(정정·손배청구) ○○○산림조합 對 예향진도신문
조 정 대 상	『군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 ○○장례식장의 약속』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8일자 7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용품 계약업체로부터 수수료와 소개비를 받아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광주조정 58, 59	(각 정정청구) 장성군 對 정성시민연대 소식지
조 정 대 상	(1) 『산 정상에 돈사가 웬말이냐? 환경법 무시, 불법 공사 진행』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3일자 1면) (2) 『반대위, “가축사육 제한거리 확대”조례 개정 요구도』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3일자 2면) (3) 『사라진 주차장』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3일자 3면)
신청인 주장	장성군이 산 정상에 돼지 축사 신축을 허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산 정상에 돈사가 웬 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21일자 1면)

2017광주조정 60, 61	(각 정정청구) (주)○○건설 對 전남매일 ⁽⁶⁰⁾ , 인터넷 전남매일 ⁽⁶¹⁾
조 정 대 상	『○○건설 아파트 관리비 이중징수“말뽕”』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7년 10월 10일자 9면, 인터넷 전남매일 2017년 10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아파트 수선유지비를 입주민들에게 이중으로 부과하고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건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7년 10월 20일자 8면, 인터넷 전남매일 2017년 10월 20일자 사회면)
2017광주조정 62	(정정청구) 광산구 對 에버뉴스
조 정 대 상	『광산구청 공무원 5~6명이 60대 통장 집단 폭행 … 구청장“난 몰라”』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5일자 사회복지면)
신청인 주장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통장단 협의회 행사 강제 참석에 불만을 토로하는 통장을 집단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광주조정 63~66	(각 정정청구) ○○○○○○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對 광주드림 ⁽⁶³⁾ , 인터넷 광주드림 ⁽⁶⁴⁾ , 전남일보 ⁽⁶⁵⁾ , 인터넷 전남일보 ⁽⁶⁶⁾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드림 : 『○○○생활, 부당 노동행위, 산재·성추행 은폐 의혹』 제하의 기사 (광주드림 2017년 10월 25일자 5면, 인터넷 광주드림 2017년 10월 23일자 시민&자치면) 전남일보 : 『○○○노동권 침해·채용 박람회 실효성 집중 추궁』 제하의 기사 (전남일보 2017년 10월 24일자 13면, 인터넷 전남일보 2017년 10월 24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부당 노동행위를 반복하고 산업 재해를 은폐했으며 성추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조정성립 (전남일보, 인터넷 전남일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각 취하 (광주드림, 인터넷 광주드림/ 사유 : 보도거제)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광주드림 : 『○○○생활 “○○○○○○○파크는 ○○○생활과 관련 없어” 의혹 제기엔 반박 기자 회견』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4일자 시민&자치면) 전남일보 : 『알려왔습니다 ‘○○○, 노동권 침해’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1일자 12면, 인터넷 전남일보 11월 21일자 경제면)

2017광주조정 67·68	(정정·손배청구) 신○○ 對 뉴스창
조 정 대 상	『광주○○○○수련원 후보지 고흥군 선정 과정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문제』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5일자 사회종합면)
신청인 주장	광주○○○○수련원 후보지 선정 관련, 공무원인 신청인의 발언을 왜곡 편집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광주조정 69, 70	(각 정정청구) 최○○ 對 목포투데이 ⁽⁶⁹⁾ , 인터넷 목포투데이 ⁽⁷⁰⁾
조 정 대 상	『○○○교회, 밀린 용역비 요구 집회』 제하의 기사 (목포투데이 2017년 11월 8일자 3면, 인터넷 목포투데이 2017년 11월 8일자 종교면)
신청인 주장	교회 장로인 신청인이 목사를 내쫓고 교회 일을 도와준 사람들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교회, 밀린 용역비 요구 집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6일자 3면, 인터넷 목포투데이 2017년 12월 6일자 종교면)
2017광주조정 71~74	(각 정정·반론청구) 신안군 對 남도일보 ^(71·72) , 인터넷 남도일보 ^(73·74)
조 정 대 상	『신안군 인사 또 파열음에 선거용(?)‘비아냥’』 제하의 기사 (남도일보 2017년 11월 6일자 13면, 인터넷 남도일보 11월 5일자 신안면)
신청인 주장	신안군의 비서실장 및 6급 인사가 2018년 지방 선거를 대비한 인사이고 원칙도 없는 인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신안군 인사 또 파열음』 제하로 제목 및 신청인 관련 내용 수정(인터넷 남도일보 2017년 11월 5일자 신안면)

<p>2017광주조정 75</p>	<p>(정정청구) 광양시 對 아시아뉴스통신</p>
<p>조 정 대 상</p>	<p>『광양시, 토착 비리 연결 고리 끊지 못한다? ... 市, 인·허가“상식아 어디갔나?”』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6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광양시가 대기오염 배출 기준을 초과한 아스콘 공장 증축을 불법 승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반론 및 사과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광양시, 토착 비리 연결 고리 못 끊나?”관련 반론 및 유감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7일자 사회일반면)</p>
<p>2017광주조정 76</p>	<p>(정정청구) 고흥군 對 뉴스창</p>
<p>조 정 대 상</p>	<p>『고흥군 개인 농지에 군비 들어 석축 공사, 공유수면 불법 매립 특정인을 위한 특혜 의혹 의심돼』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0일자 사회종합면)</p>
<p>신청인 주장</p>	<p>고흥군이 해안에 석축을 쌓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이 특정인들을 위한 특혜 사업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불성립결정</p>
<p>2017광주조정 77</p>	<p>(정정청구) 황○○ 對 아침신문</p>
<p>조 정 대 상</p>	<p>『정춘숙 의원, ○○ ‘길라임 간호사’가 국립 중앙의료원에? 안 원장 동생은 운전기사, 전 비서관은 진료 행정실장』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4일자 국회면)</p>
<p>신청인 주장</p>	<p>국립의료원 의사인 신청인이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원장 남편과의 개인적 인연으로 재임용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기사수정)</p>
<p>이 행 결 과</p>	<p>『정춘숙 의원, ○○ ‘길라임 간호사’가 국립 중앙의료원에? 안 원장 동생은 운전기사, 전 비서관은 진료 행정실장』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부분 삭제 (2017년 10월 4일자 국회면)</p>

2017광주조정 78	(정정청구) ○○초등학교 對 데일리모닝
조 정 대 상	『여수 한 초등학교, 학교 폭력 처리‘오락가락’... 교장 등‘피소’』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가 폭력 행위 축소를 중용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붙이는 등 학교 폭력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광주조정 79·80	(정정·손배청구) 조○○ 對 화순자치뉴스
조 정 대 상	『화순군 청렴도 곤두박질 이유는? 각종 부당 불법 행위에 구충곤 군수 선거법 위반까지 다사다난』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1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화순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화순군 관용 차량 및 군내 경로당 보험계약을 싹쓸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 및 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화순군 청렴도 곤두박질 이유?’관련 반론 및 사과보도』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12일자 사회면)
2017광주조정 81	(추후청구) 남○○ 對 인터넷 신안신문
조 정 대 상	『박우량 전 군수 더불어민주당 복당』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6일자 지방선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전 신안군수를 비방한 혐의로 고소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7광주조정 82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광주매일신문
조 정 대 상	『한국○○○○○ ○○○○ 오피스텔 ‘○○○○○빌’ 1+1 분양』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1일자 광주전남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오피스텔을 1+1 분양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5. 대전중재부

2017대전조정 1	(정정청구) 이○○ 對 인터넷 중도일보
조 정 대 상	『이○○ “3억받은 반기문 웃긴다”... 누리꾼들은 “직무유기 수사, 검찰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6일자 사회교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정정 보도문]‘반기문 돈 수수 의혹에 관한 이○○의 발언’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3일자 사회면)
2017대전조정 2	(정정청구) 이○○ 對 인터넷 대전일보
조 정 대 상	『○○대 한 학과 여성 혐오 논란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학 학생회장인 신청인이 여성 비하로 비난받았던 웹툰 작가를 대학 학술제에 초청한 것에 대한 학생들의 해명 요구를 묵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 차단)
2017대전조정 3	(반론청구) (주)○○○○ 對 세종nTV
조 정 대 상	『현대적으로 해석한 전통공예 패키지 기획전, ○○○ 개최』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6일자 사회복지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기획하여 개최한 전통공예기술에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작품 전시회를 문화재청이 기획한 행사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대전조정 4·5	(정정·손배청구) 이○○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경찰 교통사고 가·피해자 뒤바꿔치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조사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경찰 교통사고 가·피해자 뒤바꿔치기 의혹’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0일자 사회면)

2017대전조정 6, 7	(각 반론청구) (주)○○○○○○클럽 對 인터넷 대전투데이 ⁽⁶⁾ , 인터넷 대전일보 ⁽⁷⁾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대전투데이 : 『한국소비자원, “○○○○ 정보 서비스 ‘○○○○투자클럽’ 소비자 피해 주의』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7일자 사회면) 인터넷 대전일보 : 『한국소비자원, “○○○○ 정보 서비스 ‘○○○○투자클럽’ 소비자 피해 주의』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회원들의 회비 환불 요구를 거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하 (인터넷 대전투데이/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기각 (인터넷 대전일보/사유 : 요구하는 보도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함)

2017대전조정 8	(정정청구) 김○○ 對 TJB-TV
조 정 대 상	『국립대 교수 채용 중복 게재 의혹 “시끌시끌”』 제하의 보도 (2017년 3월 8일자 8시뉴스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교수인 신청인이 논문을 표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대전조정 9~12	(각 추후·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중도일보 ^(9~12)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료 의원 ○○촬영 시의원 …“남성 보형물 수술 잘 됐나 보려고”…』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5일자 정치면) 『동료 시의원 핸드폰으로 ○○촬영 혐의…항소심 무죄』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기초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동료 의원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 전화로 찍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대전조정 13, 18·19	(정정청구) 문○○ 對 신세계뉴스통신 ⁽¹³⁾ (정정·손배청구) 문○○ 對 인터넷 충청투데이 ^(18·19)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세계뉴스통신 : 『국회서 역주행 인명 사고 낸 공군 대위 긴급 체포』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충청투데이 : 『국회서 역주행해 직원 친 공군 대위 ... 음주 측정도 거부』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국회에서 역주행을 제지하던 방호원을 차로 치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하 (신세계뉴스통신/사유 : 관할변경) • 취하간주 (인터넷 충청투데이)
2017대전조정 14~16	(각 정정청구) 심○○ 對 인터넷 대전일보 ⁽¹⁴⁾ , 인터넷 굿모닝충청 ⁽¹⁵⁾ , 대전MBC-TV ⁽¹⁶⁾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대전일보 : 『○○ 초등학교사 ‘피 묻은 비둘기’로 아동학대 충격』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1일자 사회면) • 인터넷 굿모닝충청 : 『‘피흘리는 비둘기 들고’... ○○ 초교 여교사 이상 행동』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0일자 사회면) • 대전MBC-TV : 『엽기 여교사 충격, 직위 해제 검토』 제하의 보도 (2017년 3월 31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피 흘리는 비둘기를 들고 학교를 돌아다니는 등 기이한 행동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7대전조정 17	(정정청구) 세종도시교통공사 對 인터넷 세종포스트
조정 대상	『세종교통공사, 이번엔 운전원 졸속 채용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3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사의 시내버스 운전원 채용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대전조정 20	(정정청구) 권○○ 對 인터넷 금강일보
조 정 대 상	(1) 『유병언 딸, 유○○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 최종 확정』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일자 문화면) (2) 『정유라 이어 3년 버틴 유○○도 송환 … 새 정부 출범 효과?』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일자 정치면) (3) 『정유라 아들과 유○○, 7일 오후 3시께 입국 … 검찰, 정씨 부모 참고인 조사 검토』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남편인 고 유병언씨가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대전조정 21, 22	(각 정정청구) 박○○ 對 충남일보 ⁽²¹⁾ , 인터넷 충남일보 ⁽²²⁾
조 정 대 상	『세종○○○○공사, 어용 노조‘논란’윤○○·이○○ 시의원‘어용 노조’발언 경찰에 고발』 제하의 기사 (충남일보 2017년 6월 28일자 1면, 인터넷 충남일보 6월 28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조가 어용 노조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7대전조정 23~36	(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뉴스파고 ^(23·24) , 인터넷 대전투데이 ^(25·26) , 미래세종일보 ^(27·28) , 인터넷 세종매일 ^(29·30) , 세종의 소리 ^(31·32) , 인터넷 세종포스트 ^(33·34) , 인터넷 충청투데이 ^(35·36)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파고 : 『“○○○○운동연합, ○○면 벽돌공장 공사중단 및 감사 촉구』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0일자 사회면) • 인터넷 대전투데이 : 『“청정 지역 ○○면에 웬 벽돌공장 환경 단체‘반발’』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0일자 사회면) • 미래세종일보 : 『“세종 ○○면 보도블럭 공장 공장 인허가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7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세종매일 : 『세종시, 벽돌공장 건립‘밀실행정’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2일자 사회면) 외 1건 • 세종의소리 : 『“나도 모르는 사이 공장이…” 어이없는 세종시 행정』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5일자 사회면) 외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세종포스트 : 『세종시 벽돌공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0일자 사회면) • 인터넷 충청투데이 : 『○○○○운동연합,“○○ 벽돌공장 공사 중단해야”』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벽돌공장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허가 이전에 불법 착공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취하 (뉴스파고, 인터넷 세종매일, 세종의소리, 인터넷 세종포스트/사유 : 보도게재, 인터넷 대전투데이, 인터넷 충청투데이/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미래세종일보/사유 : 피신청인 사과)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파고 : 『이와 관련 보도 이후 (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해 왔다』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0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세종매일 : 『[세종시, 벽돌공장 건립‘밀실 행정’논란] 관련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5일자 사회면) • 세종의소리 : 『○○면 보도블럭 공장 논란, 새로운 국면 맞아』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세종포스트 : 『세종시 ○○면 벽돌공장 논란을 둘러싼 진실』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0일자 데스크칼럼면)
2017대전조정 37~42	(각 정정·손배청구) 민○○ 對 뉴스세종 ^(37·38) , 세종매일 ^(39·40) , 미래세종일보 ^(41·42)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세종 : 『○○시 간부 공무원 부인 ... 시장 측근 상가 소유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5일자 사회면) • 세종매일 : 『○○시 간부 공무원 부인 ... 시장 측근 상가 소유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5일자 사회면) • 미래세종일보 : 『○○시 간부 공무원 부인도 시장 측근 상가 2채‘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8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시 간부인 신청인의 아내가 시장 측근 인사 소유의 건물 상가를 분양 받은 것이 특혜나 비리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대전조정 43·44	(정정·손배청구) ○○○○○○변영희 對 대전일보
조 정 대 상	『대전 ○○전자타운 7년 짜 법적 다툼만 ... 지역 경제 애물단지 전략』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5일자 8면)
신청인 주장	모 전자타운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1백건 이상에 달하는 법적 분쟁으로 지역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제 2 도약 나선 ○○전자타운 ... 온라인 시장 활로 개척』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8일자 9면)

2017대전조정 45·46	(정정·손배청구) 안○○ 對 충청신문
조 정 대 상	『‘나 홀로 의정연수’ 연수냐, 여행이나』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7일자 5면)
신청인 주장	기초의회 의원인 신청인의 정당한 공무 출장을 사적 여행인 것처럼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대전조정 47·48	(정정·손배청구) 박○○ 對 TJB-TV
조 정 대 상	(1) 『박○○ 사장 근무 태만 심각 ... 부실 감사 논란』 제하의 보도 (2017년 7월 6일자 8시뉴스 프로그램) (2) 『3주째 병가 ... 알고보니 나이롱 환자?』 제하의 보도 (2017년 7월 10일자 8시뉴스 프로그램) (3) 『박○○ ○○도시공사 사장 즉각 해임 촉구 봇물』 제하의 보도 (2017년 7월 11일자 8시뉴스 프로그램) 외 3건
신청인 주장	지방 공사 사장인 신청인이 가짜 병가를 내는 등 근무 태만이 심각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대전조정 49	(정정청구) 박○○ 對 인터넷 대전일보
조 정 대 상	『대전 유성구 모 아파트 시설 기사 폭행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 기사를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대전 ○○구 모 아파트 시설 기사 폭행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6일자 사회면)
2017대전조정 50	(정정청구) (주)○○○○○ 對 금강일보
조 정 대 상	『문재인, 김○○·김△△ 압박?』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7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 대표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과의 인연 때문에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으며, 부도덕한 기업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문재인, 김○○·김△△ 압박?”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0일자 정치면)
2017대전조정 51, 52	(각 반론청구) (주)○○○코리아 對 대전뉴스
조 정 대 상	(1) 『임○○ 회장·○○○, 누가 돕나? 권선택 시장·장○○ 목사 등 유력 인사 앞세워 홍보』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6일자 사회면) (2) 『전○○·최○○ 투 톱 ... 임○○ 회장은 ○○정보기술 출신』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유력인사를 회사 홍보 도구로 악용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대전조정 53	(정정청구) 오○○ 對 대전뉴스
조 정 대 상	『○○인권센터 자중지란』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참여하고 있는 인권단체 대표 재신임 안건 상정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대전조정 54~57	(각 정정·손배청구) 최○○ 외 1인 對 뉴스티앤티 ^(54~57)
조 정 대 상	(1)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 vs “의도적 음해”』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2일자 교육면) (2)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 A 대학 경찰 수사 착수 … 소속 K 교수 ‘갑질’ 의혹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6일자 사회/교육면)
신청인 주장	모 대학이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대전조정 58·59	(정정·손배청구) 김○○ 對 뉴스티앤티
조 정 대 상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 A 대학 경찰 수사 착수…소속 K 교수 ‘갑질’ 의혹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6일자 사회/교육면)
신청인 주장	교수인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를 만들게 하고 논문을 대필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대전조정 60~63	(정정·손배청구) 박○○ 對 보령뉴스 ^(60·61) , 주간보령 ^(62·63)
조 정 대 상	• 보령뉴스 : 『○○수협, ○ 일보 ○ 기자로부터 협박당해』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6일자 경제/사회면) • 주간보령 : 『○○수협, ○ 일보 ○ 기자로부터 협박당해』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7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기자인 신청인이 모 수협 측에 선물을 요구하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대전조정 64~67, 69, 70	(각 정정청구) 조○○ 對 연합뉴스 ⁽⁶⁴⁾ , 디트news24 ⁽⁶⁵⁾ , 인터넷 금강일보 ⁽⁶⁶⁾ , 인터넷 중도일보 ⁽⁶⁷⁾ , CJ헬로비전 충남방송 ⁽⁶⁹⁾ , 인터넷 CJ헬로비전 ⁽⁷⁰⁾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30분 지각에 1만원 삭감’... 알바생에게 욕설·폭언한 업주』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9일자 최신기사면) • 디트news24 : 『○○청소년인권센터“청소년 고용 악덕 사업주 엄중 처벌해야”』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9일자 사회면) • 인터넷 금강일보 : 『“청소년 알바 30분 지각에 벌금 1만원 욕설·폭언한 악덕 고용주 엄중 처벌을”』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9일자 사회면) • 인터넷 중도일보 : 『30분 지각 1만원, 하루 결근 20만원』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9일자 충남/내포면) • CJ헬로비전 충남방송 : 이슈투데이 충남 프로그램 『‘인권 사각지대 놓인 청소년 알바생 ... 대책은?’』 제하의 보도 (2017년 9월 27일자, 인터넷 CJ헬로비전 9월 27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식당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아르바이트생이 지각하면 급여를 삭감하고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연합뉴스/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 각 취하 (디트news24, 인터넷 금강일보, CJ헬로비전 충남방송, 인터넷 CJ헬로비전/ 사유 : 보도게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중도일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30분 지각에 1만원 삭감’... 알바생에게 욕설·폭언한 업주』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수정 (2017년 9월 19일자 최신기사면) • 디트news24 : 『○○청소년인권센터“청소년 고용 악덕사업주 엄중 처벌해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4일자 사회면) • 인터넷 금강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4일자 사회면) • 인터넷 중도일보 : 『알려드립니다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26일자 정치면) • 인터넷 CJ헬로비전 :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8년 1월 12일자 다시보기면)

2017대전조정 68	(정정청구) 허○○ 對 충청신문
조 정 대 상	『조선족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집단 따돌림과 성희롱에 구타까지』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수영 코치인 신청인이 수영 강습생인 조선족 초등학생을 구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대전조정 71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세종포스트
조 정 대 상	『○○○○신탁, ○○○○ 오피스텔‘○○○ 리슈빌 1+1 분양’』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7일자 라이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오피스텔을 1+1 분양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6. 경기중재부

2017경기조정 1, 2, 29, 30, 36, 37	(각 정정청구) ○○고등학교 對 기호일보 ⁽¹⁾ , 인터넷 기호일보 ⁽²⁾ , 인터넷 경기신문 ⁽²⁹⁾ , 인터넷 중부일보 ⁽³⁰⁾ (각 반론청구) 기호일보 ⁽³⁶⁾ , 인터넷 기호일보 ⁽³⁷⁾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호일보 : (1) 『검찰, ○○고 교직원 등 소환 인천시 교육감 직권남용 조사』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6일자 18면, 인터넷 기호일보 12월 26일자 사회면) (2) 『지원금 확정도 안됐는데 김치국 마신 ○○고』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5일자 18면, 인터넷 기호일보 11월 25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기신문 : 『○○고 특성화고 전환 예산 보류 두 달만에 ... 허위 내용으로 서명 받고 있어』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일자 인천면) • 인터넷 중부일보 : 『인천시교육청, ○○학원 ‘주민 전단지’ 보니 ‘예산 모두 확보됐다’ 주장』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 교직원들이 소속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기호일보 ⁽¹⁾ , 인터넷 기호일보 ⁽²⁾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기호일보 ⁽³⁶⁾ , 인터넷 기호일보 ⁽³⁷⁾ , 인터넷 경기신문, 인터넷 중부일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호일보 : (1) 『‘검찰, ○○고 교직원 등 소환 인천시 교육감 직권남용 조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7년 1월 23일자 사회면, 인터넷 기호일보 1월 20일자 사회면) (2) 『‘지원금 확정도 안됐는데 김치국 마신 ○○고’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7년 3월 3일자 18면, 인터넷 기호일보 3월 3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기신문 : 『‘○○고 특성화고 전환 예산 모두 두 달 만에 ... ’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4일자 인천면) • 인터넷 중부일보 : 『‘○○학원 주민 전단지 보니 예산 모두 확보됐다 주장’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7일자 사회면)

2017경기조정 3~8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사) ○○○○장애인복지회 ○○시지부 對 하나로신문 ⁽³⁻⁵⁾ , 인터넷 하나로신문 ⁽⁶⁻⁸⁾
조 정 대 상	『장애인 단체 탈법 의혹 증폭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하나로신문 2016년 11월 4일자 4면, 인터넷 하나로신문 2016년 12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지부장의 가족까지 사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사유화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장애인 단체 탈법 일파만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하나로신문 2017년 1월 23일자 사회면, 인터넷 하나로신문 2017년 1월 23일자 사회면)
2017경기조정 9~14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장애인합창단 對 하나로신문 ⁽⁹⁻¹¹⁾ , 인터넷 하나로신문 ⁽¹²⁻¹⁴⁾
조 정 대 상	『○○시 장애인 관련 단체 불법 일벌백계로 근절시켜야 한다』 제하의 기사 (하나로신문 2016년 12월 2일자 1면, 인터넷 하나로신문 2016년 12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후원금과 행사 수익금을 결산내역도 없이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시 장애인 합창단 사랑의 하모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하나로신문 2017년 1월 23일자 사회면, 인터넷 하나로신문 2017년 1월 20일자 사회면)
2017경기조정 15~22	(각 정정·손배청구) 정○○ 對 인천일보 ^(15-16, 19-20) , 인터넷 인천일보 ^(17-18, 21-22)
조 정 대 상	(1) 『주먹 한번 못 뺀어보고‘승부 조작’에 좌절된 꿈』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6년 12월 23일자 1면, 인터넷 인천일보 12월 23일자 사회면) (2) 『○○협회 승부 조작 철저히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6년 12월 26일자 11면) (3) 『전국 체전 ○○도‘승부 조작’』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6년 12월 26일자 1면, 인터넷 인천일보 12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동선수인 딸의 대학 입시를 위해 고등학생 대회의 승부를 조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경기조정 23·24	(추후·손배청구) 정○○ 對 OBS경인TV
조 정 대 상	『일부러 교통사고 내‘블랙박스’로 협박』 제하의 보도 (2017년 4월 25일자 뉴스M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추후보도, 이행강제금) • 조정불성립결정 (손배청구)
이 행 결 과	『일부러 교통사고 내‘블랙박스’로 협박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7일자 뉴스M 프로그램)
2017경기조정 25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여제자 9명 몸 만진 담임교사 입건』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사인 신청인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여제자 8명 몸 만진 혐의로 담임교사 입건』 제하로 제목 수정 (2017년 2월 9일자 사회면)
2017경기조정 26·27	(정정·손배청구) 양기대 對 미디어투데이
조 정 대 상	『광명시“박수 무당”인사 개입 의혹과 진정한“언론인의 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30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시장인 신청인이 공무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인사문제를 무당과 논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경기조정 28	(정정청구) 광명시 외 1인 對 인터넷 중부투데이
조 정 대 상	『광명시 최순실 사건과 같은 것이 이대로 묻혀버리는가』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7일자 및 1월 28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광명시장이 공무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경기조정 31~33	(각 반론청구) ○○○○고속도로○○○○비상대책위원회 對 e시티뉴스⁽³¹⁾, 경기일보⁽³²⁾, 인터넷 경기일보⁽³³⁾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e시티뉴스 : 『광주, 서울~세종 주민갈등만 재양산』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8일자 사회면) 경기일보 : 『‘서울~세종 고속도’ 주민 갈등 심화』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7년 1월 19일자 5면, 인터넷 경기일보 2017년 1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위원회가 고속도로 공사 문제로 지역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e시티뉴스 : 『광주, 서울~세종 주민갈등만 재양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7일자 사회면) 경기일보 : 『‘서울~세종 고속도’ 주민 갈등 심화’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7년 2월 27일자 자치/의정면, 인터넷 경기일보 2017년 2월 24일자 지역종합면)

2017경기조정 34	(추후청구) (주)○○○○○○○ 對 인터넷 팔당유역신문
조 정 대 상	『한강청, 방류 유량계 조작 등 49건 적발』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5일자 팔당환경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불법으로 폐수를 방류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한강청, 방류 유량계 조작 등 49건 적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7년 2월 16일자 팔당환경면)

2017경기조정 35	(정정청구) 박○○ 對 IBS뉴스
조 정 대 상	『부천 ○○단지 개발, 도의‘위법 위반 없음’에 주민소송으로 맞서』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8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포함된 소송인단이 부천시 토지 매각에 반대하는 주민소송의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부천 영상단지 개발, 도의‘위법 위반 없음’에 주민소송으로 맞서’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3일자 사회면)
2017경기조정 38	(정정청구) ○○개발(주) 對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주상복합 건설 막지 말고 학교 증축 수용하라』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9일자 18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용인시 언남지구 주택 건립 사업에서 제외된 상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주상복합 건설 막지 말고 학교 증축 수용하라’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3일자 18면)
2017경기조정 39	(정정청구) (주)○○○○컨소시엄 對 시민PRESS
조 정 대 상	(1) 『양평 군부대 이전 시설 “건축 관련 서류 현장 소각” 기록물 규정 있으나 마나』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31일자 홈페이지면) (2) 『건축물 관서류 “불법 소각” 실태조사, 나서…』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8일자 홈페이지면)
신청인 주장	군부대 이전 공사를 진행 중인 신청인 회사가 군 관련 기밀문서를 소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양평군 군부대 이전 시설 관련 서류 불법 소각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9일자 홈페이지면)

2017경기조정 40~43	(각 반론·손배청구) 오○○ 對 경인일보 ^(40·41) , 인터넷 경기일보 ^(42·43)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인일보 : 『강제 노동·성추행, … 수용소 뺨치는 요양병원』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5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기일보 : 『노예 환자 … 생지옥 병원, 환자들에 세탁 등 노동 강요』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보도계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경인일보 : 『[알려왔습니다] 2017년1월25일자'강제 노동·성추행 … 수용소 뺨치는 요양병원'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8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기일보 : 『[반론보도문] 노예 환자 … 생지옥 병원장 관련』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9일자 사회면)
2017경기조정 44	(정정청구) 의정부시 對 경기매일
조 정 대 상	『의정부시, 경전철 파산 책임 전가“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0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의정부시가 경전철 파산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계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0일자 2면)
2017경기조정 45, 46	(각 추후청구) (주)○○○○○○○ 對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⁴⁵⁾ , IPn뉴스 ⁽⁴⁶⁾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 『폐수 배출업체 절반이 법 위반 … 방류수 유량계 고의 조작 많아』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5일자 홈페이지면) IPn뉴스 : 『한강청, 폐수 유량계 조작업체 43곳 적발』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5일자 홈페이지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폐수를 불법 방류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인터넷 경인종합일보/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IPn뉴스/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한강청, 폐수 유량계 조작업체 43곳 적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IPn뉴스 2017년 3월 13일자 홈페이지면)

2017경기조정 47	(손배청구) 송○○ 對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1) 『16대 1 뚫은 ○○복지재단 대표 무면허·음주운전 전과』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9일자 정치면) (2) 『고○○ ○○복지재단 대표 내정자 도의원 때 ‘노숙자 둔갑’ 공짜 진료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20일자 정치면) (3) 『○○복지재단 대표 내정자 ‘현행법 위반’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2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어머니가 경기도 의원으로 재직 시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도 의료원을 이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7경기조정 48	(반론청구) 박○○ 對 기독교포털뉴스
조 정 대 상	『대학가, ○○지·○○파·○○회·○○○가 대세 이단』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3일자 바른신앙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구원파 목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학가, ○○지·○○파·○○회·○○○가 대세 이단’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7일자 초기화면)
2017경기조정 49·50	(정정·손배청구) (사)○○○○○연합 對 기독교포털뉴스
조 정 대 상	『대학가, 신천지·구원파·안증회·JMS가 대세 이단』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3일자 바른신앙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구원파 계열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경기조정 51~58	(각 정정·손배청구) (학)○○학원 對 기호일보 ^(51·52,55·56) , 인터넷 기호일보 ^(53·54,57·58)
조 정 대 상	(1) 『‘매립 품삯’ 밀가루 팔아 자재비로 퍼줘야 했다』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6년 10월 3일자 1면, 인터넷 기호일보 2016년 10월 3일자 사회면) (2) 『매립권 넘겨져 근로자에 돌아갔어야 할 땅 ○○학원 전 이사장 유족이 끝내 찾아가다』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6년 10월 17일자 1면, 인터넷 기호일보 2016년 10월 17일자 사회면) (3) 『자조근로자, 손배소 판결에 허탈』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6년 11월 29일자 17면, 인터넷 기호일보 2016년 11월 29일자 사회면) (4) 『매립 노역의 수혜자, 결국엔 ○○학원』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6년 10월 11일자 1면, 인터넷 기호일보 2016년 10월 11일자 사회면) (5) 『‘육영사업’ 명목 내세워 미군 동원해 바다 매웠다』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6년 10월 11일자 16면, 인터넷 기호일보 2016년 10월 11일자 사회면) 외 2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 전 이사장이 인천 청라도 매립 노역자들에게 주기로 한 땅을 빼앗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영육의 땅, 청라 매립지 그 진실은’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7년 4월 8일자 1면, 인터넷 기호일보 2017년 4월 7일자 사회면)
2017경기조정 59	(정정청구) ○○○○○○의사협의회 對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수원시 보건소 의사는 ‘프로’... 여주시 보건소 의사는 ‘99% 아마추어』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공중보건 의사가 노하우와 안정감이 떨어지는 아마추어이고 정식 의사가 아니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수원시 보건소 의사는 ‘프로’... 여주시 보건소 의사는 ‘99% 아마추어’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7일자 사회면)
2017경기조정 60	(손배청구) 신○○ 對 인터넷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배우 온○○, ‘악플 강경 대응’ 이○○ 공개 비판... “당신이 성희롱한 男연예인은?”』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9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개그우먼 이○○의 악플 대응을 비난한 배우를 언급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해당 배우의 사진으로 잘못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금전 지급)

<p>2017경기조정 61~74, 77~92, 95~119, 122~133,</p>	<p>(각 추후·손배청구) 김○○ 對 경인투데이뉴스^(61·62,107·108), 굿데일리^(63·64), 인터넷 시대일보^(65·66), 인터넷 기호일보^(67·68,128·129), 인터넷 인천일보^(69·70), 인터넷 경기신문^(71·72), 인터넷 수도권일보^(73·74,109·110,130·131), 뉴스퀵^(77·78), 인터넷 광명신문^(79·80), 인터넷 광명일보^(81·82,97·98), 군포방송^(83·84), 인터넷 중부일보^(85·86), 광명매일신문^(87·88), 인터넷 광명지역신문^(89·90), 인터넷 일간경인^(91·92), 인터넷 광명시민신문^(95·96), 인터넷 경인일보^(99·100), 인터넷 경인방송FM^(101·102), 인터넷 경기일보^(103·104,126·127), 인터넷 OBS경인TV^(105·106,124·125), 미디어타임즈^(112·113), 인터넷 도민일보^(114·115), 뉴스뷰^(116·117), 뉴스줌^(118·119), CNN21방송^(122·123), 인터넷 일간경기^(132·133) (추후청구) 미디어뉴스타임⁽¹¹¹⁾</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투데이뉴스 : 『○○시 의회 김○○ 시의원, 막무가내 행위 왜 이러나?』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1일자 사회면) 외 1건 • 굿데일리 : 『김○○ ○○시 의원, 해바라기 부러워 동료 의원 바지 벗기고 성기 촬영』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시대일보 : 『法, 성추행 관련 ○○시 K모의원‘집유’선고』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0일자 사회면) • 인터넷 기호일보 : 『법원, 동료의원 성기 몰래 촬영 ○○시의원 집유 선고』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0일자 사회면) 외 1건 • 인터넷 인천일보 : 『동료의원 2명 무고 혐의 ○○시의원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6일자 사회면) 외 22개 매체
<p>신청인 주장</p>	<p>기초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동료 의원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인터넷 일간경인/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경인투데이뉴스, 굿데일리, 인터넷 시대일보, 인터넷 기호일보, 인터넷 인천일보, 인터넷 경기신문, 인터넷 수도권일보, 뉴스퀵, 인터넷 광명신문, 인터넷 광명일보, 군포방송, 인터넷 중부일보, 광명매일신문, 인터넷 광명시민신문, 인터넷 경인일보, 인터넷 경인방송FM, 인터넷 경기일보, 인터넷 OBS경인TV^(124·125), 미디어타임즈, 인터넷 도민일보, 뉴스뷰, 뉴스줌, CNN21방송, 인터넷 일간경기/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인터넷 OBS경인TV^(105·106)/사유 : 자진취하) • 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2017경기조정 120, 121	(각 정정청구) 김포시 對 김포신문 ⁽¹²⁰⁾ , 인터넷 김포신문 ⁽¹²¹⁾
조 정 대 상	(1) 『일제 잔재, ‘본동(本洞)’ 명칭 사용 논란』 제하의 기사 (김포신문 2017년 1월 11일자 1면, 인터넷 김포신문 1월 11일자 사회면) (2) 『김포에 ‘혼마치 동’ 탄생했다』 제하의 기사 (김포신문 2017년 3월 28일자 1면, 인터넷 김포신문 3월 28일자 사회면) (3) 『행정동 변경 명칭 ‘본동’ 일제 잔재 맞다』 제하의 기사 (인터넷 김포신문 2017년 3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김포시가 사용하려는 행정 동명이 일제의 잔재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일제 잔재, ‘본동(本洞)’ 명칭사용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김포신문 2017년 5월 31일자 3면, 인터넷 김포신문 5월 24일자 초기화면)
2017경기조정 134·135	(정정·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인터넷 인천신문
조 정 대 상	(1) 『○구 의원, 연수중 술취해 女의원 주무르고 ‘부비부비’』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4일자 사회면) (2) 『○구 의원 의정 연수 ‘성추행’- 의장 비롯한 남성 의원 무릎까지 꿇어』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기초단체 의원인 신청인들 간 성추행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인천시 ○구 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6일자 초기화면)

2017경기조정 136	(정정청구) ○○○○○○개발(주) 對 인터넷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1) 『첫 숲세권 사업에 거액 세금체납 전회장 연루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9일자 경제면) (2) 『○○○○○○사업 ○○일가 개입 적정성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0일자 경제면) (3) 『○○○○○○사업 논란 숲세권 공원 10곳 조성 일부 특혜 시비 우려도』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0일자 경제면) 외 1건
신청인 주장	체납자인 신청인 회사가 숲세권 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돼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7년 5월 25일자 3면, 인터넷 인천일보 5월 25일자 경제면)

2017경기조정 137~139	(각 손배청구) 최○○ 對 동부중앙신문 ⁽¹³⁷⁾ , 인터넷 동부중앙신문 ⁽¹³⁸⁾ (손배청구) 최○○ 외 1인 對 인터넷 양평시민의소리 ⁽¹³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중앙신문 : (1) 『양평군, ○○재단 이사장 인사 개입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7일자 1면, 인터넷 동부중앙신문 2017년 2월 16일자 사회면) (2) 『양평 ○○재단, 장애인시설, 횡령의혹 또 불거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4일자 1면, 인터넷 동부중앙신문 2017년 2월 23일자 사회면) (3) 『양평 ○○재단, 해임된 간사가 회의록 조작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4일자 11면, 인터넷 동부중앙신문 2017년 2월 23일자 사회면) (4) 『양평군 ‘एं터리 행정’이 빚어낸 ‘○○재단 막장 싸움’』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0일자 1면, 인터넷 동부중앙신문 2017년 3월 9일자 사회면) (5) 『양평 ○○재단 장애인 시설 고소·고발 잇따라』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7일자 1면, 인터넷 동부중앙신문 2017년 3월 1일자 사회면) 외 5건 • 인터넷 양평시민의소리 : (1) 『임원들 사임서 놓고 사회복지법인 ○○재단 내홍』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6일자 사회면) (2) 『○○재단 이사장 막장 싸움 속 7500만원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3일자 사회면) (3) 『○○재단 사태 “논란 핵심은 ○○○집 최 원장”』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일자 사회면)

	(4) 『○○○집 최 원장 신임이사 명단 포함 ... 임시 이사들 결정 보류』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9일자 사회면) (5) 『○○재단,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나』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복지재단 설립자인 신청인들이 재단 공금을 횡령하고, 독단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해 내분이 생겼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불성립결정 (동부중앙신문, 인터넷 동부중앙신문)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양평시민의소리/내용 : 반론보도 - 동의 후 보도)
이행 결과	『‘○○재단 전 이사장 인사 개입 및 횡령 혐의’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터넷 양평시민의소리 2017년 6월 5일자 사회면)

2017경기조정 140	(정정청구) ○○○○○○○○○○ 對 인천in
조정 대상	『인천시, 세계○○○ 엑스포‘페이퍼 컴퍼니’에 맡겼나?』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3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인력과 자금 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경기조정 141·142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천일보
조정 대상	『○○일보 인사』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7일자 2면)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소속 기자인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부당한 징계인사를 社告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이행강제금)

2017경기조정 143	(정정청구) 나경원 對 인터넷 기호일보
조 정 대 상	『나경원, 노블레스 오블리주‘시끌’조수석과는 선거서도 공방』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에서 법정 부담금을 미납한 것에 대해 불법 체납했다는 취지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나경원, 노블레스 오블리주‘시끌’조수석과는 선거서도 공방』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7년 5월 22일자 정치면)
2017경기조정 144, 145	(각 정정청구) ○○○○대학교○○○○병원 對 중부일보⁽¹⁴⁴⁾, 인터넷 중부일보⁽¹⁴⁵⁾
조 정 대 상	『○○○○병원서 허리수술 후 일부 마비』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7년 4월 28일자 23면, 인터넷 중부일보 4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은 환자가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인천 K병원서 허리수술 후 일부 마비’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7년 6월 2일자 사회면, 인터넷 중부일보 5월 31일자 사회면)
2017경기조정 146~151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권○○^(146~148), ○○○○○○○회^(149~151) 對 기독교 포털뉴스
조 정 대 상	『3년 전의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0일자 이단&이슈면)
신청인 주장	고 유병언씨가 오대양 사건 및 세월호 참사와 관련 있으며, 신청인 교단이 기독교로 위장한 사교집단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故 유병언 회장 및 ○○○○○○○회’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4일자 초기화면)

2017경기조정 152, 155	(반론,정정청구) 박○○ 對 바른미디어
조 정 대 상	(1) 『‘구원파’박○○ 호주에서 성경세미나 연다』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5일자 이단사이비면) (2) 『박○○ 구원파의 억지 주장』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30일자 이단사이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선교회가 구원파 이단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경기조정 153·154	(정정·손배청구) 문경시 對 전국매일
조 정 대 상	『문경시○○회 횡령 사건 ‘꼬리무는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문경시의 관리 부실로 산하 단체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문경시○○회 횡령 사건’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3일자 16면)
2017경기조정 156·157, 159~162	(각 정정·손배청구) (주)○○^(156·157), 광명시^(159~162) 對 뉴스리얼^(159·160), 인터넷 뉴스리얼^(156·157,161·162)
조 정 대 상	(1) 『라스코 벽화전, 일본은 세금 한푼 안써...』 제하의 기사 (뉴스리얼 2017년 5월 14일자 1면, 인터넷 뉴스리얼 5월 14일자 사회면) (2) 『광명동굴, 성공작이지만 그게 면죄부일 순 없어』 제하의 기사 (뉴스리얼 2017년 5월 14일자 4면, 인터넷 뉴스리얼 5월 14일자 사회면) (3) 『유급직 한두명 프랑스 지방 소기업에 전시관 공사까지 일임』 제하의 기사 (뉴스리얼 2017년 5월 14일자 5면, 인터넷 뉴스리얼 5월 14일자 사회면) 외 2건
신청인 주장	해외 유명 동굴벽화의 광명 전시회를 운영한 신청인 회사가 광명시와 특혜성 계약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광명시 라스코 벽화전 및 광명동굴’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터넷 뉴스리얼 2017년 7월 7일자 사회면)

2017경기조정 158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1) 『물류 창고 임목 축적 높아 ‘개발 자체가 불가능’』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5일자 용인면) (2) 『“물류 창고 완공 녹지 슬머시 해제”… 주민들, 공사 중단·수사 의뢰 요구』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6일자 용인면) (3) 『물류 창고 복구 설계서 ‘기준 미달’… 용인시, 집단 민원 겁나 완화해 줘』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8일자 용인면) (4) 『물류 창고 취소해 달랬더니 …‘복구설계’ 기준 낮춘 용인시』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4일자 용인면) (5) 『물류 창고 승인 용인시 ‘주민피해는 뒷전’』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일자 용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건축중인 물류창고가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용인시로부터 특혜성 건축 승인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경기조정 163	(손배청구) ○○○○작업장 對 인터넷 동부중앙신문
조 정 대 상	(1) 『양평 ○○재단, 국가인권위에 “장애인 인권침해 진정”』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6일자 사회면) (2) 『양평 ○○재단, 군청 공무원 3명 검찰 고소』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일자 사회면) (3) 『국가인권위, 양평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직권 조사』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장애인 재활 사업장인 신청인 기관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경기조정 164~167	(정정·반론·추후·손배청구) 손○○ 對 인터넷 수원시민신문
조 정 대 상	『성희롱 레스토랑, ○○레스토랑 10명 알바 노동자 증언으로 인권 위원회 진정』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 기재사항 흠결 및 신청인 연락 불능)

2017경기조정 168~171	(각 정정·손배청구) 안산시 對 중부일보 ^(168·169) , 인터넷 중부일보 ^(170·171)
조 정 대 상	(1) 『인산시장, 국가보조금 동문회사 밀어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7년 6월 12일자 1면, 인터넷 중부일보 2017년 6월 12일자 사회면) (2) 『국가 예산사업 단독 신청한 ○○○○○ … 안산시 10일 만에 마감』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7년 6월 12일자 3면, 인터넷 중부일보 2017년 6월 12일자 사회면) (3) 『‘편법 특혜’ 받고도 2년째 삽질중』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7년 6월 13일자 1면, 인터넷 중부일보 2017년 6월 13일자 사회면) (4) 『안산시 ‘편법 행정’… ○○○○○, 토목·도로 개설 비용 25억 이득』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7년 6월 13일자 3면, 인터넷 중부일보 2017년 6월 13일자 사회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안산시가 양식어업단지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시장의 대학동문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중부일보/사유 : 보도게재, 인터넷 중부일보/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7년 7월 6일자 2면)

2017경기조정 172	(정정청구) 권○○ 對 인터넷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1) 『세월호 떠올랐지만 유병언 딸 유○○는 여전히 도피중…법적 다툼 ‘버티기』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3일자 사회면) (2) 『흔들리는 대한민국 견인하는 기회로 삼자』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4일자 사실면) (3) 『개항장 재판소 ~ 학익동 시대 ‘한눈에’…인천지방검찰사 발간』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일자 인천면) (4) 『‘유병언 장녀’유○○, 3년 만에 강제 송환…“법무부, 7일 오후 인천 도착”』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일자 사회면) (5) 『유병언 장녀 강제 송환, 세월호 비리 3년만에 재수사』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5일자 사회면) 외 11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남편인 고 유병언씨가 세월호의 실소유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0일자 초기화면)

2017경기조정 173·174	(정정·손배청구) 안○○ 對 인터넷 경인방송FM
조 정 대 상	『○구 ○종합병원장 대학 입시 청탁 관련 사기 혐의 피소, 고검 불기소 처분 뒤집고 재수사 지시』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인 아들의 대학 입시 청탁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경기조정 175	(정정청구) 구리시 對 경기인터넷뉴스
조 정 대 상	(1) 『구리, 10년 끌어온 GWDC 조성 사업, 사실상 ‘사업종료’』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8일자 경기북부면) (2) 『백경현 구리시장, ‘GWDC 사실상 사업종료’ 보도한 본사에 ‘소송’ 으름장』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5일자 경기북부면)
신청인 주장	구리시가 추진 중인 디자인 시티 조성 사업이 무산 종결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구리, 10년 끌어온 GWDC 조성 사업, 사실상 ‘사업종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8일자 초기화면)

2017경기조정 176·177	(정정·손배청구) (주)○○○○○ 외 1인 對 인터넷 경기경제신문
조 정 대 상	(1) 『○○○○○, ‘분식 회계 및 자금 세탁’ 의혹 불거져』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2일자 사회면) (2) 『○○○○○, 계열사 10여 개 법인 자금 흐름 조사요구 돼』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유상 증자를 통해 분식 회계를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분식 회계 및 자금 세탁’ 의혹 등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8일자 초기화면)

2017경기조정 178	(정정청구) 김성제 對 와이비씨뉴스
조 정 대 상	(1) 『김성제 의왕시장 배우자, “사적 모임에 관용 차량 사용”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5일자 사회면) (2) 『의왕시장 배우자의 관용차 사용을 둘러 쓴 ‘비선 세력’의 개입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28일자 사회면) (3) 『의왕시, 기존 ○○향우회 두고 ○○향우회 총연합회 결성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의왕시에 결성중인 향우회가 의왕시장인 신청인 사조직이고, 신청인의 아내가 관용 차량을 사적 모임에 이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경기조정 179~182	(각 정정·손배청구) 양○○ ^(179·180) , 광명시 ^(181·182) 對 인터넷 뉴스리얼
조 정 대 상	『동굴 레스토랑은 시장 인맥 관리용 전용식당?』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광명시장이 국회 출입기자들을 광명동굴 레스토랑에 초청해 접대하고 와인을 선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경기조정 183~190	(각 정정·손배청구) ○○○○어린이집 외 1인 對 인터넷 경기신문 ^(183·184) , 인터넷 기호일보 ^(185·186) , 인터넷 인천일보 ^(187·188) , 뉴시스 경기남부 ^(189·190)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기신문 : 『“○○○○○어린이집 보육 교사 노조 활동 보장하라”』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0일자 사회면) • 인터넷 기호일보 : 『○○○어린이집 ‘파행 운영 갑질’ 노조 탄압 외면한 수원시 성토』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인천일보 : 『‘○○ 어린이집’ 졸속 운영위 의혹 ... “원만 해결 자충수”』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1일자 사회면) 외 1건 • 뉴시스 경기남부 : 『민주노총, ○○○○어린이집 인권 유린 등 중단 촉구』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0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보육 교사 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원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경기조정 191·192	(정정·손배청구) 흥○○ 對 뉴시스경기남부
조 정 대 상	『검찰 수사관 보복 운전』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1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검찰 수사관인 신청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경찰, 검찰 수사관 보복 운전 혐의 조사’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9일자 전국면)
2017경기조정 193~199	(각 정정청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對 인천일보 ⁽¹⁹³⁾ , 인천in ⁽¹⁹⁴⁾ , 인천뉴스 ⁽¹⁹⁵⁾ , 인터넷OBS경인TV ⁽¹⁹⁶⁾ , 티브로드남동방송 ⁽¹⁹⁷⁾ , 중부일보 ⁽¹⁹⁸⁾ , 경인일보 ⁽¹⁹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일보 : 『“남동구 ‘딱지’ 남발』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1일자 18면) • 인천in : 『인천시 과태료 부과, 민선 6기부터 대폭 늘어』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0일자 사회면) • 인천뉴스 : 『인천시 지자체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폭증』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0일자 사회면) • 인천OBS경인TV : 『인천 남동구청, 교통단속 과태료 부과 3년 새 53% ↑』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4일자 사회면) • 티브로드남동방송 : 『박찬대 “과태료·범칙금 부과 급증 … 남동구 최다”』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1일자 사회면) 외 2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구청이 인천 내 지자체 중 교통위반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인천일보, 인천in/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인천뉴스, 티브로드남동방송, 중부일보, 경인일보/사유 : 보도계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일보 : 『남동구 ‘딱지’ 남발?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0일자 사회면) • 인천in : 『‘인천시 과태료 부과, 민선6기부터 대폭 늘어’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9일자 사회면) • 인천뉴스 : 『‘인천 지자체 과태료·범칙금 부과 폭증’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7일자 사회면) • 인천OBS경인TV : 『‘인천 남동구청, 교통 단속 과태료 부과 3년 새 53% ↑’ 관련 정정 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7일자 사회면) • 티브로드남동방송 : 『박찬대 “과태료·범칙금 부과 급증 … 남동구 최다”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6일자 사회면) 외 2건

2017경기조정 200	(정정청구) ○○○○○교육원 對 바른미디어
조 정 대 상	『공동 육아 커뮤니티 ○○○과 ○○○○선교회의 관계』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2일자 이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육원이 모 선교회의 유관 기관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경기조정 201·202	(정정·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인천 오피스텔에 ‘여장 남자 활보’ SNS유포 경찰, 진상 파악 중』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여자 혼자 사는 집의 초인종을 누르는 여장 남자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손해배상 7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7경기조정 203~208, 254·255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경기신문 ^(203·204) , 인터넷 인천일보 ^(205·206) , 인터넷 중부일보 ^(207·208) , 인터넷 경기일보 ^(254·255)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기신문 : 『볼링장서 매너 없다 주먹질, 알고 보니...』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인천일보 : 『볼링장서 매너 없다 주먹질, 알고 보니...』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중부일보 : 『‘볼링장에서 벌어진 다툼, 알고 보니 성인 남성 4명이 폭행한 것으로...’』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기일보 : 『‘매너없다...’ 볼링장서 일가족·취객 몸싸움』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가족이 볼링장에서 벌어진 취객과의 몸싸움에서 폭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취지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경기조정 209	(손배청구) 흥○○ 對 인터넷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 PD, 김○○ 감독 피소에 “우리 스태프들은 폭행 방조자였던가 … 막 가지 말자”』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4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영화감독의 여배우 폭행 피소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SNS에 올린 글을 동의 없이 실명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경기조정 210~253	(각 정정·손배청구) 최 ○ 對 광고없는언론 팩트올
조 정 대 상	(1) 『고영태 ‘장관 보고서 내용’ 당일 전달 받아 … 2016년 2월 12일 ‘김수현-고영태 녹취 파일’』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8일자 뉴스면) (2) 『“문체부 공무원이 ○○산업 인수 봐줘”… 2016년 2월 2일 ‘김수현-고영태 녹취 파일’』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8일자 뉴스면) (3) 『‘블랙리스트’도 고영태 일파가 작성했나? … 2016년 3월 8일 ‘김수현-고영태 녹취 파일’』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8일자 뉴스면) (4) 『‘최순실 보도’4개월 전부터 증거 은폐 착수 … 2016년 3월 8일 ‘고영태-김수현 파일’』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8일자 뉴스면) (5) 『“문체부 김종, 자기 것 아니면 다 태클 걸어”… 2016년 3월 8일 ‘김수현-이진동 녹취 파일’』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18일자 뉴스면) 외 17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문체부 재직 시 장관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경기조정 256~258	(각 정정청구) 김○○ 對 인천일보 ⁽²⁵⁶⁾ , 인터넷 인천일보 ^(257,258)
조 정 대 상	(1) 『인사청탁 … 뇌물수수 … 의혹 받는 시의회』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7년 8월 14일자 1면) (2) 『前 ○○시 의장, 농협 지부장에 딸 인사 청탁 의혹』 제하의 기사 (인터넷 인천일보 2017년 8월 14일자 사회면) (3) 『비리 지방의원 걸러낼 정치 시스템 필요』 제하의 기사 (인터넷 인천일보 2017년 8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기초의회 의장 재직 시 금융기관에 딸이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前 ○○시의장, 농협 지부장에 딸 인사 청탁 의혹』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7년 9월 15일자 2면, 인터넷 인천일보 9월 13일자 사회면)
2017경기조정 259~262	(각 정정청구) ○○○○○○○교육원^(259,260), 심○○^(261,262) 對 중부일보^(259,261), 인터넷 중부일보^(260,262)
조 정 대 상	『○○○○○○○○교육원에 가보니 ... 뛰놀기 무서운 아이들』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7년 7월 4일자 23면, 인터넷 중부일보 2017년 7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육원이 예산을 유용해 산책로 공사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교육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7년 9월 15일자 사회면, 인터넷 중부일보 2017년 9월 15일자 사회면)
2017경기조정 263	(정정) ○○○○도시개발사업조합 對 인터넷 인천신문
조 정 대 상	(1) 『○○지구 ‘갈팡질팡’ 17년 ... 주민은 빗더미에 ‘나락’』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3일자 사회면) (2) 『○○지역 개발 광풍 우려 크다』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이 17년 째 진척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0일자 사회면)

2017경기조정 264~267	(각 정정·반론청구) 김포시 對 김포신문 ^(264·265) , 인터넷 김포신문 ^(266·267)
조 정 대 상	『풍무동 2청사 부지 市 졸속합의로 매입포기』 제하의 기사 (김포신문 2017년 8월 30일자 3면, 인터넷 김포신문 2017년 8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김포시가 풍무동의 분동을 위해 추진 중이던 동사무소 제 2청사 부지 매입을 포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풍무동 공공청사 부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김포신문 2017년 8월 30일자 3면, 인터넷 김포신문 8월 30일자 사회면)

2017경기조정 268	(정정청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對 인터넷 광고저널
조 정 대 상	(1) 『주민자치센터의 횡포 [1탄] 新 앵벌이 ?』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9일자 사회면) (2) 『주민자치센터의 횡포 [2탄] ‘팩트체크’』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자원봉사 학생들에게 공익과 관련 없는 개인 기업체의 환경 정리 작업을 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주민자치센터의 횡포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8일자 사회면)

2017경기조정 269, 283	(각 정정청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²⁶⁹⁾ , 김○○ ⁽²⁸³⁾ 對 시사인천
조 정 대 상	(1) 『매립지관리공사 부정 입찰 확인 불구 계약 진행』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1일자 사회면) (2) 『수도권매립지 ○-○공구 기반 공사 부실 자재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사가 부적격 업체의 부실 제품을 구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수도권매립지 부정 입찰 및 부실 자재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8일자 사회면)

2017경기조정 270	(정정청구) 광명시 對 인터넷 뉴스리얼
조 정 대 상	『증거 사진 사라진 동굴 식사 … 대금 결제는 누가했나』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광명시가 지역 기관과 목적도 없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비도 불명확하게 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경기조정 271, 272	(각 추후청구) 박○○ 외 2인 對 인터넷 볼링인매거진 ⁽²⁷¹⁾ , 인터넷 수도권일보 ⁽²⁷²⁾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볼링인매거진 : 『볼링은 안치고 사람을 쳐서야』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수도권일보 : 『매너가 없다 볼링장서 주먹다짐』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볼링장에서 취객들과 몸싸움으로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경기조정 273~280, 286~289	(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인터넷 경인일보 ^(273·274,279·280,288·289) , 경인일보 ^(275~278,286·287)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주 오피스텔 땅 없이 사전 분양?』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7년 9월 25일자 21면, 인터넷 경인일보 2017년 9월 25일자 사회면) (2) 『○○○○플라자, 조건부 매매 약정 “위법”』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7년 10월 2일자 21면, 인터넷 경인일보 2017년 10월 2일자 사회면) (3) 『국토부 “불법 사전 분양” 판단 아랑곳 ○○○○플라자, 계약금 반환 거부』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7년 10월 19일자 21면, 인터넷 경인일보 2017년 10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오피스텔을 불법 분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광주시 ○○○○플라자, 조건부 매매 약정 ‘위법’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7년 10월 27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인일보 2017년 10월 25일자 사회면)

2017경기조정 281	(정정청구) 인천남부경찰서 對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경찰, 생사람 붙잡아 수갑 ... 진짜 노상 강도 유유히 도주』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무고한 남성을 용의자로 오인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조차 고지하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경찰 생사람 붙잡아 수갑』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5일자 사회면)
2017경기조정 282	(반론청구) 강○○ 對 와이비씨뉴스
조 정 대 상	『현직 경찰관 고리대금 사채업 의혹, 국민의 큰 충격을 불러와』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현직 경찰인 신청인이 사채업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경기조정 284·285	(정정·손배청구) 인천도시공사 對 기호일보
조 정 대 상	『주민 몰래 350억대 땅 값 할인 ○○ 2구역 특혜 의혹 ‘눈덩이’』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1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사가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신축용 부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경기조정 290·291	(반론·손배청구) 송○○ 對 안양신문
조 정 대 상	『98% 아쉬운 시정 질문, 98% 멍청한 홍보 행정, “언론이 바로서야 사회가 바로 선다”』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26일자 이슈/논단면)
신청인 주장	기초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시정 질의를 하면서 시장 처조카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일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98% 아쉬운 시정 질문, 98% 멍청한 홍보 행정’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8일자 이슈/논단면)
2017경기조정 292	(정정청구) ○○고등학교 對 뉴시스 경기남부
조 정 대 상	『“1·2학년 돈 내라”... 수능 보는 3학년 선물값 모금 ‘물의’』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일자 경기남부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고교가 3학년 수험생들의 선물을 위해 1, 2학년에게 강제로 돈을 걷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수능 보는 3학년 선물값 모금 ‘물의’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2일자 경기남부면)
2017경기조정 293~296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광명포스트⁽²⁹³⁻²⁹⁴⁾, 인터넷 광명포스트⁽²⁹⁵⁻²⁹⁶⁾
조 정 대 상	『언론이 시의장의 홍보 부대인가?』 제하의 기사 (광명포스트 2017년 10월 23일자 1면, 인터넷 광명포스트 2017년 10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기초의회 의장인 신청인이 시의회 홍보 기사량에 따라 언론사 지원금을 정하겠다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간주

2017경기조정 297~302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주)○○○○ 외 1인 對 동부중앙신문 ^(297~299) , 인터넷 동부중앙신문 ^(300~302)
조 정 대 상	<p>(1) 『이천 ○○예술촌 71억 상업 지역 분양 의혹 주민 반발 “2016. 4. 15일 법인 설립” 실적 전무한 업체에 등기 이전』 제하의 기사 (동부중앙신문 2017년 8월 18일자 1면, 인터넷 동부중앙신문 2017년 8월 17일자 사회면)</p> <p>(2) 『이천시 71억 토지매각 의혹 누가 시장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나? “계약서 2개 존재”』 제하의 기사 (동부중앙신문 2017년 8월 25일자 1면, 인터넷 동부중앙신문 2017년 8월 24일자 사회면)</p> <p>(3) 『이천시,○○예술촌 조성 지위 이전 변경계약서 “매도자 도장 누락” 신뢰 행정에 상당한 타격 ... 주민들 있을 수 없는 일』 제하의 기사 (동부중앙신문 2017년 9월 8일자 1면, 인터넷 동부중앙신문 2017년 9월 7일자 사회면)</p>
신청인 주장	상업용지를 분양 받은 신청인 회사가 개발 실적이 전무하고 용지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이천 ○○예술촌 71억 상업 지역 분양 의혹 등』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동부중앙신문 2017년 12월 15일자 1면, 인터넷 동부중앙신문 2017년 12월 5일자 사회면)

2017경기조정 303, 304	(각 추후청구) 안○○ 對 인터넷 인천일보 ⁽³⁰³⁾ , 뉴시스 경기남부 ⁽³⁰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인천일보 : 『“○○어린이집” 졸속 운영위 의혹 ...“원만한 해결 자충수”』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1일자 사회면) 뉴시스 경기남부 : 『민주노총,“○○○○어린이집 인권 유린 등 중단 촉구”』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0일자 경기남부면)
신청인 주장	어린이집 원장인 신청인이 노조 교사를 감시하기 위해 불법 도청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보도거제)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인천일보 : 『[알려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도청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6일자 사회면) 뉴시스 경기남부 : 『추후보도문 [○○어린이집 원장 도청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8일자 경기남부면)

2017경기조정 305, 306	(각 정정청구) 임이자 對 안산타임스 ⁽³⁰⁵⁾ , 인터넷 안산타임스 ⁽³⁰⁶⁾
조 정 대 상	(1) 『자유한국당 안산 지역 4개 지역구 당무 감사 진행』 제하의 기사 (안산타임스 2017년 11월 7일자 3면, 인터넷 안산타임스 2017년 11월 7일자 사회면) (2) 『자유한국당 당협 위원장 최종 확정 앞두고 치열한 살바 싸움』 제하의 기사 (인터넷 안산타임스 2017년 11월 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이자 지구당 당협위원장인 신청인이 차기 당협위원장 선거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자유한국당 안산 단원을 당무 감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안산타임스 2017년 12월 5일자 3면, 인터넷 안산타임스 2017년 11월 29일자 정치면)
2017경기조정 307, 308	(각 반론청구) 이○○ 對 경인일보 ⁽³⁰⁷⁾ , 인터넷 경인일보 ⁽³⁰⁸⁾
조 정 대 상	『부서관 성희룡 상사 정직 처분 정당 판결』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7년 11월 3일자 18면, 인터넷 경인일보 11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부서관인 신청인의 같은 부대 소속 여성 부서관 성희룡 혐의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부서관 성희룡' 상사 정직 처분 정당 판결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인일보 2017년 11월 27일자 사회면)
2017경기조정 309~313	(정정·손배청구) 권○○ ⁽³⁰⁹⁻³¹⁰⁾ 對 기독교포털뉴스 (정정·반론·손배청구) ○○○○○○○회 ⁽³¹¹⁻³¹³⁾
조 정 대 상	『5.18, 문재인 정부에 부탁하는 것』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8일자 바른신앙면)
신청인 주장	고 유병언씨와 신청인 교단이 전두환 정권과 유착해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한강유람선 허가권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취하 (권○○/사유 : 보도게재) • 조정불성립결정 (○○○○○○○○회)
이 행 결 과	『[반론] 고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만 보도해 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11일자 초기화면)

2017경기조정 314~317	(각 정정·손배청구) ○○건설산업(주) 對 기호일보 ^(314·315) , 인터넷 기호일보 ^(316·317)
조 정 대 상	(1) 『고양 ○○지구 아파트 시공사가 부지내 토석 무단 반출』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7년 11월 17일자 1면, 인터넷 기호일보 2017년 11월 17일자 사회면) (2) 『○○건설, 우회로 해결없이 사업 강행, ○○지구 건축 승인조건 불충족 논란』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7년 11월 20일자 1면, 인터넷 기호일보 2017년 11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아파트를 건설 중인 신청인 회사가 공사장 내 토석을 무단 반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경기조정 318	(반론청구) 공○○ 對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술 취해 행패 부리고 경찰에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고교 체육 교사 입건』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사인 신청인이 술에 취해 경찰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경찰에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고교 체육 교사』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20일자 사회면)

2017경기조정 319·320	(정정·손배청구) 최○○ 외 2인 對 깊게보는개미뉴스
조 정 대 상	(1) 『대책위, 장애인○○○○센터 A사무국장· B소장을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및 협박죄'로 고소』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29일자 사회면) (2) 『장애 인권침해 피해자 P씨, 너무 힘들어서 출근하기 싫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장애인 단체 운영자인 신청인들이 장애인 직원을 학대하고 협박해 사직을 하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경기조정 321, 322·323	(정정청구) 의정부시 ⁽³²¹⁾ 對 NEWSWHO (정정·반론청구) ○○○○○○○○○○ (유) ^(322·323) 對 NEWSWHO
조 정 대 상	『의정부 e편한세상 ○○○○ 아파트건설, 시행사 선정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6일자 취재현장면)
신청인 주장	의정부시가 공원 내 아파트건설 시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의정부시 ○○○○ 내 아파트 건설 특혜’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10일자 취재현장면)
2017경기조정 324·325, 342·343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광명포스트 ^(342·343) , 인터넷 광명포스트 ^(324·325)
조 정 대 상	『한눈에 보는 7대 ○○시의회 사건사고』 제하의 기사 (광명포스트 2017년 12월 4일자 사회면, 인터넷 광명포스트 2017년 12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기초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술에 취한 동료 의원의 바지를 벗기고 은밀한 부위를 촬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한눈에 보는 7대 ○○시의회 사건사고’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광명포스트 2018년 1월 15일자 사회면, 인터넷 광명포스트 2018년 1월 10일자 사회면)
2017경기조정 326~331	(각 정정·손배청구) 안산시 외 1인 ^(326~329) , 신○○ ^(330·331) 對 반월신문 ^(326·327, 330·331) , 인터넷 반월신문 ^(328·329)
조 정 대 상	『제종길 안산시장, 비서실장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반월신문 2017년 12월 6일자 1면, 인터넷 반월신문 2017년 12월 6일자 사회/경제면)
신청인 주장	안산시장 등이 전직 인사의 비리와 연루됐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경기조정 332~341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경인방송FM ⁽³³²⁻³³³⁾ , 인터넷 경기신문 ⁽³³⁴⁻³³⁵⁾ , 인터넷 기호일보 ⁽³³⁶⁻³³⁷⁾ , 인터넷 경인일보 ⁽³³⁸⁻³³⁹⁾ , 인터넷 인천일보 ⁽³⁴⁰⁻³⁴¹⁾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인방송FM : 『경기교육청, 여학생 70여명 추행한 ○○ A고 교사들 ‘중징계’ 요구』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0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기신문 : 『여고생 70여 명 성추행 교사2명 교단 아웃된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2일자 사회면) 외 1건 • 인터넷 기호일보 : 『○○ 성추행 교사들 해임·파면 전망』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0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인일보 : 『전교 여학생 1/3 성추행한 ○○ 고교 교사 2명 파면』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인천일보 : 『여고생 상습 성추행 교사 2명 해임 이상 중징계』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고교 교감인 신청인이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 한 사실을 경찰 수사 전에 알고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인터넷 경인방송FM, 인터넷 경기신문/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인터넷 기호일보/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인터넷 경인일보, 인터넷 인천일보/사유 : 기사수정)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인방송FM : 『‘경기교육청, 여학생 70여명 추행한 ○○ A고 교사들 중징계 요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17일자 초기화면) • 인터넷 경기신문 : 『[정정보도문] 여고생 70여명 성추행 교사 2명 교단 아웃된다』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8년 1월 17일자 초기화면) • 인터넷 기호일보 : 『○○ 성추행 교사들 해임·파면 전망』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8년 1월 17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인일보 : 『전교 여학생 1/3 성추행한 ○○ 고교 교사 2명 파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8년 1월 19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인천일보 : 『여고생 상습 성추행 교사 2명 해임 이상 중징계』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8년 1월 19일자 사회면)

7. 강원중재부

2017강원조정 1, 2	(각 정정청구) (주)○○ 對 횡성희망신문 ⁽¹⁾ , 인터넷 횡성희망신문 ⁽²⁾
조 정 대 상	『내 땅은 아니지만 이름은 내맘대로?』 제하의 기사 (횡성희망신문 2016년 12월 27일자 1면, 인터넷 횡성희망신문 2016년 12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추진 중인 중인 리조트 사업이 성공가능성이 낮고 강원도의 사업 승인도 불투명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횡성희망신문 2017년 2월 6일자 1면, 인터넷 횡성희망신문 2017년 1월 25일자 사회면)
2017강원조정 3	(반론청구) (주)○○○○ 對 문화유산신문
조 정 대 상	『국립무형유산원, 전통 공예 패키지 기획전'○○'개최』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6일자 문화유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기획하여 개최한 전통공예기술에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작품 전시회를 문화재청이 기획한 행사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강원조정 4·5	(정정·손배청구) 흥○○ 對 인터넷 강원일보
조 정 대 상	『“비하하는 표정에 욕설”격분 술병 휘두른 스리랑카인 입건』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이 먼저 가해자 측에게 욕설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강원조정 6~9, 13·14	(각 반론·손배청구) (학) ○○학원 對 태백인터넷뉴스 ^(6·7,13·14) , 뉴스1강원 ^(8·9)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백인터넷뉴스 : (1) 『○○○○대 교수협의회 기자 회견』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1일자 교육소식면) (2) 『○○대 관련 교육부앞 1인 사위』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0일자 교육소식면) • 뉴스1강원 : 『○○○○대 교수協, “원○○ 총장 즉각 구속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1일자 교육소식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학사 비리 및 공사입찰 비리 등이 자행되고 있다는 책임용 탈락 교수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뉴스1강원/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조정불성립결정 (태백인터넷뉴스^(6·7)) • 취하 (태백인터넷뉴스^(13·14)/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이 행 결 과	『“○○○○대학 전직 교수들 기자 회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뉴스1강원 2017년 5월 18일자 뉴스면)
2017강원조정 10~12	(각 반론청구) ○○○○○어린이집 對 뉴스1강원 ⁽¹⁰⁾ , 강원일보 ⁽¹¹⁾ , 인터넷 강원일보 ⁽¹²⁾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강원 : 『춘천서 어린이집 원장 국고보조금 3200만 원 빼돌려』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6일자 전국면) • 강원일보 : 『시립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수령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1일자 춘천면, 인터넷 강원일보 2017년 6월 21일자 춘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어린이집이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강원조정 15	(정정청구) ○○○○○○○센터 對 춘천KBS-1TV
조 정 대 상	『보호시설서 아동간 성추행... 보고도 방치』 제하의 보도 (2017년 8월 11일자 뉴스9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아동 보호시설에서 일어난 아동 간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보호시설의 외부를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7강원조정 16~19	(각 정정·손배청구) ○○○○○○○○협의회 對 춘천사람들 ^(16·17) , 인터넷 춘천사람들 ^(18·19)
조정 대상	『○○○○○○○○○협의회 내홍』 제하의 기사 (춘천사람들 2017년 9월 5일자 뉴스면, 인터넷 춘천사람들 9월 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내홍에 휩싸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강원조정 20, 21	(각 정정청구) 고성경찰서 對 강원고성신문 ⁽²⁰⁾ , 인터넷 강원고성신문 ⁽²¹⁾
조정 대상	『사무용품 편취 사건 동영상 SNS 유포 물의』 제하의 기사 (강원고성신문 2017년 9월 4일자 5면, 인터넷 강원고성신문 2017년 9월 4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특정 형사 사건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해 SNS에 배포하는 등 피의사실을 공공연히 공표해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보도거제)
이행 결과	『고성경찰서 관련 기사 정정 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6일자 3면, 인터넷 10월 23일자 사건사고면)
2017강원조정 22~25	(각 정정·손배청구) 정○○ 對 횡성희망신문 ^(22·23) , 인터넷 횡성희망신문 ^(24·25)
조정 대상	(1) 『한군수에 골프채 제공한 사업가 B씨 소유 공원부지‘규제 풀렸다’소문』 제하의 기사 (횡성희망신문 2017년 10월 16일자 1면, 인터넷 횡성희망신문 2017년 10월 18일자 정치/사회면) (2) 『현직 간부 공무원, 부동산 투기 논란』 제하의 기사 (횡성희망신문 2017년 10월 16일자 7면, 인터넷 횡성희망신문 2017년 10월 18일자 정치/사회면)
신청인 주장	공무원 출신인 신청인이 군청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 결과	『“간부 공무원 부동산 투기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횡성희망신문 2017년 11월 11일자 사회면)

2017강원조정 26~29	(각 정정·손배청구) 횡성군 외 1인 對 횡성희망신문 ^(22·23) , 인터넷 횡성희망신문 ^(24·25)
조 정 대 상	<p>(1) 『‘슈퍼 갑’ 한규호 군수』 제하의 기사 (횡성희망신문 2017년 9월 11일자 7면, 인터넷 횡성희망신문 2017년 9월 14일자 오피니언면)</p> <p>(2) 『끈 떨어진 한규호 군수』 제하의 기사 (횡성희망신문 2017년 10월 16일자 3면, 인터넷 횡성희망신문 2017년 10월 17일자 오피니언면)</p> <p>(3) 『북천리 다리 언제 만들어지나』 제하의 기사 (횡성희망신문 2017년 10월 16일자 7면, 인터넷 횡성희망신문 2017년 10월 18일자 정치/사회면)</p> <p>(4) 『“한규호 군수 사퇴 촉구” 횡성 정실련 성명서』 제하의 기사 (횡성희망신문 2017년 10월 30일자 1면, 인터넷 횡성희망신문 2017년 11월 3일자 오피니언면)</p>
신청인 주장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횡성군수를 슈퍼갑이라고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횡성군이 북천리 교량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8. 충북중재부

2017충북조정 1, 2	(각 반론청구) ○○홍삼(주) 對 한국인터넷뉴스 ⁽¹⁾ , 인터넷 충청일보 ⁽²⁾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터넷뉴스 : 『식약처, 일반 홍삼식품 공장 제조 홍삼 농축액 회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정치/행정면) • 인터넷 충청일보 : 『무허가'홍삼 농축액'회수 조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3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한 제품이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충북조정 3, 4	(각 정정청구) 김○○ 외 1인 對 충청일보 ⁽³⁾ , 인터넷 충청일보 ⁽⁴⁾
조정 대상	『○○시 6개월짜리 서기관 승진 인사 논란』 제하의 기사 (충청일보 2017년 1월 2일자 10면, 인터넷 충청일보 2017년 1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4급 승진에서 떨어지자 인사권자인 시장의 처부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 결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일보 2017년 1월 25일자 2면, 인터넷 충청일보 2017년 1월 24일자 사회면)
2017충북조정 5~8	(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충청리뷰 ^(5·6) , 충북인뉴스 ^(7·8)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리뷰 : 『입주 1년 지나도 준공 승인 안 받은 아파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6일자 18면) • 충북인뉴스 : 『입주 1년, 준공 승인 안 받은 아파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일자 사회교육면)
신청인 주장	아파트를 신축한 신청인 회사가 아파트 진입도로부지의 기부채납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충북조정 9, 10	(각 반론청구) 박○○ 對 MBC충북-TV ⁽⁹⁾ , 인터넷 MBC충북 ⁽¹⁰⁾
조 정 대 상	『광산이 부른 갈등 소통은 부족』 제하의 보도 (MBC충북-TV 2017년 2월 10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인터넷 MBC충북 2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광산용 화약류 저장 시설 건설을 반대함에도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충북조정 11·12	(정정·손배청구) ○○○○협회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보조금 평평’ ○○ 한시 백일장 행감 도마 위』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7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백일장 행사비의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지자체의 보조금만 축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충북조정 13	(반론청구) (주)○○○○○클럽 對 인터넷 충북일보
조 정 대 상	『주식 투자정보 서비스 (주)○○○○○클럽‘주의보’』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회원들의 회비 환불 요구를 거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충북조정 14·15	(정정·손배청구) 영동군 對 영동타임지
조 정 대 상	(1) 『영동군민 혈세 4억 원 투입 했지만 ... 역사 왜곡 날조 의혹만 남아』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0일자 1면) (2) 『황간 현감 박몽열(朴夢說)공은 누구인가?』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0일자 3면)
신청인 주장	영동군이 의병장 박몽열에 대한 명확한 고증도 없이 군수 치적 쌓기용으로 사당을 건립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충북조정 16~19	(각 정정·손배청구) 오○○ 對 동양일보 ^(16·17) , 인터넷 동양일보 ^(18·19)
조 정 대 상	『상인회장이 개인보상금 요구 물의』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7년 4월 21일자 4면, 인터넷 동양일보 2017년 4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상인회장인 신청인이 시장 인근에 입점하는 대형 쇼핑몰 측에 개인적인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합의사항 불이행
2017충북조정 20	(정정청구) 나경원 對 인터넷 충청매일
조 정 대 상	『나경원,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적, 조수석과는 ‘학우’』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이 법정 부담금을 미납한 것을 불법으로 체납했다는 식으로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개제)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나경원 父 사학’○○학원’법정 부담금 체납’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5일자 사회면)
2017충북조정 21~24	(각 정정·손배청구) 중앙경찰학교 외 1인 對 충북인뉴스
조 정 대 상	(1) 『대통령은 치약 사서 쓰는데 ... 경찰 간부, 고가 이불 구입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5일자 사회/교육면) (2) 『고가 이불·관용차 논란 중앙경찰학교, 추가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8일자 사회/교육면)
신청인 주장	중앙경찰학교가 학교장 부부의 관사 이불 구입에 수백만 원을 지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중앙경찰학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3일자 사회/교육면)

2017충북조정 25	(정정청구) (주)○○○○○○○○ ○○지점 對 인터넷 중부매일
조 정 대 상	『수입차 노린 경정비업소 불법 여전』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자동차 정비업체가 엔진을 교체한다고 속이고 수천만 원의 바가지 요금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수입차 노린 경정비업소 불법 여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7일자 사람들면)

2017충북조정 26, 27	(각 정정청구) 최 ○ 對 충청일보 ⁽²⁶⁾ , 인터넷 충청일보 ⁽²⁷⁾
조 정 대 상	『특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특검, 靑 주도 정황 포착』 제하의 기사 (충청일보 2017년 1월 4일자 정치 2면, 인터넷 충청일보 1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유지 관리에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보도개재)
이 행 결 과	『최 ○ 전 보좌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7일자 12면)

2017충북조정 28	(정정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對 세종데일리
조 정 대 상	『조치원 ○○아파트 ‘부풀리기’ 공사에 입주민 뿔났다』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아파트가 도색 공사비를 부풀려 입찰 제안을 하고 의결 없이 회장이 독단으로 특정 업체에 설계 용역을 의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충북조정 29	(정정청구) (재)○○ 對 불교공뉴스
조 정 대 상	『○○ 생활 종교 선교』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9일자 기타종교면)
신청인 주장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 위령제를 지낸 단체가 신청인 단체라고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p>2017충북조정 30~33</p>	<p>(각 정정·손배청구) ○○대학교 총학생회 對 동양일보^(30·31), 인터넷 동양일보^(32·33)</p>
<p>조 정 대 상</p>	<p>(1) 『풍전등화 ○○대, 구성원 화합만이 살길』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7년 8월 28일자 1면, 인터넷 동양일보 2017년 8월 127일자 사회면) (2) 『○○대 총학생회 허위 사실 유포』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7년 8월 30일자 3면, 인터넷 동양일보 2017년 8월 29일자 사회면) (3) 『○○대 총학 허위 사실 유포에 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 나서』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7년 9월 1일자 1면, 인터넷 동양일보 2017년 9월 1일자 사회면) (4) 『○○대 구성원 학교 정상화‘몸부림’』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7년 9월 12일자 1면, 인터넷 동양일보 2017년 9월 1일자 사회면) (5) 『비정상화를 위한 ○○대 총학생회』 제하의 기사 (인터넷 동양일보 2017년 8월 17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교육부 앞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 전면 재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학교를 압박하는 해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불성립결정</p>
<p>2017충북조정 34~37</p>	<p>(각 정정·손배청구) 지○○ 對 충청타임즈^(34·35), 인터넷 충청타임즈^(36·37)</p>
<p>조 정 대 상</p>	<p>『‘첫 단추 잘못 낀’ 청주○○○○○○선수권대회 새 판 짜다』 제하의 기사 (충청타임즈 2017년 9월 14일자 1면, 인터넷 충청타임즈 2017년 9월 14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2018청주○○○○○○○○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신청인이 위원회 정관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보도게재)</p>
<p>이 행 결 과</p>	<p>『‘2018청주○○○○조직위 집행위원장 정관 임의 변경’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타임즈 2017년 10월 25일자 1면, 인터넷 충청타임즈 2017년 10월 25일자 종합면)</p>

2017충북조정 38, 39	(각 정정청구) ○○○○○조합 對 충청매일 ⁽³⁸⁾ , 인터넷 충청매일 ⁽³⁹⁾
조 정 대 상	『“○○○○조합, 약자에 갑질”』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7년 9월 20일자 3면, 인터넷 충청매일 2017년 9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서점에 책 공급을 막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조합, 약자에 갑질”보도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7년 10월 25일자 3면, 인터넷 충청매일 2017년 10월 24일자 사회면)
2017충북조정 40	(반론청구) 이○○ 對 CJB-TV
조 정 대 상	『비료 원료 속인 ‘유기농 대부’ 구속』 제하의 보도 (2017년 6월 12일자 8시뉴스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비료 원료를 속인 가짜 유기농 비료를 농민들에게 공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특허 기술로 비료 품질 개선, 불량 비료 아니다”』 제하의 보도 (2017년 11월 27일자 8시뉴스 프로그램)
2017충북조정 41·42	(반론·손배청구) 장○○ 對 뉴스엔포커스
조 정 대 상	(1) 『술에 취한 핵심 당원 버스에서 동료 여성 당원 무자비하게 폭행』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7일자 사회면) (2) 『장○○ ○○시장 출마 후보 비겁한 변명』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0일자 사회면) (3) 『○○○○○당 장○○ (전)부대변인 형사 고발』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정당 부대변인 출신인 신청인이 버스에서 여성 당원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술에 취한 핵심 당원 버스에서 동료 여성 당원 무자비하게 폭행”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27일자 정치면)

9. 전북중재부

<p>2017전북조정 1~10, 13~16</p>	<p>(각 정정·손배청구) ○○○협동조합 對 인터넷 익산열린신문^(1·2), 인터넷 전북도민일보^(3·4), 인터넷 전북중앙신문^(5·6), 인터넷 전라일보^(7·8), 전북일보 인터넷신문^(9·10), 인터넷 익산신문^(13·14), 뉴시스^(15·16)</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익산열린신문 : 『결과 속 다른 시의원, 익산시 의회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9일자 지역소식면) •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 『익산시, 특정 마을기업에 국비 과도한 지원』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9일자 자치행정면) •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 『결마을기업 예산지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8일자 지역면) • 인터넷 전라일보 : 『익산 커피 판매점도 마을기업 선정 ... 세금 지원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9일자 지역면)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특정 커피숍에 ‘마을기업’ 지원』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0일자 지역면) 외 2개 매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조합에 대한 익산시의 정상적인 예산 지원을 유력 정치인의 영향에 의한 특혜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정정청구 - 익산열린신문,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인터넷 익산신문/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인터넷 전라일보,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뉴시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손배청구/사유 : 보도거제)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익산열린신문 : 『‘익산 마을기업 예산 지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3일자 지역소식면) •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 『‘익산시 특정 마을기업 과도한 지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9일자 자치행정면) • 인터넷 전라일보 : 『“익산 마을기업 커피숍 합법적인 지원”』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8일자 지역면)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익산 마을기업 투명하게 선정”』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8일자 지역면)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특정 마을기업 과도한 예산 지원’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9일자 사회면) • 뉴시스 : 『○○○협동조합, 커피판매업 마을기업 운영 문제 없어』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7일자 전북면) <p>※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 합의사항 미이행</p>

2017전북조정 11·12	(정정·손배청구) ○○영농조합법인 외 4인 對 인터넷 내외일보
조 정 대 상	(1) 『익산 ○영농조합 보조금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23일자 사회면) (2) 『익산 ○영농조합 천문학적 보조금, 전면 조사해야』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에 대한 익산시의 정당한 보조금 집행이 부당한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반론 및 사과보도, 이행강제금) • 취하 (손배청구/사유 : 보도게제)
이 행 결 과	『익산 M영농조합 보조금』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4일자 지역면)
2017전북조정 17~20	(각 정정·손배청구) 정○○ 對 익산투데이 ^(19·20) , 인터넷 익산투데이 ^(17·18)
조 정 대 상	『○○여고 특수 학급 교사 성추행'재판 중'민원 목살이 원인, 신규 교사 인사 발령 요구』 제하의 기사 (익산투데이 2016년 12월 15일자 2면, 인터넷 익산투데이 22017년 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데도 성추행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반론보도) • 각 취하 (손배청구/사유 : 보도게제)
이 행 결 과	『○○여고 특수 학급 교사 재판 중'기사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익산투데이 2017년 3월 22일자 2면, 인터넷 익산투데이 2017년 3월 20일자 사회면)
2017전북조정 21·22, 33·34	(각 추후·손배청구) 이○○ 對 전주MBC-TV
조 정 대 상	(1) 『전북도 ○○자문관 업체 상대 압력 행사 의혹』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28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 『전북도 ○○자문관 업체 상대 압력 행사 의혹』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13일자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3) 『전 도청 ○○자문관 직권 남용 의혹』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18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공무원 재직시 기업체에 접대 및 일자리를 요구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정정청구⁽²¹⁾/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취하 (손배청구⁽²²⁾/사유 : 보도게재) • 조정불성립결정^(33·34)
이 행 결 과	『전 도청 ○○자문관 비위 관련 경찰“혐의 없음”』 제하의 보도 (2017년 3월 20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17전북조정 23·24	(정정·손배청구) 김○○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군산 ○○지역아동센터 목사 입건』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6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추행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취하 (손배청구/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군산 ○○지역아동센터 목사 입건’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2일자 전국면)

2017전북조정 25	(정정청구) (주)○○○○○클럽 對 인터넷 전라일보
조 정 대 상	『주식투자 정보 서비스‘○○○○○클럽’피해 주의』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회원들의 회비 환불 요구를 거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17일자 경제면)

2017전북조정 26~29	(각 정정·손배청구) 성○○ 對 익산투데이^(26·27), 인터넷 익산투데이^(28·29)
조 정 대 상	『꼬리에 꼬리 무는 의혹 성○○ 시의원 농수로 불법 편입 국유지 사유화 검찰 고발 대상』 제하의 기사 (익산투데이 2017년 3월 22일자 1면, 인터넷 익산투데이 2017년 3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기초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국유지인 농수로를 불법으로 본인의 농지에 편입 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전북조정 30~32	(각 정정청구) (학)○○학원 對 인터넷 전라일보 ⁽³⁰⁾ ,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³¹⁾ , 인터넷 새전북신문 ⁽³²⁾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전라일보 : 『○○대 공동대책위, 정상화 촉구 성명서 발표』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5일자 지역면) •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 『임시 이사회 ○○대 정상화안 상정 촉구』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5일자 지역면) • 인터넷 새전북신문 : 『○○대 대책위, 공정한 정상화 방안 수립 촉구』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5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대학 인수를 추진 중인 신청인 학원이 인수 대상 대학의 구 재단과 대학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야합이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전북조정 35~38	(각 정정·손배청구) (재) ○○공원 對 전민일보 ^(35·36) , 인터넷 전민일보 ^(37·38)
조정대상	『공원 묘지 조성 사업자 행정 농단 파문』 제하의 기사 (전민일보 2017년 4월 27일자 10면, 인터넷 전민일보 2017년 4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관할 군청으로부터 진행 중인 묘지 사업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전북조정 39·40	(정정·손배청구) 유○○ 對 인터넷 부안독립신문
조정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향토 산업마을 사업 총체적 부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3일자 사회면) (2) 『불법 편법 의혹에 눈감는 부안군』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마을 소득 사업장 설립에 필요한 지역 주민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생산 설비도 중고 기계로 구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1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보도이므로 중재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

2017전북조정 41·42	(각 정정·손배청구) 서○○ 對 전북일보
조정 대상	『한노총 고위 간부 ‘기이한 행보’ 조합원 자격 잃고도 공식 활동』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일자 4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소속 회사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행 결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7일자 2면)
2017전북조정 43~46	(각 정정·손배청구) 성○○ 對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43·44) , JTV ^(45·46)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1) 『경찰, 유치원 아동 방임 의혹 수사 나서』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7일자 사회면) (2) 『개인적 일탈인가, 시스템 문제인가“교사 자질”“처우 문제”시각차』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12일자 사회면) JTV : 『유치원에서 사라진 아이 … 도로에서 쿵』 제하의 보도 (2017년 6월 7일자 8시 저녁뉴스 프로그램 및 2017년 6월 7일자 아침뉴스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하원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을 몰랐으며,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성립 (정정청구 : JTV/내용 : 조건부보도, 부제소) 취하 (손배청구 : JTV/사유 : 보도게재) 기각 (전북일보 인터넷신문/사유 : 당사자 불특정)
2017전북조정 47·48	(정정·손배청구) 오○○ 對 주간소통신문
조정 대상	『전북도경의 정○○ 시장에 대한 인격 살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7일자 1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익산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돌산 개발을 불허하는 공무원들을 겁박하고 좌천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전북조정 49	(정정청구) 군산시의회 對 새전북신문
조 정 대 상	『자정은 커녕 비리·부도덕에 눈감은 군산 시의회』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0일자 8면)
신청인 주장	군산시 의회가 의원들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제정안을 폐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2017전북조정 50~53	(각 정정·손배청구) 이○○ 외 1인 對 전주MBC-TV⁽⁵⁰⁻⁵¹⁾, 전북일보 인터넷신문⁽⁵²⁻⁵³⁾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역대 기부금 챙긴 복지시설 대표 허위 경력으로 신고증 발급 충격』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4일자 사회면) 전주MBC-TV : 『장애인 단체 사기』 제하의 보도 (2017년 8월 24일자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전직 신부와 사회 복지사인 신청인들이 장애인 단체를 내세워 장애인 기부금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성립 (정정청구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내용 : 조건부보도) 취하 (손배청구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사유 : 보도거제) 조정불성립결정 (전주MBC-TV)
2017전북조정 54	(정정청구) 전라북도교육청 對 새전북신문
조 정 대 상	『공익 제보자 강제 퇴직이 전북교육청 인권보장인가』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1일자 11면)
신청인 주장	전북 교육청이 장애인 학교 내 학생 성폭행 사건의 내부 제보자인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7전북조정 55·56	(정정·손배청구) 송○○ 對 익산열린신문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송○○ 시의원 재량 사업비 편성 ‘말뽕’』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8일자 1면) 『김○○·송○○ 시의원 이중 플레이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4일자 1면)

신청인 주장	기초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시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재량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도 추경에 끼워 넣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손해배상 5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송○○ 시의원 재량 사업비 적정 편성』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6일자 3면)

2017전북조정 57·58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익산열린신문
조 정 대 상	『세입자 숙여 수 천만원 챙긴 악덕 건물주』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을 세입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전기료와 관리비를 징수하는 악덕 건물주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손배청구/사유 : 보도계제)
이 행 결 과	『‘○○동 건물주 - 세입자 분쟁’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6일자 사회면)

2017전북조정 59~61	(정정·손배청구) 최○○^(59·60) 對 티브로드전주방송 (손배청구) 김○○⁽⁶¹⁾
조 정 대 상	지역채널 프로그램 『위기의 장수군, 끝없는 의혹들』 제하의 보도 (2017년 9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장수군수인 신청인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건강에 문제가 있었으며, 금품 선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동의 없이 직원의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불성립결정 (정정청구-최용득) • 취하 (손배청구-최용득/사유 : 자진취하, 김○○/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위기의 장수군, 끝없는 의혹들』 제하의 홈페이지 보도 중 신청인 김○○ 영상 삭제 (2017년 11월 16일자 뉴스방송면)

2017전북조정 62~65	(각 정정·손배청구) 장○○ ^(62·63) , 김○○ ^(64·65) 對 주간 해피데이
조 정 대 상	『B레미콘은 누구겁니까?』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9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레미콘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였으며, 불법적인 수의 계약이 있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합의사항 미이행
2017전북조정 66·67	(정정·손배청구) 양○○ 對 새만금일보
조 정 대 상	『‘사감(私感) 신상발언’도의회 품격 좀 먹는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6일자 1면)
신청인 주장	도의원인 신청인이 도의회 회의에서 사적인 감정을 갖고 신상 발언을 남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A모 도의원 신상 발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5일자 2면)
2017전북조정 68	(정정청구) 서○○ 對 새만금일보
조 정 대 상	『주민숙원사업비 삭감 웬말』 제하의 기사 (2017년 12월 19일자 7면)
신청인 주장	기초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주민 숙원사업인 배수로 설치 공사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군산시 둔산 마을 배수로 예산 삭감’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9일자 7면, 인터넷 새만금일보 2017년 1월 29일자 사회면)

10. 경남중재부

<p>2017경남조정 1·2</p>	<p>(정정·반론청구) ○○○해상공원(주) 對 거제타임즈</p>
<p>조 정 대 상</p>	<p>(1) 『갑질의 섬 ‘○○○ 해상공원’ 수사는 엄중해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4일자 칼럼면) (2) 『갑질 논란 ‘○○○’ 불법 건축에다 상수도 요금 특정 유람 선사에 부담 ‘말썽’』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5일자 속보면) (3) 『갑질 논란 ‘○○○ 해상공원’ 언론에 협박성 자료 보내 ‘말썽’』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9일자 종합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해상공원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상수도 요금을 유람 선사에 떠넘기는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조건부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결정 내용이 신청인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함)</p>
<p>2017경남조정 3~5</p>	<p>(정정⁽³⁾·반론청구^(4·5)) 창원시 對 창원KBS-1TV</p>
<p>조 정 대 상</p>	<p>(1) 『안상수 시장, ‘오폐수 방류 보고 받고도 무대응’』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23일자 저녁7시뉴스 프로그램) (2) 『연말특집 빅데이터 분석』 제하의 보도 (2016년 12월 21일자 감시자들 프로그램) (3) 『2017 도민들의 새해 소망은?』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3일자 감시자들 프로그램) (4) 『수상한 ○○타운, 사업자 ○○○시티의 실체』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31일자 감시자들 프로그램) 외 3건</p>
<p>신청인 주장</p>	<p>창원시장이 2015년 발생한 창원시의 무단 오폐수 방류 사실을 보고 받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3·4)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취하⁽⁵⁾ (사유 : 당사자간 화해)

2017경남조정 6	(정정청구) 통영시 對 통영인터넷뉴스
조 정 대 상	『○○산업단지 조성에 통영 시유지 무상 제공 특혜 의혹 “도둑놈 중에서도 큰 도둑놈” 주장 제기돼 논란 확산』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20일자 통영뉴스면)
신청인 주장	통영시가 시유지를 특정 업체에 차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무상 제공한 것이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이 행 결 과	『[반론 및 정정보도] 통영시, ○○산업단지 시(市)유지 무상 제공 특혜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3일자 초기화면)
2017경남조정 7·8	(정정·손배청구) 방○○ 對 인터넷 고성미래신문
조 정 대 상	『○○면 ○○리 국유 농지 불법 전용, 지도감독 요구 돼』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 3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부받은 국유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면 ○○리 국유 농지 불법 전용, 지도감독 요구 돼” 관련』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2일자 사회면)
2017경남조정 9·10	(정정·손배청구) 이○○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단골 고객에 ‘덤’으로 준 빵에 곰팡이가 ... 모자 “구토·복통”』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25일자 최신기사면)
신청인 주장	편의점 곰팡이빵을 먹은 신청인이 편의점 측으로부터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음)

<p>2017경남조정 11·12</p>	<p>(조정·손배청구) (주)일간○○○○ 외 1인 對 프레시안</p>
<p>조 정 대 상</p>	<p>『도내 모 언론사 회장 뒷배 ... 민·관·언론사 유착 의혹도 솔솔 불거져』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4일자 뉴스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언론사 회장이 지역 내 유명 음식점의 불법 실태를 취재하는 다른 언론사에 취재 중단을 요청하는 등 해당 음식점과 유착 관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자진 취하)</p>
<p>2017경남조정 13, 14</p>	<p>(각 정정청구) (주)○○○○테크 對 MBC경남-TV⁽¹³⁾, 인터넷 MBC경남⁽¹⁴⁾</p>
<p>조 정 대 상</p>	<p>『창원시 위탁 시설 이전 특혜 의혹』 제하의 보도 (MBC경남-TV 2017년 7월 12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인터넷 MBC경남 2017년 7월 12일자)</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이전 과정에서 창원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p>
<p>2017경남조정 15·16</p>	<p>(조정·손배청구) ○○○○마을유람선(주) 對 거제시대</p>
<p>조 정 대 상</p>	<p>(1) 『조물주 위의 건물주(?) ○○ 유람선 ‘세입자 시설 강제 철거’ 갑질』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1일자 사회교육면) (2) 『거제시, ‘특정 업체 마을 물양장 주차장 사용 묵인’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9일자 사회교육면) (3) 『○○ 유람선, 상가 세입자 불법 증축 관련 사실 확인서 존재』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19일자 사회교육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업체가 임대 중인 횃집을 세입자 동의 없이 불법 철거하고 국가 시설인 부두 시설을 불법 점유해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반론보도] ○○유람선 ‘세입자 시설 강제 철거’ 등 관련』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30일자 뉴스면)</p>

2017경남조정 17~20		(각 정정·손배청구) (주)○○○○리조트 對 경남매일 ^(17·18) , 인터넷 경남매일 ^(19·20)
조 정 대 상	(1) 『○○○○리조트 왜 이러나』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7년 7월 26일자 1면, 인터넷 경남매일 2017년 7월 25일자 탐뉴스면) (2) 『도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7년 7월 27일자 1면, 인터넷 경남매일 2017년 7월 26일자 탐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조성 중인 복합 관광단지 부지를 무상 임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7경남조정 21~26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이○○ 對 뉴스경남 ^(21~23) , 인터넷 뉴스경남 ^(24~26)
조 정 대 상	『“행정에 상습적으로 민원 넣는 사람이 있어요”』 제하의 기사 (뉴스경남 2017년 8월 4일자 5면, 인터넷 뉴스경남 2017년 8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7경남조정 27~30		(각 정정청구) (주)○○○○엔지니어링 對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²⁷⁾ , 인터넷 경남매일 ⁽²⁸⁾ , 프레시안 ⁽²⁹⁾ , 인터넷 일요서울 ⁽³⁰⁾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 『○○○를 보고 일했는데...』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4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남매일 : 『○○○코리아 증축 대금 미지급 논란』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4일자 사회면) 프레시안 : 『사천○○○코리아, 업체 관리 엉망』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4일자 뉴스면) 인터넷 일요서울 : 『○○○코리아 공장 증축 공사업체 관리 ‘헛점’ 드러내』 제하의 기사 (2017년 7월 25일자 경남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하청업체에 공사 대금 일부를 미지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 『‘○○○를 보고 일했는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4일자 뉴스면) 인터넷 경남매일 : 『○○○코리아 증축 대금 미지급 논란 관련』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4일자 사회면) 프레시안 : 『사천○○○코리아, 업체 관리 엉망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4일자 뉴스면) 인터넷 일요서울 : 『○○○코리아 공장 증축 공사업체 관리 ‘헛점’ 드러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4일자 경남면) 	

<p>2017경남조정 31</p>	<p>(정정청구) 경남지방경찰청 對 프레시안</p>
<p>조 정 대 상</p>	<p>(1) 『경남지방경찰청, 밀실.안가 수사 구태 못버리고 인권?』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28일자 사회면) (2) 『경남지방경찰청, 특권의식에 국민 혈세 낭비』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경남지방경찰청이 호화 형태의 밀실과 안가를 운영하면서 인권을 탄압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p>
<p>2017경남조정 32~34</p>	<p>(정정·반론·손배청구) 반○○ 외 1인 對 거제타임라인</p>
<p>조 정 대 상</p>	<p>(1) 『2년 간 반쪽 개장 ○○ 해수욕장, 주민들, 청와대로』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3일자 사회면) (2) 『‘구호만 요란한 관광 거제’- 매년 주는 해수욕객 대책은?』 제하의 기사 (2017년 8월 23일자 사실면)</p>
<p>신청인 주장</p>	<p>모 해수욕장의 피서객 감소가 해수욕장 마을과 신청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의 다름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거제시 ○○면 ○○해수욕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9월 14일자 사회면)</p>
<p>2017경남조정 35</p>	<p>(손배청구) 전 ○ 對 경남신문</p>
<p>조 정 대 상</p>	<p>『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그 곳, 뜨끈한 정 넘치는 그 맛』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20일자 20면)</p>
<p>신청인 주장</p>	<p>칼국수를 먹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p>

2017경남조정 36·37	(정정·손배청구) 진주시 對 단디뉴스
조 정 대 상	『‘브리핑 룸’이전하라』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2일자 에나소리면)
신청인 주장	진주시청 브리핑 룸이 시민들의 사용이 어려운 공간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브리핑룸 이전하라’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1월 15일자 에나소리면)

2017경남조정 38~41	(각 정정·반론청구) 산청군 對 경남도민일보 ^(38·39)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40·41)
조 정 대 상	『허기도 산청군수‘본회의장 무단 퇴장’사과』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7년 12월 15일자 7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2017년 12월 15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산청군수가 군의회 본회의 도중 퇴장한 일에 대해 군의회 의장에게 사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11. 제주중재부

<p>2017제주조정 1</p>	<p>(손배청구) 김○○ 對 제주의소리</p>
<p>조 정 대 상</p>	<p>(1) 『제주도 맹추위 시작 8일 첫 눈 내릴까?』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5일자 날씨면) (2) 『9일 새벽 제주에 첫눈 산간엔 눈폭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날씨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의 고교 시절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및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각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p>
<p>2017제주조정 2·3</p>	<p>(반론·손배청구) 강○○ 對 국제뉴스</p>
<p>조 정 대 상</p>	<p>『강○○, 환경훼손된 부지-일자리-도민 무시 생트집』 제하의 기사 (2017년 4월 10일자 제주면)</p>
<p>신청인 주장</p>	<p>도의원인 신청인이 관광지 개발에 대한 도정 질의 시 시민 단체만을 옹호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보도이므로 수용할 수 없음)</p>
<p>2017제주조정 4~7</p>	<p>(각 정정·손배청구) ○○영농조합법인 對 제민일보⁽⁴⁻⁵⁾, 인터넷 제민일보⁽⁶⁻⁷⁾</p>
<p>조 정 대 상</p>	<p>(1) 『대규모 식당 목적외 사업 논란』 제하의 기사 (제민일보 2017년 4월 18일자 1면, 인터넷 제민일보 2017년 4월 17일자 정치면) (2) 『법인 사무실 찾아가니 건축 공사장』 제하의 기사 (제민일보 2017년 4월 19일자 1면, 인터넷 제민일보 2017년 4월 18일자 정치면) (3) 『임시 조합원총회 의사록 조작 의혹』 제하의 기사 (제민일보 2017년 4월 20일자 1면, 인터넷 제민일보 2017년 4월 19일자 정치면) (4) 『조합원총회 끝나자 부동산 줄매각』 제하의 기사 (제민일보 2017년 4월 21일자 1면, 인터넷 제민일보 2017년 4월 20일자 정치면) 외 1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조합이 불법적으로 관광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이 행 결 과</p>	<p>『○○영농조합법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제민일보 2017년 5월 30일자 2면, 인터넷 제민일보 5월 30일자 정치면)</p>

2017제주조정 8·9	(반론·손배청구) 김○○ 對 제주도민일보
조 정 대 상	『“땅이 뒤통이라 …”주민 vs 제주 교사‘소송전’』 제하의 기사 (2017년 5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사과보도,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주민 vs 제주 교사 소송 전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6월 9일자 사회면)
2017제주조정 10~15	(각 정정·손배청구) 류○○ 對 제주신보^(10·11), 인터넷 제주신보^(12·13), 제주의소리^(14·15)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신보 : 『도내 초등 남 교사 동료 교사 추행 의혹』 제하의 기사 (제주신보 2017년 10월 13일자 4면, 인터넷 제주신보 2017년 10월 12일자 사회면) 제주의소리 : 『동료 여교사 성추행 의혹 제주 초등 교사 ‘직위해제’』 제하의 기사 (2017년 10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